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48호

2026. 5. 14.(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100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제100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제101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9
제101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 ····· 14
제101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행정예고]

제2026-225호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

◈ 고 시

제2026-257호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3
제2026-258호 묵2동 243-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04
제2026-2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1
제2026-260호 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 128
제2026-261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1
제2026-2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7
제2026-26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50
제2026-26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52
제2026-266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164
제2026-267호 돌곶이·상월곡역세권(장위동 66-3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8

제2026-26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9

◈ 공 고

제2026-144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50
제2026-1460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2
제2026-146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253
제2026-146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54
제2026-146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257
제2026-1471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259
제2026-147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0
제2026-147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4
제2026-147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71
제2026-1485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78
제2026-1490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86
제2026-1491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287
제2026-1493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1회차) 공시송달 공고 ····· 288
제2026-1497호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정비(소멸) 대상 사전 공고 ····· 289
제2026-1499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크라운방재(주)] ····· 294
제2026-1506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안) ····· 295
제2026-1507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협약 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 296
제2026-150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97
제2026-15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 312
제2026-151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367
제2026-1512호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 기본설계(안) 열람 공고 ····· 368
제2026-151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70

◈ 구 고 시

제2026-7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마포구) ····· 371
제2026-1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 374
제2026-91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 376
제2026-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강남구) ····· 379

◈ 구 공 고

제2026-501호 DDP 1·2·3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중구) ····· 383
제2026-803호 도시공원(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연장) 공고 (강북구) ····· 428
제2026-85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마포구) ····· 429
제2026-994호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열람공고(영등포구) ····· 434
제2026-895호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원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송파구) ····· 443

◈ 사업소고시

제2026-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49
제2026-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49
제2026-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0
제2026-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0
제2026-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1
제2026-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1
제2026-2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2
제2026-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2

◈ 사업소공고

제2026-21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53

◈ 기 타

제2026-133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71
제2026-134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72
제2026-141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73
제2026-1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74

◈ 정 정

제2026-25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 475
제2026-264호 광희동 및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478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인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일괄개정조례」 [시행 2025.5.15.] [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에 따라 조례 제명이 ‘시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일괄 개정됨

나.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 제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립’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인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금융에”를 “경제와 금융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금융교육”이란”을 “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를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교육 시책”을 “경제·금융교육 시책”으로, “금융교육이”를 “경제·금융교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을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교육”을 각각 “경제·금융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을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재원 조달”을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을 “(교육자료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교육의 활성화를”을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로, “금융교육에”를 “경제·금융교육에”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범학교”를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한다.

제7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9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이 단순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

나. 현행 조례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기존의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제·금융 역량을 갖추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여 금융 교육의 범위 확대를 도모함

나. 현행 조례 본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해당 용어에 대해 일괄 수정함(안 제1조~제9조)

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인
2026년 5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및 세부 추진계획
3.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운영 및 통합·연계
4.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지원단 등 구성·운영
6.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배치
8.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9.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지원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부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9조(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와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정기회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분기·월·주간 단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서울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필요한 기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등 연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아.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인
2026년 5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 · 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 환경 개선, 자료 확충 및 관리,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사서 등(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전문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학생의 독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급별 · 발달단계별 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3.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5. 교원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6. 독서 동아리 등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7.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독서 축제, 독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
8.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학교도서관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 · 설비의 확충 및 개선
2. 장서의 체계적 수집 · 관리 및 디지털 자료 확충
3.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 · 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서교사 등 및 자원봉사활동) ①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고유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역할에 한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2.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간 교류 · 협력
3. 사서교사 · 사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4. 우수 독서교육 사례 발굴 · 확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AI·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AI 기술의 일상화로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역량이 미래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읽기 역량 및 디지털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학교도서관이 단순 자료 보관 공간을 넘어 AI 시대 교수·학습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자료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 등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도서관 운영 기준, 시설·장서 관리 및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9조)

아.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인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로 한다”를 “수로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정수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2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난 2025년 9월 16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위임됨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 구성 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수 규정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 범위 명시함(안 제3조제4항 신설)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5호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지침은 2016년 제정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한강 수상환경 및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자 함

○ 최근 한강 이용 증가 및 수상시설 다양화, 침수사고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체계 및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부유식수상구조물로 명확화
나. 안전도 검사를 건조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체화
다. 도면 검토, 안전도검사 확인서 교부, 유효기간 및 검사 준비사항 규정
라.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 · 소방 · 배수 · 구명설비 등 시설기준 정비
마. 검사기관의 자격 및 검사 수행범위 명확화
바. 안전도검사 점검결과, 수리보완요청 및 재검토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전화: 02-3780-0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jwkim23@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 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에 설치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유식 수상구조물” 이란 수상(水上)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水密隔壁)이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또는 콘크리트의 재질을 가지는 구조물을 말한다.
2.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이란 선체·기관·배수설비·계선설비·양묘설비·구명설비·소방설비·거주설비·위생설비·항해설비·전기설비·승강설비를 말한다.
3. “선령(船齡)”이란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4. “도교”란 육상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교량으로써 육상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연결하는 연락도교를 말한다.
5. “안전도 검사”란 한강 수역에 설치·운영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그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 부력 및 복원성, 계류·접안·도교 등의 고정·연결상태, 화재·침수·전기·위생 등 안전설비의 기능 및 피난·구조 체계를 점검하여 이용자 및 주변 수역의 안전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도선장, 수상레저사업장, 선착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수상에 고정되어 설치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법」 제26조제4호에 따른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하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미래한강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조 및 설비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박·구조·안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선박·해양안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선박(조선, 기관)·해양공학, 구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3년 이상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준적용의 특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2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제6조(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참여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 검사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조검사: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조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길이, 너비, 깊이

나.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수밀성·부양성·복원성·방화성 또는 선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다. 중량물의 설치 또는 이동으로 인하여 무게 중심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유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수시검사 등) ① 미래한강본부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미래한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범위, 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14일 전에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수시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사 등) ① 안전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안전도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도 검사기관은 안전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면의 검토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도면에 대하여 미리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토를 얻어야 하며 검토 후 검토날인(검토 확인 도장 또는 서명)으로 승인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검토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에 대하여 검토 또는 변경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안전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검토날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도면의 검토를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
2. 같은 조선소(건조업자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검토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
3. 안전도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안전도 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토를 얻은 자는 검토를 받은 도면(검토날인 포함)을 미래한강본부장에게 건조 전 제출하고 동일하게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소속 직원 포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받은 도면을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유식 수상구조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안전도 검사 확인서 교부 등) ① 안전도 검사 기관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에 합격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용도
3. 부유식 수상구조물 명칭
4. 총톤수
5. 최대승선인원
6. 건조년도(또는 선령)
7. 재질
8.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
9. 유효기간
10. 만재흘수선의 위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확인서』는 유효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재발급하도록 한다.

제12조(안전도 검사의 준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임시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2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3.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중 해당설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 준비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선체두께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각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체두께의 측정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외판이 강(鋼)으로 된 것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⑥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선령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시마다 선체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제13조(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는 종전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건조년수(또는 선령)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이하: 5년
2.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2.5년
3. 건조년수(또는 선령) 20년 초과, 30년 이하 2년
4. 건조년수(또는 선령) 30년 초과: 1년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의 시기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일로 한다.

④ 안전도 검사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부터 만료일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4조(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의 기준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에 설치·비치되는 각종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기술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제15조(만재흘수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6조(복원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복원성계산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계류설비 검사 대상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계류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그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이하 : 10년
2.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초과 : 5년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류설비(닻(싱커), 쇠사슬, 로프와 계선용 로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진열하여야 한다. 다만, 진열하여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중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중검사의 준비와 그 검사방법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 산정 등) ① 최대승선인원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85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9조(안전도 검사기관) ① 안전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및 도면 검토를 위탁받아 실시한다.

1.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
2.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
3. 미래한강본부장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안전도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안전도 검사(건조검사 및 임시검사에 한한다) 및 제10조에 따른 도면검토(재검토를 포함한다)와 관련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도 검사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편 설비기준

제1장 선체

제20조(재료 및 구조)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체재료 및 구조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해당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강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

(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전저항 계산)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저항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저항 산식에도 불구하고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Aa), 상대풍속(Va), 조류속도(Vw)는 각각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Aa):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면 및 측면 투영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
2. 상대풍속(Va): 태풍시 풍속인 44m/s
3. 조류속도(Vw): 팔당댐 방류시(삼각 단계 방류량 37,000m2/sec)의 유속인 3.32m/s

제22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닻(싱커), 닻(싱커)쇠사슬, 로프와 계선용 로프 등의 규격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7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강변에 계선하는 경우에는 한강의 수위변동에 대응하여 계선줄의 길이를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강변에 설치하는 계선주는 계선줄의 최대 장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계선설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계선설비의 용량은 제21조에 따른 전저항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하고,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갖춰 놓는 계류설비의 종류와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과하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계선설비 중 앵커 또는 싱커만으로도 제21조에 따른 전저항에 의한 구조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선설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에 대하여 기술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성적서 등의 관련 자료를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방화구조

제24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내부 노출면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방화구조(구획 · 내화재료 · 개구 보호 등)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 주위벽 내에는 가급적 가구 및 비품을 배치하지 아니한다.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각 구역에 배치하는 가구 및 비품은 가능한 화재의 위험에 적은 난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도 검사기관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화재위험 및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제26조(난로 등의 설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난로·조리용 가열기구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를 적용한다.

제27조(화염방지망의 설치) 연료유탱크, 그 밖의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공기관의 개구(開口), 그 밖의 개구에는 해당 장소로 화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화염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제28조(쓰레기통의 설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쓰레기통은 불연성(不燃性)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옆면 및 아랫면에 개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경계격벽) 거주구역 및 공용실의 경계격벽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제30조(전기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선박전기설비기준」을 적용하고 규정 외 방화구조는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설비 중에서 주전원(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및 비상전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제31조(주전원)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전원공급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용량의 계산 시 부등률(不等率)을 고려할 수 있다.

제32조(비상전원)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설비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와 관련한 비상전원은 적어도 2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
   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나.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기계제어실
   다. 그 밖에 미래한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
3.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4. 통화(방송)장치
5. 소화펌프
6. 자동스프링클러장치
7. 엘리베이터
8.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표시(야광 물질) 등과 같은 보조장치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각 구역에 설치·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설비는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가 야간 이동시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설비

제33조(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하고 규정 외 소방설비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연결 송수구의 비치, 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제34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총톤수 5백톤 이상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적합한 연결 송수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35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 ·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통로: 통로길이 30m 또는 그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2. 공용실 및 1실에 8인 이상이 거주하는 거실(조리실 제외) : 하부면적 200㎡ 또는 그 단수마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3. 조리실: 포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분말소화기 중 1개
4.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가.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소화장치

1) 보호되는 구역 총용적의 40퍼센트 이상의 탄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탄산가스소화장치
2) 제곱미터당 0.5킬로그램 이상의 분말을 공급할 수 있는 분말소화장치
3) 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분무 또는 스프링클러 장치, 물분무장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화주관에 연결할 수 있을 것
4) 가목 내지 다목의 소화장치와 동등하다고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소화장치

나.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창고경계의 한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5.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 출입구 부근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6. 매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조리실 가열기구의 배기용 통풍관이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통풍관은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③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6항에 따른다.

제36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장 거주 및 화장실 설비

제37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직원실 등(직원이 이용하는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직원실을 말한다)의 설치요건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선원실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평수구역 및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화장실 설비)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화장실 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하며, 최대승선인원 60명까지 1개, 60명 초과 시 60명 단수마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9조(오수·분뇨 설비) ① 오수·분뇨저장설비는 저장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액면지시장치, 측심관장치 또는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탱크의 용량은 오수·분뇨의 발생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하수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탱크는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중 또는 수상으로 직접 배출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오수·분뇨를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출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유식 수상구조물로부터 오수·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육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배수 및 공기관 설비

제40조(배수장치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300(리터/분)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이동식 동력배수펌프 2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이동식 동력배수펌프는 선체 선저부 파공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공기관 설비) 선체의 각 구획에는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진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각 구획을 선체내부에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구명설비

제42조(구명부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 표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에는 30미터 길이의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보호난간 등에 갖춰 놓아야 한다.

구조물의 길이(미터)	구명부환의 수(개)
60미만	8
60이상 120미만	12
120이상 180미만	18
180이상 240미만	24
240 이상	30

제43조(구명조끼)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등(橙)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하며, 구명조끼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44조(선내방송장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과 수용인원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안내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8장 항해용구

제45조(정박등) 전장(全長) 50미터 미만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또는 을종 백등 1개를, 전장 50미터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제9장 그 밖에 설비의 설치 등

제46조(보호장치)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상갑판, 도교 등의 노출부에는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난간을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보호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보호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주간격을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3. 보호난간의 횡봉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47조(도교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도교의 형식 및 규격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여건(통행인원, 차량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이동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분포하중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분포하중은 5kN/㎡ 이상 이어야 하며, 도교 바닥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차량하중과 차량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연결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힌지 및 핀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위변동 및 구조물 이동시 도교를 들어올리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도교가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강변 양쪽 모두에 고정되도록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의 양 끝 연결부를 힌지 타입으로 적용하여 수위변동 상태에서도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는 최고 수위변동 상태에서도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회운동(수직축에 대한 회전운동)의 저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 및 피로수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회운동에 대하여 저항력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유속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속을 기준으로 한다.

⑧ 도교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계선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선설비의 용량 산정 및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도교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검토사항 등은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4편 보칙

제48조(수리보완요청 등) ① 안전도 검사 기관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에 대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검사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검사준비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또는 수리·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보완요청서』 를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수리보완요청서는 검사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제49조(안전도 검사의 점검 결과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 검사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점검표 상의 비고란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내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도면 검토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적합한 경우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 이후 주요치수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신설 2026.00.00.>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종류별에 관련 도면(제8조제2항 관련)

1. 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건조사양서(건조검사에 한함) 또는 개조사양서
 나. 일반배치도
 다. 선체선도
 라. 배수량등곡선도
 마. 중앙횡단면도
 바.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사.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아. 방화구조도 및 방화용재료표(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한정한다)
 자. 기관실전체장치도(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한정한다)
 차. 흘수표배치도
 카. 제개구폐쇄장치도
 타.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 배치도
 파. 전기계통도, 전력조사표, 전기기기 배치도 (발전기가 설치된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 오수 및 폐수설비 배치도
 거.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다음의 서류
  1)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2)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2. 재검사 관련 도면
 가. 지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그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나. 새로 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다음의 도면면(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은 늑골의 외면, 그 밖의 외판이 있는 선박은 외판의 외면에 대한 도면을 말한다)
  1) 종통판 각조의 너비가 적혀 있는 선체중앙횡단면도
  2) 선체중심선종단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3) 갑판 및 창내평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4) 갑판평면도

5) 선체선도
6)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홀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다.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나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라. 새로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승강설비배치도
2) 승강설비의 구조도
3)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4)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5)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마. 승강설비를 변경하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라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바. 새로 복원성시험을 받으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일반배치도
2) 선체중앙횡단면도
3) 개구상세도
4) 선체선도
5)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6)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7)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8)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사. 복원성과 관계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바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별표 2] <신설 2026.00.00.>

건조검사 준비사항(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나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고, 반드시 안전도 전문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2)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디프탱크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2. 기관에 관한 준비(원동기·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별표 3] <신설 2026.00.00.>

정기검사 준비사항(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가능할 경우)
 나.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다.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라.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마. 강제선체 주요부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내연기관(해당할 경우)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보일러 및 압력용기(해당할 경우)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보기 및 관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8.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1.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부유식 수상구조물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부유식 수상구조물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부유식 수상구조물 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부유식 수상구조물 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선박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차. 해당 선박을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선박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2.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만재흘수선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00.00.>

제 호 (Certificate No:)

안전도 검사 확인서

[ ] 건조검사 [ ] 정기검사 [ ] 임시검사 [ ] 수시검사 [ ] 재검사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원	용도	부유식 수상구조물 명칭	총톤수
	최대승선인원수	건조년도(선령)	재질
	길이	너비	깊이
유효기간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만재흘수선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선박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만재흘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흘수선(S)·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만재흘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여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Y) 월(M) 일(D)

안전도검사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00.00.>

결재	부 서 장

수 리 보 완 요 청 서

검사참여자 : 귀하

선 박 번 호 (건 조 번 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명칭	
안전도검사의 종류		임 검 장 소	

수리 · 보완사항 :

위 사항을 수리 또는 보완하여 년 월 일까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전도검사기관 검사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00.00.>

안전도 검사 점검표

검사일자 : _____ 검사장소 : _____

부유식 수상구조물 명칭 : _____ 검사참여자 : _____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분류 : ☐ 수상식당 ☐ 수상공연장 ☐ 기타( )

검사 결과 표시 :

V : 검사/확인되고 만족함 X : 이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R : 이 검사시 수리, 변경 또는 교체한 사항(내용을 기사란에 기재) – : 이 구조물에는 적용되나 이 검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검사사항	검사결과
1	**선체**	
1.1	선체 외판, 갑판 등의 부식, 손상, 과도한 변형의 유무에 대한 확인	☐
1.2	선체의 두께측정 실시	☐
1.3	선체 개구부 폐쇄장치에 대한 부식, 파공, 고착 등 현상 확인	☐
1.4	선체 내부 구획 및 수밀격벽에 대한 현상 확인	☐
1.5	수밀격벽내의 수밀문에 대한 작동상태 확인	☐
2	**기관**	
2.1	보조기관에 대한 작동상태 점검 및 현상 확인(발전기용 보조기관이 설치된 구조물에 한함)	☐
2.2	보기 및 관장치의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2.3	배기관 등 고온부의 방열조치에 대한 확인(발전기용 보조기관이 설치된 구조물에 한함)	☐
2.4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2.5	냉동, 냉장장치에 대한 작동상태 및 현상 확인	☐
3	**배수설비**	
3.1	배수장치에 대한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4	**계선설비**	
4.1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에 대한 비치수량 및 현상 확인	☐
4.2	닻쇠사슬의 마모상태 확인	☐
4.3	계선설비에 대한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5	**구명설비**	
5.1	구명동의, 구명부환의 비치수량 및 현상확인	☐
5.2	구명설비에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의 표시여부 확인	☐
5.3	구명설비의 비치장소 표시 상태확인	☐
5.4	선내방송장치에 대한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6	**소방설비 및 방화설비**	
6.1	소화기의 비치수량 및 현상 확인	☐
6.2	난로 및 쓰레기통의 현상 확인	☐
6.3	화염방지망의 현상 확인	☐
6.4	화재탐지장치의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6.5	자동스프링클러장치에 대한 현상 확인	☐

	검사사항	검사결과
6.6	자동확산형 소화장치에 대한 현상 확인	☐
6.7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현상 확인	☐
7	**항해설비**	
7.1	선등에 대한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8	**전기설비**	
8.1	주전원, 비상전원에 대한 현상 확인	☐
8.2	발전기에 대한 작동상태 및 현상 확인(발전기용 보조기관이 설치된 구조물에 한함)	☐
8.3	배전반에 대한 작동상태 및 현상 확인	☐
8.4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실시 및 현상확인	☐
8.5	축전지의 설치상태 확인	☐
8.6	전기설비에 대한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
9	**거주 및 위생설비**	
9.1	거주구역 내의 출입구, 계단 등에 대한 현상 확인	☐
9.2	거주제실등(변소설비 등)의 확인	☐
9.3	상갑판 및 도교 등 노출부의 보호난간의 설치상태 확인	☐
9.4	액화석유가스(LPG) 설비의 고정설비, 설치장소 및 배관계통의 상태 확인	☐
9.5	오수 및 분뇨설비에 대한 현상 확인	☐
9.6	승강설비에 대한 작동상태 및 현상 확인	☐
10	**만재흘수선**	
10.1	만재흘수선의 표시상태 확인	☐
10.2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상 개구 및 풍우밀폐쇄장치에 대한 현상 확인	☐
10.3	통풍통 및 공기관에 대한 현상 확인	☐
10.4	방수구 또는 배수구에 대한 현상 확인	☐
11	**복원성**	
11.1	복원성 자료의 비치 확인	☐
11.2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의 변경 여부 확인	☐
12	**도교 설비**	
12.1	육상 교대부와의 설치상태 확인	☐
12.2	각종 볼트, 연결 핀, 롤러의 현상 확인	☐
12.3	하중 경감장치와의 연결 상태 확인	☐
12.4	미끄럼방지 설비의 현상 확인	☐

※ 비고

검사원 1: _____ 검사원 2: _____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지침 개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 한강수상안전부장 이주영, 수상안전과장 이성희, 주무관 김정욱									
4. 근거법령명등	- 하천법 제33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5. 관 련 규제수		39건		
6.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 및 관리자									
7. 규제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3년									
8.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ㅇ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과거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관리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항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로 판단함에 따라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ㅇ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요인이 존재 ㅇ 개정안은 「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기준」,「강선의 구조기준」등 기존 「선박안전법」 준용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13건) : 건조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수시검사 체계, 검사 유효기간 및 재검사 기준 등 규정 - 제3편 설비기준(26건) :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소방·배수·구명설비 등 설비기준 규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은「선박안전법」적용대상으로 관리되었으나, 항구적 고정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선박안전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또한 현행 지침은 검사 종류,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다중이용시설로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임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선박안전법을 준용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침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안전도 검사 체계 및 유지관리 기준 명확화
-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기존 검사 대비 구체적인 검사 및 시설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초기 적용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민간업체 중심의 검사 수행으로 검사비용 부담 및 검사 신뢰도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개정안은 정부대행기관 및 국제선급협회(IACS) 등록 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비용 절감 및 검사 신뢰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기존 선박안전법 및 관련 기준 등을 준용한 사항으로 기술적·행정적 적용 가능성이 충분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현행 지침만으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수준 확보에 한계가 있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자율점검만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검사체계 마련이 필요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으로 기존 규제와 직접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안전도 검사 및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침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가능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일부 비용은 발생하나,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기존 민간검사기관 대비 검사비용 절감 가능)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특정 사업자 또는 특정 기술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기존 선박안전법을 준용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검사의 종류, 주기 및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하천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에 근거하여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기존 조직 및 안전도 검사기관 활용으로 운영 가능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 조직 및 검사체계를 활용 가능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 사항으로 적정함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안전도 검사기관을 통한 처리절차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개정 지침 조문의 준용 법령 기준 및 적용 내용(39건)

	지침 조문	준용 법령 · 기준	적용 내용
1	제6조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참여 등)	「선박안전법」 제6조 /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수검자의 현장 참여 준용
2	제7조 (안전도 검사 등)	「선박안전법」 제7조, 제8조, 제10조 / 건조감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상황별 검사분류 준용
3	제9조 (재검사 등)	「선박안전법」 제72조 / 재검사 등	재검사 준용
4	제10조 (도면의 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13조 / 도면의 승인 등	도면관련 사항 준용
5	제12조 (안전도 검사의 준비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의2 / 「선박안전법」 제14조	수중검사, 선체두께 측정, 검사방법 기준 준용
6	제13조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선박안전법」 제16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준용
7	제14조 (시설 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 / 선박설비기준	선체 · 기관 · 설비 전반 기준 준용
8	제15조 (만재흘수선)	「선박안전법」 제27조 / 선박만재흘수선기준	만재흘수선 설정 기준 준용
9	제16조 (복원성)	「선박안전법」 제28조 / 선박복원성기준	복원성 계산 및 안전 기준 준용
10	제17조 (계류설비 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법」 제14조 / 검사의 준비 등	계류설비의 검사준비 사항 준용
11	제18조 (최대승선인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승선인원 산정 기준 준용

	지침 조문	준용 법령 · 기준	적용 내용
12	제20조 (재료 및 구조)	강선 · 알루미늄선 · FRP선 구조기준 등	선체 구조 기준 준용
13	제21조 (전저항 계산)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풍하중 · 유속 등 외력 산정 기준 준용
14	제22조 (닻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앵커, 체인 등 계류장비 기준 준용
15	제23조 (계선설비)	선박설비기준	계선설비 용량 및 구성 기준 준용
16	제24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1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	가연성재료 제한 등 방화 기준 준용
17	제25조 (가구 및 비품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2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8조	가구 및 비품 배치 기준 준용
18	제26조 (난로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3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	가열기기 설치 기준 준용
19	제27조 (화염방지망의 설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4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7조	화염방지망의 설치 기준 준용
20	제28조 (쓰레기통의 설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5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8조	쓰레기통 기준 준용
21	제29조 (경계격벽)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6조 / 선박방화구조기준	불연성 재료 사용기준 준용
22	제30조 (전기설비)	선박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 기준 준용

	지침 조문	준용 법령 · 기준	적용 내용
23	제31조 (주전원)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8조	주전원 기준 준용
24	제32조 (비상전원)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19조	비상전원 설치 기준 준용
25	제33조 (소방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20조 / 소방설비기준	소방설비 기준 준용
26	제34조 (연결 송수구의 비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21조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결 송수구 기준 준용
27	제35조 (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22조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	조리설비 · 배기설비 관련 기준 준용
28	제36조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2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준용
29	제37조 (직원실)	선박설비기준 제2절 선원실 등	선원실 기준 준용
30	제38조 (화장실)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6장 거주 및 화장실	화장실 설비 기준 준용
31	제39조 (오수·분뇨 설비)	하수도법 제35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준용
32	제40조 (배수장치 등)	선박기관기준 제12절 빌지 및 평형수장치	빌지펌프 등 기준 준용

	지침 조문	준용 법령 · 기준	적용 내용
33	제41조 (공기관 설비)	선박기관기준 제120조 공기관	공기관 기준 준용
34	제42조 (구명부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29조 구명부환	구명부환 기준 준용
35	제43조 (구명조끼)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30조 구명조끼	구명조끼 기준 준용
36	제44조 (선내방송장치)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31조 선내방송장치	선내방송장치 기준 준용
37	제45조 (정박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 제32조 정박등	정박등 기준 준용
38	제46조 (보호장치)	선박설비기준 제36조 불워크 등의 설치	난간설치 기준 준용
39	제47조 (도교 등)	국가건설기준(KDS 24 12 21) 보도하중	보도하중 기준 준용

2. 개정 지침 신구 대조표

서울시 지침 신구 대조표	
[현행] 서울시 지침	[개정(안)] 서울시 지침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특례)
제2편 설비기준	제5조(기준적용의 특례)
제5조(기준적용의 특례)	**제2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제1장 도면	**제1장 일반사항**
제6조(도면의 검토 및 비치)	제6조(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참여 등)
제7조(최대승선인원)	제7조(안전도 검사 등)
제2장 선체 및 거주 설비 등	제8조(수시검사 등)
제8조(재료 및 구조)	제9조(재검사 등)
제9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제10조(도면의 검토 등)
제10조(가구 및 비품 등)	제11조(안전도 검사 확인서 교부 등)
제11조(도교 등)	제12조(안전도 검사의 준비 등)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제13조(안전도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제3장 계선 · 계류	제14조(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의 기준 등)
제13조(계선 · 계류 설비)	제15조(만재흘수선)
제14조(전저항의 산정)	제16조(복원성)
제15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 기준)	제17조(계류설비 검사 대상 등)
제4장 전기설비	제18조(최대승선인원 산정 등)
제16조(전기설비)	제19조(안전도 검사기관)
제17조(주전원)	**제3편 설비기준**
제18조(전저항의 산정)	**제2장 선체**
제5장 배수 및 공기관 설비	제20조(재료 및 구조) 강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frp선 구조기준 등(선체 구조 기준 준용)
제19조(배수장치)	**제3장 계선설비 등**
제20조(오 · 폐수 설비)	제21조(전저항 계산)
제21조(공기관 설비)	제22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제6장 구명 및 안전 설비	제23조(계선설비 등)
제22조(구명부환)	**제3장 방화구조**
제23조(구명조끼)	제24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제24조(안전난간 설비)	제25조(가구 및 비품 등)
제25조(선내방송장치)	제26조(난로 등의 설치)
제7장 소방 설비	제27조(화염방지망의 설치)
제26조(소방 설비)	제28조(쓰레기통의 설치)
제27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제29조(경계격벽)

제28조(경계격벽의 재질)	**제4장 전기설비**
제29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제30조(전기설비).
제30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제31조(주전원)
제31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32조(비상전원)
제8장 수상구조물의 안정성	**제5장 소방설비**
제32조(만재홀수선 기준)	제33조(소방설비)
제3편 안전도 검사	제34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제33조(안전검사 전문기관)	제35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제34조(안전도 검사)	제36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35조(안전도 검사 기준)	**제6장 거주 및 화장실 설비**
제36조(안전도 검사 유효기간)	제37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제4편 보 칙	제38조(화장실 설비)
제37조(행정사항)	제39조(오수 · 분뇨 설비)
	제7장 배수 및 공기관 설비
	제40조(배수장치 등)
	제41조(공기관 설비)
	제8장 구명설비
	제42조(구명부환)
	제43조(구명조끼)
	제44조(선내방송장치)
끝.	**제9장 항해용구**
	제45조(정박 등)
	제10장 그 밖에 설비의 설치 등
	제46조(보호장치)
	제47조(도교 등)
	제4편 보칙
	제48조(수리보완요청 등)
	제49조(안전도검사의 점검 결과 등)
	제50조(재검토기한)

3.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지침 개정 전문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에 설치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유식 수상구조물” 이란 수상(水上)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水密隔壁)이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또는 콘크리트의 재질을 가지는 구조물을 말한다.
2.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이란 선체·기관·배수설비·계선설비·양묘설비·구명설비·소방설비·거주설비·위생설비·항해설비·전기설비·승강설비를 말한다.
3. “선령(船齡)”이란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4. “도교”란 육상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교량으로써 육상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연결하는 연락도교를 말한다.
5. “안전도 검사”란 한강 수역에 설치·운영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그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 부력 및 복원성, 계류·접안·도교 등의 고정·연결상태, 화재·침수·전기·위생 등 안전설비의 기능 및 피난·구조 체계를 점검하여 이용자 및 주변 수역의 안전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도선장, 수상레저사업장, 선착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수상에 고정되어 설치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법」 제26조제4호에 따른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하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미래한강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조 및 설비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박·구조·안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선박·해양안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선박(조선, 기관)·해양공학, 구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3년 이상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준적용의 특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2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제6조(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참여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 검사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조검사: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조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길이, 너비, 깊이

나.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수밀성·부양성·복원성·방화성 또는 선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다. 중량물의 설치 또는 이동으로 인하여 무게 중심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유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수시검사 등) ① 미래한강본부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미래한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범위, 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14일 전에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수시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사 등) ① 안전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안전도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도 검사기관은 안전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면의 검토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도면에 대하여 미리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토를 얻어야 하며 검토 후 검토날인(검토 확인 도장 또는 서명)으로 승인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검토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에 대하여 검토 또는 변경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안전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검토날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도면의 검토를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
2. 같은 조선소(건조업자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검토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면
3. 안전도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안전도 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토를 얻은 자는 검토를 받은 도면(검토날인 포함)을 미래한강본부장에게 건조 전 제출하고 동일하게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소속 직원 포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받은 도면을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유식 수상구조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안전도 검사 확인서 교부 등) ① 안전도 검사 기관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에 합격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용도
3. 부유식 수상구조물 명칭

4. 총톤수
5. 최대승선인원
6. 건조년도(또는 선령)
7. 재질
8.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
9. 유효기간
10. 만재흘수선의 위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확인서』는 유효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재발급하도록 한다.

제12조(안전도 검사의 준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임시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2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3.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중 해당설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 준비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선체두께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각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체두께의 측정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외판이 강(鋼)으로 된 것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⑥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선령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시마다 선체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제13조(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유자는 종전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건조년수(또는 선령)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이하: 5년
2.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2.5년
3. 건조년수(또는 선령) 20년 초과, 30년 이하 2년
4. 건조년수(또는 선령) 30년 초과: 1년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도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의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일로 한다.

④ 안전도 검사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부터 만료일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4조(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의 기준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에 설치·비치되는 각종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기술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제15조(만재흘수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6조(복원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복원성계산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계류설비 검사 대상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계류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그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이하 : 10년
2. 건조년수(또는 선령) 10년 초과 : 5년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류설비(닻(싱커), 쇠사슬, 로프와 계선용 로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진열하여야 한다. 다만, 진열하여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중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중검사의 준비와 그 검사방법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 산정 등) ① 최대승선인원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85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9조(안전도 검사기관) ① 안전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및 도면 검토를 위탁받아 실시한다.

1.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
2.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
3. 미래한강본부장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안전도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안전도 검사(건조검사 및 임시검사에 한한다) 및 제10조에 따른 도면검토(재검토를 포함한다)와 관련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도 검사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편 설비기준

제1장 선체

제20조(재료 및 구조)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체재료 및 구조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해당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강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전저항 계산)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저항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저항 산식에도 불구하고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Aa), 상대풍속(Va), 조류속도(Vw)는 각각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Aa):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면 및 측면 투영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
2. 상대풍속(Va): 태풍시 풍속인 44m/s
3. 조류속도(Vw): 팔당댐 방류시(삼각 단계 방류량 37,000m2/sec)의 유속인 3.32m/s

제22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닻(싱커), 닻(싱커)쇠사슬, 로프와 계선용 로프 등의 규격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7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강변에 계선하는 경우에는 한강의 수위변동에 대응하여 계선줄의 길이를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강변에 설치하는 계선주는 계선줄의 최대 장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계선설비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계선설비의 용량은 제21조에 따른 전저항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하고,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갖춰 놓는 계류설비의 종류와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과하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계선설비 중 앵커 또는 싱커만으로도 제21조에 따른 전저항에 의한 구조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선설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에 대하여 기술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성적서 등의 관련 자료를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방화구조

제24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내부 노출면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방화구조(구획 · 내화재료 · 개구 보호 등)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 주위벽 내에는 가급적 가구 및 비품을 배치하지 아니한다.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각 구역에 배치하는 가구 및 비품은 가능한 화재의 위험에 적은 난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도 검사기관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화재위험 및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제26조(난로 등의 설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난로·조리용 가열기구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를 적용한다.

제27조(화염방지망의 설치) 연료유탱크, 그 밖의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공기관의 개구(開口), 그 밖의 개구에는 해당 장소로 화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화염방지망을 설

치해야 한다.

제28조(쓰레기통의 설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쓰레기통은 불연성(不燃性)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옆면 및 아랫면에 개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경계격벽) 거주구역 및 공용실의 경계격벽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제30조(전기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선박전기설비기준」을 적용하고 규정 외 방화구조는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설비 중에서 주전원(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및 비상전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제31조(주전원)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전원공급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용량의 계산 시 부등률(不等率)을 고려할 수 있다.

제32조(비상전원)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설비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와 관련한 비상전원은 적어도 2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
   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나.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기계제어실
   다. 그 밖에 미래한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
3.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4. 통화(방송)장치
5. 소화펌프
6. 자동스프링클러장치
7. 엘리베이터
8.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표시(야광 물질) 등과 같은 보조장치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각 구역에 설치·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설비는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가 야간 이동시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설비

제33조(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하고 규정 외 소방설비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연결 송수구의 비치, 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제34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총톤수 5백톤 이상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적합한 연결 송수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35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 ·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통로: 통로길이 30m 또는 그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2. 공용실 및 1실에 8인 이상이 거주하는 거실(조리실 제외) : 하부면적 200㎡ 또는 그 단수마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3. 조리실: 포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분말소화기 중 1개
4.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가.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소화장치

1) 보호되는 구역 총용적의 40퍼센트 이상의 탄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탄산가스소화장치
2) 제곱미터당 0.5킬로그램 이상의 분말을 공급할 수 있는 분말소화장치
3) 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분무 또는 스프링클러 장치, 물분무장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화주관에 연결할 수 있을 것
4) 가목 내지 다목의 소화장치와 동등하다고 미래한강본부장이 인정하는 소화장치

나.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창고경계의 한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5.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 출입구 부근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6. 매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중 1개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 조리실 가열기구의 배기용 통풍관이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통풍관은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③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6항에 따른다.

제36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장 거주 및 화장실 설비

제37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직원실 등(직원이 이용하는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직원실을 말한다)의 설치요건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선원실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평수구역 및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화장실 설비)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화장실 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하며, 최대승선인원 60명까지 1개, 60명 초과 시 60명 단수마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9조(오수 · 분뇨 설비) ① 오수 · 분뇨저장설비는 저장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액면지시장

치, 측심관장치 또는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탱크의 용량은 오수·분뇨의 발생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하수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탱크는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중 또는 수상으로 직접 배출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오수·분뇨를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출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유식 수상구조물로부터 오수·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육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배수 및 공기관 설비

제40조(배수장치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300(리터/분)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이동식 동력배수펌프 2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이동식 동력배수펌프는 선체 선저부 파공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공기관 설비) 선체의 각 구획에는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진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각 구획을 선체내부에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구명설비

제42조(구명부환)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 표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에는 30미터 길이의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보호난간 등에 갖춰 놓아야 한다.

구조물의 길이(미터)	구명부환의 수(개)
60미만	8
60이상 120미만	12
120이상 180미만	18
180이상 240미만	24
240 이상	30

제43조(구명조끼)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등(橙)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하며, 구명조끼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44조(선내방송장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과 수용인원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안내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8장 항해용구

제45조(정박등) 전장(全長) 50미터 미만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또는 을종 백등 1개를, 전장 50미터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제9장 그 밖에 설비의 설치 등

제46조(보호장치)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상갑판, 도교 등의 노출부에는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난간을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보호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보호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주간격을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3. 보호난간의 횡봉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47조(도교 등)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도교의 형식 및 규격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여건(통행인원, 차량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를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의 이동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분포하중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분포하중은 5kN/㎡ 이상 이어야 하며, 도교 바닥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차량하중과 차량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연결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힌지 및 핀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위변동 및 구조물 이동시 도교를 들어올리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도교가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강변 양쪽 모두에 고정되도록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의 양 끝 연결부를 힌지 타입으로 적용하여 수위변동 상태에서도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는 최고 수위변동 상태에서도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교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회운동(수직축에 대한 회전운동)의 저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 및 피로수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회운동에 대하여 저항력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유속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속을 기준으로 한다.

⑧ 도교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계선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선설비의 용량 산정 및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도교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검토사항 등은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4편 보칙

제48조(수리보완요청 등) ① 안전도 검사 기관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 시설에 대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안전도 검사, 수시검사, 재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검사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검사준비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또는

수리·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보완요청서』 를 부유식 수상구조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수리보완요청서는 검사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제49조(안전도 검사의 점검 결과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 검사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 점검표 상의 비고란에는 해당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내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도면 검토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적합한 경우 이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 이후 주요치수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7호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4.23.)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고시 제2010-253호(2010.7.8.)로 도시관리계획(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같은 고시 제2011-336호(2011.11.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같은 고시 제2025-37호(2025.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동소문제2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6.2.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23,762.2	감)512.8	23,249.4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 정비구역 면적 변경 : 23,762.2㎡ → 23,249.4㎡	• 대상지 남측 정비기반시설(도로)와 하천의 중첩 부분을 제척하여 경계 조정함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762.2	감) 512.8	23,249.4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7,610.1	감) 524.8	7,085.3	30.5%	-
	도로	7,394.3	감) 524.8	6,869.5	29.5%	-
	공공공지	215.8	-	215.8	0.9%	-
	공공청사	-	증) (891.8)	(891.8)	-	입체적 결정 (연면적 : 1,503.1㎡)
획지	소계	16,152.1	증)12.0	16,164.1	69.5%	-
	획지1	16,152.1	증)12.0	16,164.1	69.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신설 공공청사 면적 891.8㎡은 수평투영면적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762.2	감)512.8	23,249.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7,610.1	감)524.8	7,085.3	30.5%	-
준주거지역	16,152.1	증)12	16,164.1	69.5%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정비기반시설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	7,610.1	7,085.3	•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획지		준주거지역	16,152.1	16,164.1	•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에 따른 준주거지역 면적 증가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천원)
수입	소 계			592,992,682
	분양주택	일반분양	200세대	238,047,676
		조합원분양	262세대	282,967,935
	임대	매각	156세대	34,467,457
	근생시설	일반분양		20,275,467
		조합원분양		17,234,147
지출	소 계			411,936,017
	공사비			303,871,968
	보상비			19,622,265
	관리비			8,788,563
	설계비			3,146,443
	감리비			4,710,016
	부대경비			59,798,625
	예비비			11,998,137
종전자산 추정액				172,447,919
추정비례율	104.99% = {수입(592,992,682천원) - 지출(411,936,017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172,447,919천원)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변화표		변동률	사업비				
			-5%	-2.5%	0%	2.5%	5%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10,303	10,574	10,845	11,116	11,387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5%	16,392	134.13%	128.16%	122.19%	116.21%	110.24%
	2.5%	16,002	125.53%	119.56%	113.59%	107.62%	101.64%
	0% (기준)	15,612	116.94%	110.96%	104.99%	99.02%	93.05%
	-2.5%	15,221	108.34%	102.37%	96.40%	90.42%	84.45%
	-5%	14,831	99.74%	93.77%	87.80%	81.83%	75.85%

다.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5.76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4.99%)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59㎡형	8.48억		
전용84㎡형	11.20억		
전용104㎡형	13.14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3	동소문2가 290-3	동소문2가 288	일반 도로	-	'02.04.23. (서고시 135)	폭원 변경
변경	중로	3	a	14	집산 도로	53	동소문2가 290-3	동소문2가 28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77	동소문2가 290-2	동소문2가 46	일반 도로	-	'02.04.23. (서고시 135)	폭원 변경
변경	소로	1	a	11	집산 도로	277	동소문2가 290-2	동소문2가 4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26	동소문2가 290-2	동소문2가 49	일반 도로	-	'02.04.23. (서고시 135)	폭원 변경
변경	소로	2	a	9	국지 도로	326	동소문2가 290-2	동소문2가 49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	중로 3-a	• 도로 폭원 변경 - B : 15m→1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중로 3-2	소로 1-a	• 도로 폭원 변경 - B : 12m→11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소로 1-1	소로 2-a	• 도로 폭원 변경 - B : 10m→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	증)891.8	891.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신설 공공청사 면적 891.8㎡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 면적(㎡)	-	증)891.8	891.8		

※ 층별 면적: 지하1층 549.1㎡, 지상1층 298.4㎡, 지상2층 655.6㎡
※ 공공청사 연면적 1,503.13㎡(전용579.14㎡+공용374.92㎡+기타123.44㎡+주차장425.63㎡),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 지하2층 이하의 설비 등(기계실, 정화조 등)은 결정범위에서 제외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층고 · 형태 · 위치는 조정 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범위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60% 이하	400% 이하	2층 이하	입체적 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503.1㎡ • 수평투영면적 : 891.8㎡	• 지역 내 부족한 공공청사 조성을 통해 편의 증진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보행통로 : 변경없음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관리사무소/방재소/MDF		획지①	110	증)367	477	10㎡+(618세대-50세대) x0.05㎡=38.4㎡이상
	경비실			70	감)33	37	지상
	주민공동시설	소 계		4,270	감)370	3,900	총량:618세대x2.5㎡x1.25 =1,931.25㎡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500~1,000세대 미만) 1.경로당: 330㎡이상 2.어린이집: 330㎡이상 3.작은도서관: 158㎡이상
		어린이놀이터		1,200	감)380	820	
		주민운동시설		800	감)774	26	
		주민공동시설		1,400	감)121	1,279	
		경로당		350	감)19	331	
		작은도서관		180	증)275	455	
		어린이집		340	증)88	428	
		다함께돌봄센터		-	증)144	144	
		돌봄시설		-	증)417	417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3,762.2	획지①	16,152.1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	215	-	-	215	-	-
변경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3,249.4	획지①	16,164.1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	215	-	-	215	-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획지①</td><td>16,152.1</td><td>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38.99이하</td><td>430.7이하
(공동주택
384.5이하)</td><td>105m이하
(35층 이하)</td><td rowspan="2">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확보규정 폐지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삭제</td></tr>
<tr><td>변경</td><td>획지①</td><td>16,164.1</td><td>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38.99이하</td><td>430.7이하</td><td>114m이하
(35층 이하)</td></tr>
<tr><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2">기정
정비구역</td><td colspan="6">
• 주택 공급계획 : 608세대
• 세대 수 : 608세대(분양 447세대, 임대 161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 수 : 174세대(분양 87세대, 임대 87세대)
<table>
<tr><th>건립규모</th><th>기준</th><th>세대수(비율)</th><th>비고</th></tr>
<tr><td>합계</td><td>-</td><td>608세대(100.0%)</td><td></td></tr>
<tr><td>60㎡이하</td><td rowspan="2">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td><td>265세대(43.7%)</td><td></td></tr>
<tr><td>60㎡~85㎡이하</td><td>297세대(48.8%)</td><td></td></tr>
<tr><td>85㎡초과</td><td>총 건립세대수의 20%미만</td><td>46세대(7.5%)</td><td></td></tr>
</table>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5.0% (기준 : 15.0%)
<table>
<tr><th>건립규모</th><th>기준</th><th>세대수(비율)</th><th>비고</th></tr>
<tr><td>합계</td><td>-</td><td>66세대(100.0%)</td><td></td></tr>
<tr><td>40㎡이하</td><td>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td><td>25세대(37.9%)</td><td></td></tr>
<tr><td>40㎡~50㎡이하</td><td>-</td><td>-</td><td></td></tr>
<tr><td>50㎡~60㎡이하</td><td>-</td><td>41세대(62.1%)</td><td></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변경
정비구역</td><td colspan="6">
• 주택 공급계획 : 618세대
• 세대 수 : 618세대(분양 462세대, 임대 156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 수 : 158세대(분양 79세대, 임대 79세대)
<table>
<tr><th>건립규모</th><th>기준</th><th>세대수(비율)</th><th>비고</th></tr>
<tr><td>합계</td><td>-</td><td>618세대(100.0%)</td><td></td></tr>
<tr><td>60㎡이하</td><td rowspan="2">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td><td>267세대(43.2%)</td><td></td></tr>
<tr><td>60㎡~85㎡이하</td><td>297세대(48.1%)</td><td></td></tr>
<tr><td>85㎡초과</td><td>총 건립세대수의 20%미만</td><td>54세대(8.7%)</td><td></td></tr>
</table>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5.0% (기준: 15.0%)
</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r>
<tr><td></td><td></td><td colspan="7"><table>
<tr><th>건립규모</th><th>기준</th><th>세대수(비율)</th><th>비고</th></tr>
<tr><td>합계</td><td>-</td><td>69세대(15.0%)</td><td></td></tr>
<tr><td>40㎡이하</td><td>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td><td>23세대(5.0%)</td><td></td></tr>
<tr><td>40㎡~50㎡이하</td><td>-</td><td>-</td><td></td></tr>
<tr><td>50㎡~60㎡이하</td><td>-</td><td>46세대(10.0%)</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7">•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 성북천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m</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 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9">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td><td rowspan="2">공동
주택용지
(㎡)</td><td col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정비
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3">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td></tr>
<tr><td>소계</td><td>토지
(도로, 공공공지)</td><td>소계</td><td>토지
(공공임대
건축물
대지지분)</td><td>건축물 환산면적
(공공임대)</td></tr>
<tr><td></td><td>23,762.2</td><td>16,152.1</td><td>7,610.1</td><td>7,610.1</td><td>3,439.4</td><td>405.3</td><td>366.1</td><td>189.7</td><td>176.4</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9">•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계획 공공시설 면적-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 7,610.1㎡ + 366.1㎡ - 3,439.4㎡ - 405.3㎡ = 4,131.5㎡(구역 대비 17.4%)</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9">• 계획(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210% → 변경 2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210% → 230% 적용</td></tr>
<tr><td>개발가능
용적률
산정</td><td colspan="9">•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30% + 20% = 250%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총 20%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th><th rowspan="4">최대
20%
이내</th></tr>
<tr><td>공공보행통로</td><td>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td><td>10%</td></tr>
<tr><td>열린단지</td><td>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td><td>5%</td></tr>
<tr><td>돌봄시설</td><td>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td><td>5%</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20%(20% 적용)</td></tr>
</table>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지분+1.0×α현금·건축물)</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 250% x (1 + 1.3 × 0.920 × 0.2478 + 1.0 × 0.0111) = 326.85% ※ α토지·지분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3,955.1㎡ / 15,962.4㎡ = 0.2478 α현금·건축물 =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176.4㎡ / 15,962.4㎡ = 0.0111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7,610.1㎡) x 7,610.1㎡ / (250%/16,152.1㎡) x 16,152.1㎡ = 0.920 ※ 행정부시장 방침 제336호('23.12.27)호 '주택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에 따라 전략적 육성을 위해 별도로 지정용도(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 1.0 적용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시 법적상한까지 건축가능 - 430.70% 이하

■ 변경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	공동 주택용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소계	도로	공공 공지			소계	토지 (공공임대 및 공공청사 대지지분)	건축물 환산면적 (공공임대, 공공청사)
		23,249.4	16,164.1	7,085.3	6,869.5	215.8	2,909.5	422.4	1,310.7	411.9	898.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7,085.3㎡+411.9㎡+898.8㎡) - 2,909.5㎡ - 422.4㎡ = 5,064.1㎡(구역 대비 21.8%)									
	공공임대	• 대지지분 : 193.5㎡ = 15,307.7㎡(주거대지지분)×579.9㎡(전용면적)÷45,885.8㎡(주거전용면적) = 193.5㎡ • 환산부지면적 : 212.2㎡ = (연면적×설치비용) ÷ 부지가액= 59형 = (624.89㎡×1,139,125원/㎡)÷8,094,114원/㎡ = 87.94㎡ 84형 = (880.22㎡×1,142,575원/㎡)÷8,094,114원/㎡ = 124.25㎡									
	공공청사 (동주민 센터)	• 대지지분 : 218.5㎡ = 856.4㎡(비주거대지지분) × 579.1㎡(전용면적) ÷ 2,269.9㎡(비주거전용면적) = 218.5㎡ • 환산부지면적 : 686.6㎡ = 5,557,471천원(공사비) ÷ 8,094천원/㎡ = 686.6㎡									
기준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210% → 변경 2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210% → 230% 적용									
개발가능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30% + 20% = 250%									

<table>
<tr><th>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용적률
산정</td><td>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총 20%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th><th></th></tr>
<tr><td>공공보행통로</td><td>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td><td>10%</td><td rowspan="3">최대
20%
이내</td></tr>
<tr><td>열린단지</td><td>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td><td>5%</td></tr>
<tr><td>돌봄시설</td><td>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td><td>5%</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20%(20% 적용)</td></tr>
</table>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가중치×α토자·지분+1.0×α-1건축물+1.0×α-2건축물)
= 250% x (1 + 1.3 X 0.920 X 0.26443 + 1.0 X 0.01347 + 0.7 X 0.04359) = 340.06%
※ α토자·지분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4,165.31㎡ / 15,752.15㎡ = 0.26443
α-1건축물(공공임대) =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212.20㎡ / 15,752.15㎡ = 0.01347
α-2건축물(공공청사) =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686.61㎡ / 15,752.15㎡ = 0.04359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7,085.3㎡) x 7,085.3㎡ / (250%/16,164.1㎡) x 16,164.1㎡ = 0.920
※ 행정부시장 방침 제336호('23.12.27)호 '주택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 1.0 적용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에 따라 공공청사는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 0.7 적용
</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430.7% 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 430.48%)</td></tr>
</table>

■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2030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최대 20% 이내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

구분		40㎡이하 분양주택 공급	40~50㎡이하 분양주택 공급	50~60㎡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	완화기준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용면적 40~5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최대완화량	최대 10%	최대 15%	최대 10%
소형 분양 주택 공급 계획	전용면적	39.98㎡	-	59.99㎡
	공급면적	57.14㎡	-	86.5㎡
	세대수	29세대	-	101세대
	연면적	1,657.0㎡	-	8,731.7㎡
	비율	10.3%		54.0%
완화량	적용완화량	10.0%	-	10.0%
	합계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① 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여부	③ 허용용적률 (①+②)
230%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 설정)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 /대지면적)×a (※a=1 이하) = 230% × (708.02㎡/16,164.1㎡)×1=10.1% ⇒ 10% 적용	10% 이내	10%	적용	250%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고시)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5%	5%	적용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이내	-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 (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a (※a=0.1 이하) = 230% × (416.72㎡/1,931.25㎡)×0.1=5.0% ⇒ 5% 적용	5% 이내	5%	적용	
	고령 서비스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5% 이내	-	-	
	층간소음 해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 등급 이상	5% 이내	-	-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② 녹색건축 인증	7.5% (15%) 이내	-	-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15% 이내	-	-	

① 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여부	③ 허용용적률 (①+②)
	수변친화 공간조성	수변공간과 적극적 연계를 통한 수변친화 생활환경 조성	5%	-	-	
	방재안전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5% 이내	-	-	
	역사문화 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 /물길 등 복원 (재현)등	3%	-	-	
	지역특화	도심항공교통 (UAM) 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대개조및 미래전략시설 등	5% 이내	-	-	
	② 인센티브 적용 계			20% (20%적용)		최대 20%이내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산출근거	• 전체 세대 수 : 460세대 = 618세대 - 158세대(초과용적률 증가분) •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69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15%이상 : 460세대 x 15% = 69세대 ※ 69세대(계획) ≧ 69세대(기준)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69세대의 40% 이하 : 27.6세대 - 69세대의 30% 이상 : 20.7세대 - 460세대의 5% 이상 : 23세대 ※ 27.6세대 ≧ 23세대 계획 ≧ 20.7세대 또는 23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69	100.0	15.0
전용 39㎡	23	33.3	5.0
전용 59㎡	46	66.7	10.0

■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6">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6">•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6">• 430.70% (건축계획용적률 : 430.48%)</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6">• 340.06%</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6">• 430.48% - 340.06% = 90.42%</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6">• 90.42% x 50% = 45.21%
• 16,164.1㎡ x 45.21% = 7,307.58㎡</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6">• 7,307.58㎡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구분</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 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 rowspan="3">획지1</td><td>59㎡</td><td>86.45㎡</td><td>64세대</td><td>5,532.98</td><td>-</td></tr>
<tr><td>84㎡</td><td>121.23㎡</td><td>15세대</td><td>1,818.38</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79세대</td><td>7,351.36</td><td>≥ 7,307.58㎡</td></tr>
</table>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환경영향평가 (초안)

<table>
<tr><th colspan="3">검토항목</th><th>저감방안</th><th>비고</th></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대기
환경</td><td>기상
(미기상)</td><td>[영향예측]
• 미기상화
- 사업시행으로 인한 풍향 및 풍속의 변화는 사업구역 내 구조물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시행 특성상 고밀도 중·저층 축물에서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의 이격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변화가 크로 사업시행 전·후의 바람장 유동의 변화가 예측되며, 최대풍속적용시 풍속 변화에 대한 영향은 최대 +10.87%변화량이 분석됨

• 보행환경영향평가
- 최대풍속(95퍼센타일)기준을 적용한 보행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행자기준 풍속산정결과는 초과발생빈도 10%이내, 무라카미 LANK1 기준 이내로 분석됨</td><td>-</td></tr>
<tr><td>대기질</td><td>• 철거시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막(H=1.0m) 설치
- 비산 가능 야적물질 방진덮개로 덮어 비산 방지
- 철거시 고압 살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td><td>-</td></tr>
</table>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막(H=1.0m)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공회전 최소화 - 공사장 내 나대지에 방진덮개 설치 - 상시모니터링 기기 및 전광판 1개소 설치, 모니터링 실시 - 친환경 건설장비 운영계획 수립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저감대책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대책 수립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저감대책 수립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시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 녹지확보 및 수목식재 계획수립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수립	
		온실가스	• 공사시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 공회전 금지 - 친환경건설자재 사용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 태양광발전설비(PV) 168.275kW, 태양광발전설비(BIPV) 903.471kW · 연료전지(SOFC) 8kW · 에너지자립률 20.32%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LED 조명기기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계획 수립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계획 수립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5등급)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 인증 - 벽면율 50%이상 확보계획 수립 - 기후변화 적응 조치계획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

<table>
<tr><th colspan="3">검토항목</th><th>저감방안</th><th>비고</th></tr>
<tr><td>2</td><td>수환경</td><td>수질</td><td>

• 공사시 우수 · 토사 유출 저감방안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세륜 · 측면살수시설 및 세륜폐수 처리계획
-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발생되는 세륜용수는 침전세륜기 내에서 재순환하여 사용

• 공사인부로 인한 오수처리계획
- 이동식화장실(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유출지하수 처리방안
- 흙막이 공법 계획

<table>
<tr><th>구 분</th><th>흙막이 벽체공법</th><th>지지공법</th><th>차수공법</th></tr>
<tr><td>사업구역</td><td>C.I.P 공법</td><td>SLAB지지(역타) 공법</td><td>S.G.R Grouting</td></tr>
</table>

- 유출지하수 발생시 사업구역 내 가설집수정에 집수하여 지상부로 펌핑하여 임시침사지(침전조) 내에서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를 공사현장 내 · 외 살수용수, 세륜시설 유지용수, 노면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계획임

• 공사시 계측계획 모니터링 계획
- 지중경사계 11개소, 수위계 11개소, 침하계 11개소(33개)), 변형률계 24개소, 건물경사계 93개소, 균열측정계 93개소

• 운영시 용수공급 및 절약계획
- 사업구역 서측 계획 인입 상수관로(D150mm)를 계획하였으며, 용수공급능력 검토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임

• 운영시 우수처리 및 우수유출 저감계획
-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분류식 우수관거 설치를 통해 기존 합류식 우수관거 및 우수 BOX를 통해 중랑물재생센터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함
- 녹지조성, 빗물저류조, 침투시설(투수성포장, 침투형트렌치, 침투통)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함

<table>
<tr><th colspan="4">녹지조성(㎡)</th><th>빗물이용시설</th></tr>
<tr><th>자연지반녹지</th><th>인공지반녹지</th><th>옥상녹화</th><th>합 계</th><th>빗물저류조(㎥)</th></tr>
<tr><td>1,730.03</td><td>2,900.00</td><td>1,879.11</td><td>6,509.14</td><td>110.00</td></tr>
<tr><th colspan="5">침투시설</th></tr>
<tr><th colspan="3">투수성포장</th><th colspan="2">침투시설</th></tr>
<tr><th>자연지반(미식재)</th><th>인공지반(미식재)</th><th>합 계</th><th>침투집수정 (ea)</th><th>침투트랜치 (m)</th></tr>
<tr><td>1,346.45</td><td>2,859.60</td><td>4,206.05</td><td>10</td><td>92.0</td></tr>
</table>

• 오수처리계획
- 오수는 기존 합류식 오수관로 및 오수 BOX를 통해 중랑물재생센터에 연계처리 할 계획임
- 오수관거의 유속은 0.6~3.0m/sec 범위에 있도록 하고, 밀폐형 맨홀뚜껑 설치를 통해 악취 발생을 차단토록 할 계획임

• 운영시 유출지하수 처리대책
- 지하층 공사 완료 후 1일 30m2이상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가이드라인, 2021.6」의 유출지하수 관리 업무흐름도에 따라 유량측정 및 지하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이용계획 수립 후 신고할 계획임

</td><td>-</td></tr>
</table>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3	토지 환경	토지이용	• 토지이용변화 - 본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소통 및 연계, 녹지공간의 창출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신축 건축물 개요 - 건축면적 5,243.01m2, 건축연면적 126,220.08m2, 지하 5층/지상 35층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3	토지 환경	토지이용	• 기존 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 - 사업시행시 주변지역과 단차를 최소화하여 기존 지형에 순응하고 보행통로로서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 바람길 확보계획 -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사업구역 내 건축물 동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바람길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음 • 보행동선 계획 - 보행 안정성 확보 등 보행동선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 시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출입구 개설로 지상층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보행동선 개선으로 주변 지역과의 소통 및 보행안전을 개선토록 계획하여 보다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계획하였음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 -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동 출입구 주변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총 100대를 분산하여 설치할 계획임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 본 건축물의 옥상부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집광판 설치공간, 공조설비 등의 설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옥상층 일부 구간에 옥상녹화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였음 •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 사업시행에 따라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및 투수포장 등 다양한 공간유형을 계획토록 하여 생태면적률의 경우 35.01%로 계획하였음 - 자연지반녹지의 경우 생태면적률의 30.57%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 지하공간 개발 - 사업구역 내 지하개발 규모는 지하 5층,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12,123.15m2로서 대지면적 대비 지하개발율은 75.00% 수준으로 계획함	-
		토양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 공사시 발생 폐유 처리대책 - 건설장비는 사업구역 외부의 차량전문업체에서 정비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구역 내 폐유발생 시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 표토 재활용 여부	-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 표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개 지점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분석 결과, 국내 밭 토양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식물이 생장하는데 적합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경토로 재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오염토양 확인시 처리대책 - 공사과정 중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전문조사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한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할 계획임 •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계획 - 식재지에 사용할 반입토에 대한 토양분석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 조경설계기준에명시된 토양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급」 평가기준에 만족하는 토양에 대해 사업구역 내 반입할 계획임	
		지형·지질	• 토사처리계획 - 착공 이전인 현 단계에서 정확한 사토처리계획 수립이 어려움에 따라 공사시 사업구역 내 굴착 및 절·성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토는 현장여건에 따라 온라인상의 흙처리 시스템 또는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 등과 연계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 잔여토 이송시 처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동안 사토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토사처리 모니터링(사토 및 부족토의 적정처리 확인, 사토 운반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임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 저감방안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 저감방안 · 굴착 공사시 인접 건물 및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성이 우수한 C.I.P.공법을 적용함	-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3	토지 환경	지형·지질	· 지보공법으로 안정성 및 작업 공간 확보에 용이한 SLAB지지(역타) 공법을 적용함 · 차수공법은 모든 지층에 적용성이 가능하고 차수 성능과 보강 효과가 우수한 S.G.R Grouting 공법을 적용함 - 계측계획 수립 · 계측계획에 의거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상 발견 시에는 관리대책에 따른 조치 및 지자체에 통보 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지하수위 유지방안 및 유출지하수 처리대책 - 공사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터파기 구간내 집수정으로 집수하여 펌핑시설을 통해 침사지로 유입 시킨 후 상등수는 세륜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
4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육상식물 - 사업시행 시 주기적인 살수, 비산방진망 설치, 세륜 · 측면 살수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함 • 육상동물 -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장비 투입 및 공정 조절 - 저소음 · 저진동 장비를 운영 - 야생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육수동물 - 사업 시행에 따른 비산먼지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세륜 ·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우기에 공사 진행 시 탁수 및 토사의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부대장비 및 시설 등은 하천변에서 이격하여 관리할 계획임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생태면적률 35.01% 확보 - 자연지반녹지 1,730.03㎡, 인공지반녹지 2,900.00㎡, 옥상녹화 1,879.11㎡, 벽면녹화 851.20㎡로 총 7,360.34㎡로 녹지계획 수립 - 공개공지 2개소 1,089.78㎡ 계획 수립 •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계 - 사업구역 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거점과 핵 역할을 하는 도심내 공원과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
5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연순환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폐석면 처리대책 수립 - 생활폐기물 : 현장사무소 인근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성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공사시 발생된 분뇨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폐유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 -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계획 : 15,996.48톤 · 사업구역 내 포장면(투수포장, 불투수포장), 하부 보조기층재 등으로 골재소요량의 50%이상을	-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순환골재로 사용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류별로 보관 후 성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 건축물 내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마련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후 성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분뇨 : 정화조로 유입하여 처리하며, 정화조 오니는 1년에 1회이상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5	생활환경	소음·진동	• 철거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구역경계 H=4.0~6.0m) - 공사장비의 연속적인 작업 지양 - 공사현장 내 차량의 주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 작업대기 중인 건설장비의 엔진은 가능한 정지 - 건물의 차폐효과를 고려하여 정온시설과 떨어진 지점부터 철거 진행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지경계 H=6.0~8.0m), 이동식 방음판넬 설치(H=3.0m) - 차속제한, 야간작업 금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 준수 - 소음자동측정망(소음표시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시 - 저소음단층포장(동소문로 L=136.0m, 삼선교로 L=123.0m) 설치 - 각 설비별 소음·진동 발생기전을 고려하여 방음, 방진계획 수립 - 경량충격음 4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만족 계획	-
		경관	• 배치 계획 - 역사, 자연, 생활, 역세권 등 지역 맥락을 반영한 배치 - 성북천 방향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 가구내 조망통로의 연결을 통한 통경축 확보 • 높이 계획 - 저층주거지 및 동소문로의 건축물과 층고 조화를 고려한 높이 구성 - 지역의 맥락 및 낙산성곽길 조망점 특성을 고려한 건축 스카이라인 형성 • 통경축 계획 - 산의 지세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 내려오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 동소문로, 성북동 구릉주거지, 삼선동 저층주거지, 성북천을 기준으로 조망과 경관을 배려하여 계획함 • 입면·색채 계획 - 건축물의 규모 증가에 따른 시각적 위압차폐감을 완화하고 지역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도입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선 포인트로 변화감을 형성 -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상가 입면은 주변과 연속적으로 연계되고 보행자 시선을 고려하여 휴먼스케일에 적합하도록 입면 분절을 적용	-

검토항목			저감방안	비고
			• 외부공간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 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에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친보행 가로를 환경을 조성 - 주변에 위치한 공원과 성북천 녹지연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일조 장해	• 건축 관계법에 의거한 건축계획 수립 • 사업구역 주변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한 대책 - 본 사업으로 인해 일조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가 일조피해 관련 설명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일조분석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전담직원 배치, 서면자료제공 등을 통해 해당 주민이 일조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임 • 단지 내부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한 대책 - 입주 세대들에게 일조 피해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공유할 계획이며, 분양시 사전에 고지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6	사회·경제 환경	인구	• 장래 목표연도인 2030년의 경우 상근인구 2,305인, 이용인구 1,859인으로 총 4,164인으로 예측됨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계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386세대 계획 : 608세대	현황 : 386세대 계획 : 618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동소문동 33번지일대	23,762.2	획지①	동소문동 33번지일대	16,152.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동소문동 33번지일대	23,249.4	획지①	동소문동 33번지 일원	16,164.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762.2	감)512.8	23,249.4	-
제3종일반주거지역	7,610.1	감)524.8	7,085.3	-
준주거지역	16,152.1	증)12	16,164.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정비 기반시설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	7,610.1	7,085.3	•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획지		준주거지역	16,152.1	16,164.1	•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에 따른 준주거지역 면적 증가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2,908.0	감) 512.8	52,395.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3호 (2010.7.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2,908.0㎡ → 52,395.2㎡	동소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 남측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와 중첩된 부분 제척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908.0	감) 512.8	52,395.2	100.0%	-
주거 지역	소계	37,612.7	감) 512.8	37,099.9	7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9.0	-	1,209.0	2.3%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51.6	감) 524.8	19,726.8	37.7%	-
	준주거지역	16,152.1	증) 12	16,164.1	30.9%	-
상업 지역	소계	15,295.3	-	15,295.3	29.2%	-
	일반상업지역	15,295.3	-	15,295.3	29.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성북구 동소문동2가 32-1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	• 동소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 면적 증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	524.8	• 동소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경된 획지,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 남측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와 중첩된 부분 제척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9	1,387	21,999	2	626	13,810	3	387	3,467	4	374	4,722
	변경	9	1,387	21,474	2	580	13,683	3	657	5,641	4	150	2,151
광로		-	-	-	-	-	-	-	-	-	-	-	-
대로		2	332	11,320	1	302	10,570	-	-	-	1	30	750
중로	기정	3	371	4,611	-	-	-	1	53	795	2	318	3,816
	변경	2	94	1,245	-	-	-	-	-	-	2	94	1,245
소로	기정	4	684	6,068	1	324	3,240	2	334	2,672	1	26	156
	변경	5	961	8,909	1	278	3,113	3	657	5,641	1	26	156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5	35~37	간선 도로	3,550 (302)	혜화동광장 (동소문동1가 1-3)	미아삼거리 (동소문동2가 290-1)	일반도로	-	'78.10.02. (건고시 294호)	-
기정	대로	3	135	25~29	간선 도로	7,750 (30)	삼선교 (동소문동1가1-1)	은평구 불광동 1-12	일반도로	-	'78.12.18. (서고시 666호)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3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288	일반도로		'02.04.23. (서고시 666호)	-
변경	중로	3	a	14	집산 도로	53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28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20	12	집산 도로	41	동소문동2가 229	동소문동2가 24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519	8	국지 도로	300	동소문동1가 13	동소문동1가 115	일반도로	-	'37.02.02. (총고시 96호)	-
기정	소로	2	520	8	국지 도로	143 (34)	동소문동1가 113	동소문동1가 129	일반도로	-	'37.02.02. (총고시 96호)	-
기정	소로	3	536	6	국지 도로	26	동소문동1가 32-2	동소문동1가 108	일반도로	-	'37.02.02. (총고시 96호)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24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49	일반도로	-	'02.04.23. (서고시 666호)	-
변경	소로	2	a	9	국지 도로	324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4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78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46	일반도로	-	'02.04.23. (서고시 666호)	-
변경	소로	1	a	11	집산 도로	278	동소문동2가 290-2	동소문동2가 46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2-1	중로 3-a	• 도로 폭원 변경 - B=15m→1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소로 1-1	소로 2-a	• 도로 폭원 변경 - B=10m→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중로3-2	소로1-a	• 도로 폭원 변경 - B=12m→11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	증) 891.8	891.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신설 공공청사 면적 891.8㎡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 면적(㎡)	-	증)891.8	891.8		

※ 층별 면적: 지하1층 549.1㎡, 지상1층 298.4㎡, 지상2층 655.6㎡
※ 공공청사 연면적 1,503.13㎡(전용579.14㎡+공용374.92㎡+기타123.44㎡+주차장425.63㎡),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 지하2층 이하의 설비 등(기계실, 정화조 등)은 결정범위에서 제외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위치는 조정 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범위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	공공청사	동소문동2가 293번지 일대	60% 이하	400% 이하	2층 이하	입체적 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503.1㎡ • 수평투영면적 : 891.8㎡	• 지역내 부족한 공공청사 조성을 통해 편의 증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공보행통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①	특별계획구역 1	성북구 동소문동1가 20번지 일대	850.7	-
기정	②	특별계획구역 2	성북구 동소문동1가 42번지 일대	887.5	-
기정	③	특별계획구역 3	성북구 동소문동1가 26번지 일대	879.5	-
기정	④	특별계획구역 4	성북구 동소문동1가 30번지 일대	708.6	-
기정	⑤	특별계획구역 5	성북구 동소문동1가 32-3번지 일대	891.9	-
기정	⑥	특별계획구역 6	성북구 동소문동1가 107번지 일대	759.7	-
기정	⑦	특별계획구역 7	성북구 동소문동1가 106번지 일대	600.8	-
기정	⑧	특별계획구역 8	성북구 동소문동1가 101번지 일대	1,100.9	-
기정	⑨	특별계획구역 9	성북구 동소문동1가 121번지 일대	896.7	-
기정	⑩	특별계획구역 10	성북구 동소문동2가 3번지 일대	875.5	-
기정	⑪	특별계획구역 11	성북구 동소문동2가 12번지 일대	672.0	-
기정	⑫	특별계획구역 12	성북구 동소문동2가 16번지 일대	488.0	-
기정	⑬	특별계획구역 13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번지 일대	741.0	-
기정	⑭	특별계획구역 14	성북구 동소문동2가 213번지 일대	589.0	-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⑮	특별계획구역 15	성북구 동소문동2가 216번지 일대	687.1	-
기정	⑯	특별계획구역 16	성북구 동소문동2가 222번지 일대	587.4	-
기정	⑰	특별계획구역 17	성북구 동소문동2가 249번지 일대	670.4	-
기정	⑱	특별계획구역 18	성북구 동소문동2가 229번지 일대	625.1	-
기정	⑲	특별계획구역 19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2번지 일대	23,762.2	-
변경	⑲	특별계획구역 19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2번지 일대	23,249.4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23,762.2㎡ → 23,249.4㎡	• 동소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지정용도(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주거복합 • 성북천변 연도형상가, 쇼핑먹거리 등 아래의 관련 용도 (비주거용도 용적률의 10% 이상, 성북천변 지상1 · 2층에 입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전문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 노유자 시설

구분		계획내용
변경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주거복합 • 성북천변 연도형상가, 쇼핑먹거리 등 아래의 관련 용도 (성북천변 지상1·2층에 입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전문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 노유자시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은 전용면적 최소 200㎡ 이상

■ 건축물의 지정용도(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정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비주거용도 용적률의 10% 이상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폐지)에 따른 비주거 용도 확보기준 삭제
변경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은 전용면적 최소 200㎡ 이상	• 성북천변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용도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제과점)에 대한 면적기준 추가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축물의 건폐율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적률 : 변경없음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18)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30% 이하 • 허용 : 250% 이하 • 상한 : 341% 이하 • 법적상한 : 431% 이하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수 •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 : 340.1% -법적상한 : 430.7%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에 따라 주거용적률 제한 삭제

■ 건축물의 높이(변경)

구분		용도지역	최고높이	비고
기정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18)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70m 이하	• 사선제한(1.5D)배제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05m 이하	• 사선제한(1.5D)배제
변경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18)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70m 이하	• 사선제한(1.5D)배제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14m 이하	• 사선제한(1.5D)배제

■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정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105m 이하	• 동소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높이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변경	성북천변 (특별계획구역19)	• 114m 이하	

3)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1) 동소문로변(특별계획구역 1~18) : 변경없음

2) 성북천변(특별계획구역 19)

■ 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7%이상 기부채납 - 도로 : 이면도로 확폭(6m→12m) 성북천변도로(8m→10m)	• 도로 7,394.3㎡ • 공공공지 215.8㎡ • 공공임대 환산면적 : 176.4㎡

			- 공공공지 조성(한성대입구역 인접지역) - 기부채납 면적 : 4,132.5㎡(구역면적의 17.4%)	• 공공임대 대지지분 : 189.7㎡ • 무상양여 국공유지 : 3,844.7㎡
가구 및 획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	-
용도계획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성인전용PC방등)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병원부속시설제외)	-
	권장용도		-	-
	지정용도		• 주거복합 • 성북천변 연도형 상가 쇼핑 먹거리등 아래의 관련 용도 (비주거용도 용적률의 10%이상, 성북천변 지상 1·2층에 입지) - 제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제과점),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중 전문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 성북천변에 연도형 상가 전체 1~2층 배치, 비주거용도 용적률의 10%이상 배치 가능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	• 230% 이하 -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소형주택 60㎡이하 추가 건립 시 계획용적률 20% 상향	• 기준용적률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세대수: 66세대(39㎡ 25세대, 59㎡ 41세대)
		허용	• 250% 이하	-
		상한	• 341% 이하	• 상한용적률 326.85%
		법적상한	• 431% 이하	• 계획 용적률 430.70% • 임대주택 추가확보 용적률 103.86%(분양51.93%, 임대51.93%)
최고높이			• 105m 이하	• 성곽을 고려하여 성곽쪽을 낮게, 먼쪽을 높게하는 경사형태의 건물배치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5m	-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 성북천변 및 주 보행로와 연결되는 구역내 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기존보행로의 성격 유지, 폭10m • 건축한계선으로 봄 • 24시간 개방 및 준공 후 지속적 관리를 원칙으로 함 • 공공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타	교통처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준수	-
	차량출입불허구간		• 성북천변 일부구간 및 동측도로변에 지정	-
	인센티브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수	-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법정절차에 의거 조정가능	

■ 변경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7%이상 기부채납 – 도로: 이면도로 확폭(6m→11m), 성북천변도로(8m→9m) – 공공공지 조성(한성대입구역 인접지역) – 기부채납 면적: 5,064.1㎡(구역면적의 21.8%)	• 도로 6,869.50㎡ • 공공청사 대지지분 : 218.5㎡ • 공공청사 환산면적 : 686.6㎡ • 공공임대 대지지분 : 193.5㎡ • 공공임대 환산면적 : 212.2㎡ • 무상양여 국공유지 : 3,331.9㎡
가구 및 획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	–
용도계획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성인전용PC방등)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병원부속시설제외)	–
	권장용도		–	–
	지정용도		• 주거복합 • 성북천변 연도형 상가, 쇼핑 먹거리 등 아래의 관련 용도 (성북천변 지상 1·2층에 입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전문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 노유자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카페, 제과점)은 전용면적 최소 200㎡ 이상	• 성북천변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휴게음식점 등을 지정용도로 지정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	• 230% 이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소형주택 60㎡이하 추가 건립 시 계획용적률 20% 상향	•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세대수: 69세대 (39㎡ 23세대, 59㎡ 46세대)
		허용	• 250% 이하	–
		상한	• 341% 이하	• 상한용적률 340.1%
		법적상한	• 431% 이하	• 계획 용적률 430.7% • 임대주택 추가확보 용적률 90.42% (분양 45.21%, 임대45.21%)
최고높이			• 114m 이하	• 성곽을 고려하여 성곽쪽을 낮게, 먼쪽을 높게하는 경사형태의 건물배치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5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성북천변 및 주 보행로와 연결되는 구역내 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기존보행로의성격 유지, 폭10m • 건축한계선으로 봄 • 24시간 개방 및 준공 후 지속적 관리를 원칙으로 함 • 공공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타	교통처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준수	–

구분		계획지침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성북천변 일부구간 및 동측도로변에 지정	-
	인센티브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수	-
	친수공간	• 성북천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및 부대복리시설(개방형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친수공간 조성	-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법정절차에 의거 조정가능	

▢ 2026년 제2차(‘26. 2. 5.)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조건부의결

<table>
<tr><th>구분</th><th>심의결과</th><th>심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2">제2차 통합심의위원회

정비계획(변경) 분야</td><td rowspan="2">수정가결
·
조건부의결</td><td>
<table>
<tr><th>구분</th><th>주관부서 수정가결</th></tr>
<tr><td>토지이용계획</td><td>- 정비기반시설 등
<table><tr><td>도로</td><td>6,869.5㎡</td></tr><tr><td>공공공지</td><td>215.8㎡</td></tr></table>- 획지
<table><tr><td>공동주택</td><td>16,164.1㎡</td></tr><tr><td>공공기숙사</td><td>-</td></tr></table></td></tr>
<tr><td>용도지역</td><td><table><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7,085.3㎡</td></tr><tr><td>준주거지역</td><td>16,164.1㎡</td></tr></table></td></tr>
<tr><td>공공주택(기부채납)</td><td>공공주택 (기부채납) 8 세대</td></tr>
<tr><td>상한용적률</td><td>340.06%</td></tr>
<tr><td>지구단위계획</td><td>특별계획구역 19 계획지침 (안)
〈지정용도〉
- 성북천변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휴게음식점 등을 지정용도로 지정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제과점)은 전용면적 최소 200㎡ 이상)

〈기타 -친수공간〉
- 성북천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 공개공지 및 부대복리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친수공간 조성</td></tr>
</table>
</td><td>(반영)

• 주관부서 수정가결 사항 반영하였음</td><td>수정사항</td></tr>
<tr><td>•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 · 주거환경기본계획 포함) 변경 관련하여, 이후 필요 시 후속 절차 등을 검토 및 이행하기 바람</td><td>(반영)

• 필요 시 후속 절차 등을 검토 및 이행하겠음</td><td>조건사항</td></tr>
</table>

※ 통합심의위원회의 ‘건축, 경관분야’ 심의의견 반영에 따라 공개공지 위치변경 사항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4. 정비계획(종합)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 결정(변경)도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0000-0000),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02-2241-2794)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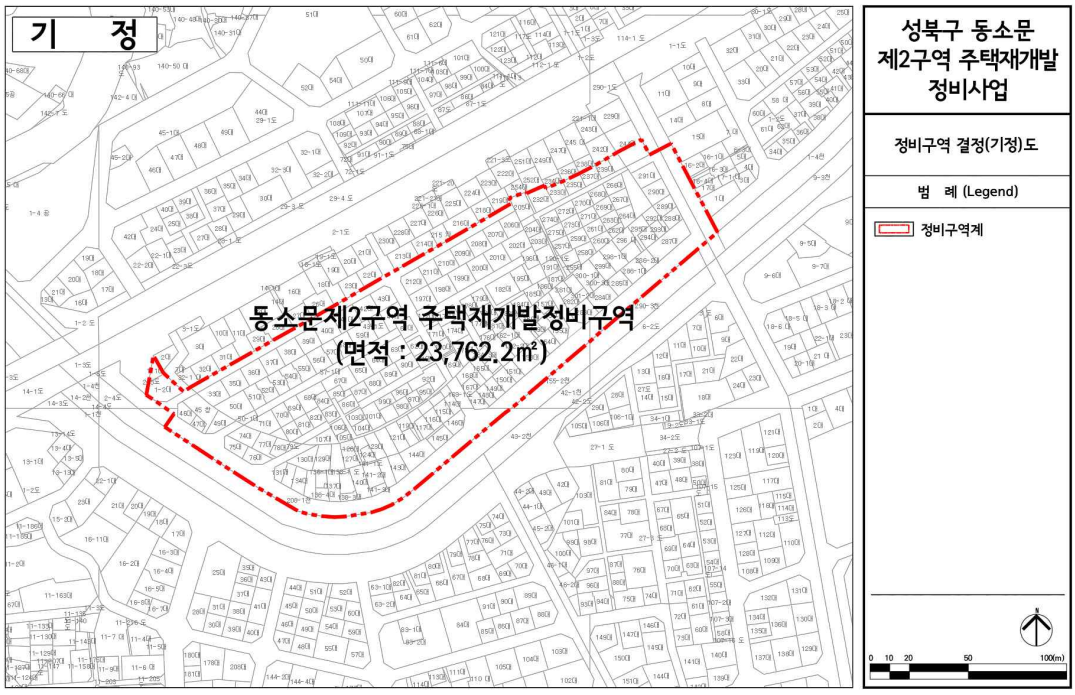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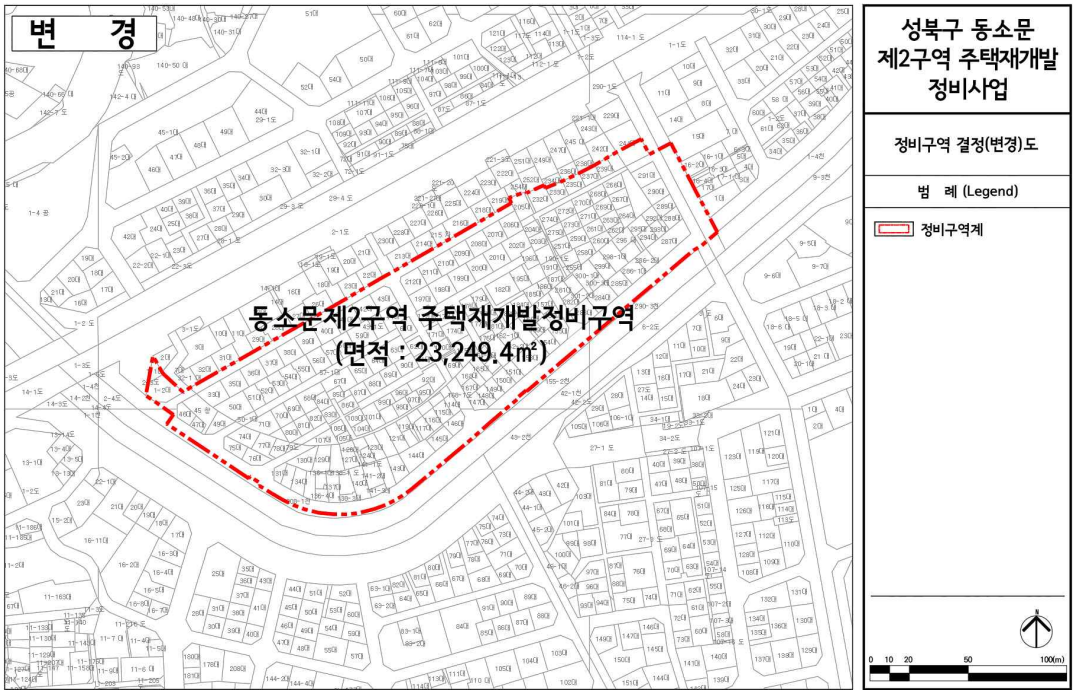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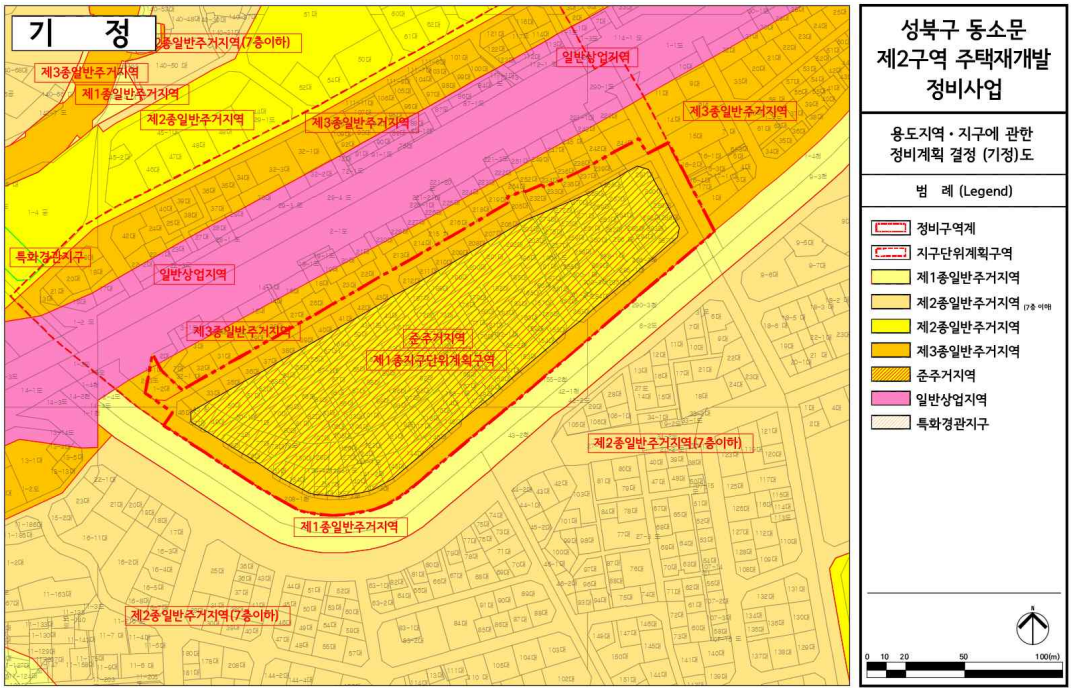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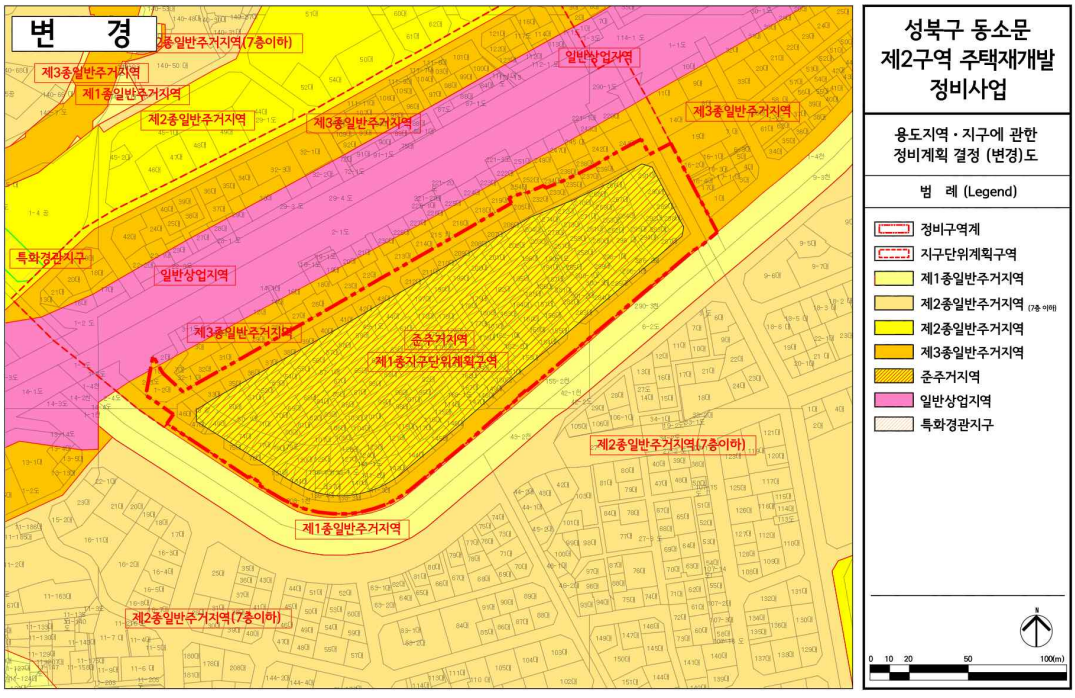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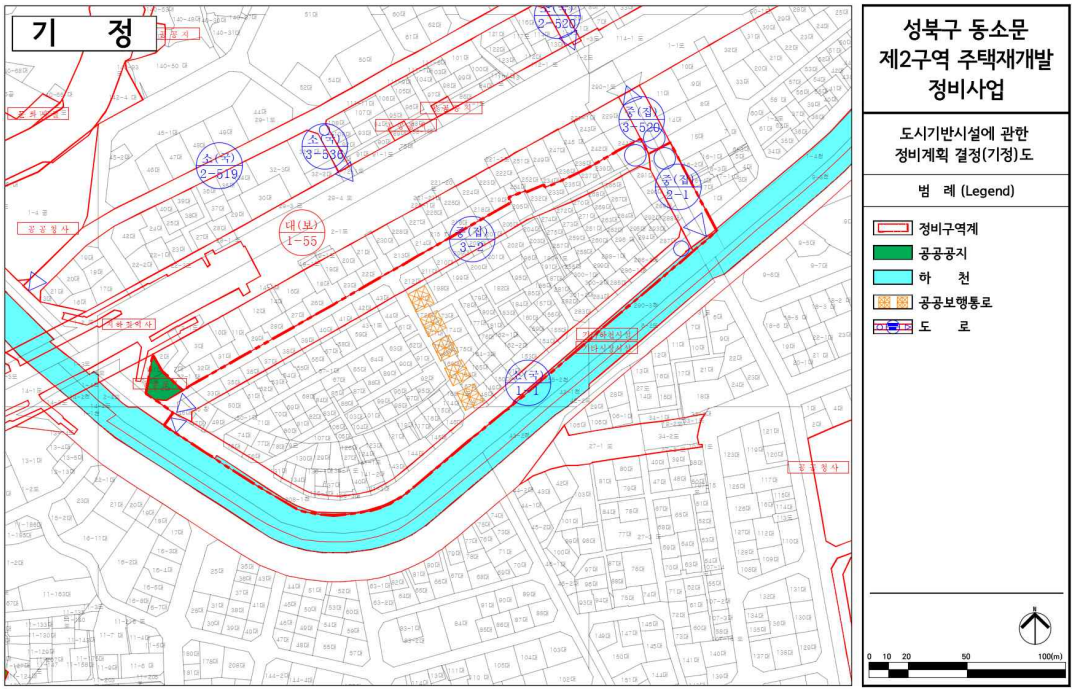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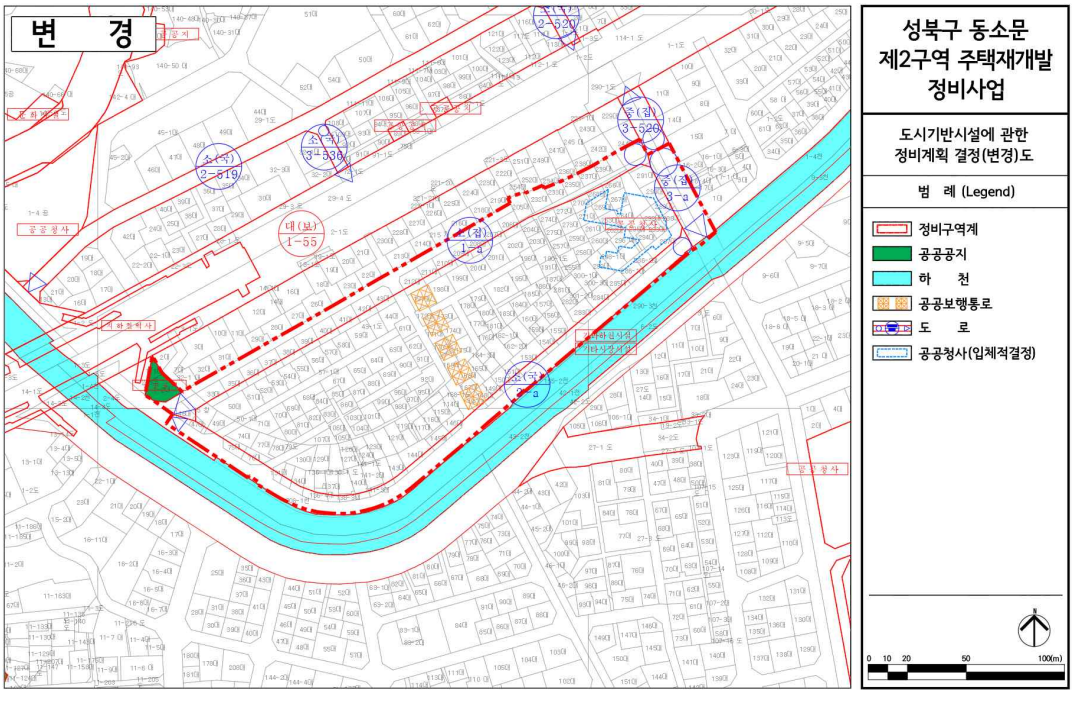

■ 정비계획(종합)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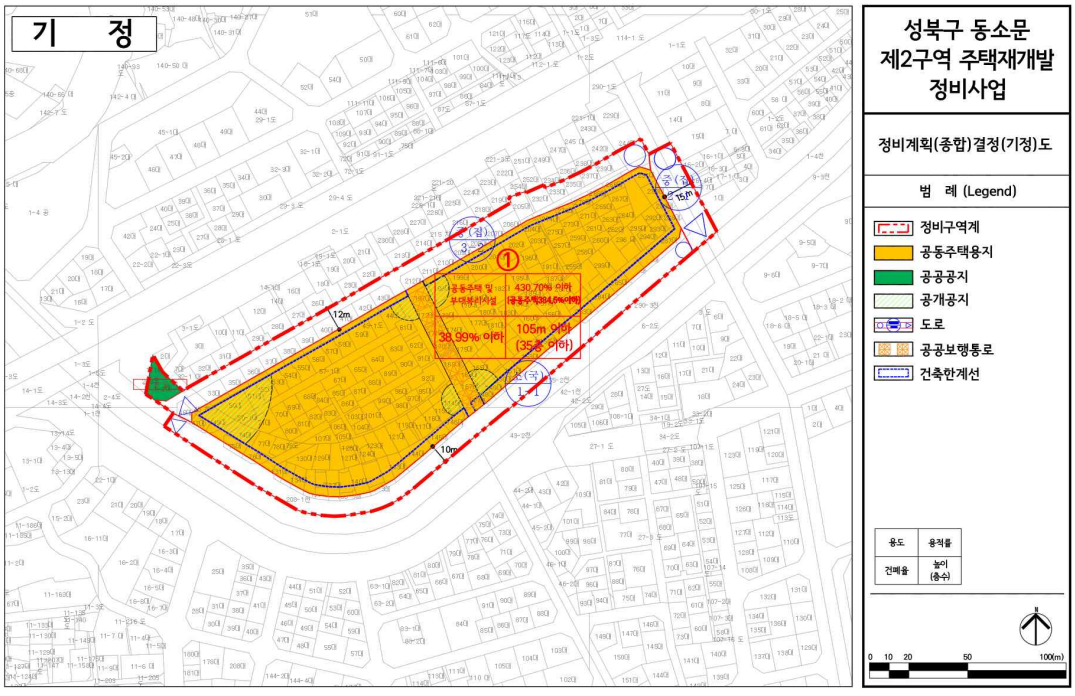

■ 정비계획(종합)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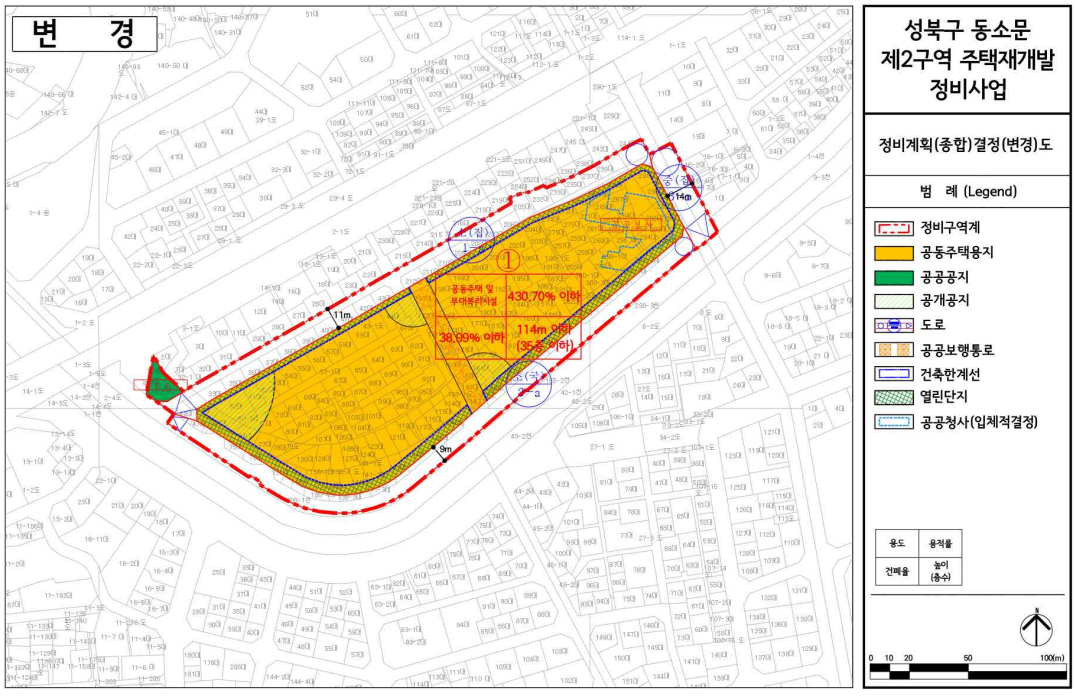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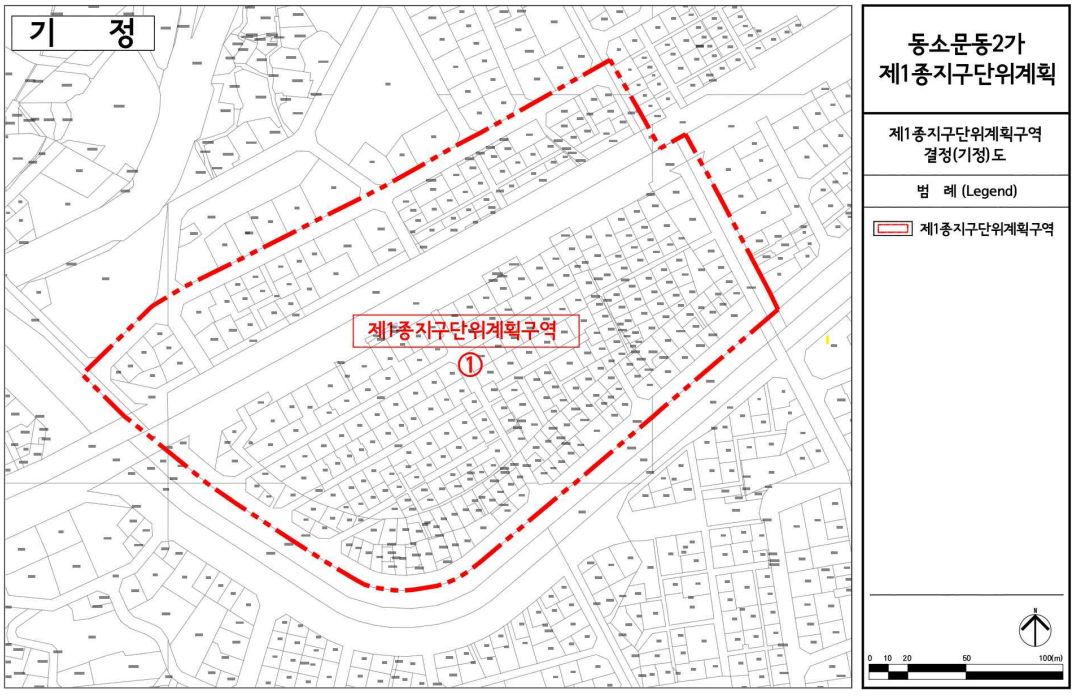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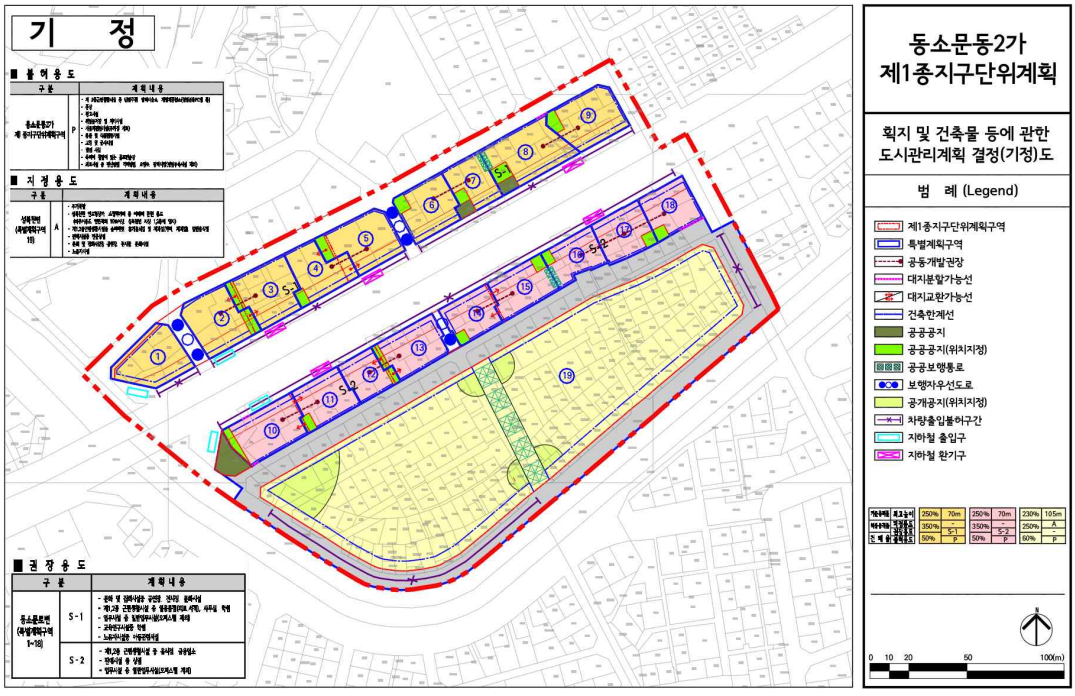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8호

묵2동 243-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충족
현황		63,449.4㎡	전체 : 307동 노후·불량건축물 : 212동(69.1%)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	증)63,449.4	63,449.4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 사유
-	묵2동 243-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묵2동 243-7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63,449.4㎡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3,449.4	100.0	-
사업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 계		51,012.1	80.4	-
		A-1	사업추진구역1	17,744.9	28.0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A-2	사업추진구역2	6,009.3	9.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A-3	사업추진구역3	18,509.7	29.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A-4	사업추진구역4	8,748.2	13.8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115.3	4.9	-
		정비기반시설	도로	2,926.9	4.6	-
		공동이용시설	경로당/공동육아방	188.4	0.3	A-3 구역 내
사업시행구역 외	자율정비구역	소 계		5,979.8	9.4	-
		B-1	주택용지 등	4,663.2	7.3	-
		B-2	공공청사	986.4	1.6	-
		B-3	장미마을 가족도서관	146.1	0.2	-
		B-4	청년청	184.1	0.3	-
	정비기반시설	도 로		3,342.2	5.3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	-	-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A	8	국지 도로	128.6	묵동 242-53	묵동 242-30	일반 도로	-	-	중랑천로56길 확폭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	-	-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A	13~16	집산 도로	274.3	묵동 247-106	묵동 246-1	일반 도로	-	-	동일로151길 확폭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	-	-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A	13	국지 도로	65.0	묵동 242-30	묵동 242-32	일반 도로	-	-	봉화산로3길 확폭
변경	중로	3	B	13	국지 도로	157.1	묵동 247-1	묵동 247-148	일반 도로	-	-	봉화산로3길 확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대상지 내 도로는 망우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조성된 도로임

1-1) 도로 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소로 3-	중로 3-A	도로 확폭	•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중랑천로56길 6m →8m)
소로 2-	중로 2-A	도로 확폭	•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동일로151길 8m →13~16m)
소로 2-	중로 3-A	노선분할, 도로 확폭	•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봉화산로3길 8m →13m)
	중로 3-B		

2)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공공청사	주민센터	중랑구 묵동 243-1 외 3필지	986.4	중랑구 고시 제2019-102호 ('19.11.7)	중복결정
기정	-	체육시설	체육관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3-1) 공동이용시설 권장설치

구분	시설유형	사유	비 고
권장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놀이터, 공동체육시설, 돌봄센터, 독서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 대상지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시설의 재확보 우선 고려 • 주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가로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가로변으로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2) 공동이용시설 기준면적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 고
A-1	635세대	1,984.4㎡ 이상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기준으로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
A-2	232세대	725.0㎡ 이상		
A-3	638세대	1,993.8㎡ 이상		
A-4	346세대	1,081.3㎡ 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 진출입구간	동일로151길	• 이면부를 통해 차량 진출입구 설치	※ 도면 참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경계부, 도로 가각부 및 통학로 일부구간	• 도로 가각부, 봉화산로3길(신묵초 인근) 일부 불허	
공공보행통로	A-1구역과 B-1구역 사이	• 사업시행시 막다른 도로 문제 해소, 보행 연결성 및 비상차량 동선을 위한 공공보행통로(4~6m) 계획	
도로확폭	동일로151길 봉화산로3길 중랑천로56길	• 동일로151길(B=8m→13~16m) 확폭 • 봉화산로3길(B=8m→13m) 확폭 • 중랑천로56길(B=6m→8m) 확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바.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치	사업계획						비 고 (검인면적)
			면적(㎡)				시행자	추진 단계	
			합계	획지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합 계				54,127.4	51,012.1	2,926.9	188.4	-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3-7일대	18,415.8	17,744.9	670.9	-	조합 (예정)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	18,417.4㎡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6-1일대	6,114.4	6,009.3	105.1	-	조합 (예정)		5,793.4㎡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7-1일대	19,969.3	18,509.7	1,271.2	188.4	조합 (예정)		19,969.3㎡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2-16일대	9,627.9	8,748.2	879.7	-	조합 (예정)		9,774.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구 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 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54,127.4	• 통합적용 - 대지의 조경(42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 지하층의 설치(53조) - 건폐율(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 완화적용 - 대지의 조경(42조) - 건폐율(55조) - 용적률(5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경관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3-7일대	18,415.8			A-1,2 권장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6-1일대	6,114.4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7-1일대	19,969.3			A-3,4 권장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2-16일대	9,627.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발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A-1,2 구역 및 A-3,4구역 통합계획 권장사항은 향후 사업시행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아.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	내용					비고
사업 시행 구역	A-1 ~ A-4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A-3 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경로당/공동육아방 (제2종일반(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시행 구역 외	B-1	건폐율	60% 이하				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제2종일반(7층))

구분	도면 표시	내용		비고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2	건폐율	60% 이하	공공청사 (제2종일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3	건폐율	60% 이하	장미마을 가족도서관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4	건폐율	60% 이하	청년청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자율정비구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등을 통해 개별건축행위 가능

자.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구역 1~4	• 전 구역 건축한계선 3m 적용 •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는 일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도면 참고
전면공지	사업추진구역 1~4	• 건축한계선을 통한 일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를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구역 1~4구역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적용지역	도면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사업시행구역	A-1 ~ A-4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업시행구역 외	B-1 ~ B-4	유형		• 주택 등	-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적용 지역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1],[2] ÷ 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적용계수) = 2.5(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

구분		위치	전체 세대	임대 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851	372	-	-
A-1	사업추진구역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3-7번지 일대	635	130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0.5%
A-2	사업추진구역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6-1번지 일대	232	46		19.8%
A-3	사업추진구역A-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7-1번지 일대	638	127		19.9%
A-4	사업추진구역A-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2-16번지 일대	346	69		19.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3,449.4	-	63,449.4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5,142.3	감)36,922.7	8,219.6	1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07.1	감)14,277.8	4,029.3	6.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51,200.5	51,200.5	80.7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	사업구역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 고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3-7일대	18,415.8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제74조 통합적용계획(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6-1일대	6,114.4			-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7-1일대	19,969.3			-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묵2동 242-16일대	9,627.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내용	비 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다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41) 및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소규모 주택팀(☎02-2094-6912)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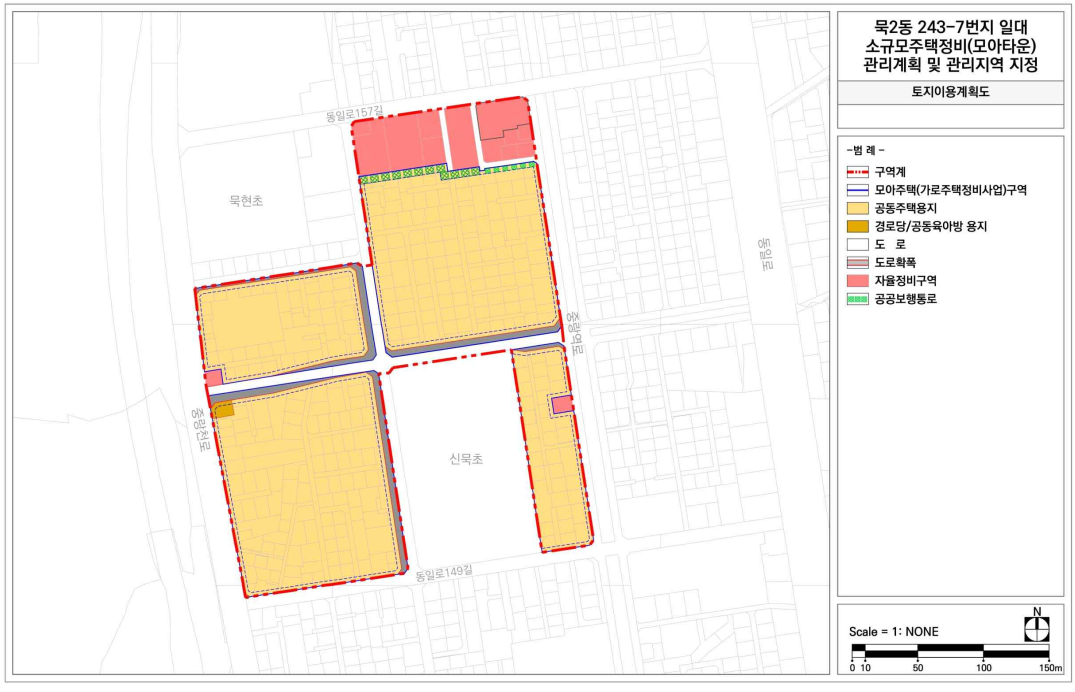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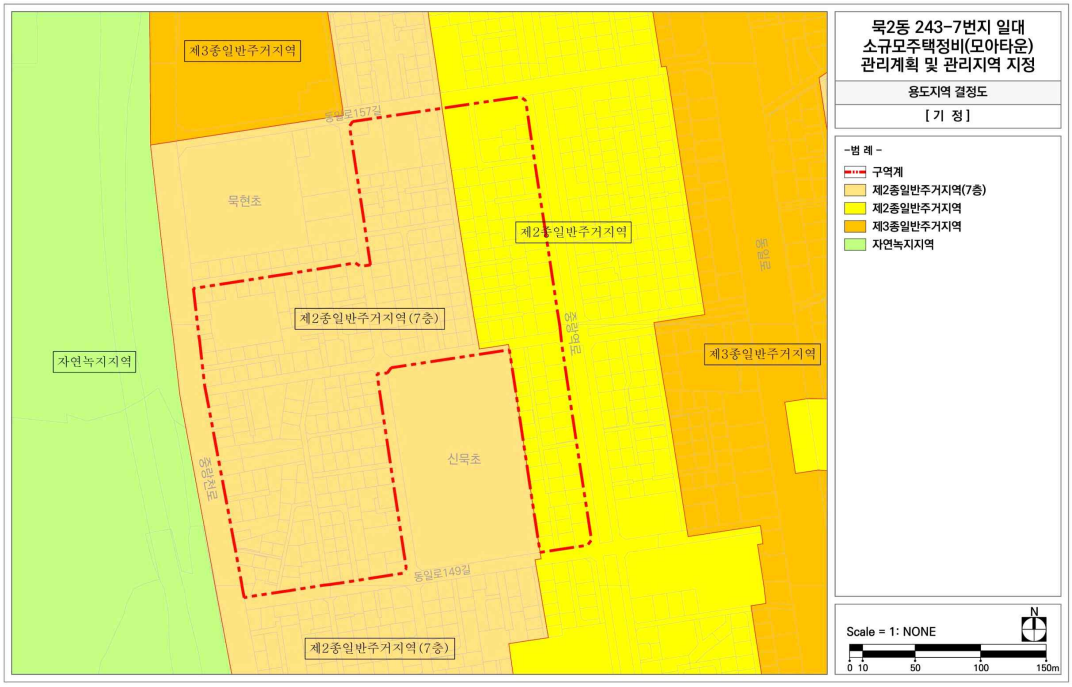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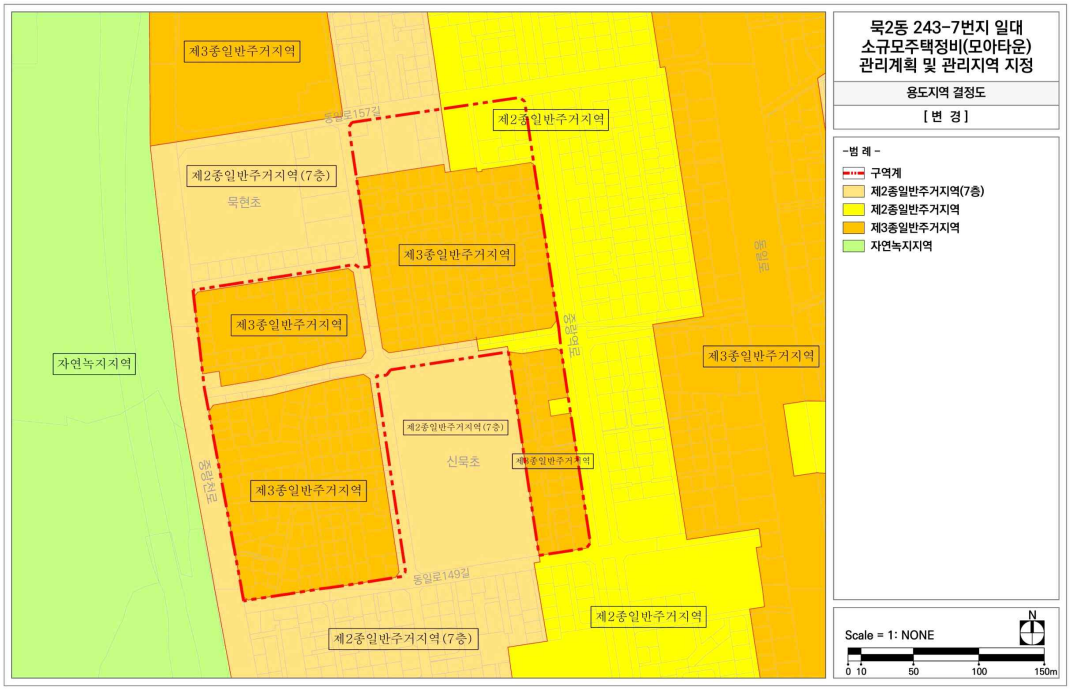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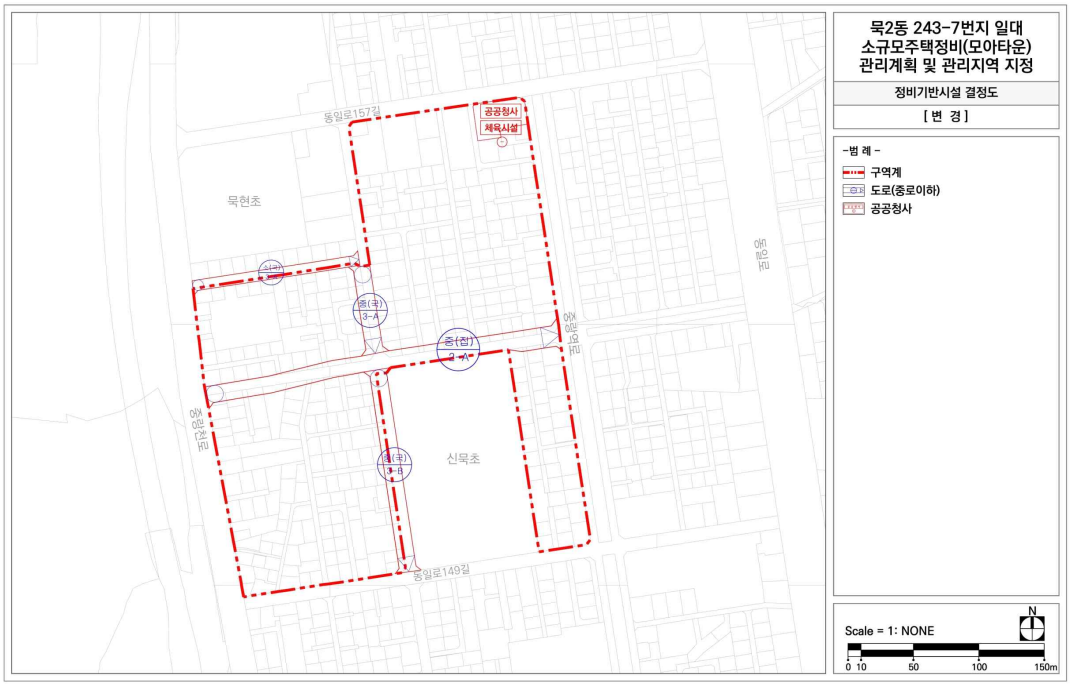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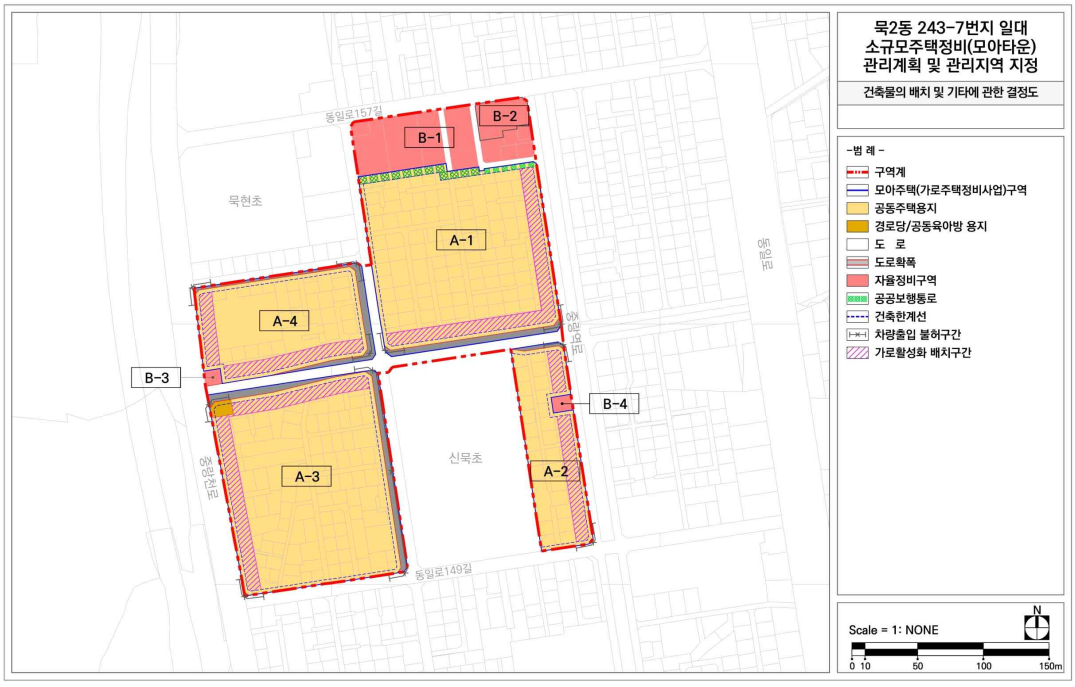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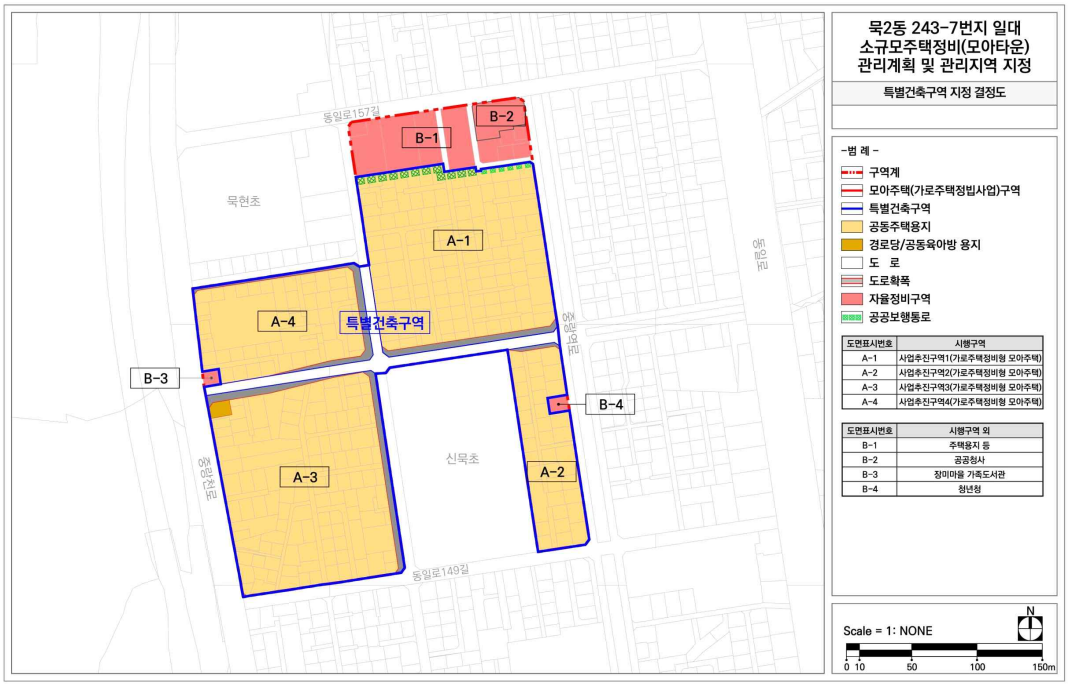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4호(2025.7.2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2·13동 일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 결정 취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 : 변경

■ 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제공	•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 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40.14%1)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30.64%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부담률 : 1.70% - 도 로: 98.2㎡(1.70%)2)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 보강 ②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②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9.97%) - 제공위치 : 용산유수지(한강로3가 23-1일원) - 제공내용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제공면적 : 5,130.0㎡ (환산부지면적 : 577.75㎡)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은 상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비율 미달 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전환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509.5억(28.47%) - 지역부족기능 등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 활용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市·區 비용 배분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市=70%, 區=30% 배분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1) 기부채납 면적은 확정측량성과 및 감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2) 도로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도로면적 196.56㎡의 절반인 98.28㎡ 적용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제공	•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 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 보강 ②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29.05%1)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19.55%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부담률 : 1.70% - 도 로 : 98.2㎡(1.70%)2) ②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6.94%) - 제공위치 : 용산유수지(한강로3가 23-1일원) - 제공내용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제공면적 : 5,130.0㎡ (환산부지면적 : 402.08㎡)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은 상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비율 미달 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전환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525억 592.8만원 (20.42%) - 지역부족기능 등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 활용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市·區 비용 배분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市=70%, 區=30% 배분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 1) 감정평가(2026.4.) 시행결과 토지가치상승분(74,721백만원) 반영
※ 2) 도로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도로면적 196.56㎡의 절반인 98.28㎡ 적용

4)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 변경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관리청)
신설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한강로 3가 23-1일원	연면적 : 5,130.0㎡	-	용산구

※ 감정평가(2026.4.) 시행결과 반영
※ 향후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을 위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및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

■ 기정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구분	내용	비고
① 공공시설 연면적	5,130.0㎡	• 계획연면적
② 건축비	3,480,000원/㎡	• 개봉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단가 적용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비용 적용
③ 설치비용	17,852,400,000원	• ① 공공시설 연면적 × ② 건축비
④ 종전토지가액	30,900,000원/㎡	• 감정평가결과 적용 (종전기준시점 : 2024.1.16.)
환산부지면적	577.75㎡	• ③ 설치비용 ÷ ④ 종전토지가액
총 제공면적	577.75㎡	• 부담률 : 9.97%

■ 변경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구분	내용	비고
① 공공시설 연면적	5,130.0㎡	• 계획연면적
② 건축비	3,480,000원/㎡	• 개봉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단가 적용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비용 적용
③ 설치비용	17,852,400,000원	• ① 공공시설 연면적 × ② 건축비
④ 종후토지가액	44,400,000원/㎡	• 감정평가결과 적용 (종후기준시점 : 2025.7.24.)
환산부지면적	402.08㎡	• ③ 설치비용 ÷ ④ 종후토지가액
총 제공면적	402.08㎡	• 부담률 : 6.94%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치			용산구 한강로3가 2-8번지 일원	-
면적			5,792.4㎡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경우 800% 초과 가능	-
높이			• 144m 이하	-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내	공중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새창로 변 조성	-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지		※ 유수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수지 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검토 가능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연결브릿지	주변지역 1개소	유수지 상부 드래곤시티호텔과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계획	
		청파로, 새창로 2개소	특별계획구역 4, 7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이면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1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40.14%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30.64%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부담률 : 1.70% - 도 로 : 98.2㎡(1.70%) ②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9.97%) - 제공위치 : 용산유수지(한강로3가 23-1일원) - 제공내용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제공면적 : 5,130.0㎡(환산부지면적 : 577.75㎡)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은 상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 비율 미달 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전환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509.5억(28.47%) - 지역부족기능 등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 활용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市·區 비용 배분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市=70%, 區=30% 배분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결정		-
기타		• 개방형 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 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이 하 여 백)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치			용산구 한강로3가 2-8번지 일원		-
면적			5,792.4㎡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경우 800% 초과 가능		-
높이			• 144m 이하		-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내 공지	공중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새창로 변 조성 ※ 유수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수지 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검토 가능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주변지역 1개소	유수지 상부 드래곤시티호텔과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계획	
			청파로, 새창로 2개소	특별계획구역 4, 7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이면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1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29.05%1)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19.55%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부담률 : 1.70% - 도 로: 98.2㎡(1.70%)2) ②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6.94%) - 제공위치 : 용산유수지(한강로3가 23-1일원) - 제공내용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 제공면적 : 5,130.0㎡(환산부지면적 : 402.08㎡) ※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은 상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비율 미달 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전환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525억 592.8만원 (20.42%) - 지역부족기능 등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 활용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市·區 비용 배분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市=70%, 區=30% 배분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기타		• 개방형 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 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0호

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3호('24.7.18.)에 따라 최초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된 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칭 : 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46,047	`24.05.17.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05.17.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3호('24.7.18.)에 따라 최초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강서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강서구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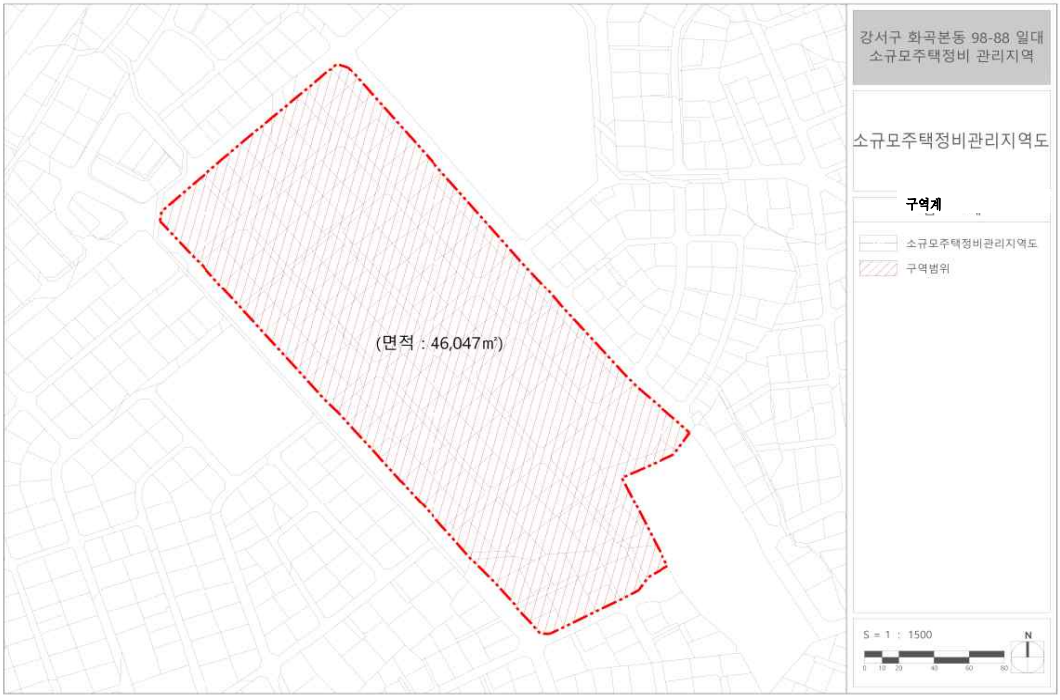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61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 11. 1.)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9호(2024. 5. 23.)로 해제기한 연장 고시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3.18.)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5호(2007.1.1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6호(2017.11.16.)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11.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5호(2024. 8. 29.)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7호(2025.5.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8호(2025.5.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40호(2025.11.20.) 결정(변경)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

1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 정비구역의 해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노원구 석계로 95 (월계동 411-53번지)	3,539.0	2018. 11. 1. (서울시 고시 제2018-352호)
변 경	해 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 정비계획의 해제(폐지)

1)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구 분	이 용 계 획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정	합 계		3,539.0	100.0	
	획 지	소 계	3,539.0	100.0	
		획 지	3,539.0	100.0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539.0	-	3,539.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047.0	2,047.0	57.8	-
	준주거지역	3,539.0	감)2,047.0	1,492.0	42.2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47	20	집산 도로			광운대역앞 (중로 1-18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82	20	집산 도로	700	장위동 (대로3-40)	광운대역앞	일반 도로	광운대앞	서고 60 (74.5.17)	
기정	소로	3		6	국지 도로		월계동 (중로1-182)	월계동	일반 도로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5) 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10)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5년 기한) 및 같은법 제20조제6항제1호(2년 연장)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2018. 11. 1.) 이후 7년이 되는 날(2025. 10. 31.)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으로 정비구역 해제

Ⅱ.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1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380-1 일대	24,638.0	증)1,492.0	26,130.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면적 : 24,638.0㎡→26,130.0㎡ 증)1,492.0㎡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638.0	증) 1,492.0	26,130.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4,638.0	증) 1,492.0	26,130.0	100.0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준주거지역	1,492.0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변 경	
준주거지역	A-1	-	-
	A-2	-	-
	A-3	-	-
	A-4	-	-
	A-5	-	-
	A-6	-	-
	A-8	-	-
	A-9	-	-
	A-10	-	-
	A-11	-	-
	A-12	-	-
	A-13	-	-
	-	A-7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비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단위획지의 개발규모

구분	위치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A-1~6, A-8~13	가구별 면적이하	-
변경	A-1~13	가구별 면적이하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비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A-7	-	410-4, 411-4, 411-53	1,492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변경	A-7	1	411-4	202	-	획지선 지정해제
		2	410-4, 411-53	1,290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획지선 지정해제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가구번호	불허용도	비 고
기정	N	A-1~6 A-8~13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장례식장	
변경		A-1~13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가구번호	1층(가로활성화 용도)	전 층
기정	U1	A-1~6, A-8, A-13, A-9~12(전면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소매시장 · 업무시설 중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교육원, 연구소, 학원 · 지식산업센터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제외)
	U2	A-9~12 (이면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변경	U1	A-1~8, A-13, A-9~12(전면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소매시장 · 업무시설 중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교육원, 연구소, 학원 · 지식산업센터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제외)
	U2	A-9~12 (이면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3)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건폐율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전구역	60%이하	

나) 용적률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A-9 일부	200%/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준주거 (2007.01.11.)
	A-1, A-2, A-9, A-10, A-11, A-12 일부 및 A-4, A-5	400%/440%이하	8m미만 도로변
	그 외		

다) 높이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광운대역 전면 20m도로변	최고 50m	
	광운로변	최고 40m	
	그 외	최고 25m	

4)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 배치

■ 건축선(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광운로 (A-1, A-2, A-9, A-10, A-11, A-12)	-	2m	도로노선을 따라 지정
	광운대역-석계로간 도로 양측 (A-6, A-8)	광운대역-석계로간 도로 양측 (A-6, A-7, A-8)	2m	
	광운대역 전면도로변	-	3m	
	광운로19길 도로변 (A-9, A-10, A-12)	-	1m	
	A-1~2블록 내부 A-4~5블록 내부	-	1m	지적경계선으로 변경
	A-1블록과 A-3블록	-	1m, 3m	지적경계선으로 변경 및 일부 폭원 감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3블록과 A-4블록 사이	-	2m	지적경계선으로 변경
	A-5블록과 A-6블록 사이	-	1m	
	A-9~12블록 내부	-	1m	
			1.5m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 벽면선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행태 및 색채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광운로, 석계로 광운대역 전면 도로변	1층부 바닥높이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개구부	·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의 2개소 이상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 하도록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건물들과 통일	
	벽면처리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금지	
	투시벽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셔터	·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 변경없음

2) 대지내 통로 : 변경없음

3) 차량동선(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광운로 및 석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7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	

라.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정비계획 결정도(해제)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02-2116-3917)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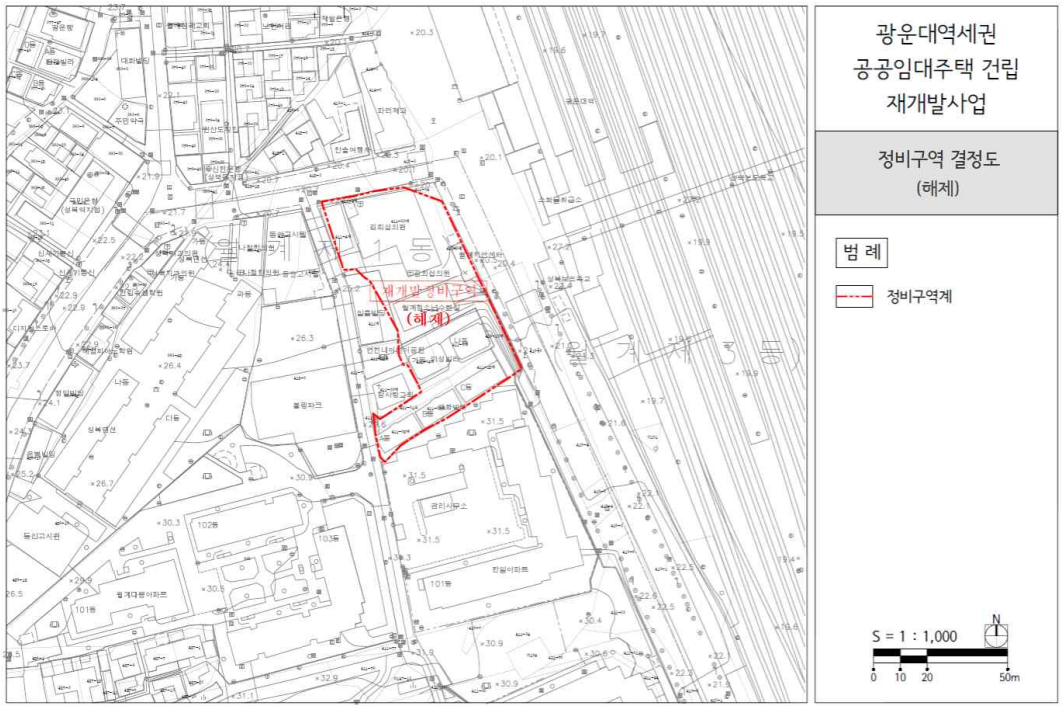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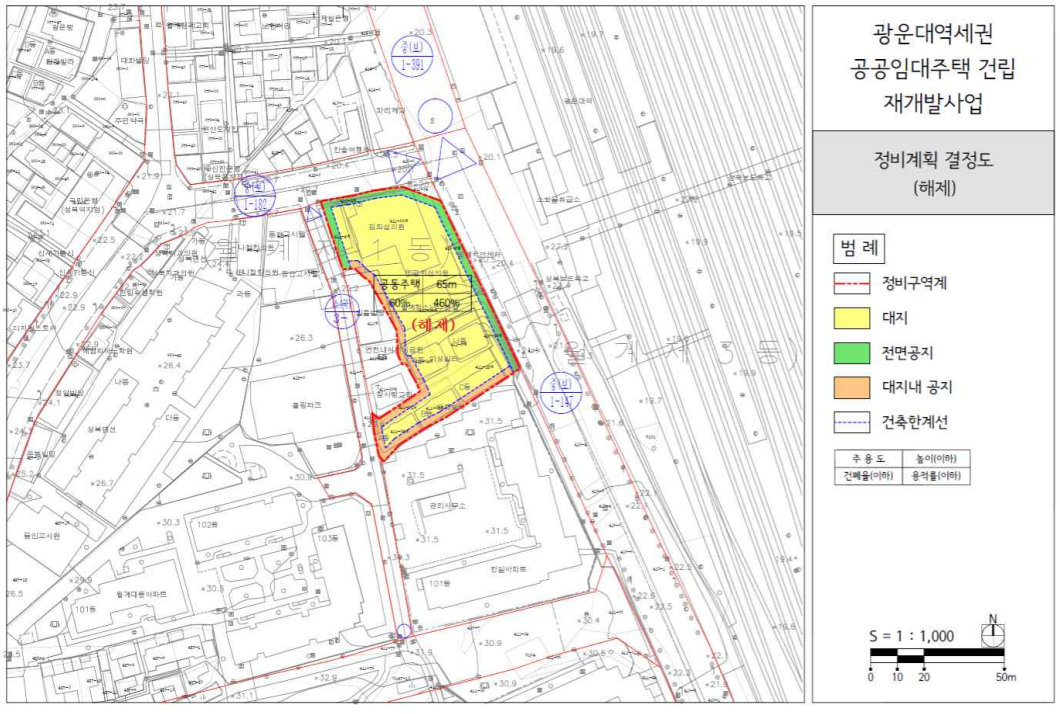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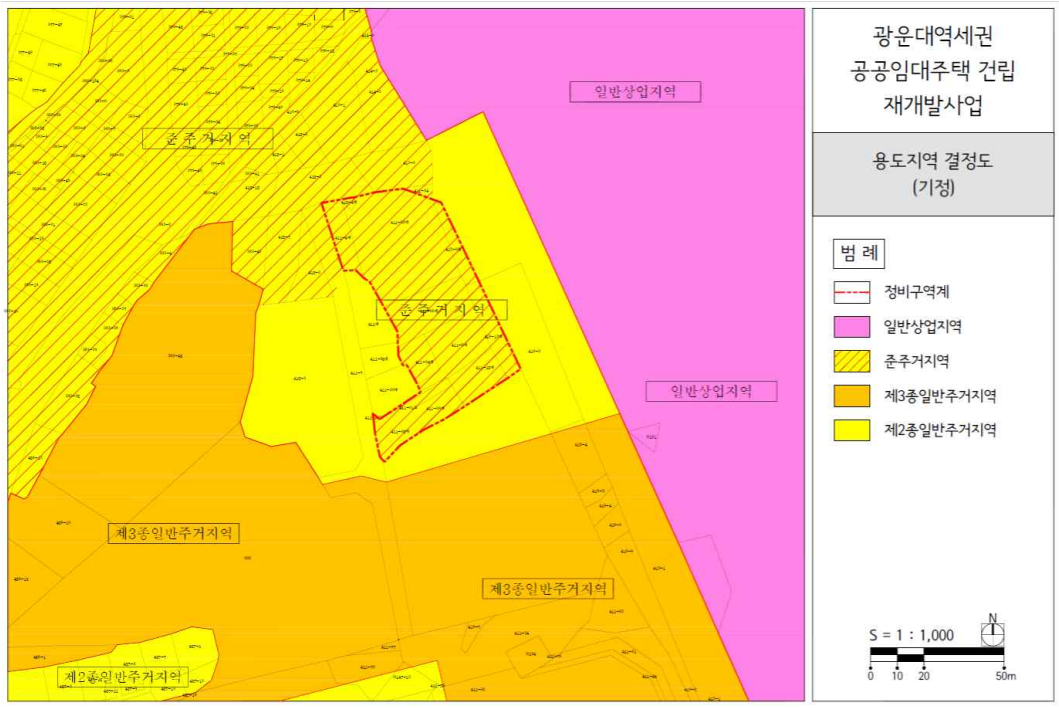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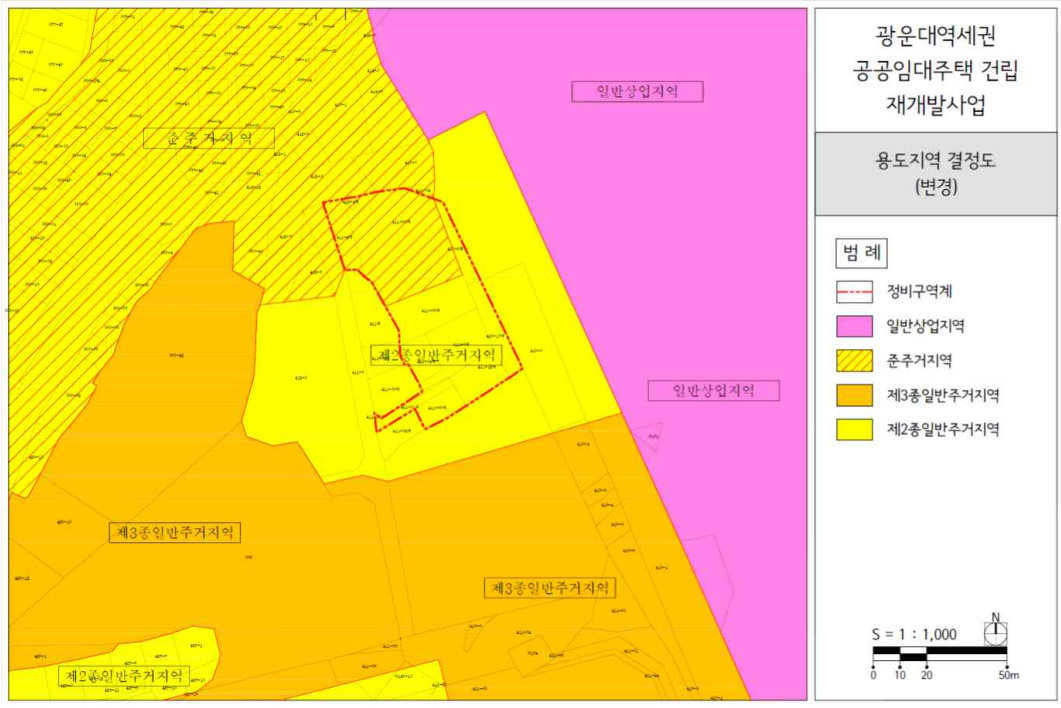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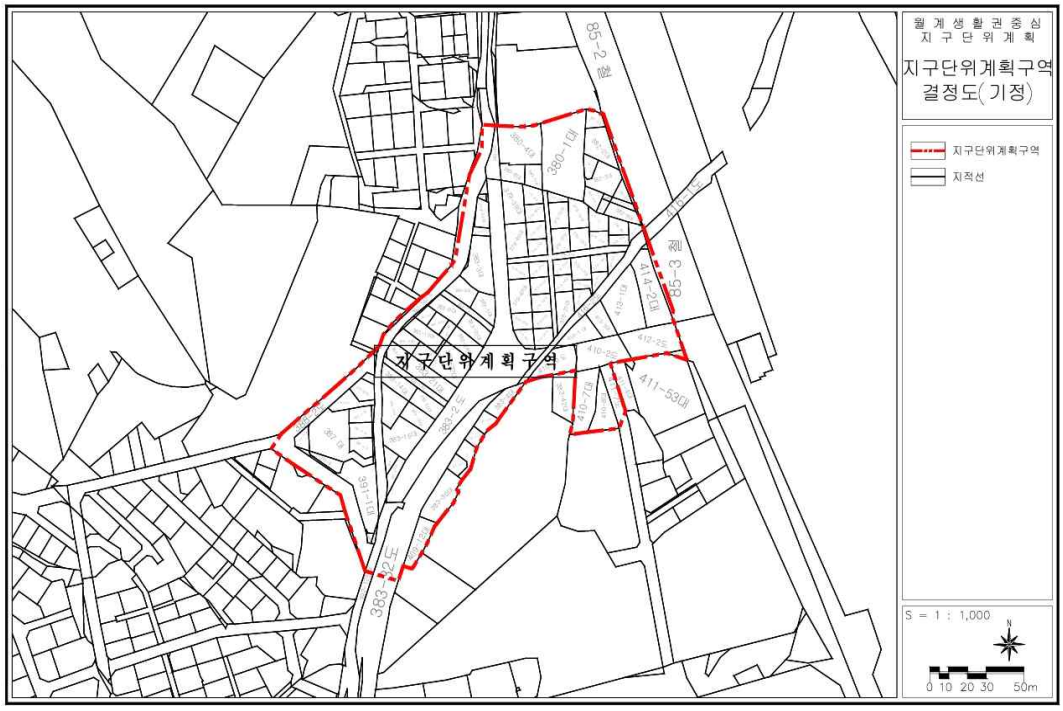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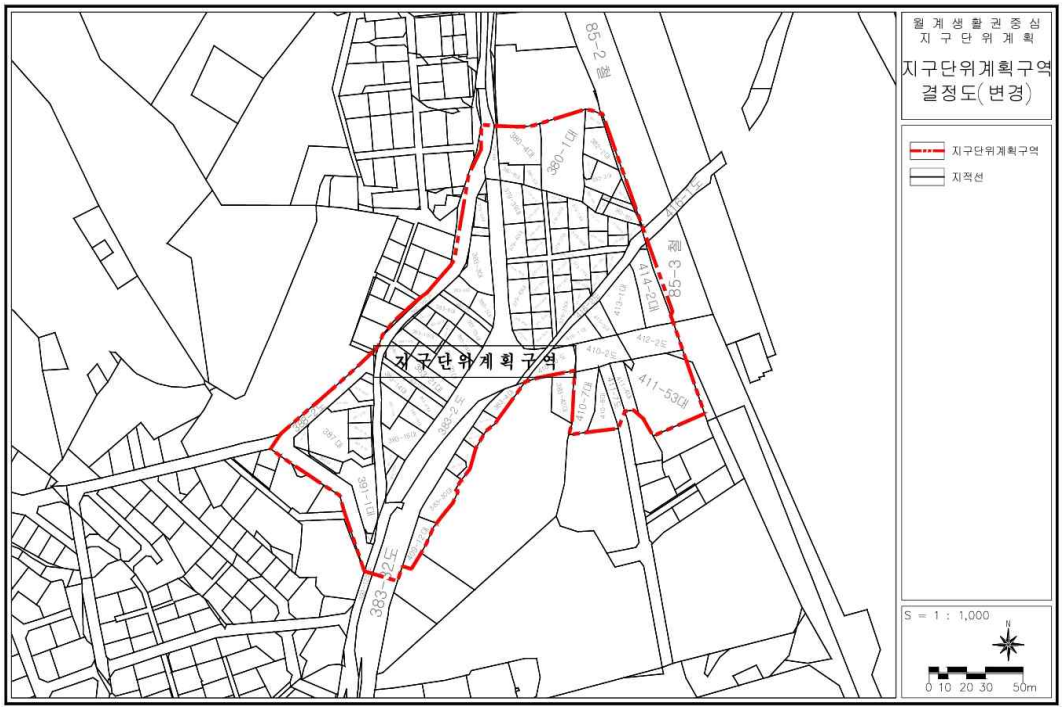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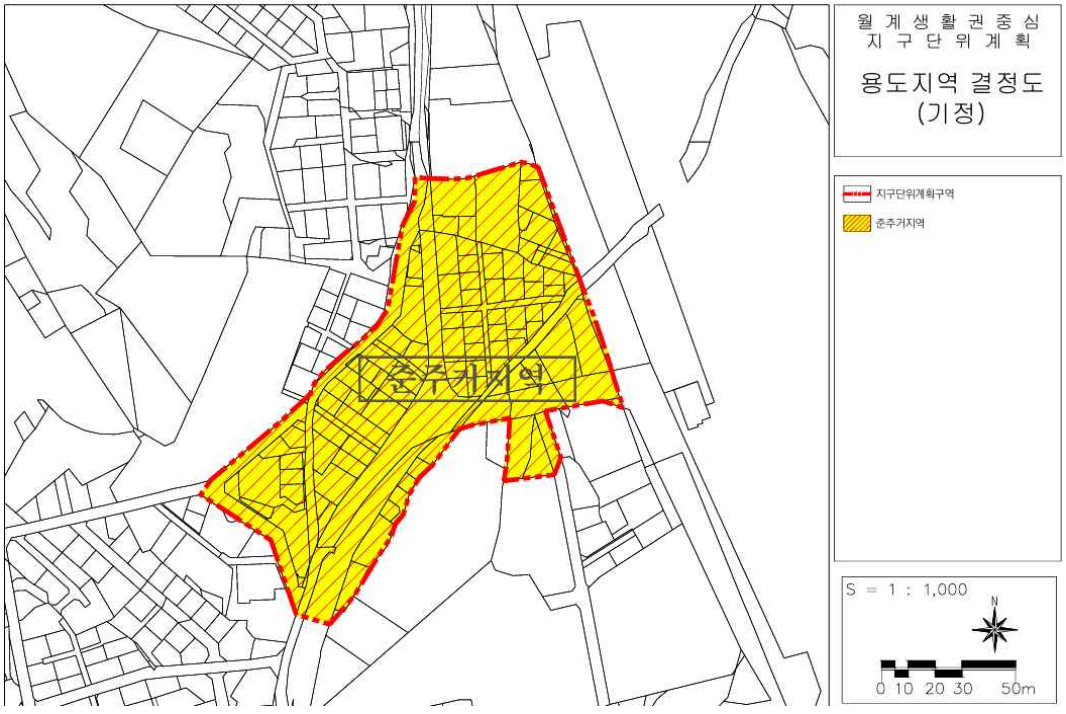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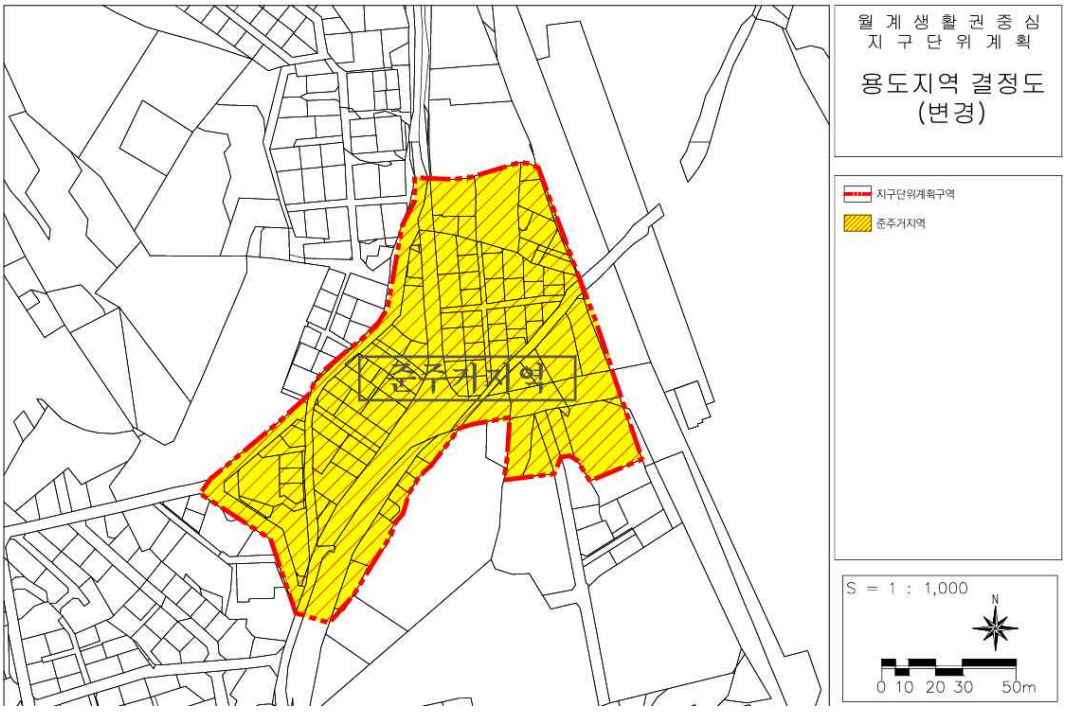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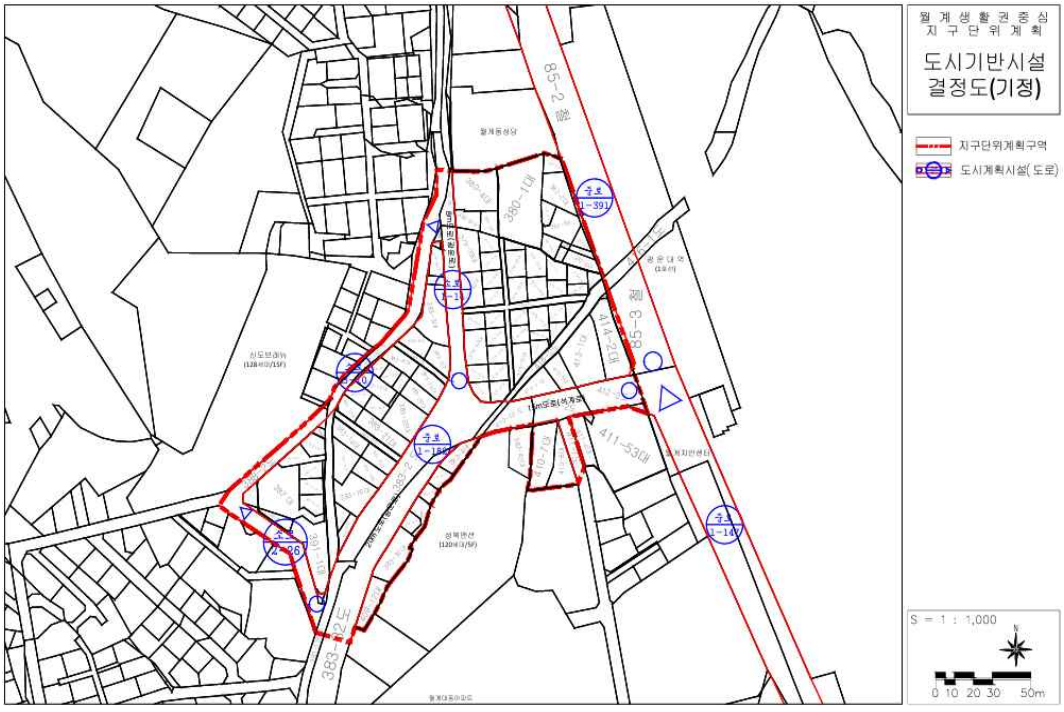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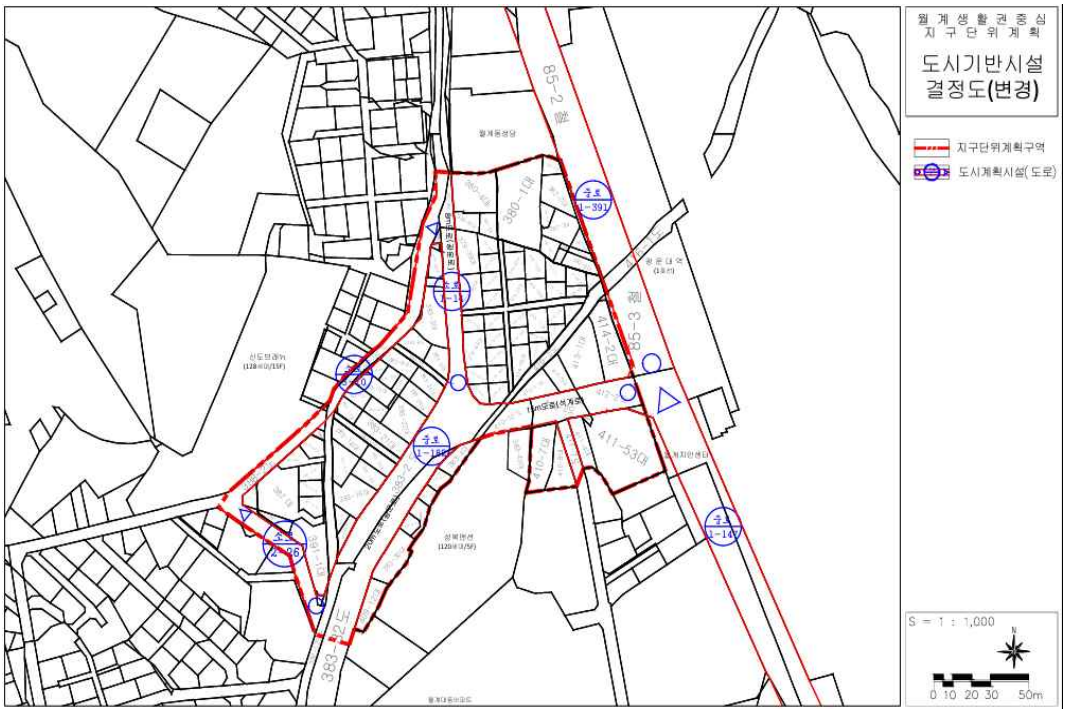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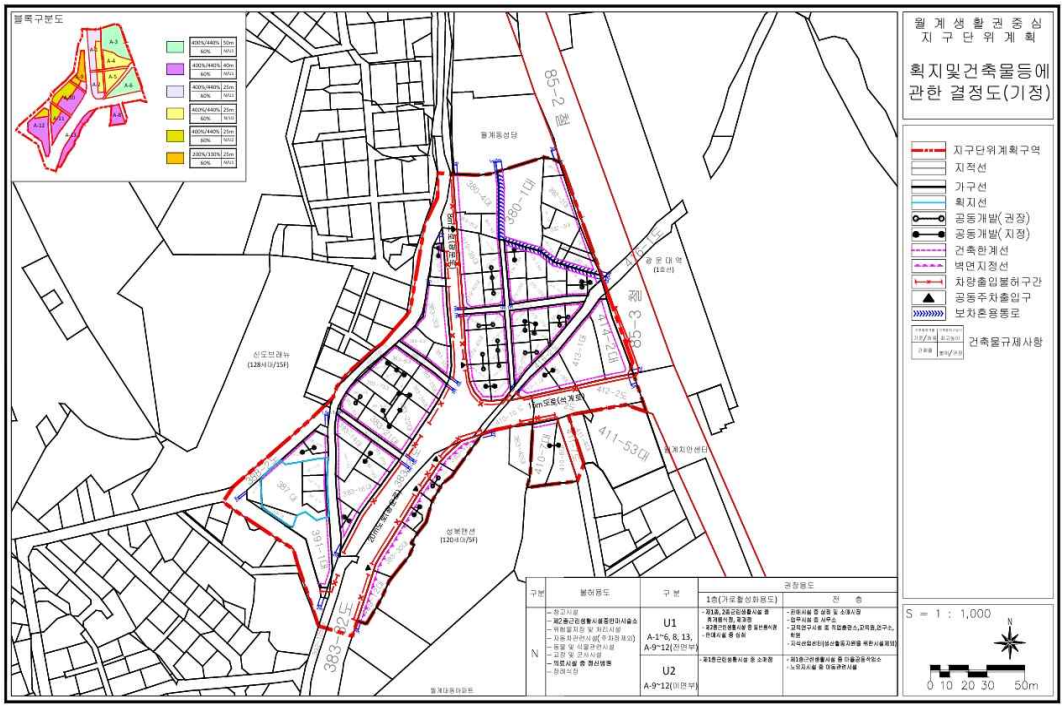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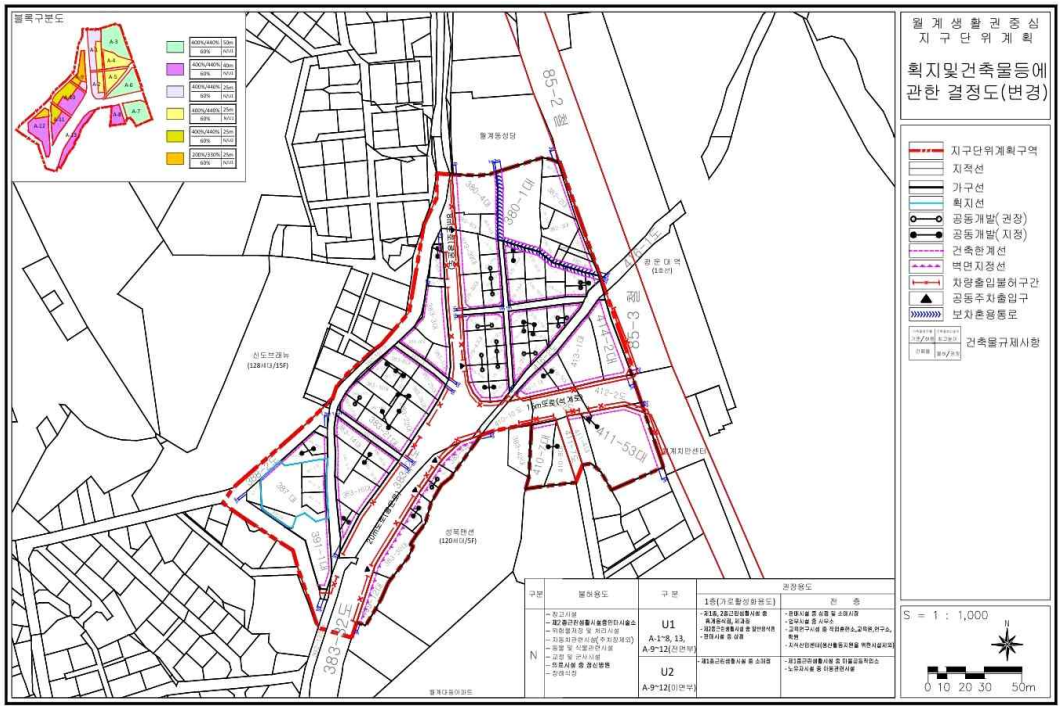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48호(1980. 2. 8.)로 최초 결정된 한강대교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가1	42~51	간선 도로	155	한강대교 노들섬하단	한강대교 노들섬상단	일반 도로	한강 대교	2010.2.18. (서고 제48호)	- 문화시설 중복결정 (7,153㎡)
변경	광로	3	가1	46~62	주간선 도로	155	한강대교 노들섬하단 (이촌동 377-2)	한강대교 노들섬상단 (이촌동 302-215)	일반 도로	한강 대교		- 선형 일부 조정 - 문화시설 중복결정 (8,421㎡)

나.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류	광로 3류	선형 일부 조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일부 선형 조정 등

2. 지형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시설계획과(☎02-2133-8423), 미래공간담당관(☎02-2133-762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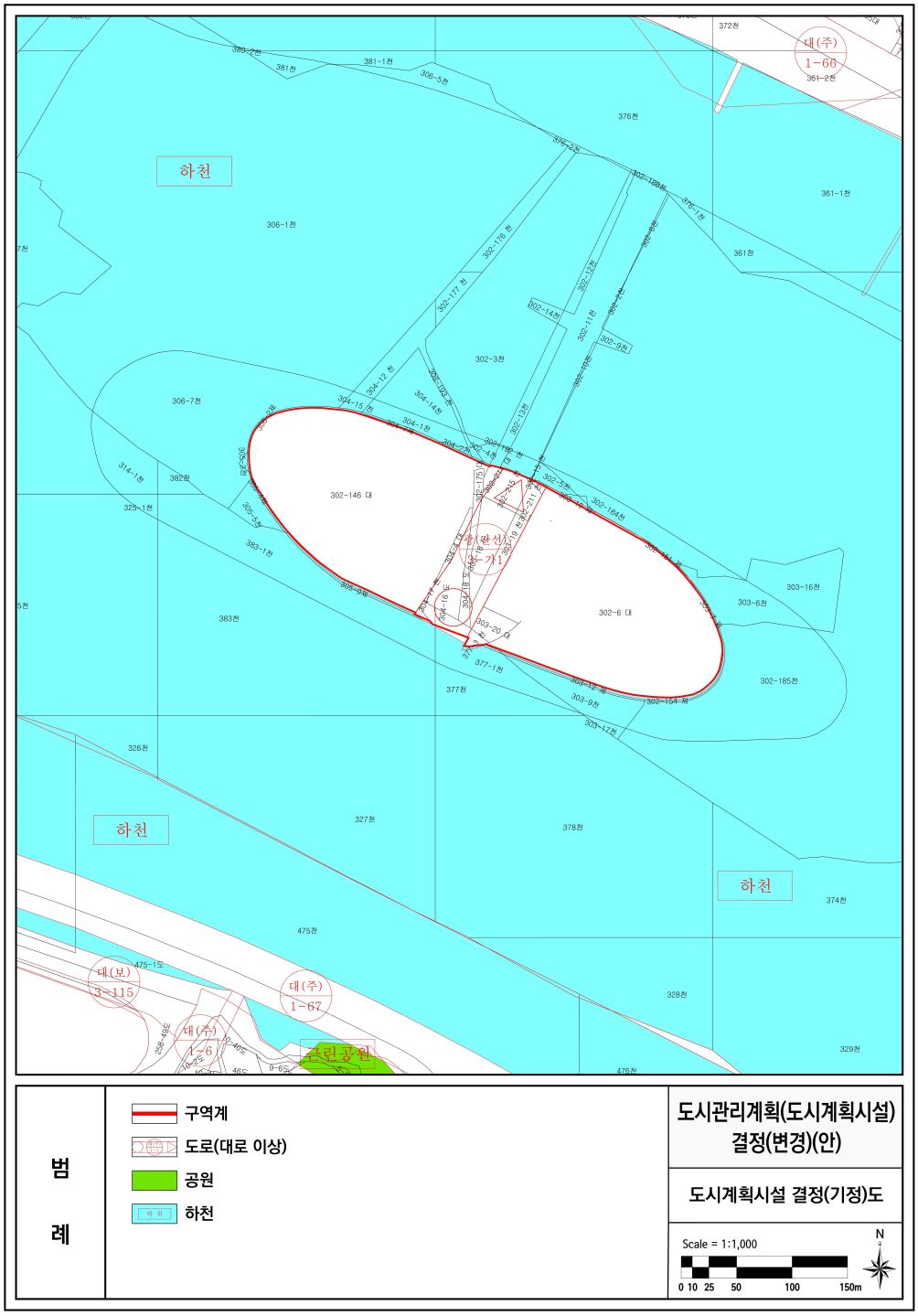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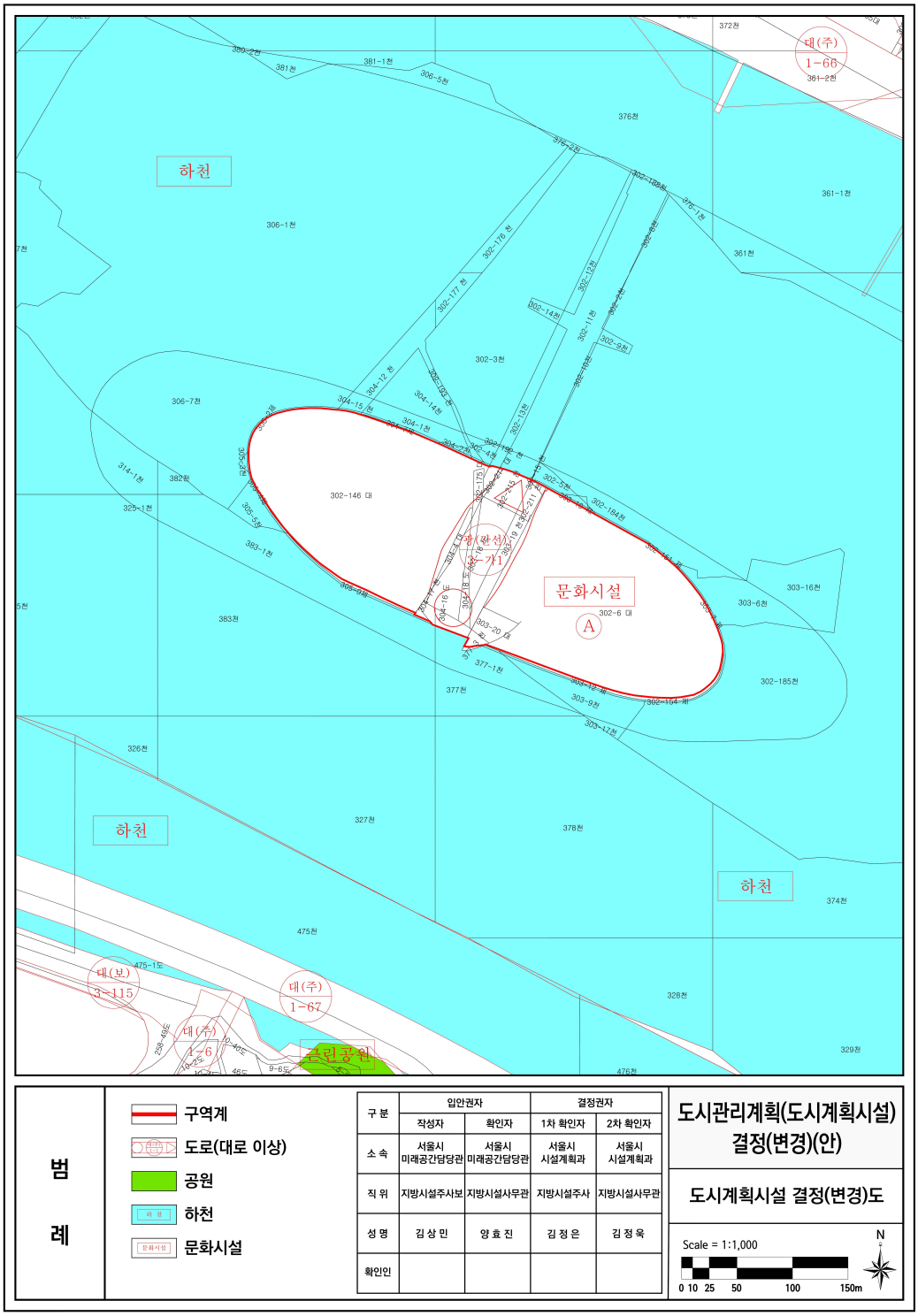
하천
문화시설
A
302-6 대
302-146 대
대(주) 1-66
대(보) 3-115
대(주) 1-67
대(주) 1-6
근린공원
하천
하천
하천
범 례
구역계
도로(대로 이상)
공원
하천
문화시설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직 위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김 상 민
양 효 진
김 정 은
김 정 욱
확인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cale = 1:1,000
0 10 25 50 100 150m
N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서초구	내방역	방배동 939-1 일대	7,174.22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5.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929)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1	서초구 강남대로 221, 509호(양재동)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관계도면

○ 서초구 내방역C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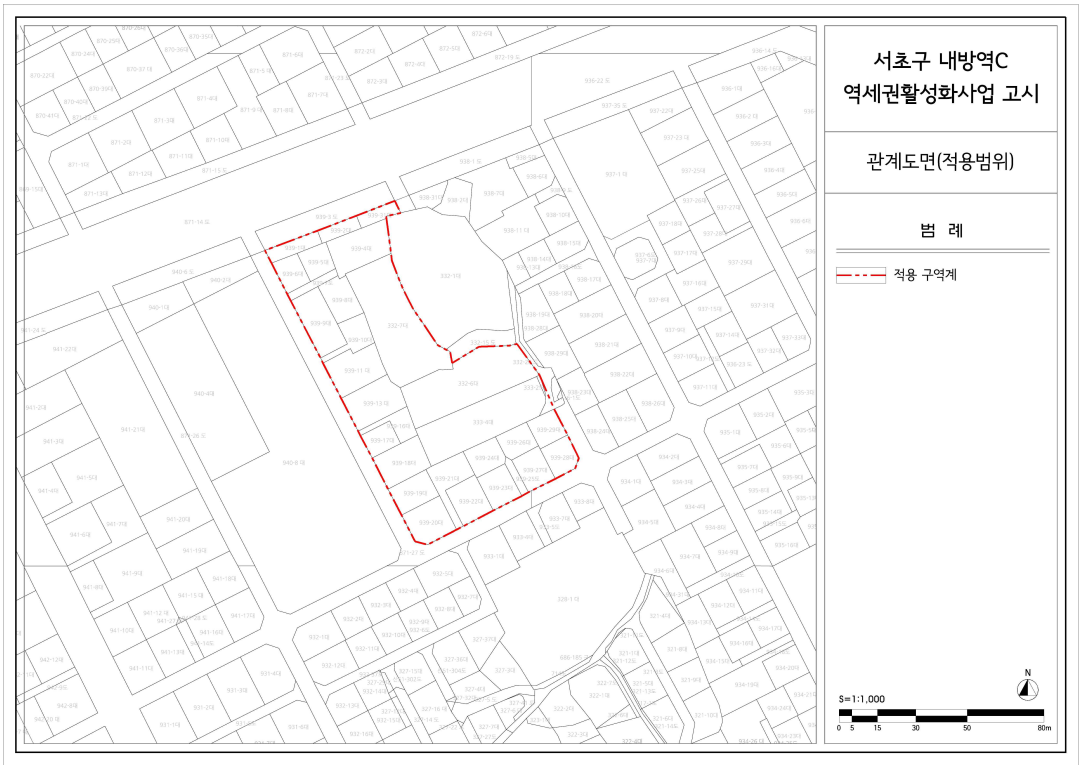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26.4.29. / ’ 26.5.6.)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강동구	천호6	천호동 392-9 일대	40,592.0	2025-11-26 (자치구 추천일)
2	강북구	-	수유동 442-10 일대	41,731.0	2026-03-19 (자치구 추천일)
3	강북구	-	수유동 486 일대	72,385.0	2026-03-19 (자치구 추천일)
4	강북구	-	수유동 540 일대	84,031.0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5	광진구	-	중곡동 232-1 일대	63,963.3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6	서대문구	-	북가좌동 3-191 일대	77,001.2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7	서대문구	-	연희동 170-14 일대	35,623.6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8	양천구	-	신월동 229 일대	57,832.4	2026-02-19 (자치구 추천일)
9	용산구	-	원효로4가 110-1 일대	14,526.0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10	용산구	-	용산동2가 44-3 일대	73,070.5	2026-03-17 (자치구 추천일)
11	성동구	용답2	용답동 15 일대	95,889.5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연번	자치구	구역명 (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2	구로구	-	구로동 400-1 일대	27,306.8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13	구로구	-	온수동 62 일대	10,927.0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14	은평구	-	불광동 16-111 일대	38,296.4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15	도봉구	-	창동 608 일대	66,395.8	2026-03-26 (자치구 추천일)
16	동작구	사당19	사당동 77-24 일대	25,194.8	2026-02-09 (자치구 별도 요청일)
17	동작구	노량진14	노량진동 205-269 일대	59,308.3	2025-12-31 (자치구 별도 요청일)
18	동작구	사당21	사당동 1026-10 일대	113,858.5	2025-12-11 (자치구 별도 요청일)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02-3425-5992	-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02-901-6868	-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06	-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02-330-3863	-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2	-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3	-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75	-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22	-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743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3	-
동작구	도시정비과	02-820-1970	-

■ 관계도면

○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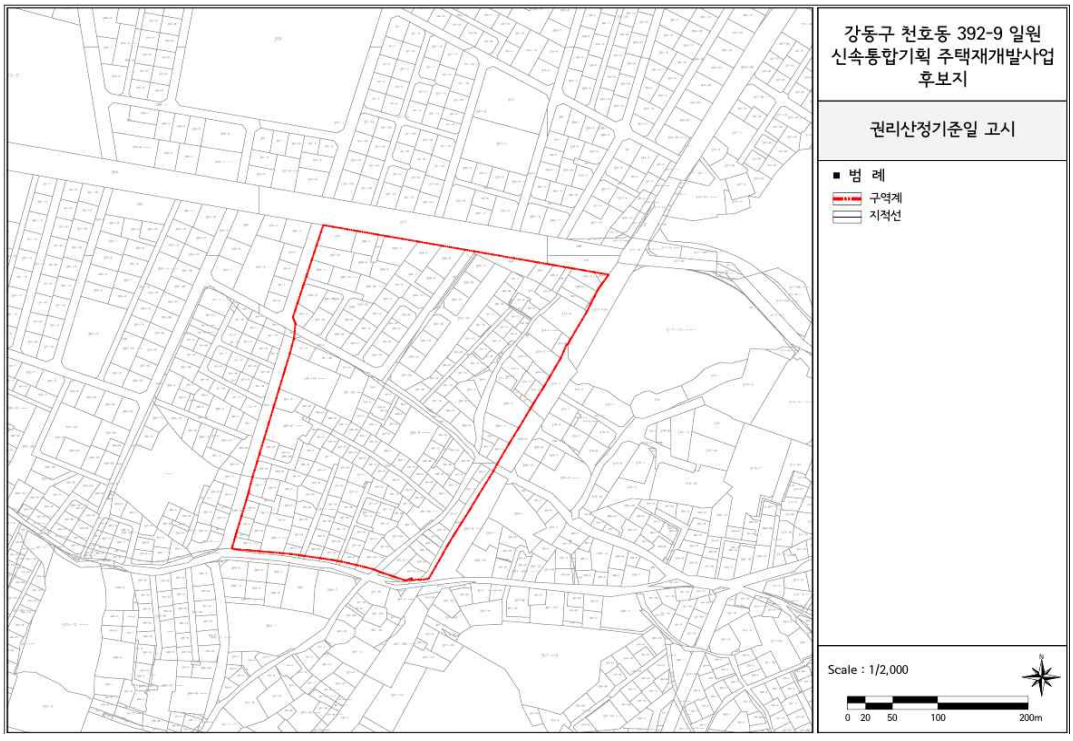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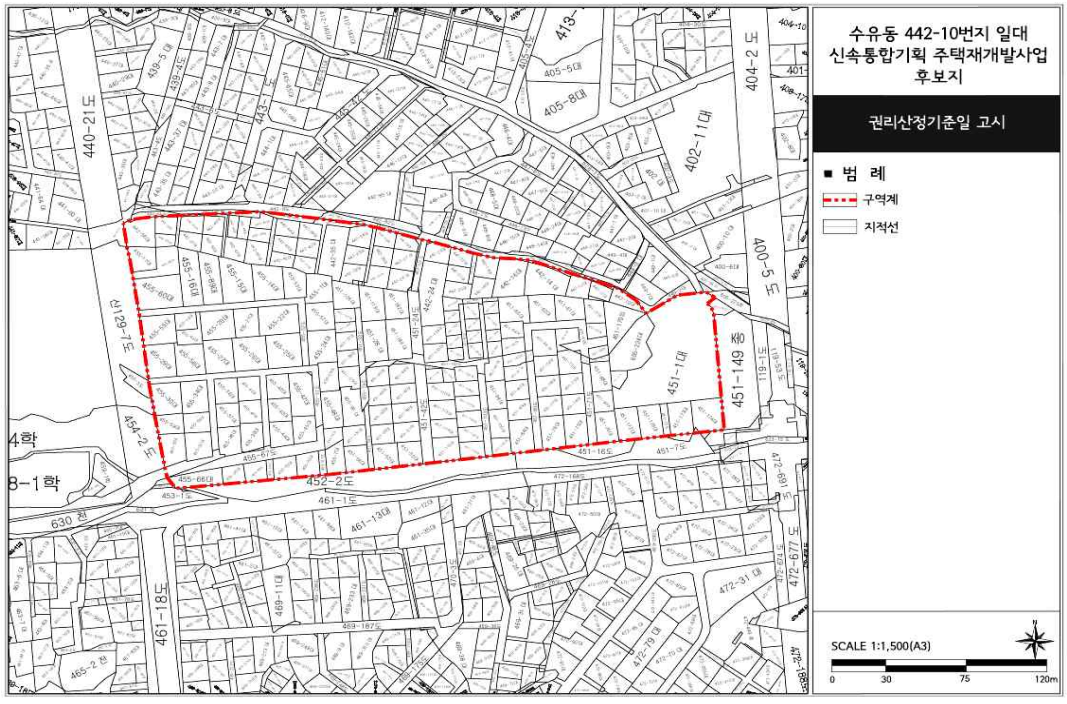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48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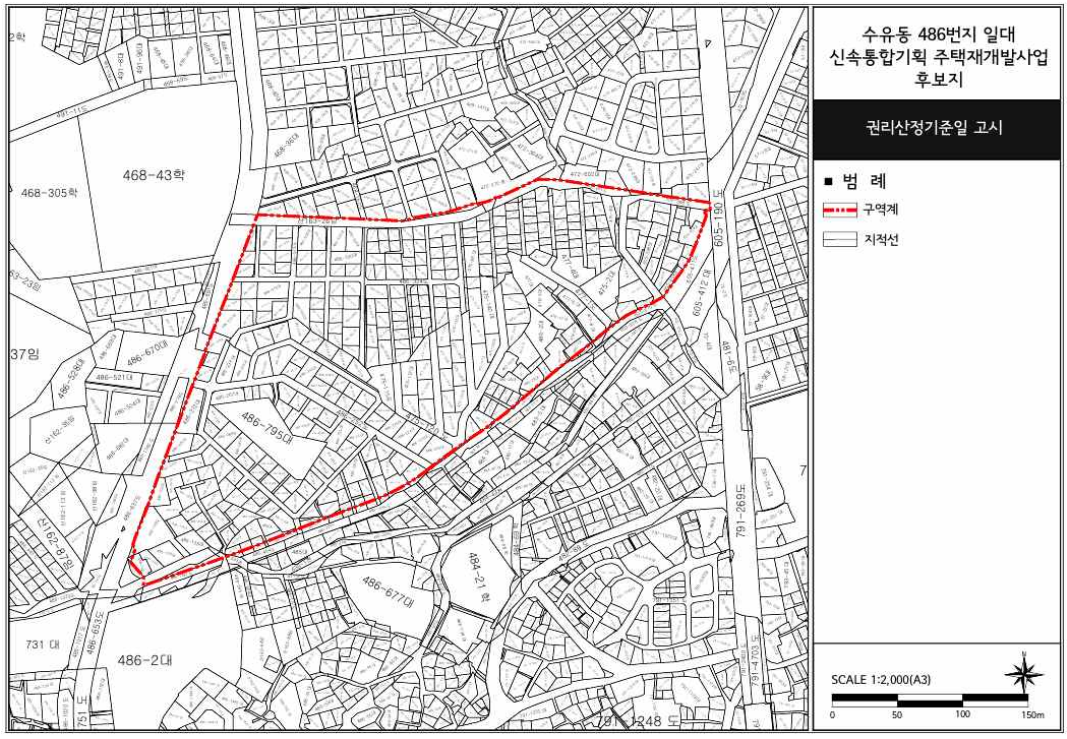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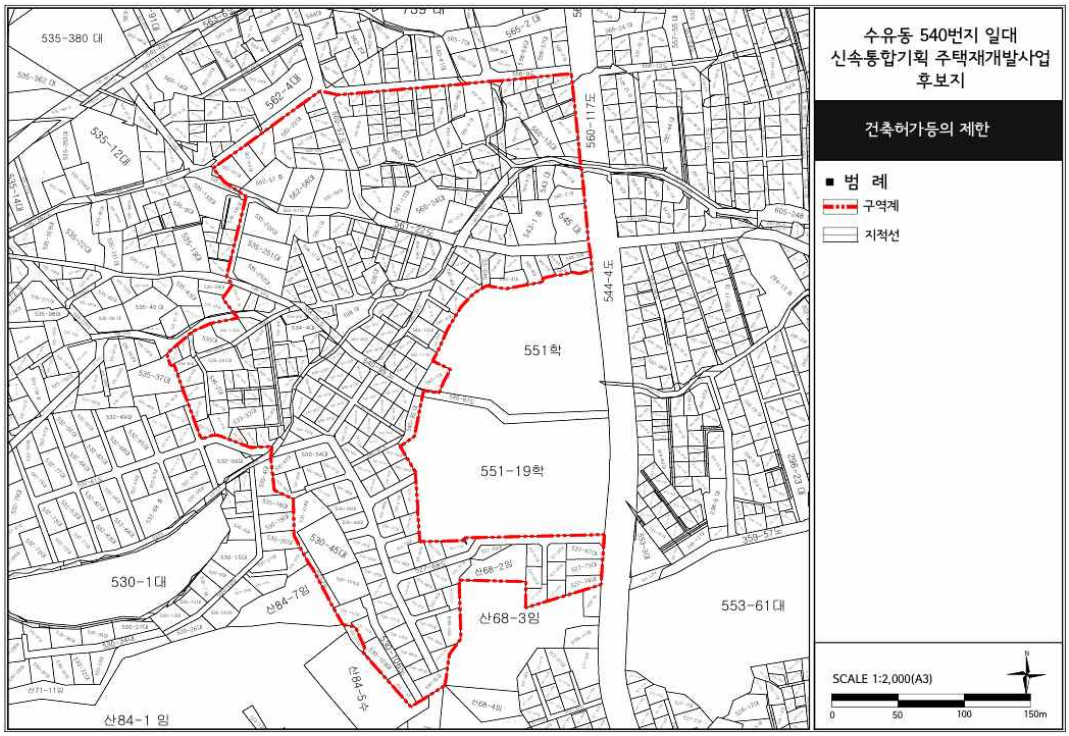

○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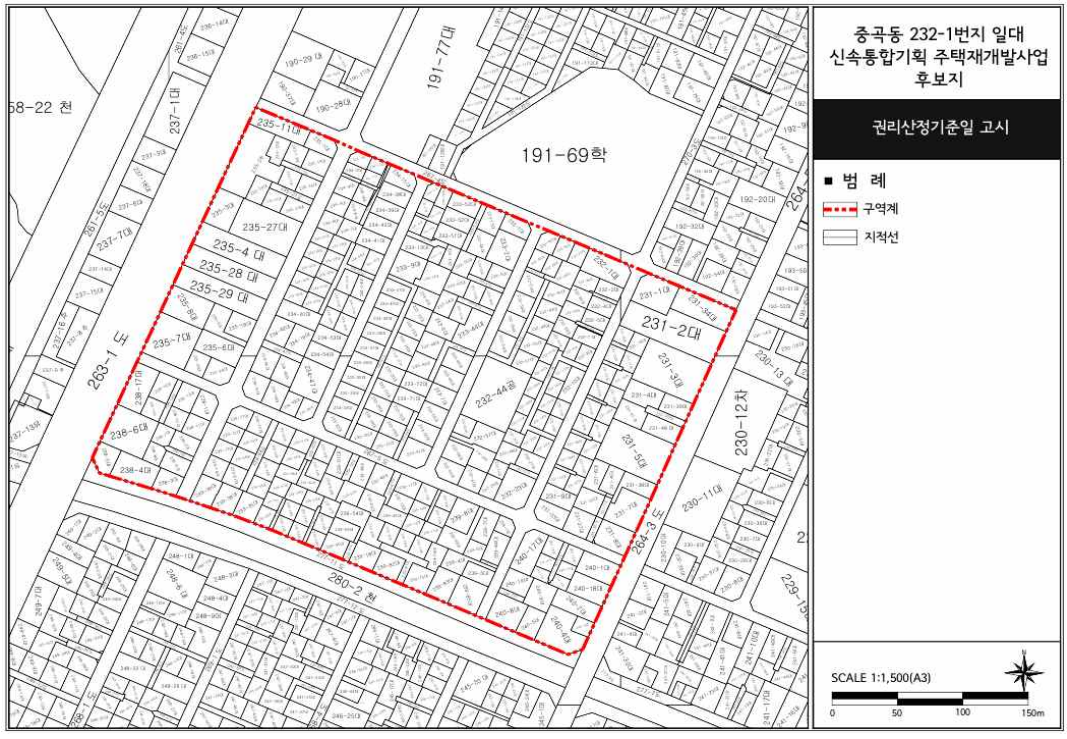

○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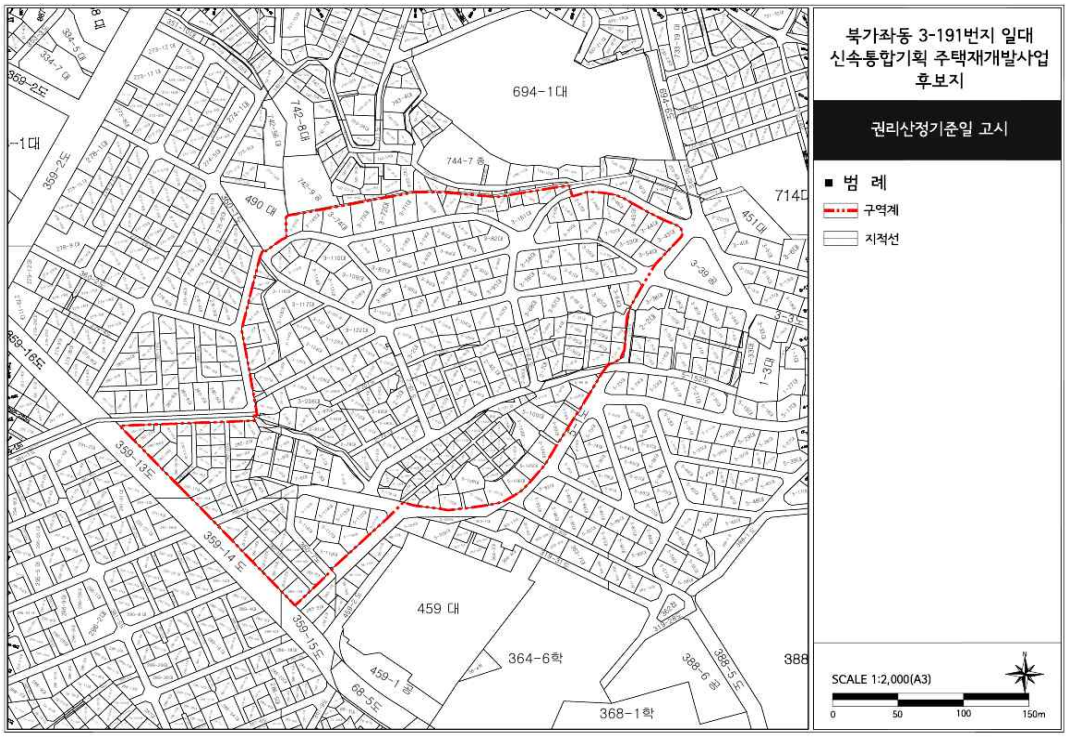

○ 서대문구 연희동 170-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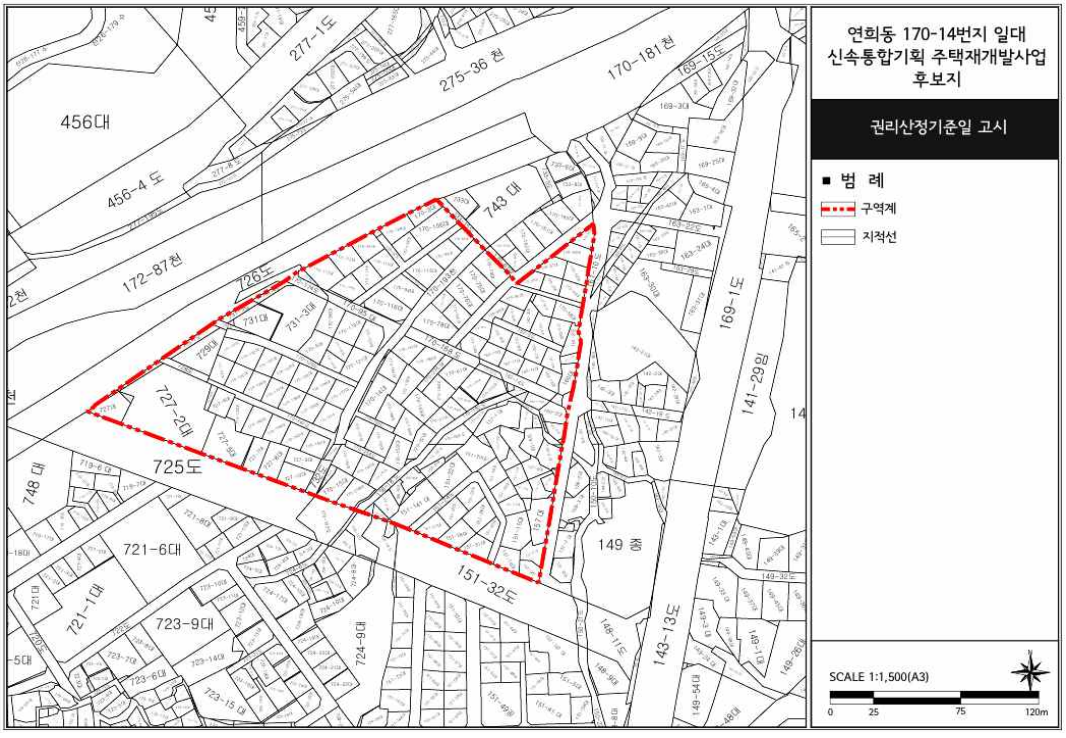

○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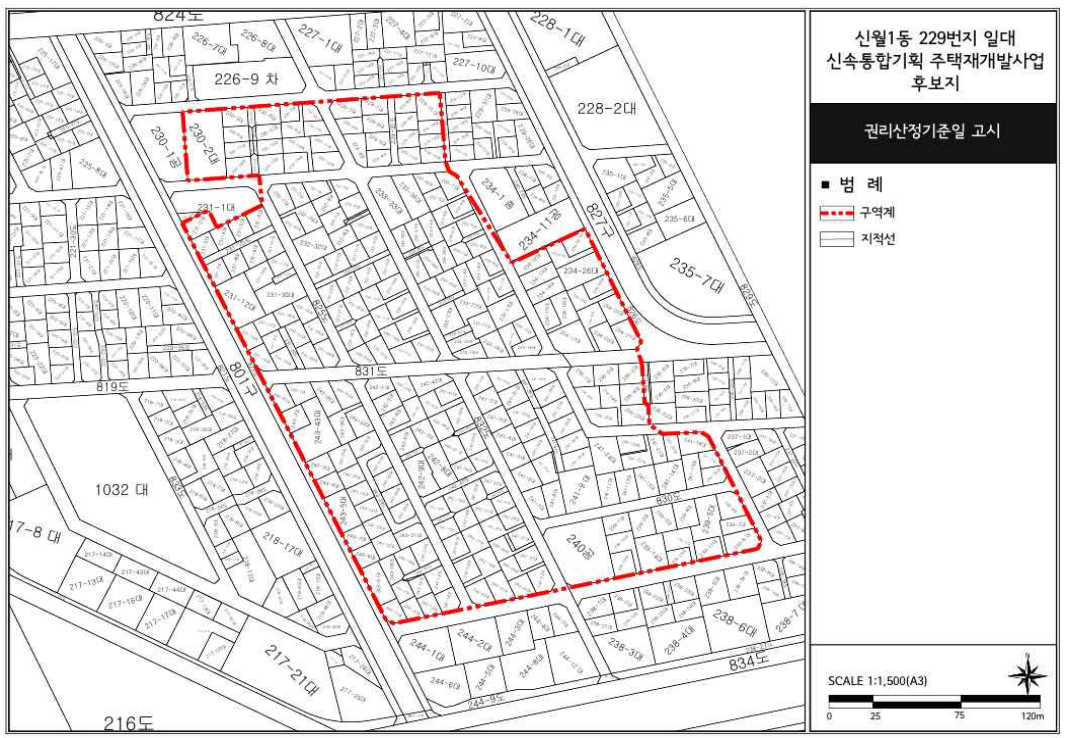

○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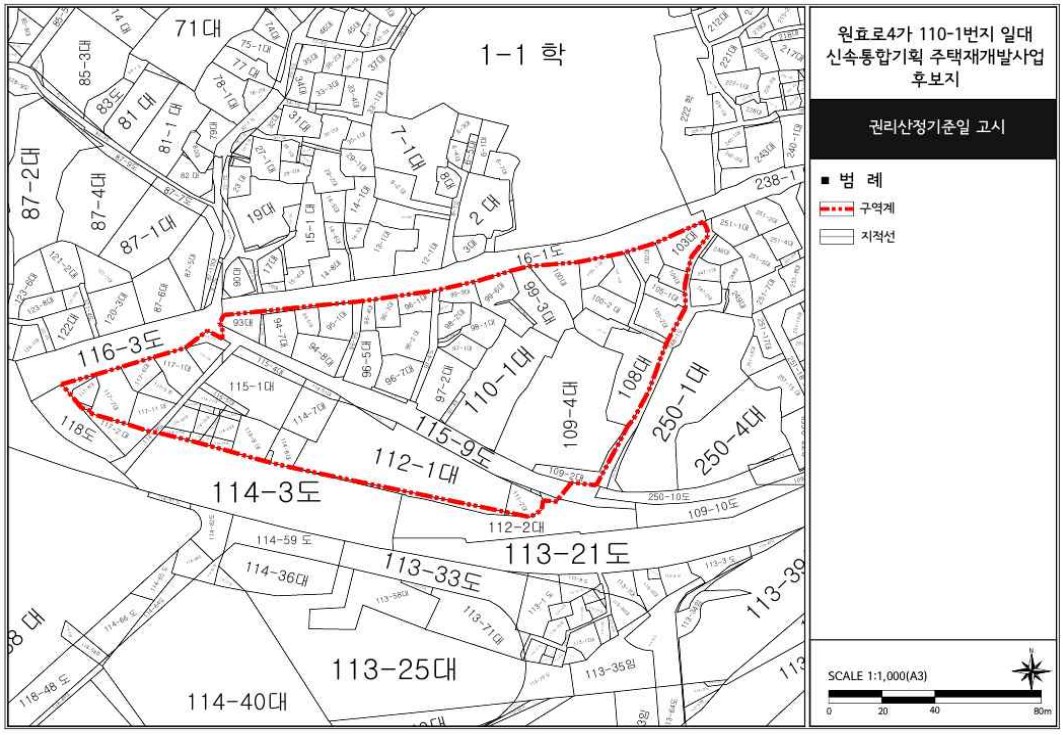

○ 용산구 용산동2가 44-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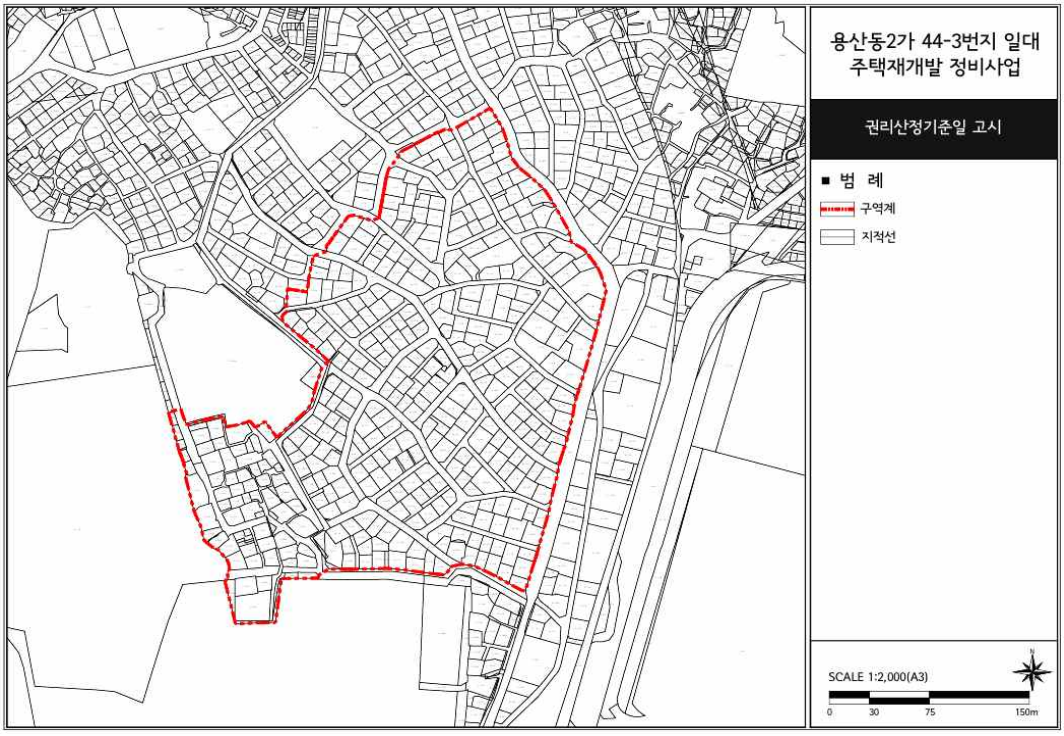

○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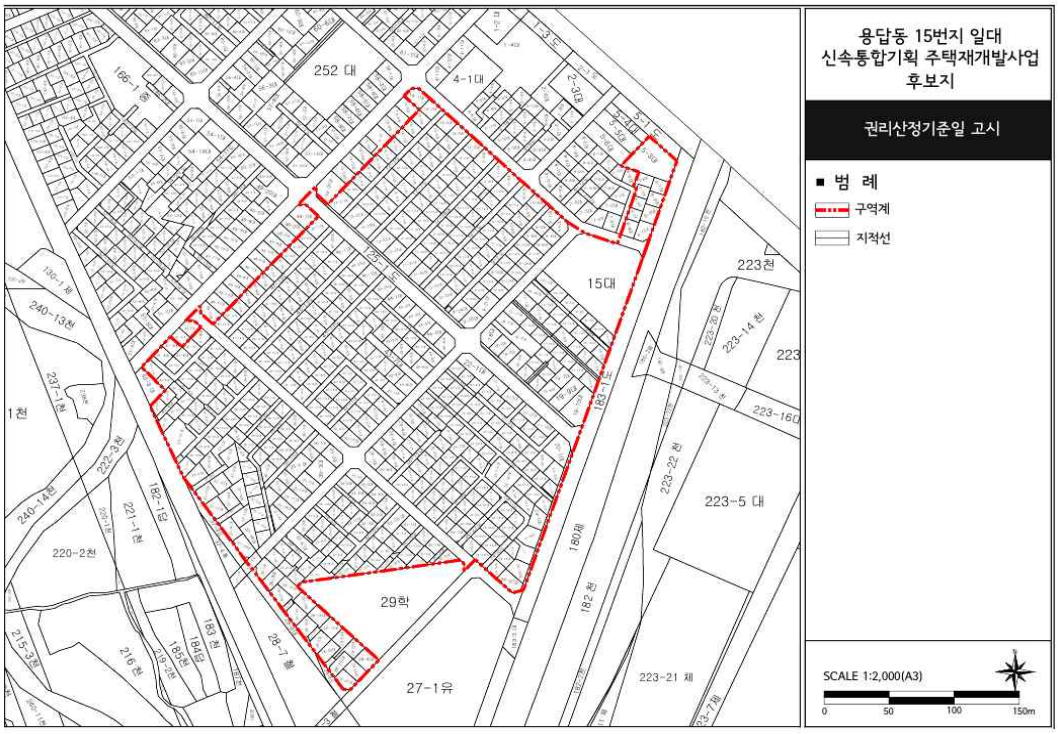

○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

○ 구로구 온수동 6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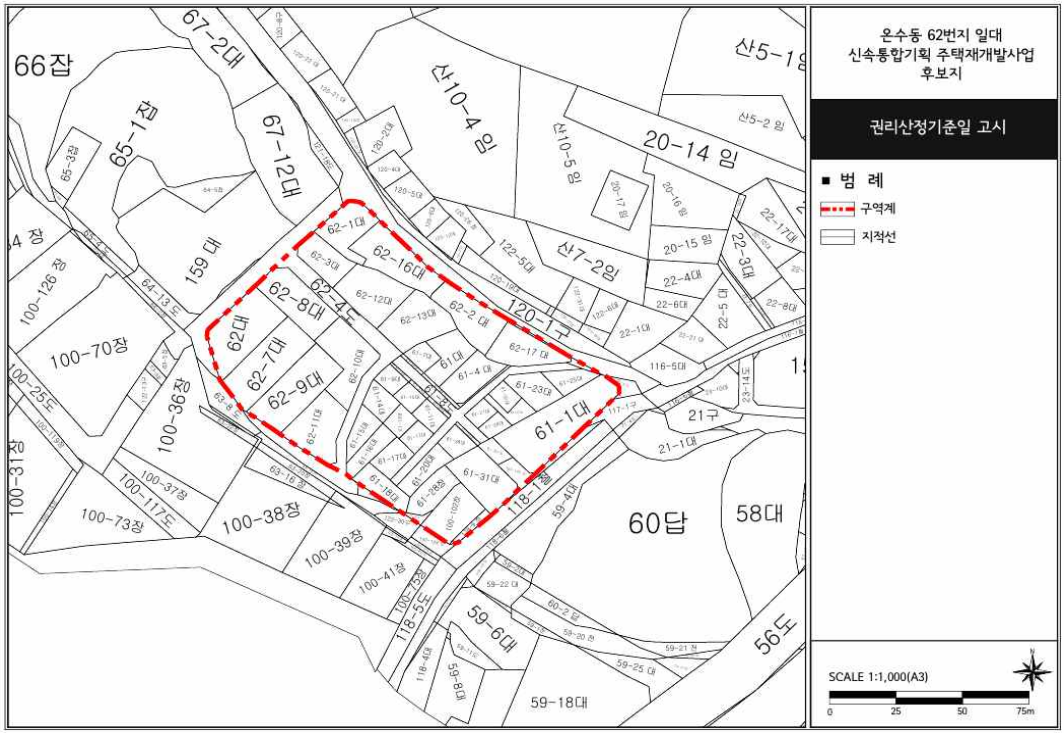

○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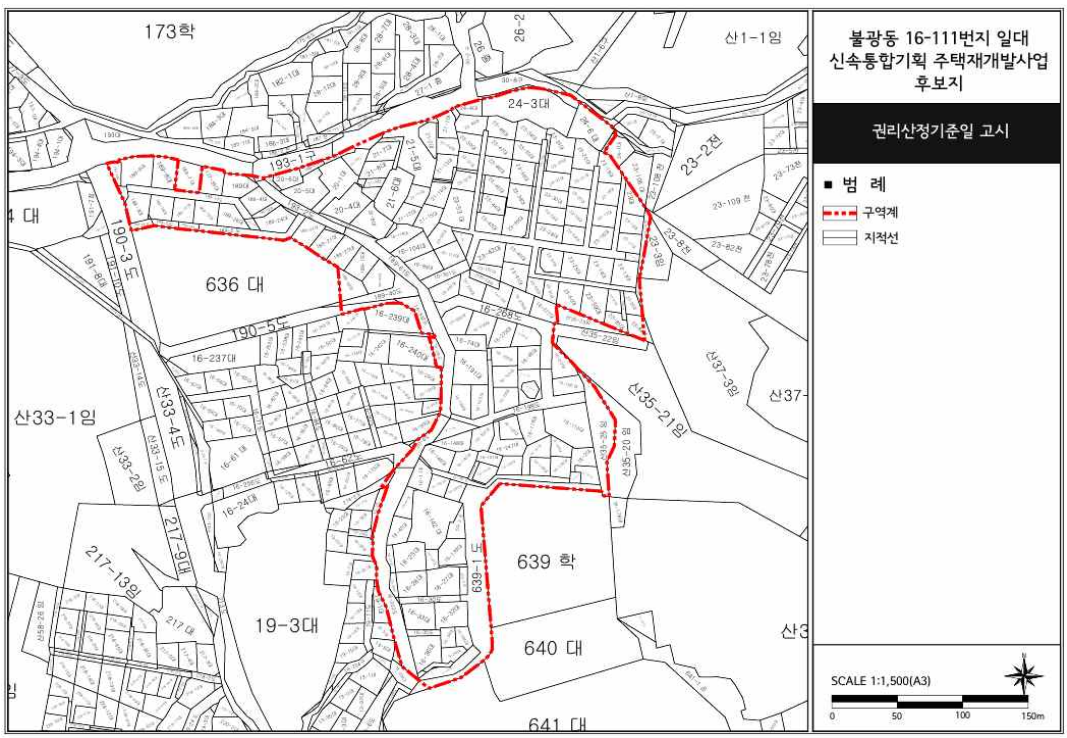

○ 도봉구 창동 608 일대

○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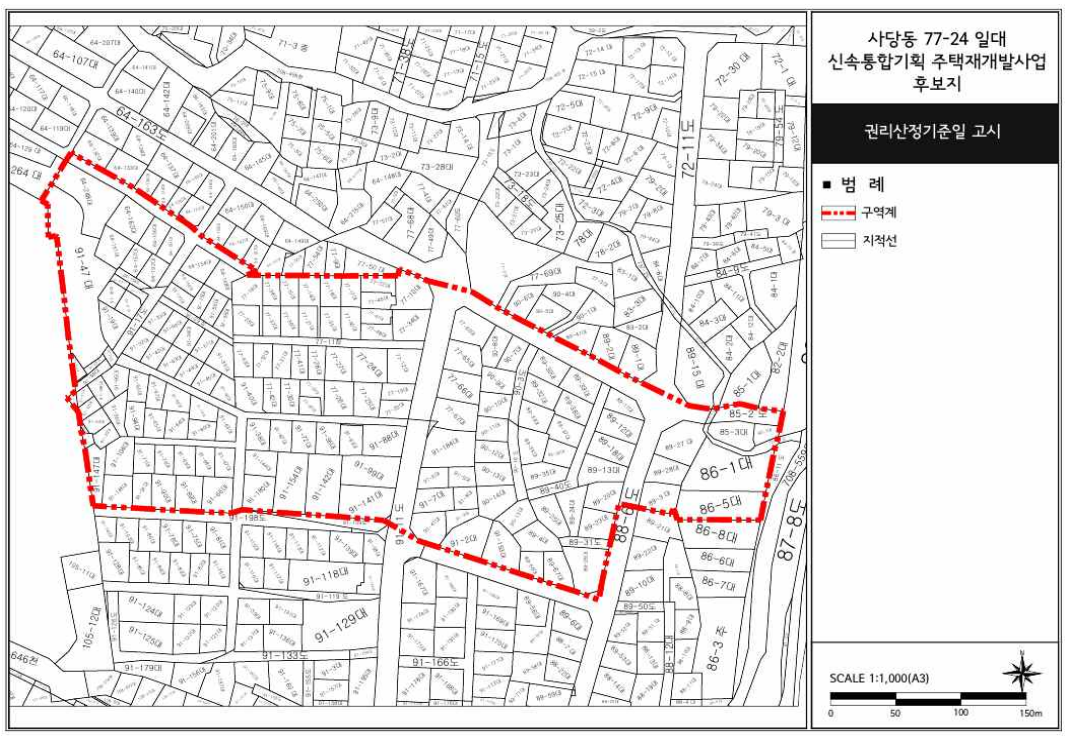

○ 동작구 노량진동 205-26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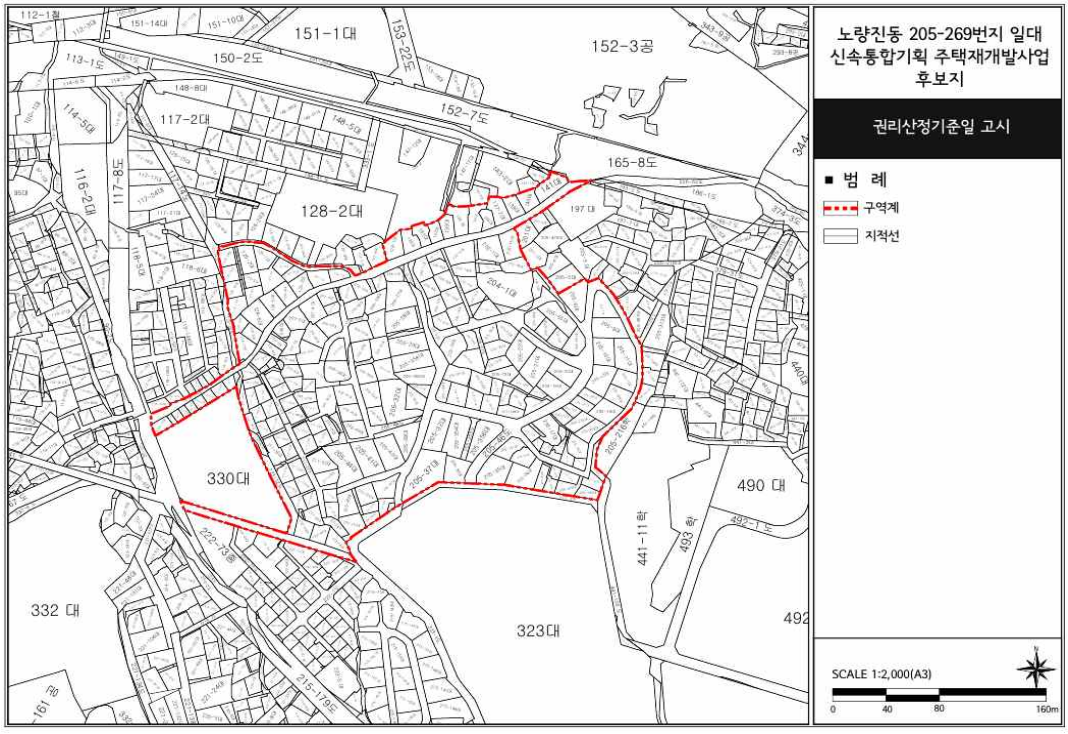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1026-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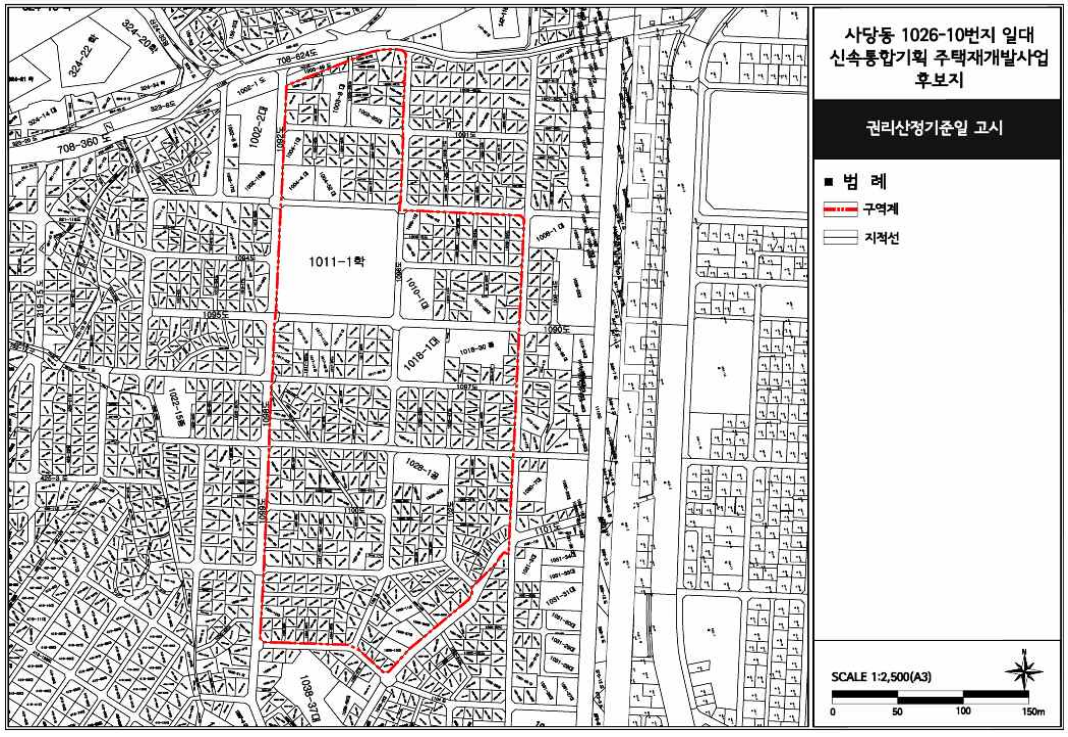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6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 26년 제2차(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 (가칭)	위치	제한면적(㎡)	선정 여부
1	강북구	-	수유동 442-10 일대	41,731.0	선정
2	광진구	-	중곡동 232-1 일대	63,963.3	선정
3	서대문구	-	북가좌동 3-191 일대	77,001.2	선정
4	서대문구	-	연희동 170-14 일대	35,623.6	선정
5	용산구	-	원효로4가 110-1 일대	14,526.0	선정
6	용산구	남산2	후암동 353-10 일대	23,383.1	미선정
7	용산구	-	용산동2가 44-3 일대	73,070.5	선정
8	성동구	용답2	용답동 15 일대	95,889.5	선정
9	성동구	용답1	용답동 50-14 일대	44,492.7	미선정
10	구로구	-	구로동 400-1 일대	27,306.8	선정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제한면적(㎡)	선정 여부
11	도봉구	-	창동 608 일대	66,395.8	선정
12	동작구	사당19	사당동 77-24 일대	25,194.8	선정
13	동작구	사당18	사당동 180-31 일대	56,145.7	미선정
14	동작구	노량진14	노량진동 205-269 일대	59,308.3	선정
15	동작구	상도25	상도동 209 일대	107,300.4	미선정
16	동작구	사당21	사당동 1026-10 일대	113,858.5	선정
17	동작구	노량진12	노량진동 309-57 일대	15,776.8	미선정

※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3.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 의 **선정구역** 으로 변경

2. 건축허가 제한 변경(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안)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① 면적 변경 : ' 26년 제2차(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기 제한 면적(㎡)	금회 제한 면적(㎡)			제한기간	현재 후보지 선정 여부
					합계	확대	제척		
1	강북구	-	수유동 540 일대	69,060	84,031	15,104	133	변경 없음 (2024.09.26.~2026.09.25.)	선정
2	양천구	-	신월동 229 일대	44,332	57,832	13,871	371	변경 없음 (2025.06.12.~2027.06.11.)	선정
3	강동구	-	천호동 392-9 일대	30,603	40,592	9,989	-	변경 없음 (2025.03.27.~2027.03.26.)	선정

※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4호,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5호,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1호 참고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보류)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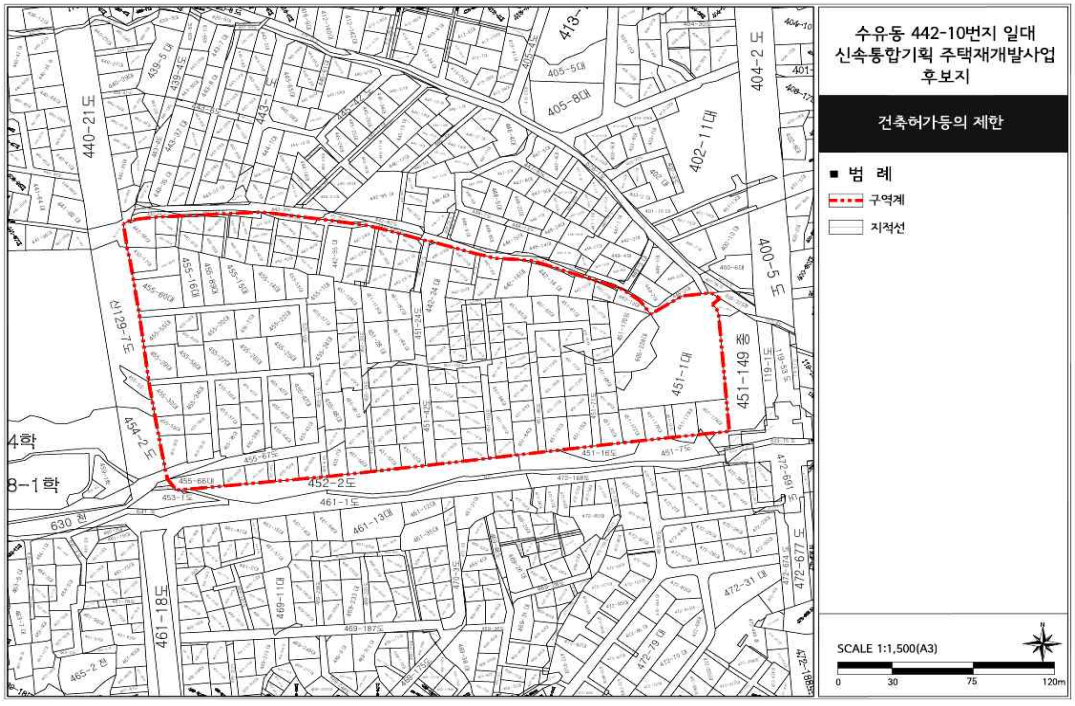

○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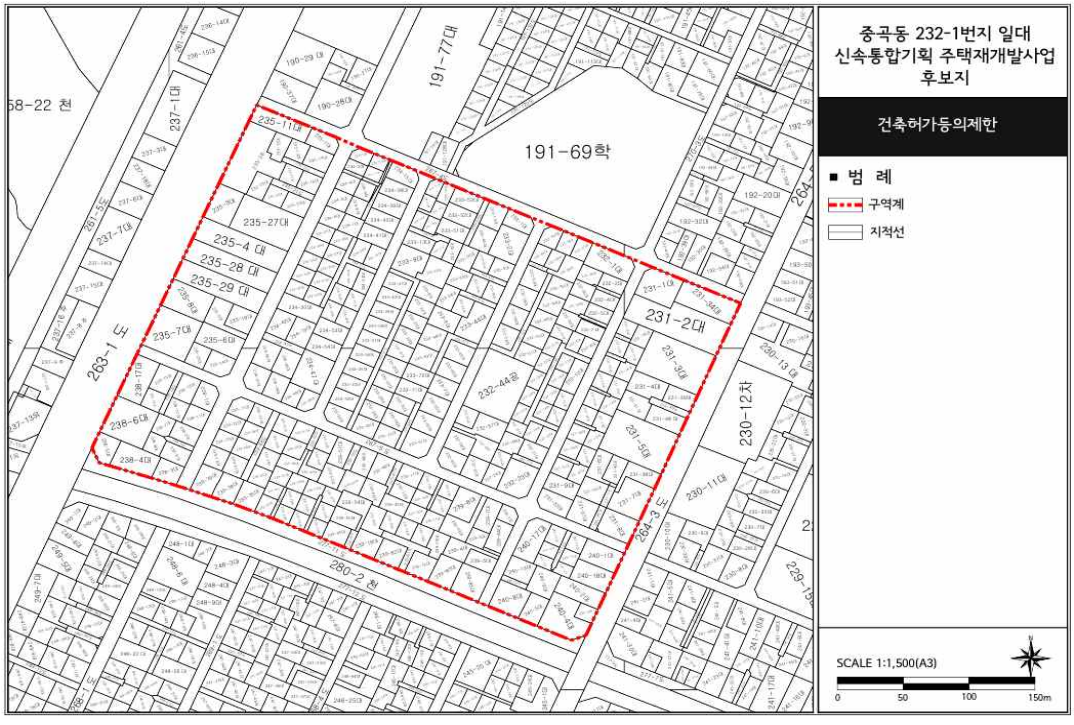

○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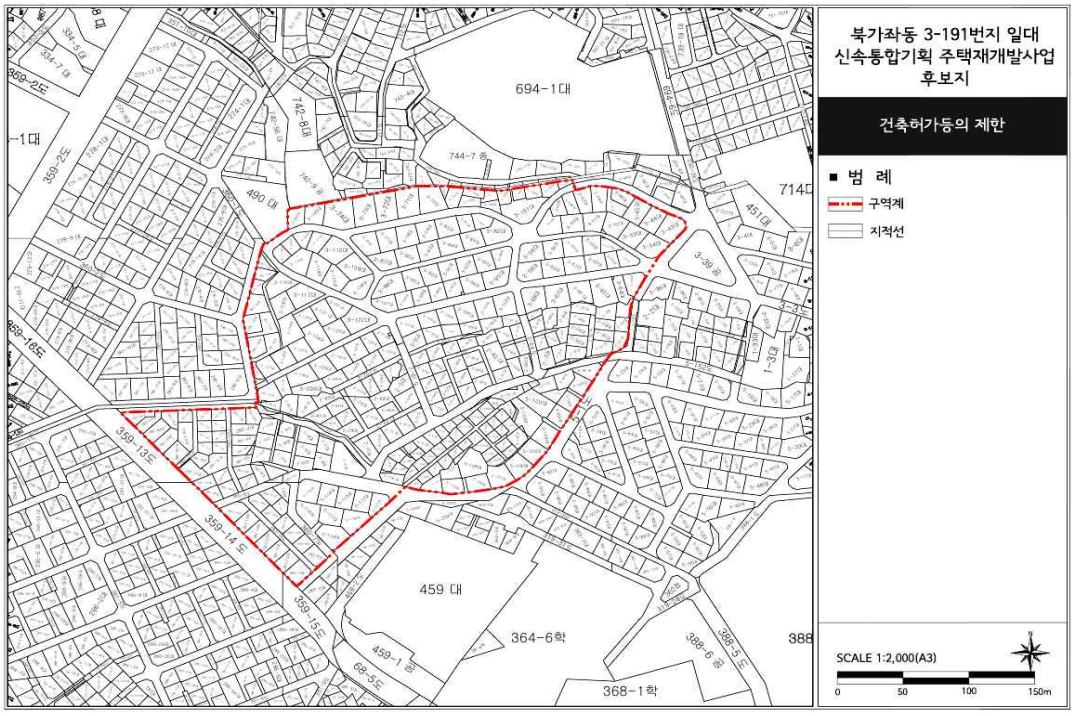

○ 서대문구 연희동 170-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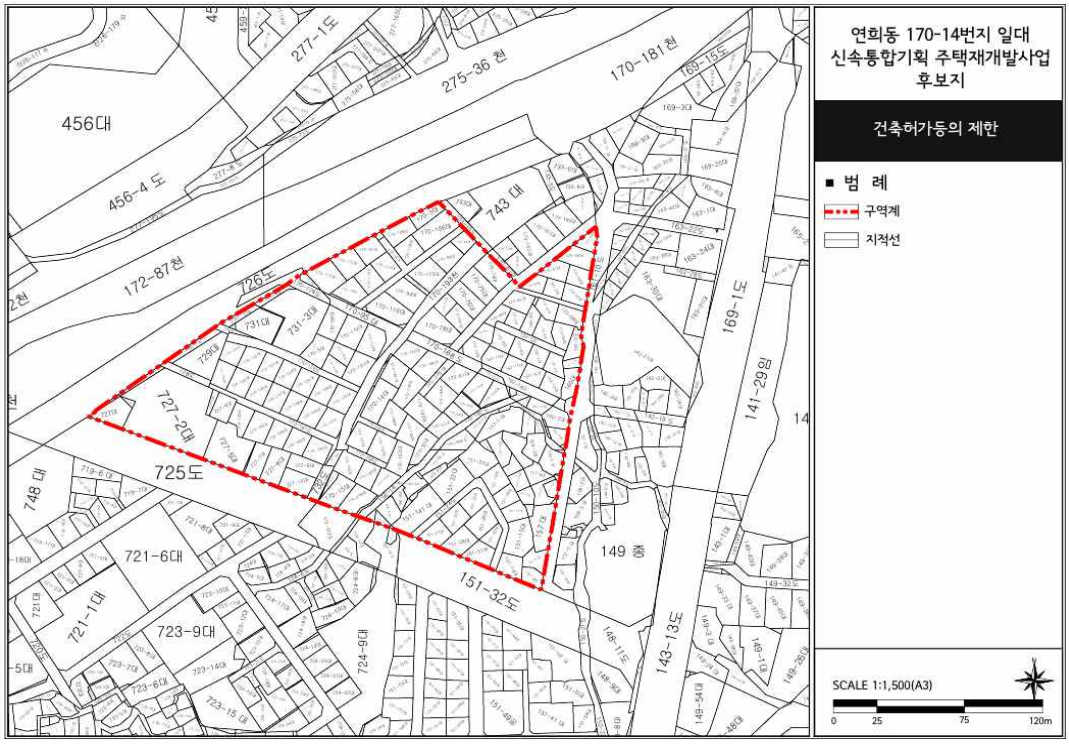

○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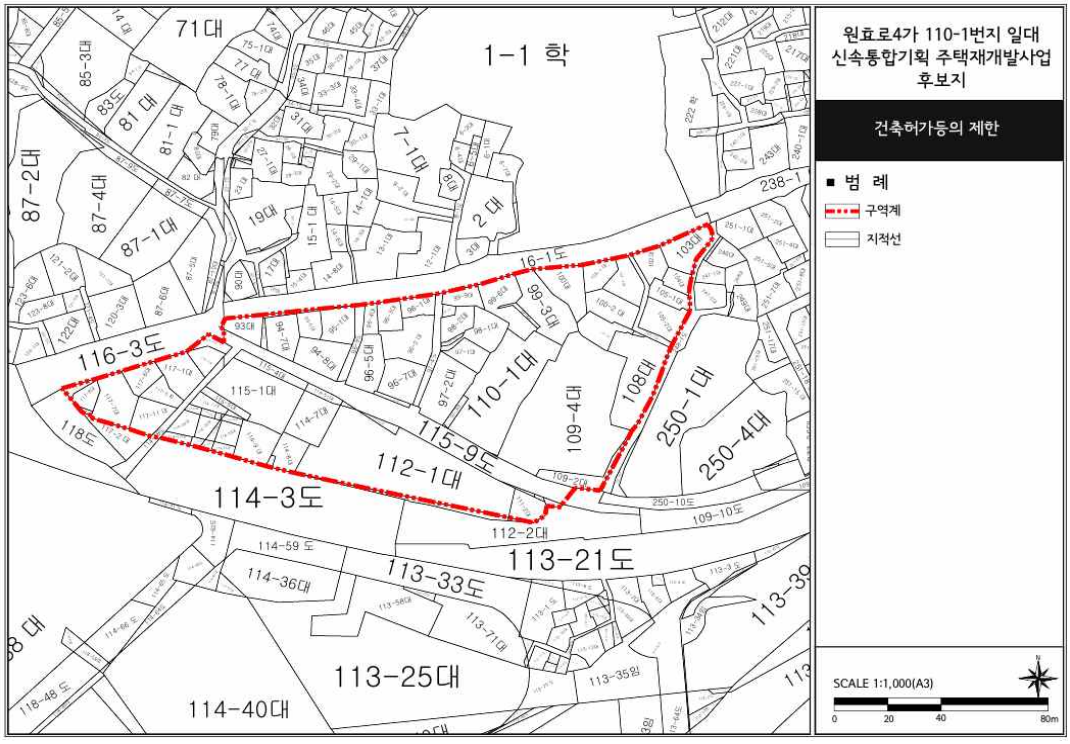

○ 용산구 후암동 353-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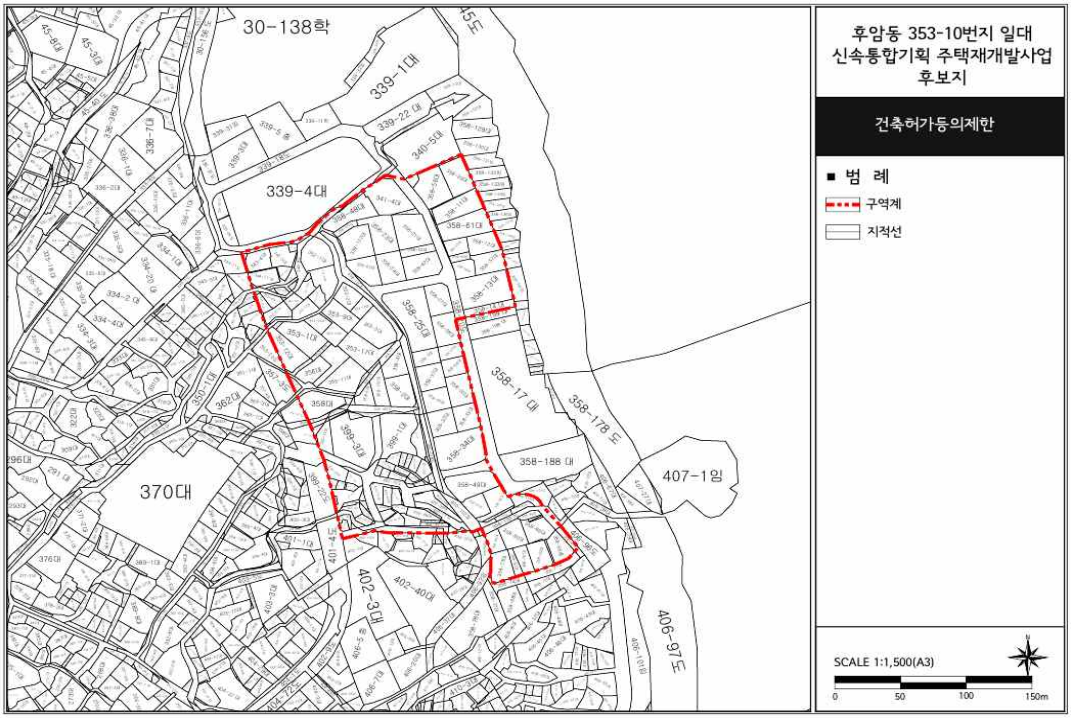

○ 용산구 용산동2가 44-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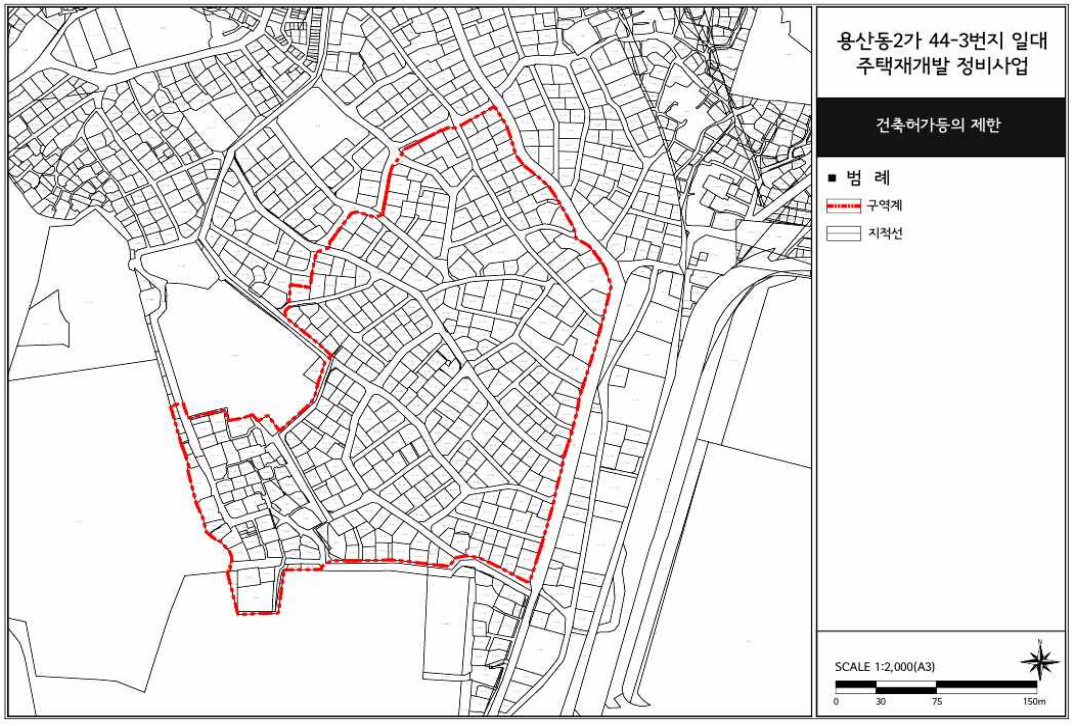

○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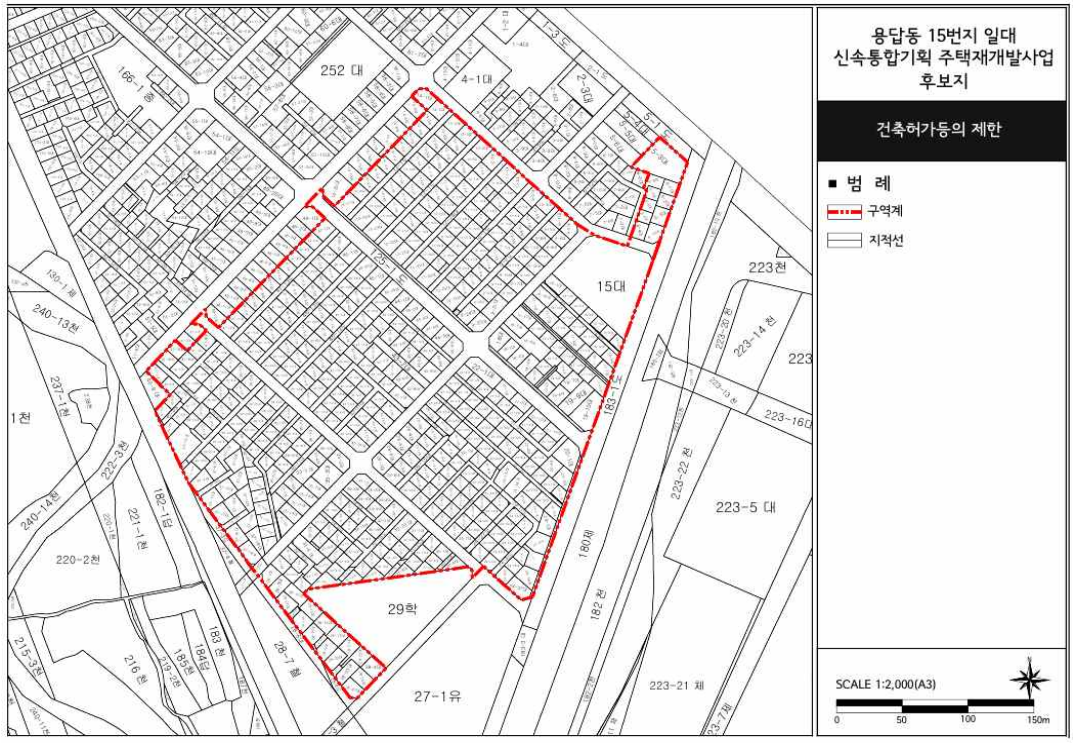

○ 성동구 용답동 50-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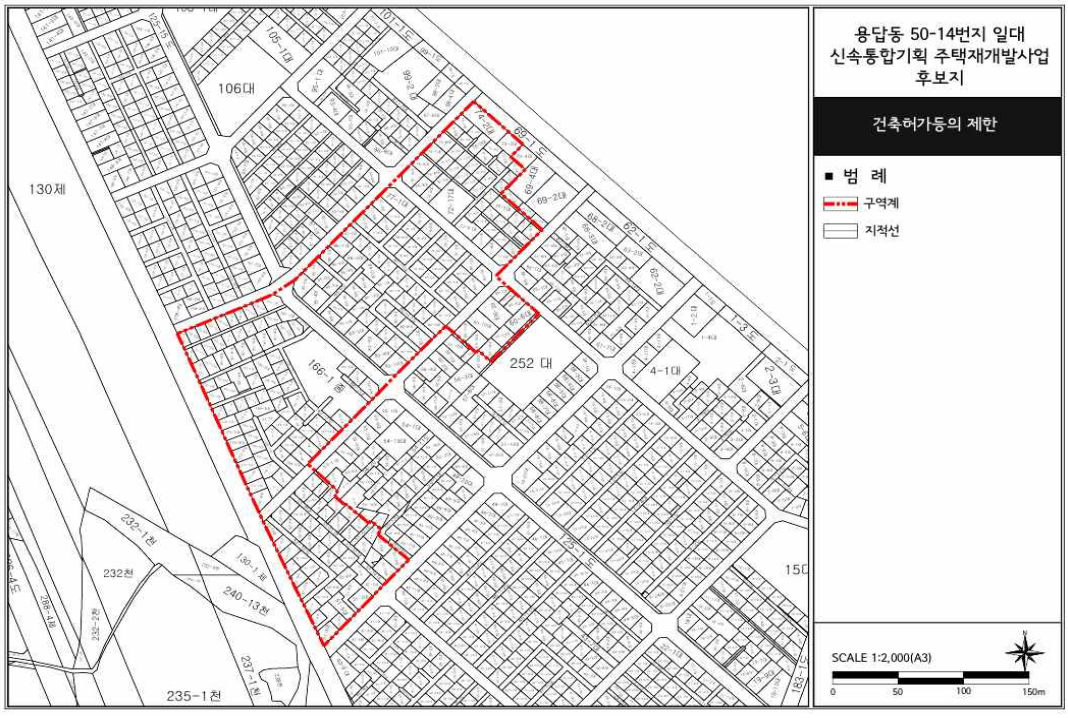

○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

○ 도봉구 창동 608 일대

○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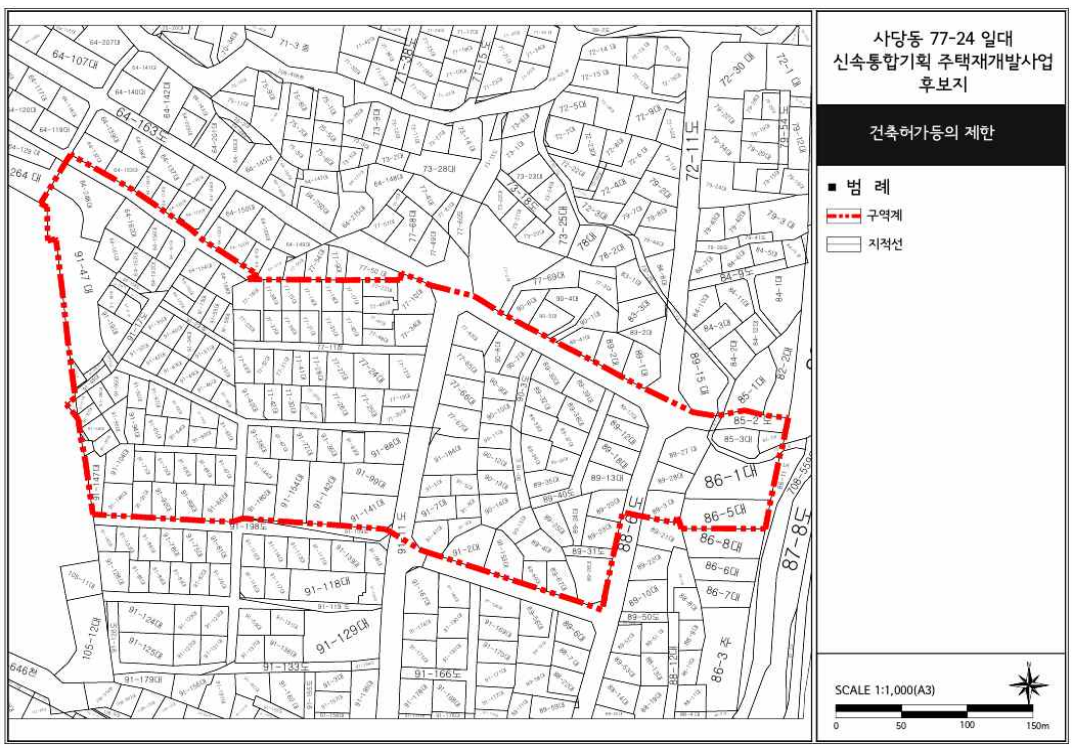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180-3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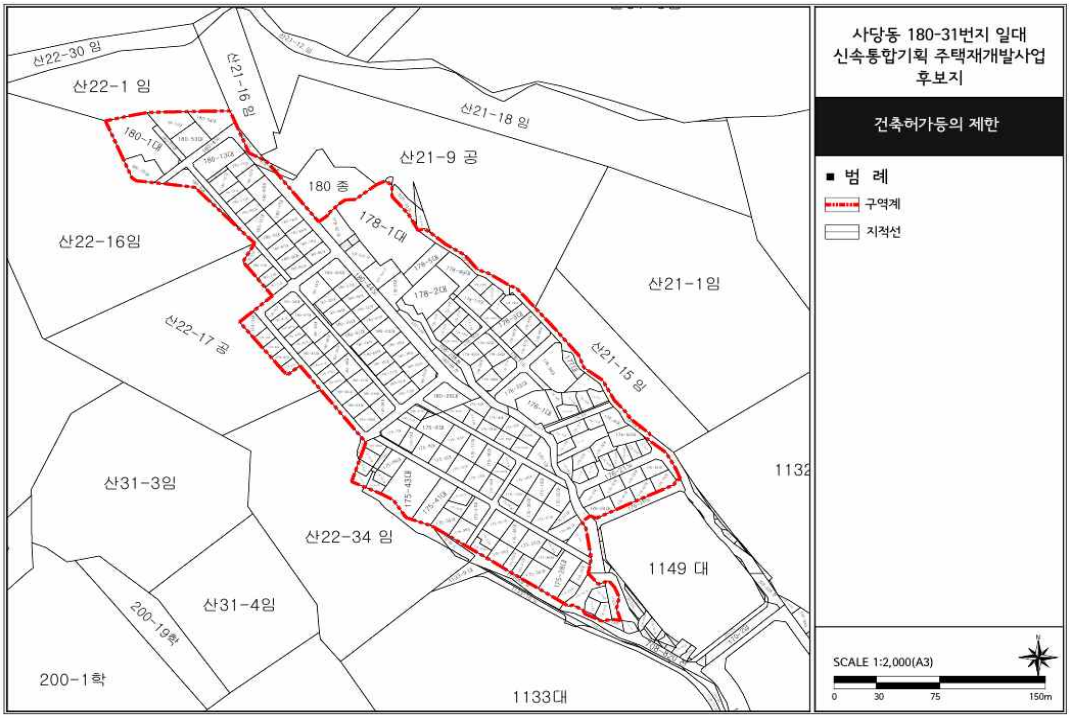

○ 동작구 노량진동 205-26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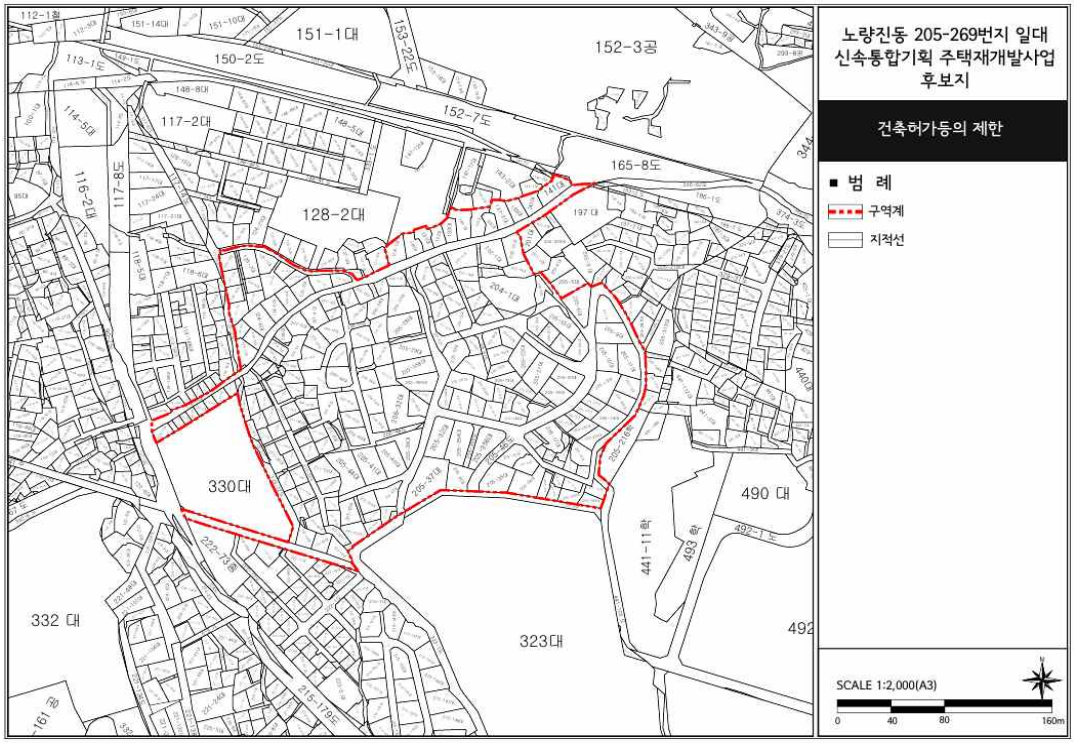

○ 동작구 상도동 20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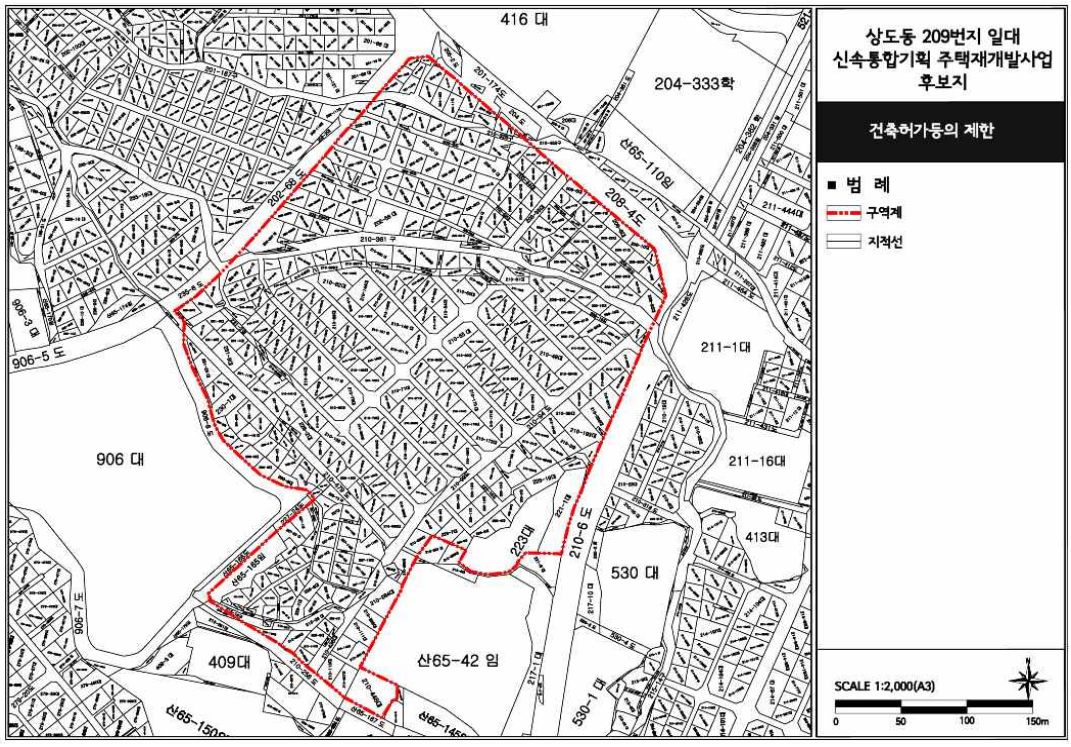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1026-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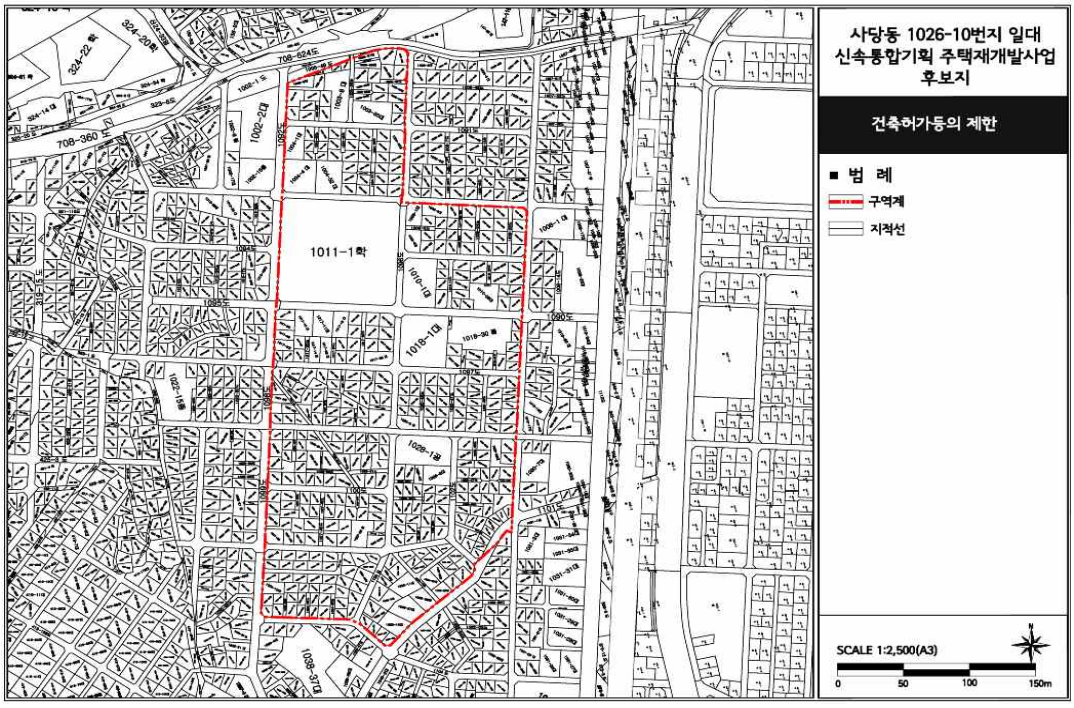

○ 동작구 노량진동 309-5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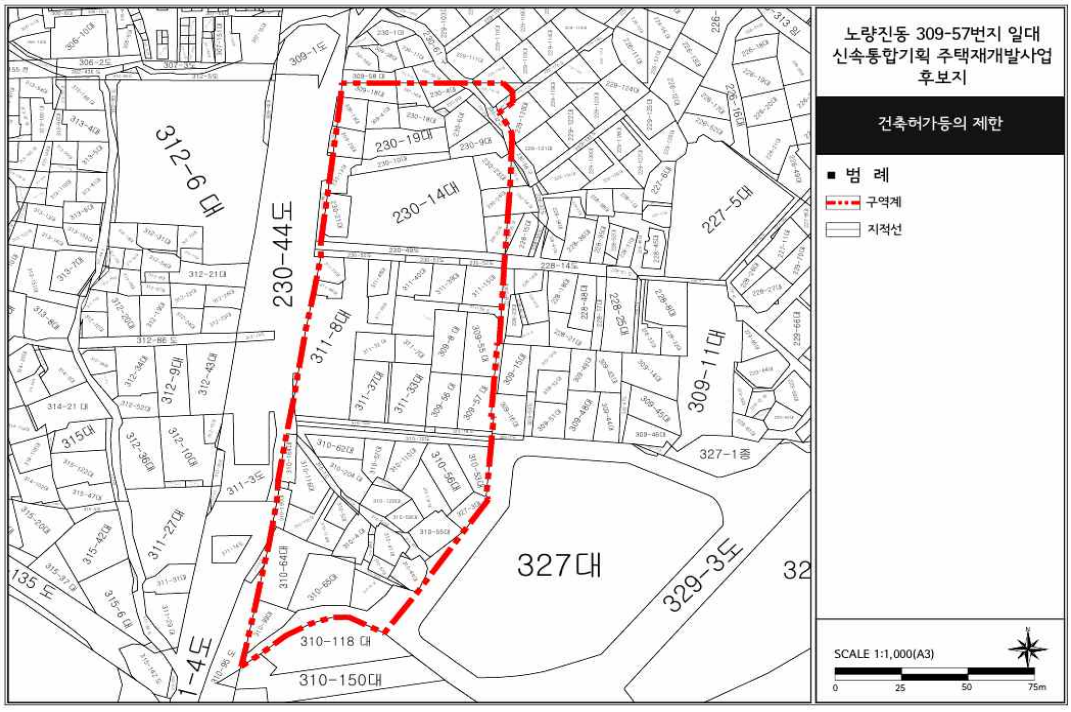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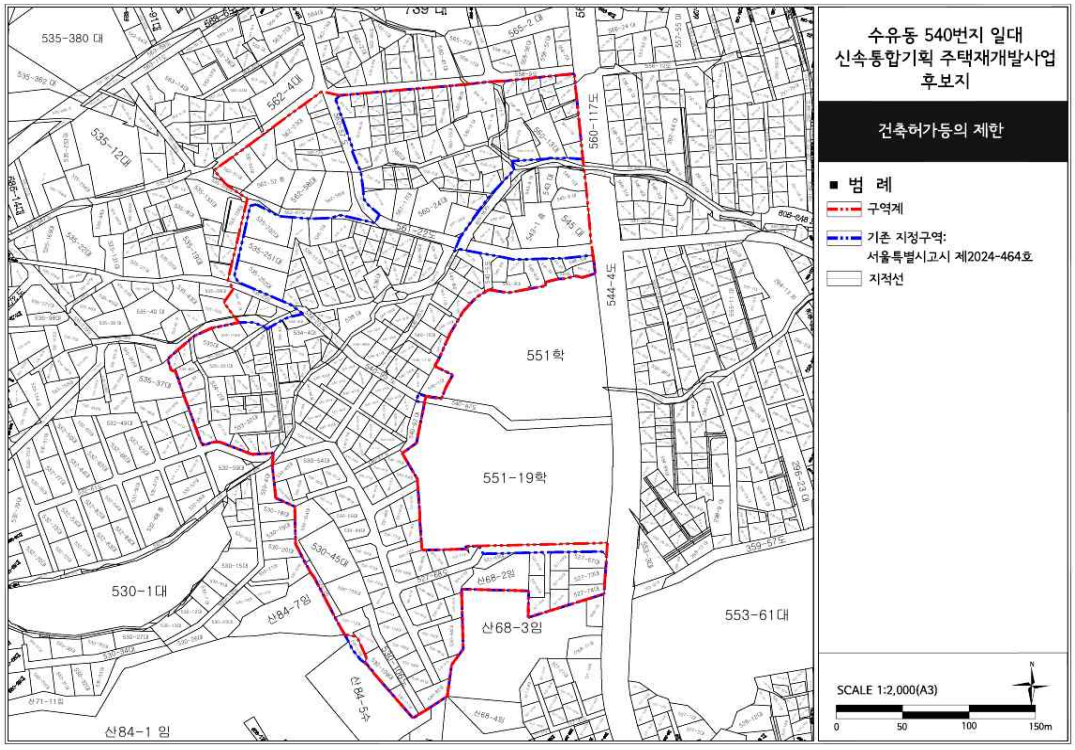

○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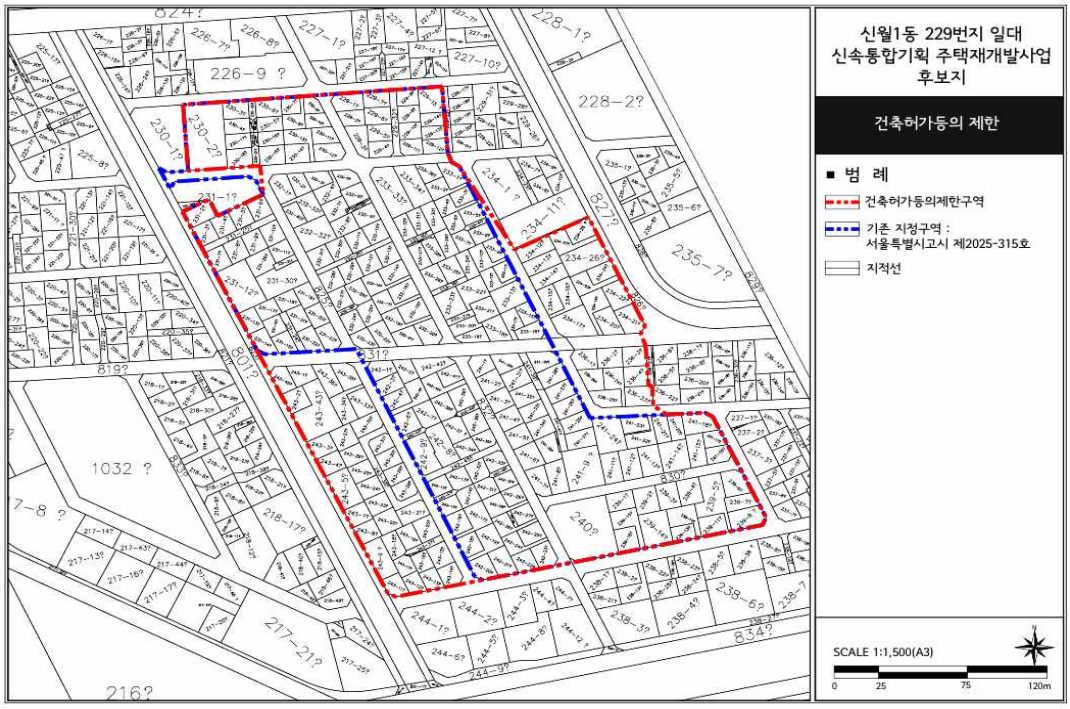

○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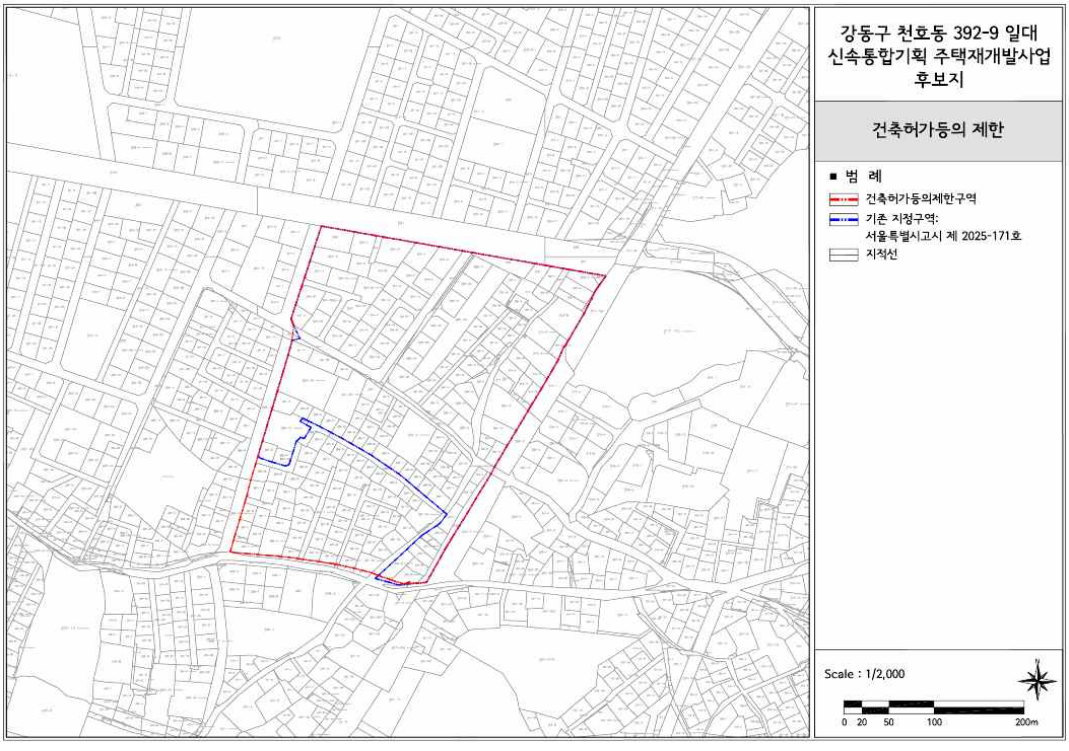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7호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장위동 66-3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원의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660호(2026.04.09.)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장위동 66-3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장위동 66-3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원	-	증) 94,411.1	94,411.1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94,411.1	94,411.1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27,052.6	27,052.6	28.7	-
	도로		-	증) 17,851.9	17,851.9	19.0	-
	공원		-	증) 8,694.7	8,694.7	9.2	-
		공원1	-	증) 5,683.2	5,683.2	6.0	-
		공원2	-	증) 3,011.5	3,011.5	3.2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청사		-	증) 506.0	506.0	0.5	우체국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계	-	증) 67,358.5	67,358.5	71.3	-
	획지1	-	증) 28,647.3	28,647.3	30.3	공동주택
	획지2	-	증) 23,707.3	23,707.3	25.1	공동주택
	획지3	-	증) 12,488.6	12,488.6	13.2	공동주택
	획지4	-	증) 660.9	660.9	0.7	근린생활시설
	획지5	-	증) 558.4	558.4	0.6	근린생활시설
	획지6	-	증) 1,296.0	1,296.0	1.4	종교시설(존치)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94,411.1	-	94,411.1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4,050.3	감) 51,890.9	22,159.4	2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60.8	감) 12,952.3	7,408.5	7.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2,488.6	12,488.6	13.2	-
	준주거지역	-	증) 52,354.6	52,354.6	55.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장위동 66-300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52,354.6	410.3 이하	• 돌곶이 · 상월곡(6호선)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정비하고 서민 주거안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통합)	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용도지역을 상향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488.6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3.68%
⇒ (2,062,831,165천원 - 1,425,591,000천원) / 614,572,875.9천원 X 100 = 103.68%
- 총 수입 추정 : 2,062,831,165천원
- 총 지출 추정 : 1,425,591,000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614,572,875.9천원 (국공유지 및 청산자 제외)</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 이론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 단계에서는 개별공시가격 등을 기준하여 산정함
• 본건 사업지 내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현실화율 등을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함
•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 내용연수별로 감가수정하여 해당 건물가격을 산정하였음
• 집합건물은 본건 사업지 내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현실화율 등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곱하여 산정함</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추정분담금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tr><td>전용 115형
(114.5㎡)</td><td>946백만 원</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3.68%)</td><td rowspan="4">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tr><td>전용 84형
(84.9㎡)</td><td>771백만 원</td></tr><tr><td>전용 59형
(59.9㎡)</td><td>607백만 원</td></tr><tr><td>전용 39형 (39.9㎡)</td><td>399백만 원</td></tr></table></td></tr>
</table>

주1) 본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식 감정평가시 종전자산 및 분양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소유자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 면적 기입이 누락 가능성이 있어 추후 면적 확정에 따른 추정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산출근거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조합원 총재산)

= (A - B) / C

= 103.68%

총 수입(종후자산) : A

구분			공급면적 (㎡)	공급세대	분양가 (천원/세대)	총 수입(천원)
합계 (공동주택)			-	2,617	-	2,062,831,165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	115형	144.1	39	946,000	36,894,000
		84형	111.8	455	771,000	350,805,000
		59형	82.2	292	607,000	177,244,000
		39형	57.9	18	399,000	7,182,000
		소계	-	804	-	572,125,000
	일반 분양	115형	144.1	49	1,574,000	77,126,000
		84형	111.8	577	1,285,000	741,445,000
		59형	82.2	371	1,012,000	375,452,000
		39형	57.9	26	666,000	17,316,000
		소계	-	1,023	-	1,211,339,000
	임대주택	84형	111.8	330	-	98,122,700
		59형	82.2	319	-	73,559,800
		39형	57.9	141	-	37,929,000
		소계	-	790	-	209,611,500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5,480.04	-		69,755,665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가2	18	국지도로	462	상월곡동 27-24	장위동 66-110	일반 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가5	8	국지도로	166	장위동 65-137	장위동 65-9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가3	8	국지도로	75	장위동 65-192	장위동 65-139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4	6	국지도로	23	장위동 65-201	장위동 65-20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6	6	국지도로	47	장위동 66-191	장위동 66-18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7	6	국지도로	113	장위동 66-127	장위동 66-20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가8	6	국지도로	85	장위동 66-334	장위동 68-73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9	4	국지도로	24	장위동 64-95	장위동 64-94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도로	9,500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석관동	일반도로	-	건고시267 (`71.06.10)	-
변경	대로	1	13	35~38	간선도로	9,500 (200)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석관동	일반도로	-	건고시267 (`71.06.10)	도로선형 변경 (3m확폭)
기정	중로	3	-	12	-	30	장위동 65-174	장위동 66-196	-	-	-	-
변경	중로	2	가1	18	국지도로	150	장위동 65-171	장위동 66-30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A	15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도로	-	서고시240 (`19.07.25.)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대로	3	B	27~30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
기정	소로	3	234	6	-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3	일반 도로	-	서고시3 (`69.01.18.)	-
변경	소로	1	234	10~12	국지도로	450 (130)	장위동 64-115	장위동 66-6	일반 도로	-	서고시3 (`69.01.18.)	-
폐지	소로	3	-	6	-	62	상월곡동 7-149	상월곡동 27-19	일반 도로	-	서고시169 (`82.04.27.)	-
폐지	소로	1	-	10	국지도로	68	장위동 69-49	장위동 68-1320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2-가2	-도로신설 : B:18m, L:462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2-가5	-도로신설 : B:8m, L:166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2-가3	-도로신설 : B:8m, L:75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4	-도로신설 : B:6m, L:23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가6	-도로신설 : B:6m, L:47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7	-도로신설 : B:6m, L:113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8	-도로신설 : B:6m, L:85m	· 존치구역 진·출입로 계획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9	-도로신설 : B:4m, L:24m	· 제척부지 진·출입로 계획을 위한 도로 신설
대로1-13	대로1-13	-도로폭 변경 : B:35m→38m, L:9,500(200)m	· 회랑로 진출을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계획
중로3-	중로2-가1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12m→18m, L:30m→150m	· 회랑로 진입로 및 대상지 진·출입구 계획을 위한 도로폭 및 연장 변경
중로3-A	대로3-B	-도로폭 변경 : B:15m→27~30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폭 변경
소로3-234	소로1-234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6m→10~12m, L:220m→450(130)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폭 및 연장 변경
소로3-	-	-도로폐지 : B:6m, L:62m→0m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폐지
소로1-	-	-도로폐지 : B:10m, L:68m→0m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영주차장	장위동 272-71	-	증) 3,011.5	3,011.5	-	공원② 중복결정
폐지	①	노외주차장	장위동 68-201	400.0	감) 400.0	-	성북구고시13 (`99.02.08.)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신설 - 수평투영면적 : 1,561.71㎡ - 위치 : 지하1층 - 주차대수 : 47대	· 지역 내 생활SOC시설 확충 및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①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64-44	-	증) 5,683.2	5,683.2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272-71	-	증) 3,011.5	3,011.5	-	주차장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공원 신설 - 위치 : 장위동 64-44 - 면적 : 5,683.2㎡	• 유동인구가 많은 돌곶이역 인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신설
②	공원	공원 신설 - 위치 : 장위동 272-71 - 면적 : 3,011.5㎡	• 장위시장 인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우체국	장위동 65-176	-	증) 506.0	506.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장위동 65-176 - 면적 : 506.0㎡	• 기존 서울석관동우체국 부지 조정 및 건축물 신설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설치기준		면적(㎡)			비고
			기준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획지 1,2,3	1,000세대 이상 500㎡+세대수×0.7	2,331.9	-	증) 3,603.8	3,603.8	-
	주민운동시설		-	-	-	증) 1,060.0	1,060.0	
	경로당		2,000세대 이상 725㎡+(세대수-2,000세대)×0.2	848.4	-	증) 1,208.9	1,208.9	
	작은도서관		2,000세대 이상 298㎡+(세대수-2,000세대)×0.1	359.7	-	증) 510.5	510.5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 66㎡이상	66.0	-	증) 240.0	240.0	
	어린이집		2,000세대 이상 725㎡+(세대수-2,000세대)×0.2	848.4	-	증) 1,208.9	1,208.9	
	계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 500㎡+세대수×2.0㎡×1.25이상	7,042.5	-	증) 7,832.1	7,832.1	
커뮤니티지원시설 (권장사항)		획지1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 이상 권장 (최소 450㎡이상)	-	-	증) 859.4	859.4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돌곶이 · 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4,411.1	획지1	28,647.3	장위동 66-242번지 일대	381	-	-	381	-	-
			획지2	23,707.3	상월곡동 7-124번지 일대						
			획지3	12,488.6	장위동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68-845번지 일대						
			획지4	660.9	장위동 65-200번지 일대						
			획지5	558.4	장위동 65-196번지 일대						
			획지6	1,296.0	장위동 68-722 번지	1	1	-	-	-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4,411.1	획지1	28,647.3	장위동 66-242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기준 190.0 상한 246.0 법적상한 438.3이하	139m이하/ 최고 45층이하	-
			획지2	23,707.3	상월곡동 7-124 번지 일대			기준 190.0 상한 249.4 법적상한 439.7이하	139m이하/ 최고 45층이하	
			획지3	12,488.6	장위동 68-845 번지 일대		50이하	기준 190.0 상한 213.1 법적상한 290.1이하	90m이하/ 최고 27층이하	
			획지4	660.9	장위동 65-200 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00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
			획지5	558.4	장위동 65-196 번지 일대					
			획지6	1,296.0	장위동 68-722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존치지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2,617세대 - 일반분양 1,827세대, 공공임대주택 : 790세대(장기전세 565세대, 재개발의무 225세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소계	장기전세	재개발의무
합계	2,617세대	1,827세대	790세대	565세대	225세대

<table>
<tr><td rowspan="2">결정 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률(%)</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d rowspan="2">비고</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r>
<tr><td></td><td colspan="9">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분(전용면적)</td><td rowspan="2">합계</td><td rowspan="2">분양주택</td><td colspan="3">공공임대주택</td></tr>
<tr><td>소계</td><td>장기전세</td><td>재개발의무</td></tr>
<tr><td colspan="2"></td><td>(100.0%)</td><td>(69.8%)</td><td>(30.2%)</td><td>(21.6%)</td><td>(8.6%)</td></tr>
<tr><td rowspan="4">공동주택</td><td>40㎡미만</td><td>185세대 (7.1%)</td><td>44세대</td><td>141세대</td><td>-</td><td>141세대</td></tr>
<tr><td>40~60㎡미만</td><td>982세대 (37.5%)</td><td>663세대</td><td>319세대</td><td>272세대</td><td>47세대</td></tr>
<tr><td>60~85㎡미만</td><td>1,362세대 (52.0%)</td><td>1,032세대</td><td>330세대</td><td>293세대</td><td>37세대</td></tr>
<tr><td>85㎡이상</td><td>88세대 (3.4%)</td><td>88세대</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9">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도시정비법 제54조 적용)
<table>
<tr><td>①법적상한용적률</td><td>②상한용적률 (정비계획)</td><td>초과용적률 (①-②)</td><td>초과용적률의 50%적용</td></tr>
<tr><td>410.3%</td><td>240.9%</td><td>169.4%</td><td>84.7%</td></tr>
</table>
※ 서울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50%(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인동거리 완화 0.5H→0.42H(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함)
</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td></tr>
<tr><td rowspan="2">기타계획</td><td>전면공지</td><td colspan="8">보도형 전면공지 3m 조성(도면참조)</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8">공공보행통로 2개소(폭원 12m) 설치(도면참조)
※ 지역권 설정</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1) 획지1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rowspan="2">획지1
(공동주택)
(㎡)</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r>
<tr><td>공원</td></tr>
<tr><td>94,411.1</td><td>28,647.3</td><td>8,694.7</td><td>523.5㎡</td><td>1,676.5㎡</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5">• 8,694.7㎡(신설 정비기반시설) − 523.5㎡(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676.5㎡(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6,494.7㎡(획지면적 대비 22.7%)</td></tr>
<tr><td>상한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190.0%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246.0%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0.7 × α현금)
= 190.0% × (1 + 1.3 × 1.0 × 0.2267)
= 246.0%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694.7㎡−523.5㎡−1,676.5㎡) ÷ 28,647.3㎡ = 0.2267
· α건축물, α현금 = 해당없음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사업부지 용적률) = 1.0

• 법적상한용적률 : 438.3%이하
− 장기전세주택 공급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colspan="2">장기전세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438.3% − 246.0%) × 1/2 = 96.15% 이상
= 96.15%이상(연면적 27,544.4㎡ 이상) 〈 계획 96.37%(연면적 27,607.2㎡)</td></tr>
</table>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2">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또는 장수명주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권장)</td><td>•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2% 이상)
⇒ 859.4㎡ 계획(0.7%)</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구분</td><td>산정내용</td></tr>
<tr><td></td><td>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계획내용</td></tr>
<tr><td></td><td>친환경 건축물</td><td>•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td><td>역사문화보전</td><td>• 해당없음</td></tr>
</table>
</td></tr>
</table>

2) 획지2

<table>
<tr><td>구분</td><td colspan="5">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rowspan="2">획지2
(공동주택)
(㎡)</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r>
<tr><td>도로</td></tr>
<tr><td>94,411.1</td><td>23,707.3</td><td>10,000.0</td><td>2,350.0㎡</td><td>1,950.0㎡</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5">• 10,000.0㎡(신설 정비기반시설) - 2,350.0㎡(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950.0㎡(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5,700.0㎡(획지면적 대비 24.0%)</td></tr>
<tr><td>상한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190.0%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249.4%
= 기준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 0.7 X α현금)
= 190.0% X (1 + 1.3 X 1.0 X 0.2404)
= 249.4%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0,000.0㎡-2,350.0㎡-1,950.0㎡) ÷ 23,707.3㎡ = 0.2404
· α건축물, α현금 = 해당없음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사업부지 용적률) = 1.0

• 법적상한용적률 : 439.7%이하
- 장기전세주택 공급</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장기전세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439.7% - 249.4%) × 1/2 = 95.15% 이상
= 95.15% 이상(연면적 22,557.5㎡ 이상) 〈 계획 95.42%(연면적 22,622.4㎡)</td></tr>
</table>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4">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권장)</td><td>• 해당없음</td></tr>
<tr><td>친환경 건축물</td><td>•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 해당없음</td></tr>
</table>
</td></tr>
</table>

3) 획지3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rowspan="2">획지3
(공동주택)
(㎡)</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colspan="3">건축물 기부채납(㎡)
(공영주차장)</td><td rowspan="2">신설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r>
<tr><td>도로</td><td>소계</td><td>환산면적</td><td>대지지분</td></tr>
<tr><td>94,411.1</td><td>12,488.6</td><td>7,851.9</td><td>758.1</td><td>758.1</td><td>-</td><td>1,795.4㎡</td><td>5,295.3㎡</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8">• 7,851.9㎡(신설 정비기반시설) + 758.1㎡(건축물 기부채납) - 1,795.4㎡(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5,295.3㎡(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519.3㎡(획지면적 대비 12.2%)</td></tr>
<tr><td>상한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190.0%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213.1%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0.7 × α현금)
= 190.0% × (1 + 1.3 × 1.0 × 0.0609 + 0.7 × 0.0607)
= 213.1%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7,851.9㎡-1,795.4㎡-5,295.3㎡) ÷ 12,488.6㎡ = 0.0609
· α건축물 = 건축물등 부지(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 ÷ 건축물등 부지(공공시설) 제공한 후 대지면적
= 758.1㎡ ÷ 12,488.6㎡ = 0.0607
· α현금 = 해당없음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사업부지 용적률) = 1.0

• 법적상한용적률 : 290.1%이하
- 장기전세주택 공급</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290.1% - 213.1%) × 1/2 = 38.5% 이상 = 38.5% 이상(연면적 4,808.1㎡ 이상) < 계획 39.1%(연면적 4,886.2㎡)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

구분		계획내용
서울형 주거환경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구분	산정내용
	구분 / 계획내용
정책	커뮤니티 지원시설(권장) • 해당없음
정책	친환경 건축물 •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정책	역사문화보전 • 해당없음

4) 통합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 (㎡)	신설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공영주차장)			신설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소계	도로	공원	소계	환산면적	대지지분		
	94,411.1	64,843.2	26,546.6	17,851.9	8,694.7	758.1	758.1	-	4,668.9㎡	8,921.8㎡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26,546.6㎡(신설 정비기반시설) + 758.1㎡(건축물 기부채납) - 4,668.9㎡(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8,921.8㎡(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3,714.0㎡(획지면적 대비 19.6%)									
상한 (정비계획) 용적률	• 기준용적률: 190.0%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 상한용적률 : 240.9%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0.7 × α현금) = 190.0% × (1 + 1.3 × 1.0 × 0.1998 + 0.7 × 0.0117) = 240.9%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6,546.6㎡-4,668.9㎡-8,921.8㎡) ÷ 64,843.2㎡ = 0.1998 · α건축물 = 건축물등 부지(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 ÷ 건축물등 부지(공공시설) 제공한 후 대지면적 = 758.1㎡ ÷ 64,843.2㎡ = 0.0117 · α현금 = 해당없음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0%(사업부지 용적률) = 1.0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

• 법적상한용적률 : 410.3%이하

- 장기전세주택 공급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장기전세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410.3% - 240.9%) × 1/2 = 84.7% 이상
= 84.7% 이상(연면적 54,922.2㎡ 이상) < 계획 85.0%(연면적 55,115.8㎡)</td></tr>
</table>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4">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권장)</td><td>•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2% 이상)
⇒ 859.4㎡ 계획(0.3%)</td></tr>
<tr><td>친환경 건축물</td><td>•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 해당없음</td></tr>
</table>

</td></tr>
</table>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산정

• 공공기여 기준 면적 : 17,407.9㎡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법적상한용적률 X 부지면적
= (410.3% - 190.0%) ÷ 2 ÷ 410.3% X 64,843.2㎡ = 17,407.9㎡
• 공공기여량 : 17,407.9㎡(기준) < 27,326.7㎡(계획)
= 신설 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 장기전세주택 토지지분 -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6,546.6㎡ + 758.1㎡ + 13,612.7㎡ - 4,668.9㎡ - 8,921.8㎡ = 27,326.7㎡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구분			면적	비고
①	토지	도로	17,851.9㎡	-
		공원	8,694.7㎡	-
②	건축물	공영주차장	758.1㎡	-
③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4,668.9㎡	-
④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8,921.8㎡	
순부담 면적 합계(①+②-③-④)			13,714.0㎡(종상향 면적대비 21.1%)	
장기전세주택 대지지분(706세대)			13,612.7㎡(종상향 면적대비 21.0%)	
총 공공기여 면적			27,326.7㎡(종상향 면적대비 42.1%)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2) 장기전세주택 대지지분 면적은 현재 건축계획(안)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며, 향후 사업시행 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3)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함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규모(전용㎡)	세대수(세대)	비율(%)
총 건립세대수		-	2,617	100.0
소유주 및 일반분양		39.9㎡, 59.9㎡, 84.9㎡, 114.5㎡	1,827	69.8
소계		-	790	30.2
	장기전세주택	59.9㎡, 84.9㎡	565	21.6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39.9㎡, 59.9㎡, 84.9㎡	225	8.6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획지1	28,647.3	소셜믹스	75세대	39.9㎡	-
			13세대	59.9㎡	-
			13세대	84.9㎡	-
	계		100세대	세대수 667세대[1,241세대(총 세대수) - 574세대(법적상한용적률에 의해 증가된 건축계획 세대수)] × 15% = 100.0세대 이상 〈 계획 100세대(기준충족)	
획지2	23,707.3	소셜믹스	41세대	39.9㎡	-
			25세대	59.9㎡	-
			15세대	84.9㎡	-
	계		81세대	세대수 536세대[996세대(총 세대수) - 461세대(법적상한용적률에 의해 증가된 건축계획 세대수)] × 15% = 80.2세대 이상 〈 계획 81세대(기준충족)	
획지3	12,488.6	소셜믹스	25세대	39.9㎡	-
			9세대	59.9㎡	-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9세대	84.9㎡	-
	계		43세대	세대수 271세대[380세대(총 세대수) - 97세대(법적상한용적률에 의해 증가된 건축계획 세대수)] × 15% = 42.5세대 이상 〈 계획 43세대(기준충족)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_22.12.11)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_22.12.12) 적용

※ 건설규모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산출식 : 주택 전체 세대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역세권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획지1	28,647.3	소셜믹스	140세대	59.9㎡	27,607.2㎡ (공급면적)
			144세대	84.9㎡	
	계		284세대	(438.3% - 246.0%) × 50% × 28,647.3㎡ = 27,544.4㎡ = 27,544.4㎡ 이상 〈 계획 27,607.2㎡(기준충족)	
획지2	23,707.3	소셜믹스	112세대	59.9㎡	22,622.4㎡ (공급면적)
			120세대	84.9㎡	
	계		232세대	(439.7% - 249.4%) × 50% × 23,707.3㎡ = 22,557.5㎡ = 22,557.5㎡ 이상 〈 계획 22,622.4㎡(기준충족)	
획지3	12,488.6	소셜믹스	20세대	59.9㎡	4,886.2㎡ (공급면적)
			29세대	84.9㎡	
	계		49세대	(290.1% - 213.1%) × 50% × 12,488.6㎡ = 4,808.1㎡ = 4,808.1㎡ 이상 〈 계획 4,886.2㎡(기준충족)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자연환경 :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 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 사업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 내 차속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재난방지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 내 동선체계 구축 • 비상시 보행자동선이 비상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로 유도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황	증감	계획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1,149	1,468	2,617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장위초등학교 –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유치원 (예정부지) 한국예술종합학교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대상지는 교육환경평가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교육환경평가심의를 득하도록 함	200m 이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영역성 확보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 색채 등을 달리하여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계획	-
활동의 활성화	•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조경기준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조명기준	• 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명칭	위치	면적	
신설	-	94,411.1	획지1	장위동 66-242번지 일대	28,647.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상월곡동 7-124번지 일대	23,707.3㎡	
			획지3	장위동 68-845번지 일대	12,488.6㎡	
신설	-		획지4	장위동 65-200번지 일대	660.9㎡	근린생활시설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명칭	위치	면적	
			획지5	장위동 65-196번지 일대	558.4㎡	
신설	-		획지6	장위동 68-722번지	1,296.0㎡	종교시설 (존치구역)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15.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생태면적률	30%	○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포장 등 적용
	2.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 기존 사업지는 평지로서 지형변화는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생활환경	3.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건축선 이격 및 동간배치를 통한 일조 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법정 인동간격 유지
	4.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저층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위치	• 인동간격과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5.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건축심의시 반영예정
	6.경관	Skyline보전	○	• 스카이라인 변화예상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면적률	30%	○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포장 등 적용
	2.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 기존 사업지는 평지로서 지형변화는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생활 환경	3.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건축선 이격 및 동간배치를 통한 일조 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법정 인동간격 유지
	4.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저층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위치	• 인동간격과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5.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건축심의시 반영예정
	6.경관	Skyline보전	○	• 스카이라인 변화예상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확보
	7.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8.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X	• 보행자전용도로 미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보관소 설치검토	• 공동주택 단지 내 계획예정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추가	9.소음 및 진동		○	• 가설방음판넬을 설치 • (공사구간에 따라 필요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10.폐기물		○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 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 대책마련
	11.물순환(수질)		○	• 운영 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원	-	증)94,411.1	94,411.1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신설 - 면적 : 94,4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4,411.1	-	94,411.1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4,050.3	감)51,890.9	22,159.4	2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60.8	감)12,952.3	7,408.5	7.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2,488.6	12,488.6	13.2	-
	준주거지역	-	증)52,354.6	52,354.6	55.5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2,354.6	410.3 이하 (통합)	돌곶이 · 상월곡(6호선)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정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용도지역을 상향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488.6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가2	18	국지도로	462	상월곡동 27-24	장위동 66-110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가5	8	국지도로	166	장위동 65-137	장위동 65-9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가3	8	국지도로	75	장위동 65-192	장위동 65-139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4	6	국지도로	23	장위동 65-201	장위동 65-20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6	6	국지도로	47	장위동 66-191	장위동 66-18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7	6	국지도로	113	장위동 66-127	장위동 66-20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8	6	국지도로	85	장위동 66-334	장위동 68-73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가9	4	국지도로	24	장위동 64-95	장위동 64-94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도로	9,500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석관동	일반도로	-	건고시267 (`71.06.10)	-
변경	대로	1	13	35~38	간선도로	9,500 (200)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석관동	일반도로	-	건고시267 (`71.06.10)	도로선형 변경 (3m확폭)
기정	중로	3	-	12	-	30	장위동 65-174	장위동 66-196	-	-	-	-
변경	중로	2	가1	18	국지도로	150	장위동 65-171	장위동 66-307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A	15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
변경	대로	3	B	27~30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
기정	소로	3	234	6	-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3	일반 도로	-	서고시3 (`69.01.18.)	-
변경	소로	1	234	10~12	국지도로	450 (130)	장위동 64-115	장위동 66-6	일반 도로	-	서고시3 (`69.01.18.)	-
폐지	소로	3	-	6	-	62	상월곡동 7-149	상월곡동 27-19	일반 도로	-	서고시169 (`82.04.27.)	-
폐지	소로	1	-	10	국지도로	68	장위동 69-49	장위동 68-1320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2-가2	-도로신설 : B:18m, L:462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2-가5	-도로신설 : B:8m, L:166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2-가3	-도로신설 : B:8m, L:75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4	-도로신설 : B:6m, L:23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6	-도로신설 : B:6m, L:47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7	-도로신설 : B:6m, L:113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가8	-도로신설 : B:6m, L:85m	· 존치구역 진·출입로 계획을 위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가9	-도로신설 : B:4m, L:24m	· 제척부지 진·출입로 계획을 위한 도로 신설
대로1-13	대로1-13	-도로폭 변경 : B:35m→38m, L:9,500(200)m	· 화랑로 진출을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계획
중로3-	중로2-가1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12m→18m, L:30m→150m	· 화랑로 진입로 및 대상지 진·출입구 계획을 위한 도로폭및 연장 변경
중로3-A	대로3-B	-도로폭 변경 : B:15m→27~30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폭 변경
소로3-234	소로1-234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6m→10~12m, L:220m→450(130)m	·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폭 및 연장 변경
소로3-	-	-도로폐지 : B:6m, L:62m→0m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폐지
소로1-	-	-도로폐지 : B:10m, L:68m→0m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폐지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영주차장	장위동 272-71	-	증) 3,011.5	3,011.5	-	공원② 중복결정
폐지	①	노외주차장	장위동 68-201	400.0	감) 400.0	-	성북구고시13 (`99.02.08.)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신설 - 수평투영면적 : 1,561.71㎡ - 위치 : 지하1층 - 주차대수 : 47대	· 지역 내 생활SOC시설 확충 및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①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64-44	-	증) 5,683.2	5,683.2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272-71	-	증) 3,011.5	3,011.5	-	주차장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공원 신설 - 위치 : 장위동 64-44 - 면적 : 5,683.2㎡	• 유동인구가 많은 돌곶이역 인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신설
②	공원	공원 신설 - 위치 : 장위동 272-71 - 면적 : 3,011.5㎡	• 장위시장 인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우체국	장위동 65-176	-	증) 506.0	506.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장위동 65-176 - 면적 : 506.0㎡	• 기존 서울석관동우체국 부지 조정 및 건축물 신설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	획지1	28,647.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	-	획지2	23,707.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	-	획지3	12,48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	-	획지4	660.9㎡	근린생활시설
신설	-	-	획지5	558.4㎡	근린생활시설
신설	-	-	획지6	1,296.0㎡	종교시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	획지1 신설 : 28,647.3㎡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신설	-	획지2 신설 : 23,707.3㎡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신설	-	획지3 신설 : 12,488.6㎡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신설	-	획지4 신설 : 660.9㎡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신설	-	획지5 신설 : 558.4㎡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신설	-	획지6 신설 : 1,296.0㎡	존치지역을 위한 획지 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장위동 66-242번지 일대	용도	허용(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2	상월곡동 7-124번지 일대				
획지3	장위동 68-845번지 일대				
			불허(B)	- 허용용도 이외용도는 불허	-
획지4	장위동 65-200번지 일대	용도	허용(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획지5	장위동 65-196번지 일대		불허(D)	- 허용용도 이외용도는 불허	-
획지6	장위동 68-722번지	용도	허용(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6호의 종교시설	-
			불허(F)	- 허용용도 이외용도는 불허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획지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지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용도계획 수립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준주거지역	60% 이하	획지1,2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획지3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획지4,5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0% 이하	획지6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190%	246.0%	438.3% 이하	준주거지역
신설	획지2	190%	249.4%	439.7% 이하	준주거지역
신설	획지3	190%	213.1%	290.1%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설	획지4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획지5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획지6	관련법규에 따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 획지1

구분		계획내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438.3% - 246.0%) × 1/2 = 96.15% 이상 ⇒ 96.15%이상(연면적 27,544.4㎡ 이상) < 계획 96.37%(연면적 27,607.2㎡)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 지원시설	•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2% 이상) ⇒ 859.4㎡ 계획(0.7%)
	친환경 건축물	•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역사문화보전	• 해당없음

– 획지2

구분		계획내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439.7% - 249.4%) X 1/2 = 95.15% 이상 ⇒ 95.15% 이상(연면적 22,557.5㎡ 이상) 〈 계획 95.42%(연면적 22,622.4㎡)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 지원시설	• 해당없음
	친환경 건축물	•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역사문화보전	• 해당없음

– 획지3

구분		계획내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1/2이상 = (290.1% - 213.1%) X 1/2 = 38.5% 이상 ⇒ 38.5% 이상(연면적 4,808.1㎡ 이상) 〈 계획 39.1%(연면적 4,886.2㎡)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 지원시설	• 해당없음
	친환경 건축물	• 환경 성능 부문 : 우수(그린2등급)이상 •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추가) •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역사문화보전	• 해당없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위치	용적률 완화 사항		비고
신설	획지1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46.0%	-
신설	획지2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49.4%	-
신설	획지3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13.1%	-

다) 건축물 높이계획

구분	획지	높이기준(층수)	비고
신설	획지1	139m 이하(45층 이하)	-
신설	획지2	139m 이하(45층 이하)	-
신설	획지3	90m 이하(27층 이하)	-
신설	획지4	관련법규에 따름	-
신설	획지5	관련법규에 따름	-
신설	획지6	관련법규에 따름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보도형	획지 1,2,3	• 대지 경계부 건축한계선(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 및 도로변 녹지대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향상시켜 가로환경 증진을 도모 ※ 전면공지 보도형 도면 참조
공공보행통로		획지1,3	• 대지 내에서 지역주민 등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조성 ※ 공공보행통로 2개소(폭원 12m) 도면 참조

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계	의무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617	100	790	565	225
40㎡ 이하	185	7.1	141	-	141
50㎡ 초과 ~ 60㎡ 이하	982	37.5	319	272	47
60㎡ 초과 ~ 85㎡ 이하	1,362	52.0	330	293	37
85㎡ 초과	88	3.4	-	-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고시 관련 세부 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199-740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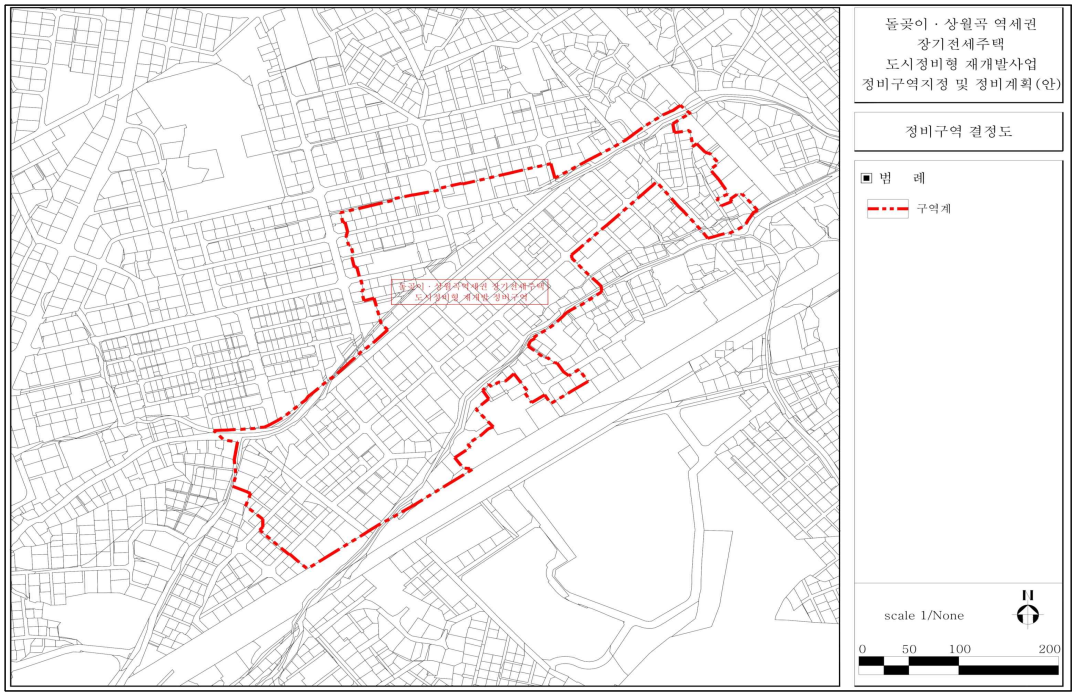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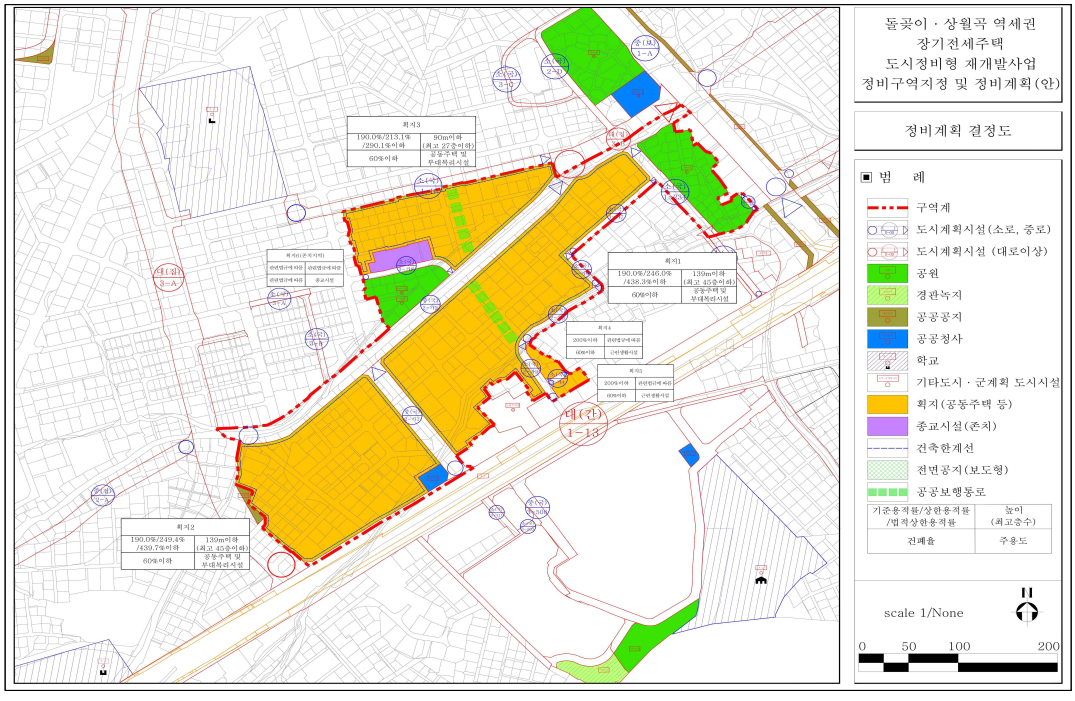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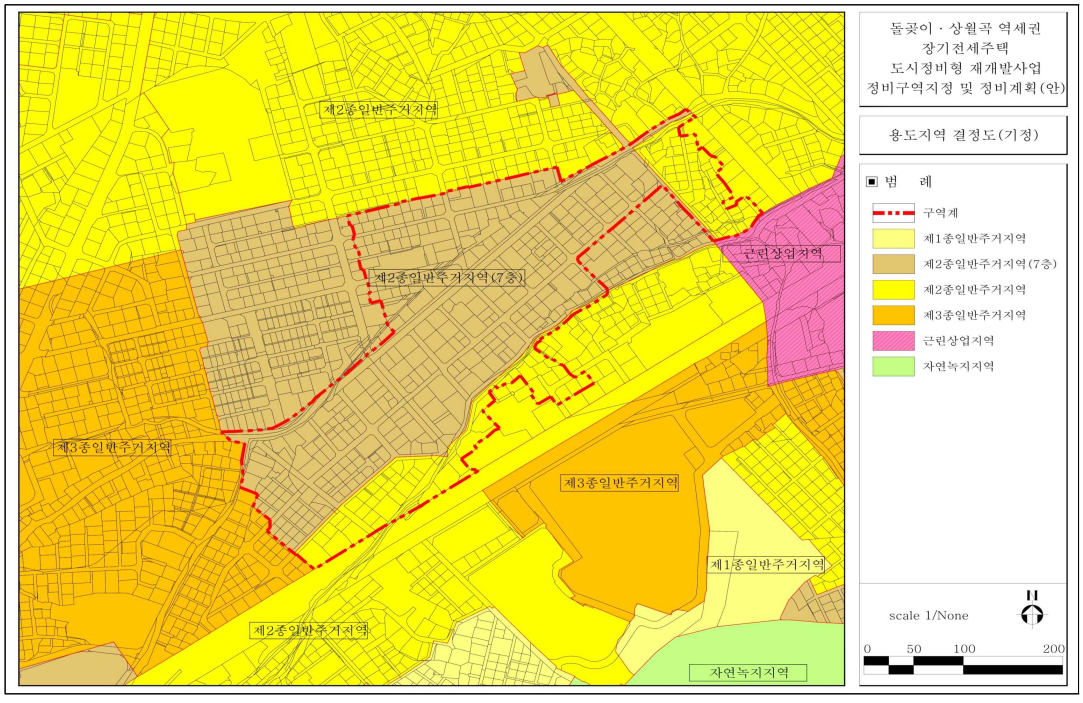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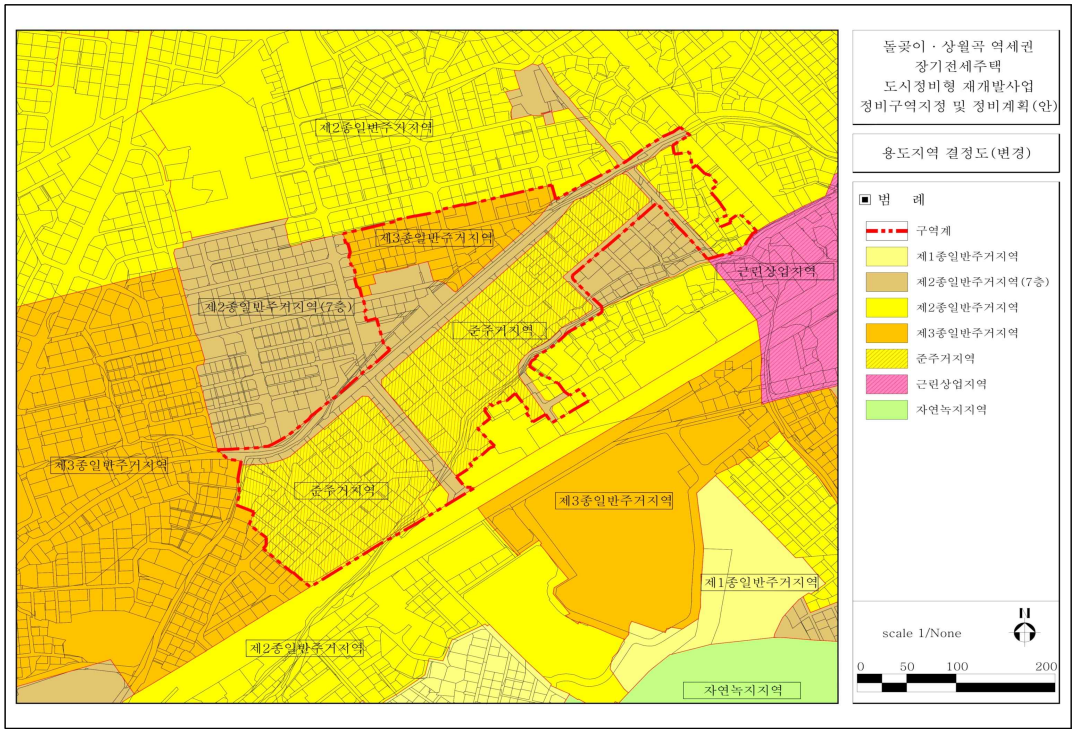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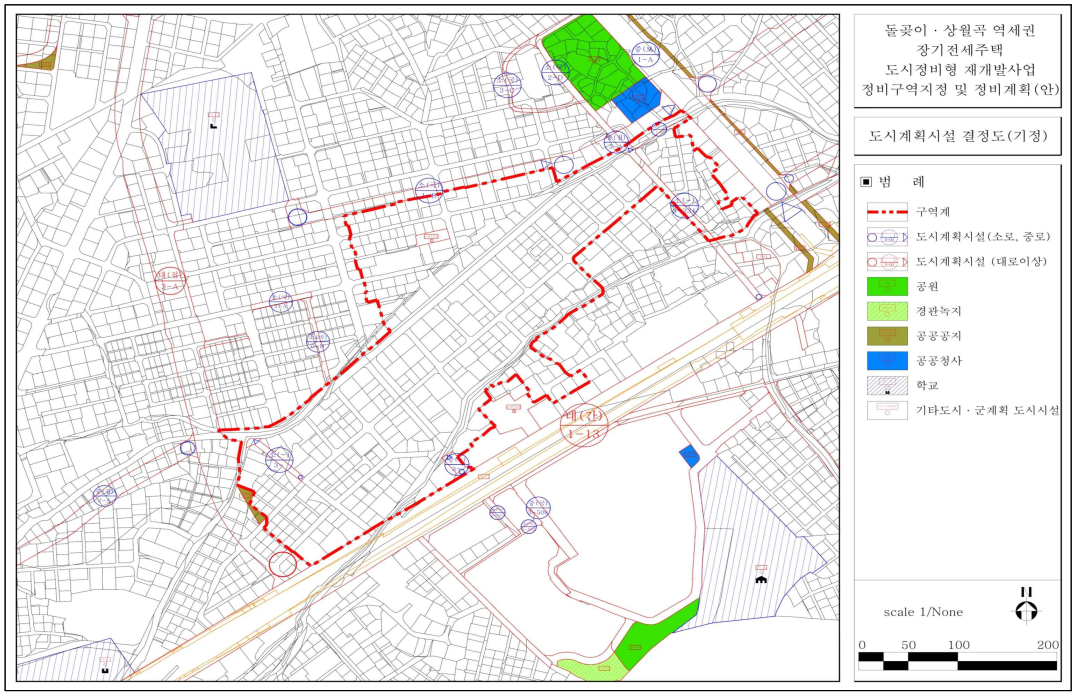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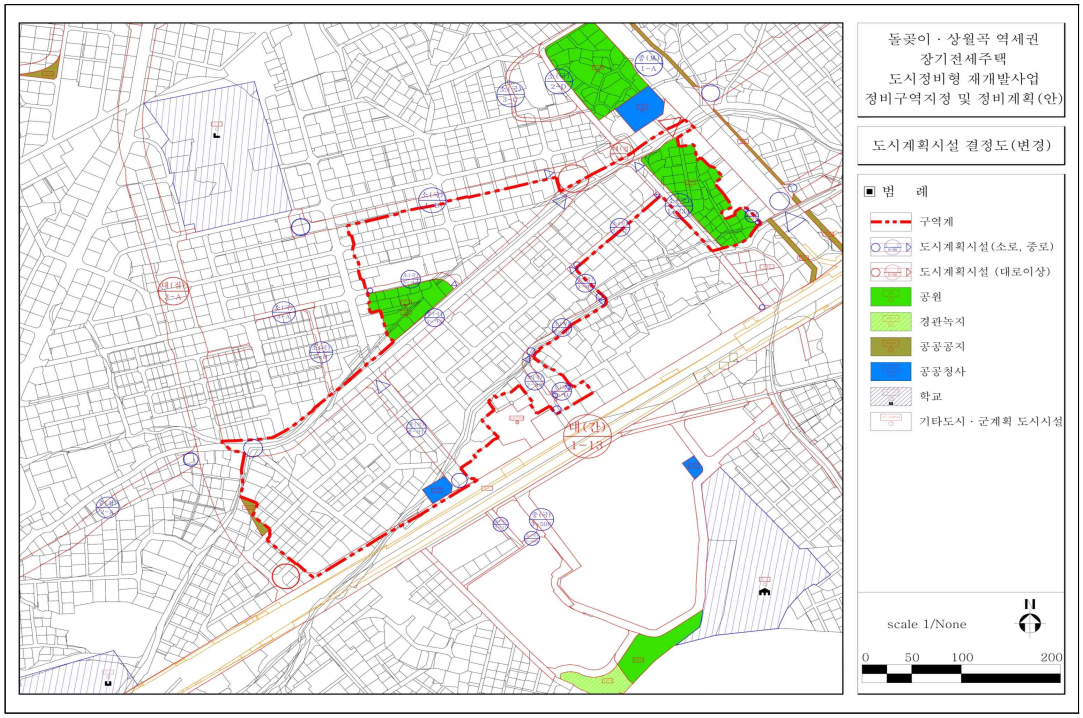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노고산동 31-6 일대	8,657.8	-

나. 정비지구 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일반정비지구	1,576.1	1,464.0	112.1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일반정비지구	2,577.5	2,403.0	174.5	-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구	3,245.0	2,995.9	249.1	-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존치지구	915.3	891.2	24.1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4지구						
	합 계				8,313.9	7,754.1	559.8	-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변경없음)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 역 명	비고
기정	- 민간이 사업시행지구의 정비계획을 변경 제안할 경우 사업시행지구 변경 등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	-
변경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존치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변경사유서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분할 시행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	지구명	획 지		비고
				위치	획지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1,464.0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2,403.0	-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2,995.9	-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891.2	-
변경			4지구			

※ 지구명칭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8,657.8	100.0	-
상업지역	소 계	8,657.8	100.0	
	일반상업지역	8,657.8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반영

※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폐지반영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 분(%)	비고
합계			8,657.8	100	-
정비기반시설	도로		903.7	10.4	-
획지	기정	변경	7,754.1	89.6	-
	3-1지구	1지구	1,464.0	16.9	-
	3-2지구	2지구	2,403.0	27.8	-
	3-3지구	3지구	2,995.9	34.6	-
	3-4지구	4지구	891.2	10.3	존치

※ 상기 사항은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도로	167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 67.07.08)	-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0	노고산동 31-4	노고산동 31-2	일반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 67.07.08)	-

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

구분		시행면적(㎡)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분담면적(㎡)	건축물제공(㎡)	순부담비율(%)	비고
기정	1지구	1,576.1	1,464.0	112.1	-	7.1	-
기정	2지구	2,577.5	2,403.0	174.5	-	6.8	-
기정	3지구	3,245.0	2,995.9	249.1	149.8	12.3	순부담기준 12.3%이상
변경	3지구	3,245.0	2,995.9	249.1	386.0	19.6	
기정	4지구	915.3	891.2	24.1	-	2.6	-
계		8,313.9	7,754.1	559.8	504.5	8.5% 이상	-

※ 향후 존치지구에서 신축하는 경우 3구역 평균 순부담률(8.5%이상) 적용.

■ 변경사유서 :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1,464.0	노고산동 31-77 일대	25	1	-	24	-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2,403.0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891.2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4지구								

※ 지구명칭 변경 외 변경사항 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구분		내용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건축지정선	3-3지구	3m	
	변경	건축한계선	3지구	3m	
	기정	고층부 벽면한계선	3-3지구	백범로변 : 6m	
	변경		3지구		

※ 3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 가로경관의 연속성, 입면의 다양성 등을 고려

8)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 추후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별도 제시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 역 명	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일반상업지역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로 확보한다.	-
변경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거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구분	항 목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고
기정	가로 및 교차로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서), 2020.8」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변경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서), 2024.03」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 주변지역 개발계획반영 외 변경없음 (기재생략)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1. 정비지구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지구 지정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구	3,245.0	2,995.9	249.1	-
변경		3지구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59세대 (계획 288세대)	임대51세대 포함
변경				269세대 (계획 298세대)	임대15세대 포함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해당없음)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249.1	7.7	-
획지	획 지	2,995.9	92.3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면적(㎡)	순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249.1	149.8	12.3	순부담기준 12.3%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249.1	386	19.6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	-

②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 위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98.9	(증)236.2	635.1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토지	도로 (무상귀속)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	249.1	-
		임대주택 부속토지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22세대 부속토지	149.8	(감) 149.8	-	-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일부 토지지분	-	(증) 70.0	70.0	-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일부 토지지분	-	(증) 75.0	75.0	-
	건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일부	-	(증) 116.0	116.0	토지환산면적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일부	-	(증) 125.0	125.0	토지환산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주거비율완화 공공임대주택 삭제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2030 도시 ·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삭제 적용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③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위 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0.0	마포구
				연면적	1,027.7	
공공지원시설	외국인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5.0	서울특별시
				연면적	1,097.9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임대업무시설의 관리청은 마포구, 공공지원시설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로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 · 착공 · 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면 적(㎡)
기정	지하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355.62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2층	주민공동시설 (용역원 휴게실, 입주자 회의실, 택배보관소, 계절창고)	185.22
	합 계			911.28
변경	지하	6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51.51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2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1층	주민공동시설 (스크린골프)	101.64
	지상	1층	주민공동시설 (스터디카페, 피트니스센터, 펫룸)	179.10
		4층	주민공동시설 (루프탑 카페, 어린이 놀이터)	28.83
		5층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66.97
	합 계			1,195.21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18	-	-	18	-	-
변경			3지구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① 기준용적률 : 394%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90% 적용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100%	290% 적용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정률방식 (보상계수 0.25)	최대 100%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12%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최대 50%	50%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22.5% 적용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 인센티브) = 1.3 x {(도로 249.1㎡+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49.8㎡) ÷ (2,995.9㎡-149.8㎡)} x (394% + 290%) = 1.3 x 0.14015 x 684% = 124.62%

※ ① + ② + ③ = 806.5% 이하 적용

변경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694%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 94%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적용(안)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량부여(20%)	최대 20%	20%	94% 적용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부여(3.0)	최대 100%	34%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20%)	최대 20%	20%	
	상·하수도 개량	100m 이상	최대 20%	20%	

③ 상한용적률 : 993% 이하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94.9% 적용

<table>
<tr><td></td><td></td><td>

공공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l.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694.00%×[(1.3×가중치1.0×α토지0.138237) + (1.2×α건축물0.084535)] = 888.9%(완화량 194.9%)

- 친환경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04.1%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 녹색건축 우수 6%)(15%적용)
= 694.00% × (0.15) = 104.1%
→ 친환경 인센티브 = 104.1%

※ 상한용적률 = 600%+94%+194.9%+104.1% = 993% 이하 적용
</td></tr>
<tr><td rowspan="2">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td><td>기정</td><td>• 최고높이 : 100.0m</td></tr>
<tr><td>변경</td><td>• 최고높이 : 155.0m

구 분		내 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 지역중심 : 130m	13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α)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1.0㎡) ÷ 3,245.0㎡ = 130.00m × (635.1㎡÷3,245.0㎡) = 25.44m	25.44m
합 계		① + ② = 155.44m (155m 소수점 아래 절삭)	155.0m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td></tr>
<tr><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기정</td><td>•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15		82.3	
	40㎡ 초과 ~ 60㎡ 이하	222			
공공임대1)	40㎡ 이하	33	51	11.5(64.7)	17.7 (100.0)
	40㎡ 초과 ~ 60㎡ 이하	18		6.2 (35.3)	
합 계		288		100.0	

주1) 공공임대주택 21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149.8㎡) 기부채납
※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지지분 149.8㎡ 이상 범위 내)
※ ( )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td></tr>
<tr><td>변경</td><td>• 건립 규모 및 비율</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 colspan="3">세대수</th><th colspan="2">비율(%)</th></tr>
<tr><td rowspan="4">일반분양</td><td>40㎡ 이하</td><td colspan="3">32</td><td colspan="2" rowspan="4">95.0</td></tr>
<tr><td>40㎡ 초과 ~ 60㎡ 이하</td><td colspan="3">212</td></tr>
<tr><td>60㎡ 초과 ~ 85㎡ 이하</td><td colspan="3">38</td></tr>
<tr><td>85㎡ 초과</td><td colspan="3">1</td></tr>
<tr><td rowspan="2">재개발 의무임대</td><td>40㎡ 이하</td><td>5</td><td rowspan="2">15</td><td>1.7 (34.0)</td><td rowspan="2">5.0
(100.0)</td></tr>
<tr><td>40㎡ 초과 ~ 60㎡ 이하</td><td>10</td><td>3.3 (66.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3">298</td><td colspan="2">100.00</td></tr>
</table>
※ ( )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td></tr>
<tr><td>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td><td>신설</td><td>
• 공공주택 공급계획
<table>
<tr><th>구분</th><th>일반상업지역</th><th>비고</th></tr>
<tr><td>① 재개발 의무 임대</td><td>= 298세대 × 5% = 14.9세대 ⇒ 계획 15세대</td><td></td></tr>
<tr><td>② 총 공공주택 세대수</td><td>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td><td></td></tr>
</table>
• 주거비율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별표16 라목1호에 따라 완화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단,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주거비율 : 전체 연면적 기준 88.5%, 전체 용적률 기준 87.2%
</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r><td>변경</td><td>•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r><td>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td><td>기정</td><td>•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td></tr>
<tr><td>기타에 관한 사항</td><td>기정</td><td>•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변</td></tr>
</table>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높이 등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8)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91,284,022 + 1,027,438 + 322,735,241) / 415,046,701 = 100% = 1 [단위 : 천원]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415,046,701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170,927,426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244,119,275	②
대지조성비		78,615,967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91,284,022	④
총 대지평가차액		1,027,438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322,735,241	② + ③ = ⑥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0,000(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1,000,000(⑦) / 91,284,022(④) ≒ 1.0955%(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1,027,438(⑤) × 1.0955%(⑧) ≒ 11,255(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1,000,000(⑦) + 11,255(⑨) = 1,011,255(⑩)
- (A)의 지분율 = 1,011,255(⑩) / 415,046,701(①+②) ≒ 0.2436%

추정 수익률

•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102.73%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10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아파트	59A	56,000	1,416,699	1,011,255	405,444	지급
	59B	56,000	1,419,874	1,011,255	408,619	지급
	59C	56,000	1,418,374	1,011,255	407,118	지급
	59D	56,000	1,414,140	1,011,255	402,885	지급
	39A	50,000	841,920	1,011,255	-169,335	수령
	84A	56,000	1,990,649	1,011,255	979,393	지급
	133A	56,000	3,214,786	1,011,255	2,203,531	지급
업무시설	지상3층 전용1,050.8㎡	10,760	3,420,421	1,011,255	2,409,165	지급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전용443.7㎡)	13,990	1,877,805	1,011,255	866,550	지급
	지하1층 (전용92.4㎡)	19,983	558,558	1,011,255	-452,697	수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1인 시행)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변경없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

건 립 규 모		기정			변경			증감	비율
		계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계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합 계		288	237	51	298	283	15	증 10	100%
85㎡이하	30㎡초과~40㎡이하	48	15	33	37	32	5	감 11	12.4%
	40㎡초과~50㎡이하	240	222	18	-	-	-	감 240	-
	50㎡초과~60㎡이하	-			222	212	10	증 222	74.5%
	60㎡초과~85㎡이하	-			38	38		증 38	12.8%
85㎡초과		-			1	1		증 1	0.3%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가. 인구 현황 (변경없음)

나.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변경)

구 분	수용세대수(호)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정	51	-
	변경	15	
분양주택	기정	237	-
	변경	283	
합 계	기정	288	-
	변경	298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연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내	2,995.9	1	36.20	15세대(5.2%)	1,282.25	총 건립세대수 288세대
변경				39.66	5세대	421.97	총 건립세대수 298세대
				59.86	2세대	253.69	
				59.90	2세대	254.04	
				59.94	3세대	381.71	
				59.99	3세대	381.58	
				소계	15세대(5%)	1,692.99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해당없음)

다.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 세입세대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 - 역세권, 인근 대학교 입지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직장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6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세입자 대책 수립	

12)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가. 기정

<table>
<tr><th>구분</th><th>지점</th><th>교통검토 및 개선방안</th></tr>
<tr><td rowspan="3">주변가로 및 교차로</td><td>-</td><td>•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2015.04」
- 「신촌지역(마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4.08」</td></tr>
<tr><td>Ⓐ
Ⓑ</td><td>•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폭 원</th><th rowspan="2">길이(L)</th></tr>
<tr><th>현 황</th><th>Set-back
(사업지측)</th><th>Set-back
(맞은편)</th><th>단기안</th><th>장기안</th></tr>
<tr><td>중(국)3-6호선</td><td>8.0m</td><td>2.0m</td><td>2.0m</td><td>10.0m</td><td>12.0m</td><td>40m</td></tr>
<tr><td>소(국)1-3호선</td><td>6.0m</td><td>2.0m</td><td>-</td><td>8.0m</td><td>8.0m</td><td>80m</td></tr>
</table></td></tr>
<tr><td>㉮</td><td>• 신촌지역 마포3구역 제3-2지구 개발에 따른 중(국)3-6호선 확장시 교통처리계획(장기안) 제시 - 중(국) 3-6호선 : B=12.0m, L=40.0m</td></tr>
<tr><td>진출입동선</td><td>-</td><td>•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td></tr>
<tr><td rowspan="5">대중교통 및 보행</td><td>Ⓐ
Ⓑ</td><td>• 사업지 주변 도로 보도 설치
- 북측 중(국) 3-6호선 : B=3.0m, L=40.0m
- 동측 소(국) 1-3호선 : B=2.0m, L=80.0m</td></tr>
<tr><td>Ⓒ</td><td>• 백범로 사업지측 보도 채움 : B=3.5m, L=11.0m</td></tr>
<tr><td>-</td><td>•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2개소)</td></tr>
<tr><td>-</td><td>• 사업지 내부 전면공지상 보행공간 조성(서측 3.0m, 북측 및 동측 2.0m)</td></tr>
<tr><td>-</td><td>• 자전거보관소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td></tr>
<tr><td>주차시설</td><td>-</td><td>• 계획주차대수 : 243대(공동주택(도시형) 222대, 비주거시설 21대)
- 공동주택(도시형) 법정주차(173대)의 128.32%(계획주차대수:222대) 확보
- 공동주택(도시형) 주차수요(2024년 185대)의 120.00%(계획주차대수:222대) 확보
-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설치 제한 지역임에 따라 최고 한도 이내 설치</td></tr>
<tr><td>교통안전 및 기타</td><td>-</td><td>•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설치
- 반사경 설치
- 볼라드 설치</td></tr>
</table>

나. 변경

<table>
<tr><th>구분</th><th>지점</th><th>교통검토 및 개선방안</th></tr>
<tr><td rowspan="2">주변가로 및 교차로</td><td>-</td><td>•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2024.03」</td></tr>
<tr><td></td><td>•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지점</th><th>교통검토 및 개선방안</th></tr>
<tr><td></td><td>Ⓐ
Ⓑ</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폭 원</th><th rowspan="2">길이(L)</th></tr>
<tr><th>현 황</th><th>Set-back
(사업지측)</th><th>Set-back
(맞은편)</th><th>단기안</th><th>장기안</th></tr>
<tr><td>중(국)3-6호선</td><td>8.0m</td><td>2.0m</td><td>2.0m</td><td>10.0m</td><td>12.0m</td><td>40m</td></tr>
<tr><td>소(국)1-3호선</td><td>6.0m</td><td>2.0m</td><td>-</td><td>8.0m</td><td>8.0m</td><td>80m</td></tr>
</table>
</td></tr>
<tr><td></td><td>㉮</td><td>• 신촌지역 마포3구역 제3-2지구 개발에 따른 중(국)3-6호선 확장시 교통처리계획(장기안) 제시 - 중(국) 3-6호선 : B=12.0m, L=38.0m</td></tr>
<tr><td>진출입동선</td><td>-</td><td>•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td></tr>
<tr><td rowspan="4">대중교통 및 보행</td><td>Ⓐ
Ⓑ</td><td>• 사업지 주변 도로 보도 설치
- 북측 중(국) 3-6호선 : 사업지측 보도 설치 (B=2.0m)
- 동측 소(국) 1-3호선 : 사업지측 보도 설치 (B=1.0m)</td></tr>
<tr><td>-</td><td>•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td></tr>
<tr><td>-</td><td>• 사업지 내부 전면공지상 보행공간 조성(서측 3.0m, 북측 및 동측 2.0m)</td></tr>
<tr><td>-</td><td>• 자전거보관소 56대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6% 이상)</td></tr>
<tr><td>주차시설</td><td>-</td><td>○법정주차대수 : 272대
○주차수요대수 : 363대(2032년 기준, 원단위법)
○계획대수 총 321대
- 법정주차의 118.0%, 주차수요(2032년)의 88.4% 규모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0% 이상 설치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0% 이상 설치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0% 이상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5% 이상 확보</td></tr>
<tr><td>교통안전 및 기타</td><td>-</td><td>•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설치
- 반사경 설치
- 볼라드 설치</td></tr>
</table>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Ⅱ.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548,255.2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48,255.2	100.0	-
주거지역	소 계	330,060.4	6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379.1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27.4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24.7	
	준주거지역	114,276.4	20.9	
상업지역	소 계	218,194.8	39.8	
	일반상업지역	218,194.8	39.8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폐지

※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일괄폐지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 67.07.08)	-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 )는 지구 내 연장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용도 (변경없음)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ㄱ) 건폐율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ㄴ) 용적률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ㄷ) 건축물의 높이 (변경)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기정	• 신촌로터리 일대	100.0m	사선제한 배제
	변경	• 신촌로터리 일대	100.0m	사선제한 배제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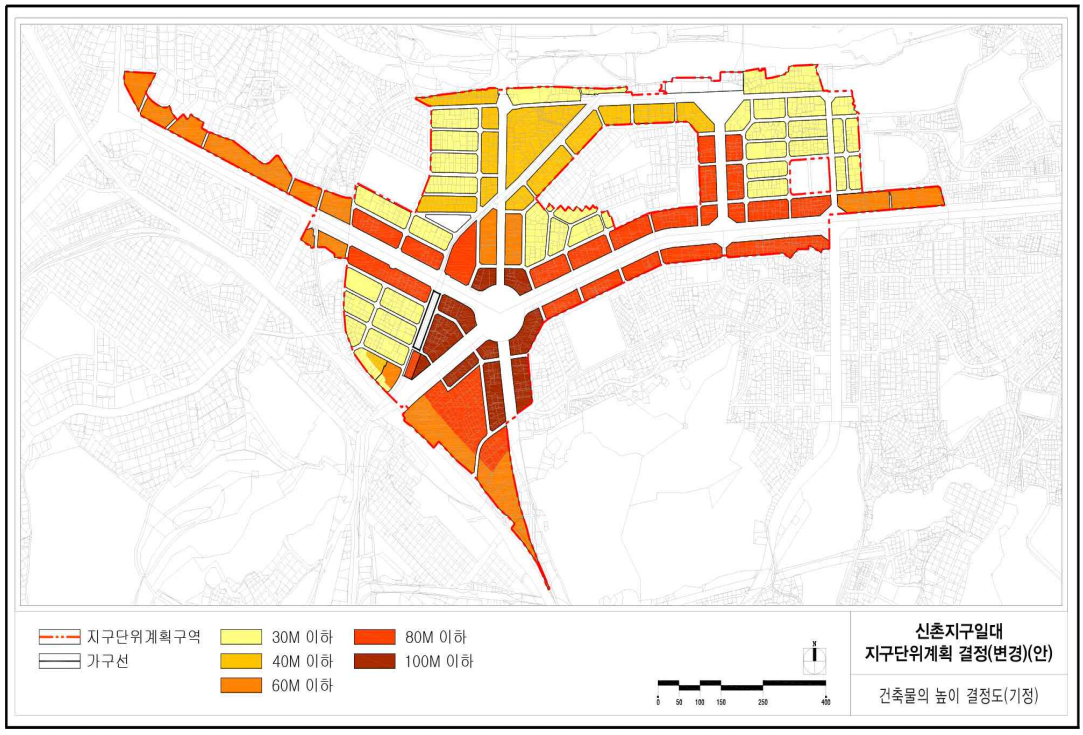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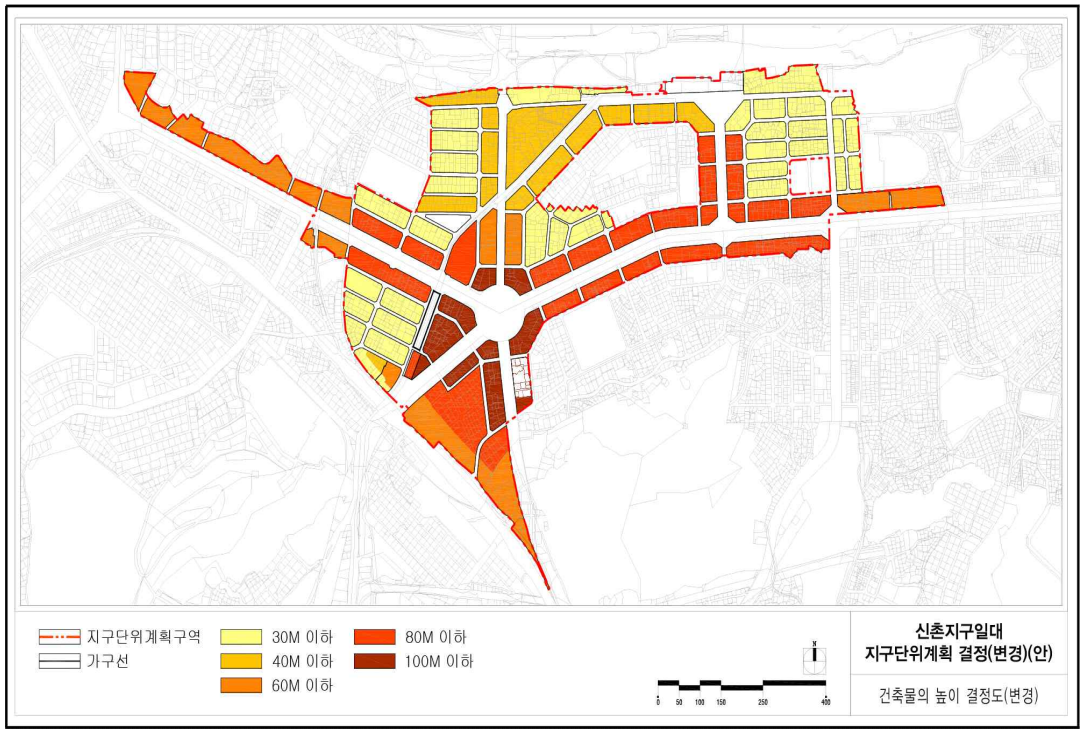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ㄱ)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없음)

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8,657.8	-

※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외 기재 생략

7)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좌 동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해당없음	폐지 반영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에 한함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좌 동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 동	전 층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좌 동	
최고높이		• 100m 이하	130m + α 이하	기준높이 130m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높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 300/630/2배 → 600/880/2배 높이 : 최고100m 이하 → 최고130m + α이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높이 계획을 반영함	-

Ⅲ.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3,245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3.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5.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1)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구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공공기여 비율	순부담률 : 12.3% 이상 - 북측 중(국)3-6도로 확폭 : 8m → 12m - 동측 소(국)1-3도로 확폭 : 6m → 8m - 기부채납 공공시설 확보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 635.1㎡ (19.6%) - 도로 : 249.1㎡ (7.7%) - 공공시설 : 386.0㎡ (11.9%) • 환산부지면적 : 241.0㎡ • 부속토지면적 : 145.0㎡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2)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위 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0.0	마포구
				연면적	1,027.7	
공공지원시설	외국인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5.0	서울특별시
				연면적	1,097.9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임대업무시설의 관리청은 마포구, 공공지원시설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로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 · 착공 · 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6.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2,995.9	-

7.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좌 동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 동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600% 이하 / 694% 이하 / 993% 이하	
최고높이		• 130m + α 이하	• 155m 이하	기준높이 130m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공개공지 : 1개소 면적 90㎡ 이상, 폭원 9m 이상	도면참조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 변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높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Ⅳ.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의견	비고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높이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할 것	
조건사항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Ⅴ.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에 따름

Ⅵ.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Ⅶ. 열람장소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3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 (02-3153-936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dp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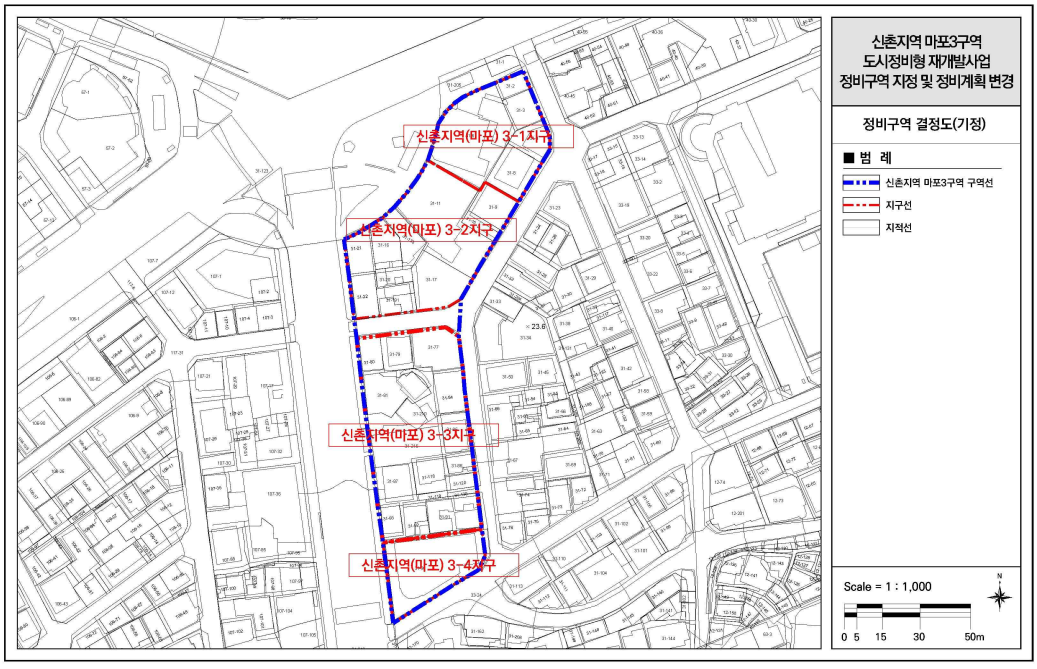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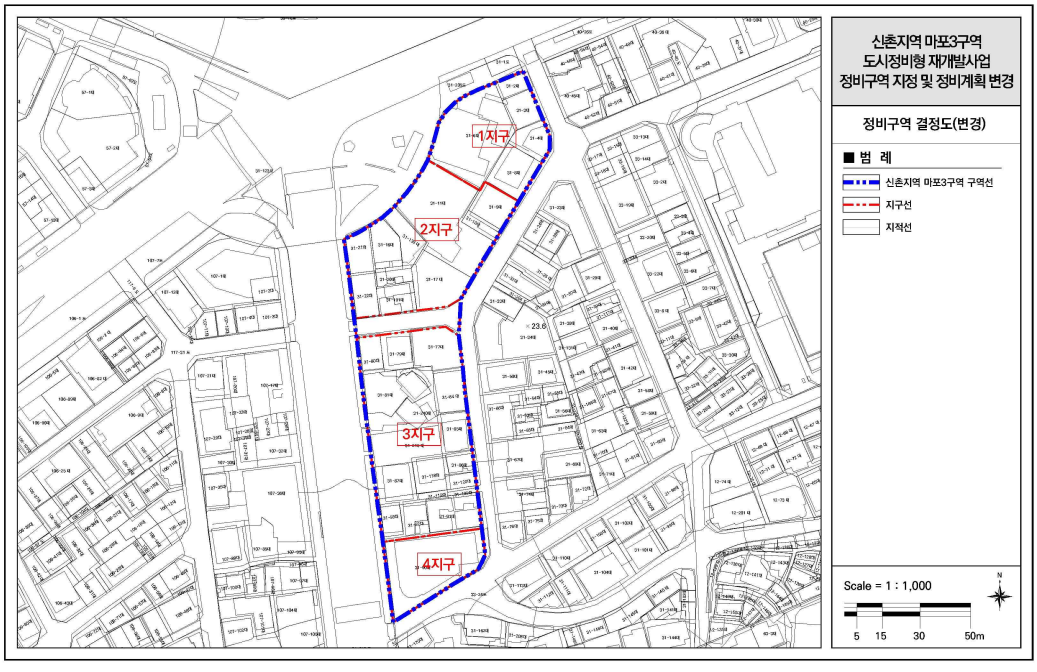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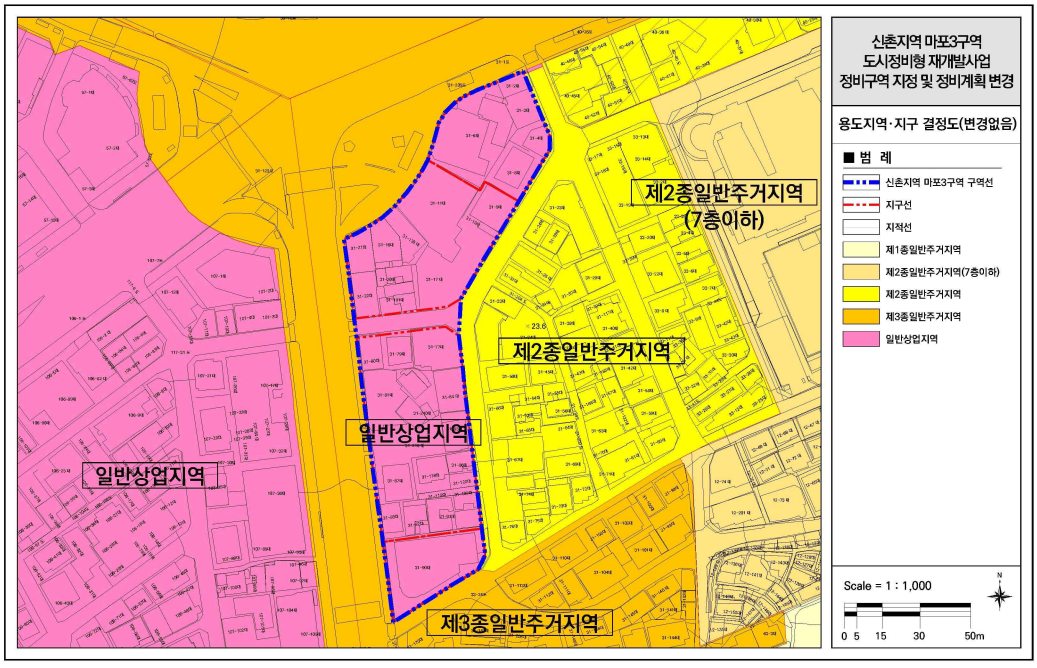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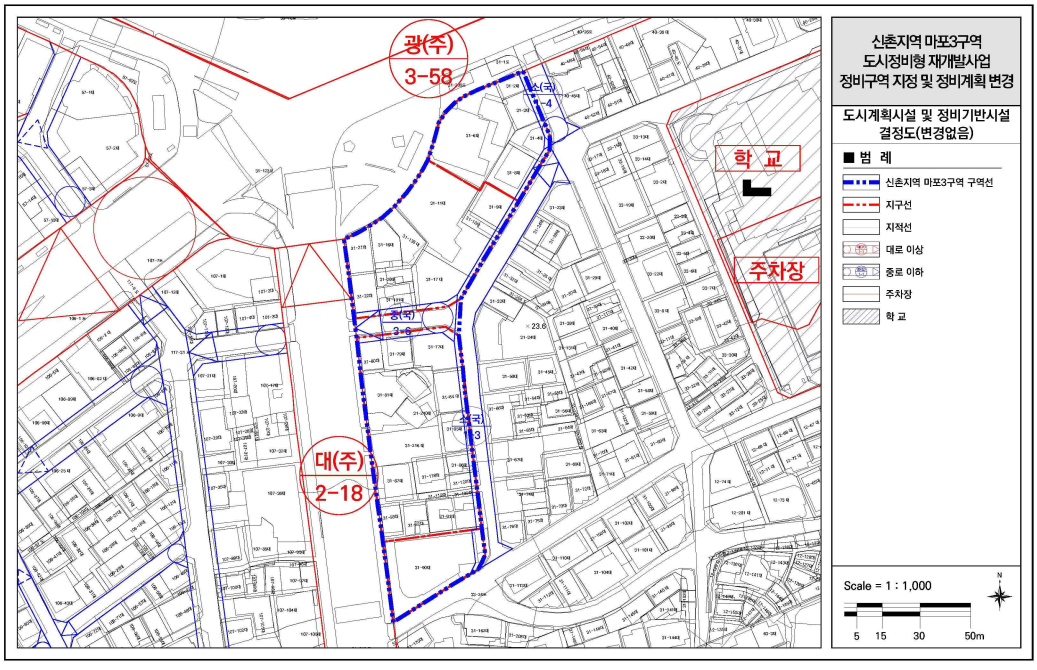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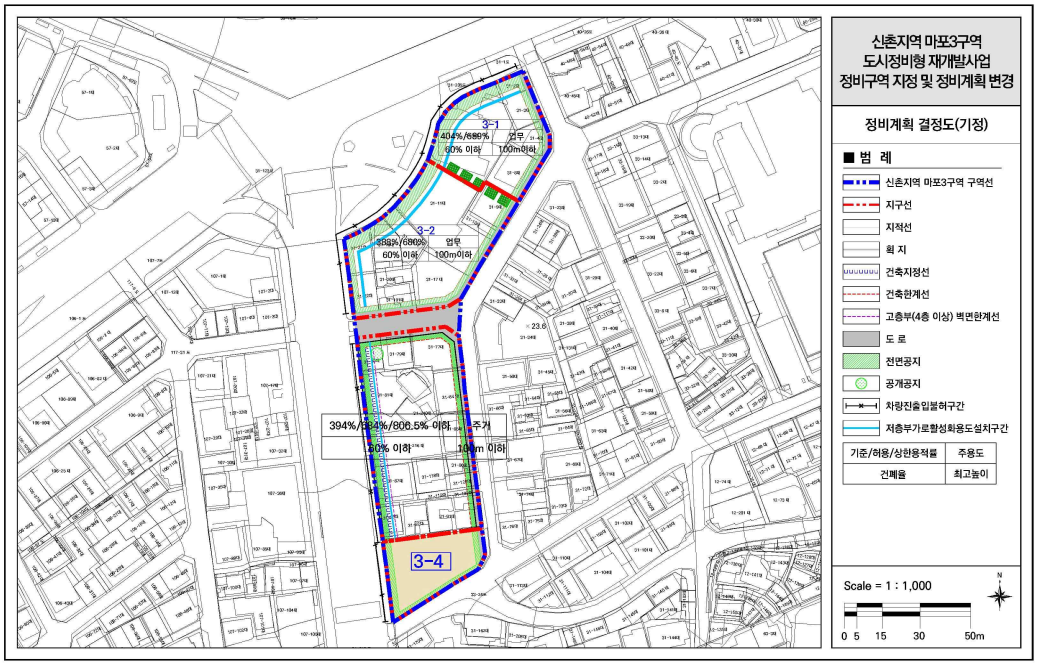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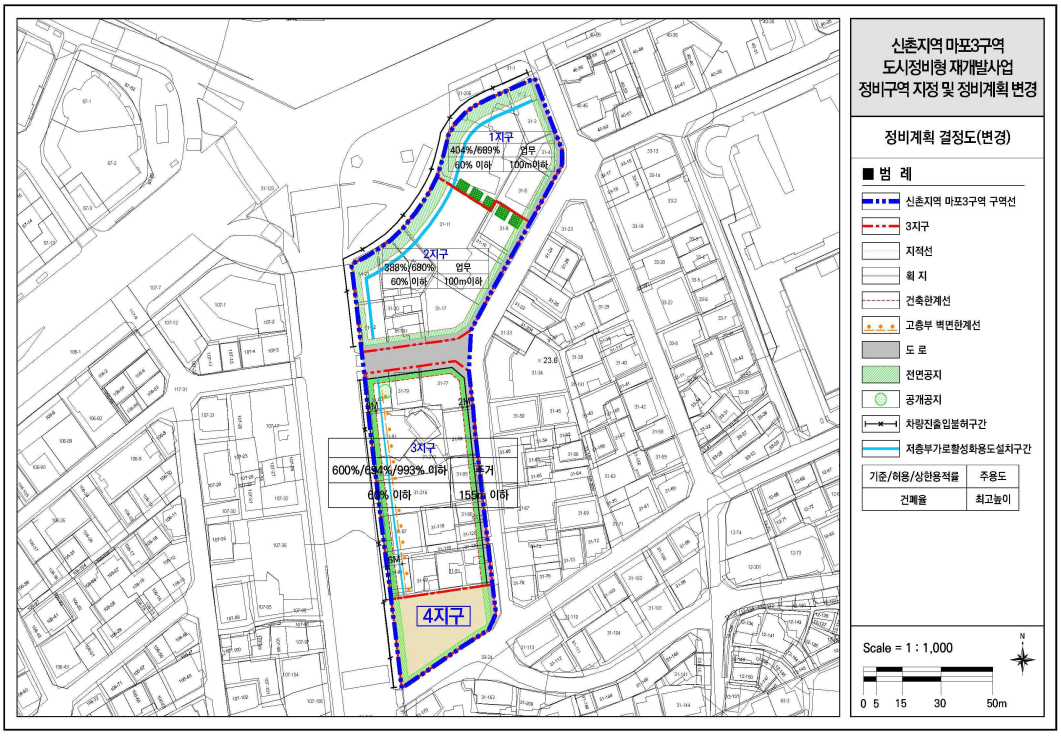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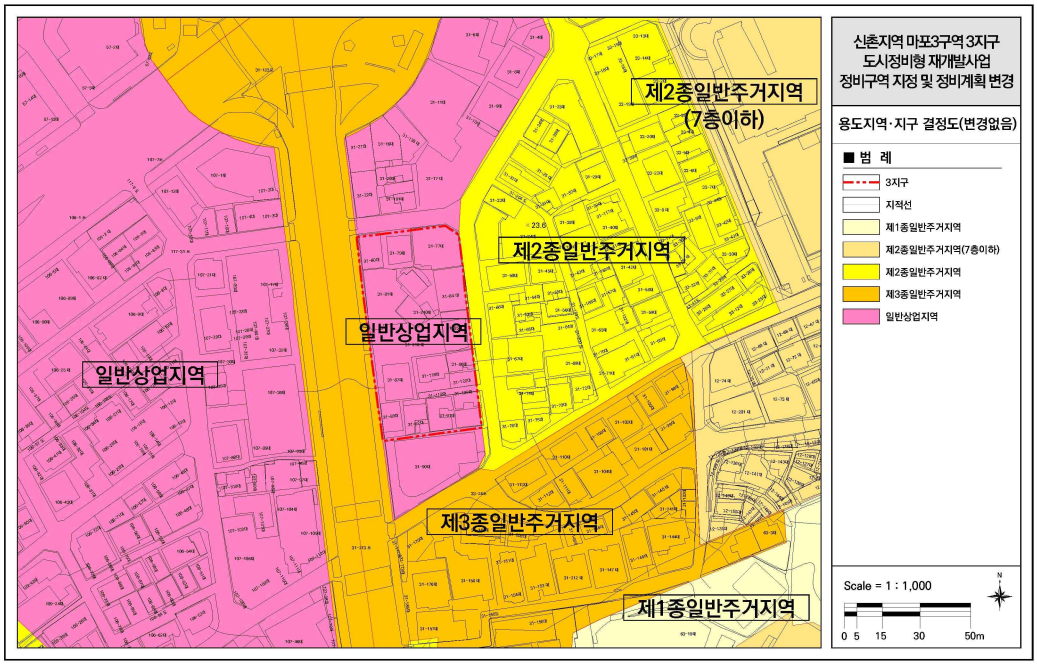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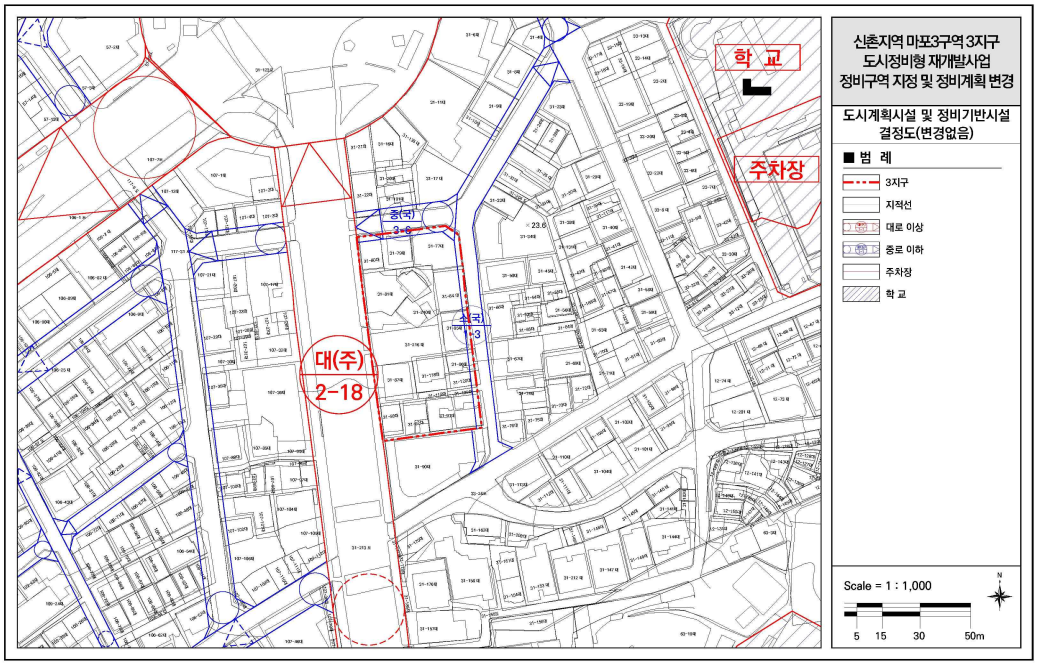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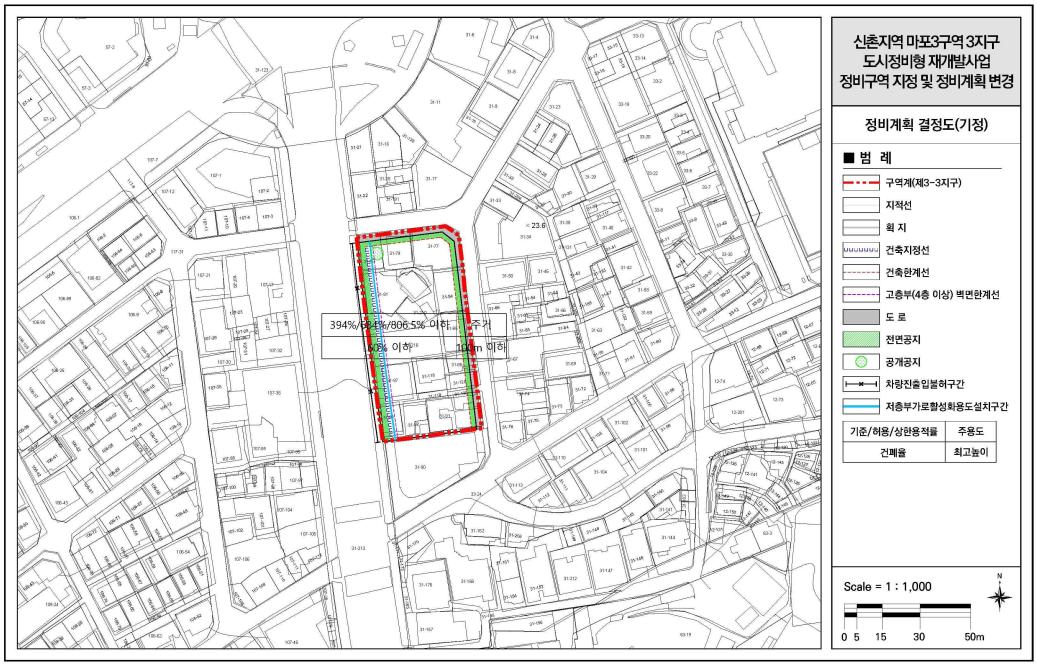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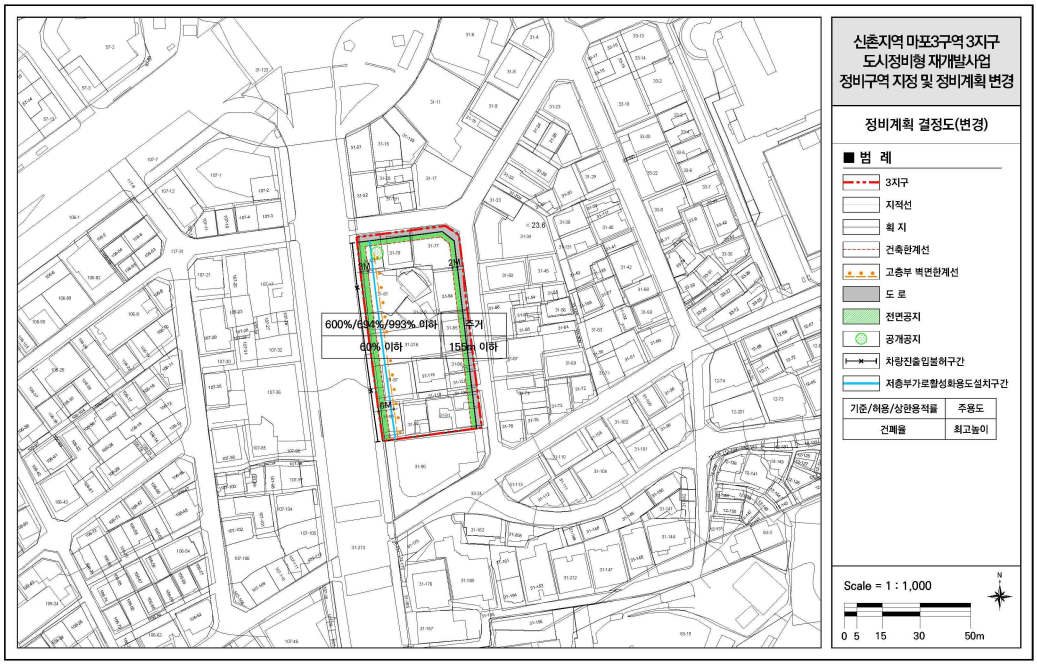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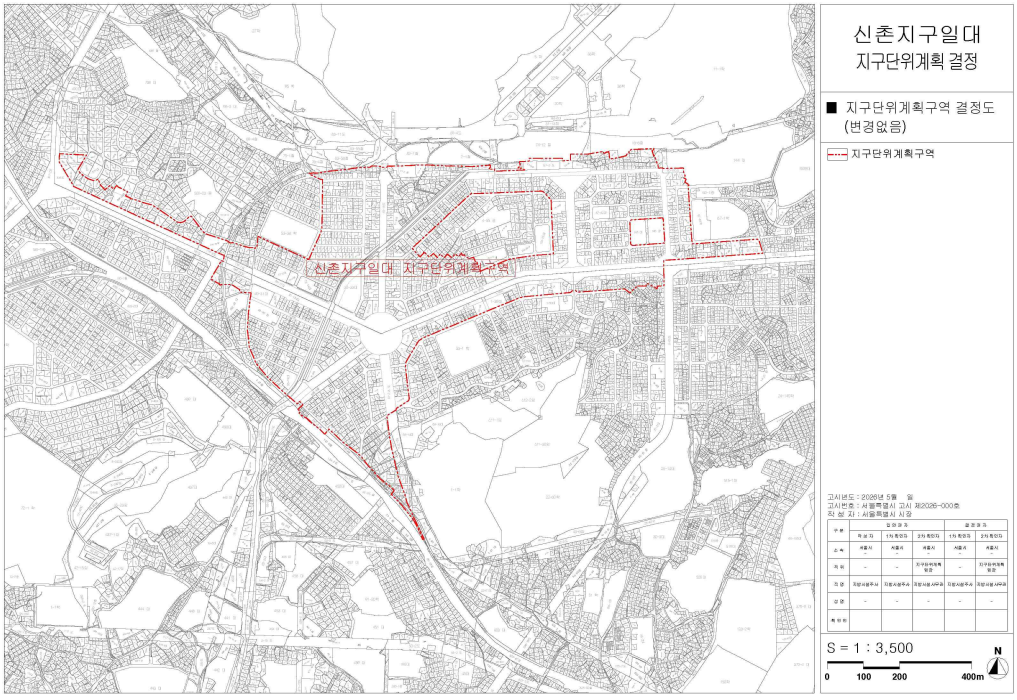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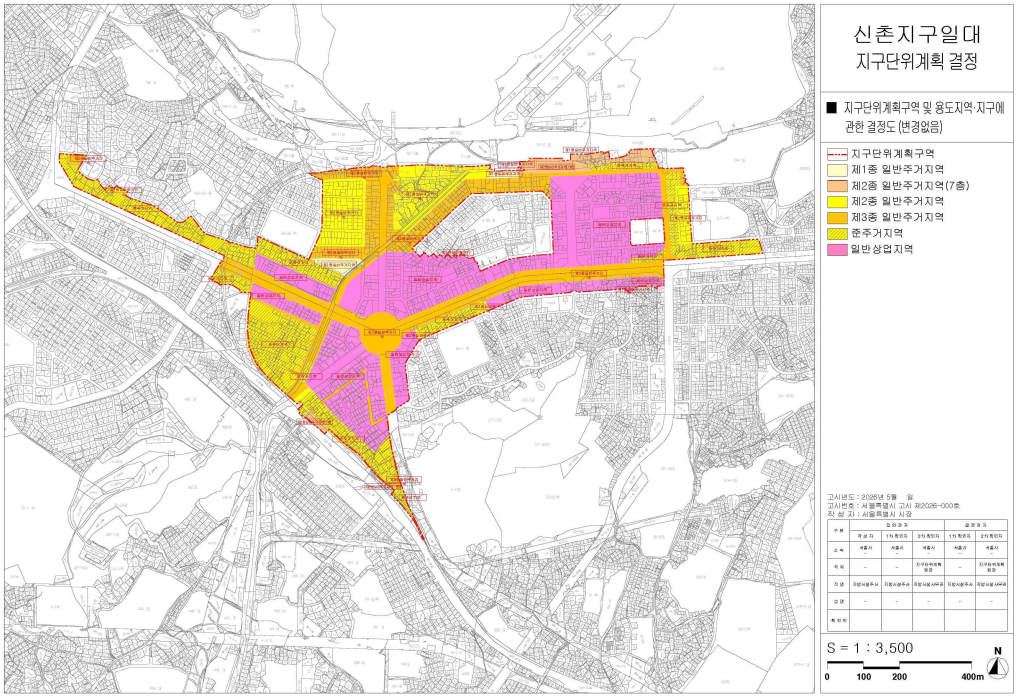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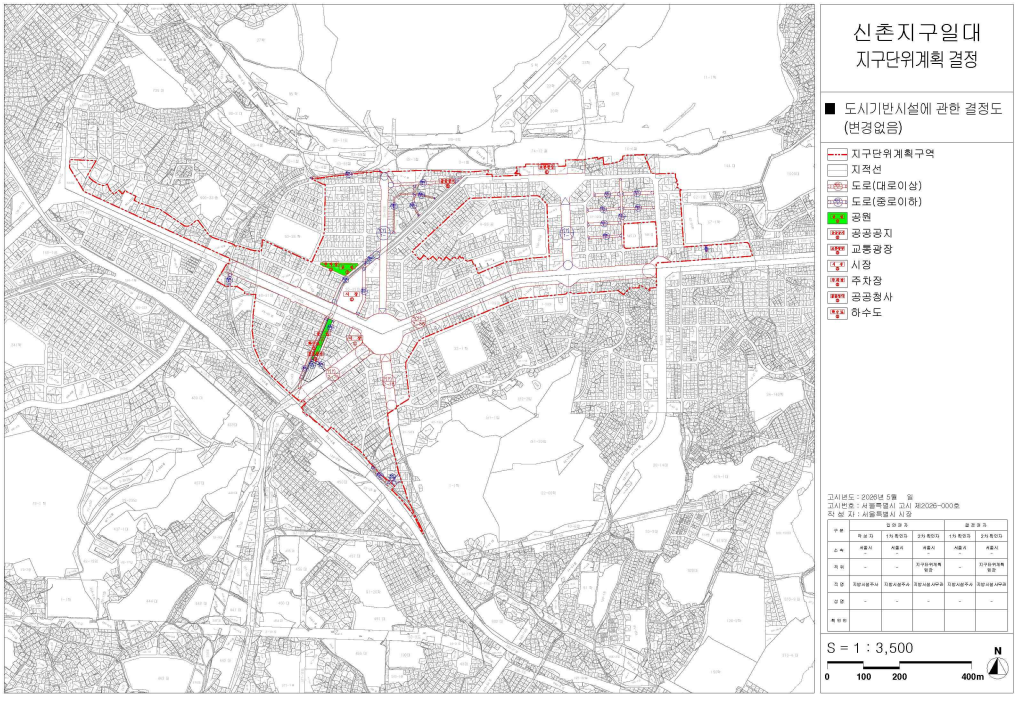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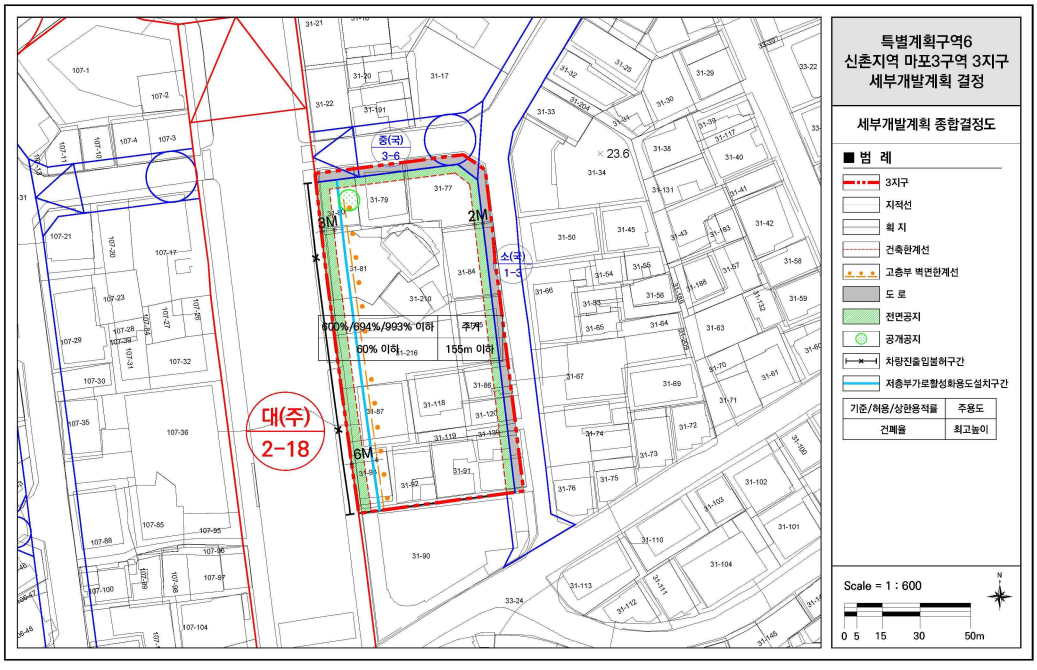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4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1길~	일시: 2025-12-23 05:35 위반장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7구역 롯데 현장(당진~청량리) 내용: 충남82바5013, 카고 3축,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21.5m, 초과값: 4.8m,적재물:수목)	처분일: 2026. 01. 26.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6.02.28. 독촉일: 2026.03.0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5. 6. 13.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60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통지기한	처분 근거
청안주택 (주) (조성제)	건축 공사업 01-55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2층 9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ㅇ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보완 (2025. 5. 16.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등록말소	2026.5.29. (금)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6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다산 종합건설 (이명길)	건축 공사업 02-1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2, 2층(잠실동)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자료(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335호 (2026. 1. 7.)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기한인 2026. 2. 20.까지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6. 6. 1. ~ 2026. 6. 30.)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6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26년 04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297	'26.04.07.	주식회사 투게더텔레콤 김경순 (110111-64061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802호 (가락동)
2	204298	'26.04.07.	나이스씨엠에스 주식회사 강명구 (110111-395625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7층 (공덕동)
3	204299	'26.04.07.	대경전자솔루션 주식회사 윤미방 (110111-095228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에이714호 (문정동)
4	204300	'26.04.10.	주식회사 포커스테크놀로지 차도현 (110111-213459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801호 (성수동2가)
5	204301	'26.04.10.	스마트마인드에이아이 주식회사 이상수 (110111-6680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11 (개포동)
6	204302	'26.04.10.	주식회사 솔루션즈 송봉준 (110111-90466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301호 (방이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7	204303	'26.04.10.	주식회사 조은아이티엑스 김인철 (110111-09509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908호 (양평동1가)
8	204304	'26.04.10.	주식회사 테라시스템 이승우 (110111-8440193)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4길 11 (녹번동)
9	204305	'26.04.15.	주식회사 포월드 박용무 (180111-152484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605호 (가산동)
10	204306	'26.04.15.	주식회사 뮤텍스 길보일 (110111-27786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802호 (염창동)
11	204307	'26.04.15.	주식회사 이노에이엑스 장인수, 심현섭 (110111-35986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문정동)
12	204308	'26.04.15.	주식회사 엘케이엠엔씨 이현희 (110111-5314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103호 (양평동4가)
13	204309	'26.04.15.	주식회사 로드아이앤에스 황성하 (110111-72883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7-5, 5층 (서초동)
14	204310	'26.04.20.	주식회사 윈즈아이티 김남규 (110111-27218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908호 (삼성동)
15	204311	'26.04.22	주식회사 이원하이텍 최지현 (110111-548530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703호 (가산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6	204312	'26.04.23.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김영랑 (110111-66865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16 (서교동)
17	204313	'26.04.23.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 조승익 (110111-835197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503호 (가산동)
18	204314	'26.04.28.	주식회사 가온데이터 이태제 (110111-52057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607호 (여의도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6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4월)

연번	등 록 번 호 (처 리 일 자)	구분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2621 ('26.04.07.)	합병된 법인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장제만, 권인택 (110111-527349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3층 (상일동)
			주식회사 씨케이인포 박대귀 (110111-59506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12층 (도렴동)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장제만, 권인택 (110111-527349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3층 (상일동)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인	203264	스마트콥 주식회사 이역수 (110111-486353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502호 (천호동)	'26.04.07.	분할 합병
	양도인	-	주식회사 인더스웰 이문숙 (110111-3836959)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708호 (독산동)		
	양수인	-	주식회사 천익 김희원 (110111-380120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 (도봉동)		
2	양도인	203743	주식회사 그린이피에스 지창근 (110111-318092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7, 402호 (당하동)	'26.04.15.	분할 합병
	양수인	-	주식회사 삼우전력 강홍섭 (110111-58937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제가동 337호 (고척동)		
3	양도인	201757	주식회사 케이에스이엔씨 박복순 (110111-476439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7, 303-비호 (장항동)	'26.04.21.	분할 합병
	양수인	-	성민전기 주식회사 김미영 (110111-442064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34-57, 1층 (독산동)		
4	양도인	311935	주식회사 신명파워텍 이승순 (110111-262987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73번길 112	'26.04.28.	분할 합병
	양수인	-	에스엠파워텍 주식회사 신현칠 (110111-150645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503호 (구로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71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근거	처분내용		변경시행사유
					당초	변경	
㈜닥터홈 (홍기환)	건축공사업 01-486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6길 3-15, 2층 관리실 (대조동)	○ 사업자등록 폐업 - 등록번호 : 821-81-01424 - 폐업일자 : 2026.2.27.	법 제83조 제12호	등록말소 (2026.5.18.)	등록말소 (2026.6.12.)	공시송달 기간 확보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7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5.14. ~ 2026.5.28.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6.5.31.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독촉고지	(*)예*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2	83구63**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1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2	독촉고지	(*)에*케*디	경상남도	창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3	88다26**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3	독촉고지	M*K*N* J*S*P* H*R*L*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4	49고52**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	독촉고지	정*복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5	87고22**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5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6	89다7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	독촉고지	(*)수*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7	서울31더12**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09	백범광장(소월로3길)
7	독촉고지	가* 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59	10주29**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1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8	독촉고지	박*길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3	92어70**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9	독촉고지	에*브*텍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4	89나41**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21	삼청공원(삼청로)
10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5	89다7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1	독촉고지	(*)엠*에*치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9	80너81**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30	경희궁(새문안로)
12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75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9-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3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0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0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독촉고지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7	89구39**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2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5	독촉고지	이*만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68	84너76**	100,000	2025-12-03	2026-04-30	2025-08-2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6	독촉고지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72	89구39**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9-02	대금빌딩(장충단로8길)
17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76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9-2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77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09-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9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1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0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0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2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1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5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0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2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6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0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3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7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1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4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8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5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89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1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6	독촉고지	신*순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91	80두10**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독촉고지	한*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12	수시분	000593	85구78**	200,000	2025-12-03	2026-04-30	2025-10-2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8	독촉고지	최*구	경상남도	진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2	수시분	000072	43버07**	100,000	2026-02-02	2026-04-30	2025-12-2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9	독촉고지	강*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2	수시분	000073	84가80**	200,000	2026-02-20	2026-04-30	2021-11-0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0	독촉고지	강*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2	수시분	000074	84가80**	200,000	2026-02-20	2026-04-30	2021-11-27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1	독촉고지	강*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2	수시분	000075	84가80**	200,000	2026-02-20	2026-04-30	2021-12-2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7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5.14. ~ 2026.5.28.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6.6.30.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연번	상태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가* 디*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3	10주29**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6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4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부과	김*경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5	57라69**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부과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4	89다70**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5	부과	이*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8	서울83사14**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2	삼청공원(삼청로)
6	부과	조*식	경기도	오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1	97로90**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7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7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1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6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1	경희궁(새문안로)
9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7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9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	부과	김*경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3	57라69**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5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3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6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상태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7	88어34**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3	백범광장(소월로3길)
15	부과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9	89구39**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6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79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7	부과	이*만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76	84너7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3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18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78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9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0	88어34**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0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2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1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6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2	부과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10	86소64**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3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3	부과	(*)니*아*도*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0	90머6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5	청운공원(인왕산로)
24	부과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2	14오9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	부과	김*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83	92러45**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7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6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 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11	88어34**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2-02	흥인지문(종로, 진입)

연번	상태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부과	김*홍	경상남도	양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15	87노82**	200,000	2026-03-05	2026-04-30	2026-01-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8	부과	전*석	대전광역시	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16	31러75**	100,000	2026-03-05	2026-04-30	2026-01-2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9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0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6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0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2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1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4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1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2	부과	조*열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1	40라44**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3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7	88어34**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8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4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8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5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09	87우36**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30	흥인지문(종로, 진입)
36	부과	가* 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112	10주29**	200,000	2026-03-05	2026-04-30	2025-12-0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7	부과	최*관	경상북도	성주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98	10두36**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23	경희궁(새문안로)
38	부과	(*)일*운*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6-03	수시분	000077	92노92**	100,000	2026-03-05	2026-04-30	2025-11-03	삼청공원(삼청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7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5.14. ~ 2026.5.28.(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5.14.~2026.6.13.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6.6.13.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주소		차량번호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엠*에*치	경기도	동두천시	80너81**	2026-03-06	2026-04-03	160000	2026-03-03 06:5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	경기도	고양시	92러45**	2026-03-06	2026-04-02	160000	2026-03-03 07:4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3-06	2026-04-04	160000	2026-03-05 11:17	경희궁(새문안로)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3-12	2026-04-06	160000	2026-03-07 07:13	흥인지문(종로, 진입)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엠*에*치	경기도	동두천시	80너81**	2026-03-16	2026-04-16	160000	2026-03-15 06:56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중	충청남도	논산시	80오88**	2026-03-23	2026-04-19	80000	2026-03-19 08:3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89구39**	2026-03-23	2026-04-23	160000	2026-03-23 07:1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3	2026-04-23	160000	2026-03-22 16:23	백범광장(소월로3길)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엠*에*치	경기도	동두천시	80너81**	2026-03-23	2026-04-23	160000	2026-03-22 06:56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3	2026-04-23	160000	2026-03-21 16:43	백범광장(소월로3길)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엠*에*치	경기도	동두천시	80너81**	2026-03-23	2026-04-23	160000	2026-03-21 13:4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80서77**	2026-03-23	2026-04-20	160000	2026-03-21 10:38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3	2026-04-20	160000	2026-03-20 16:42	백범광장(소월로3길)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인*내*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01보68**	2026-03-23	2026-04-20	160000	2026-03-20 15:3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주소		차량번호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단속일자	단속장소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3	2026-04-20	160000	2026-03-19 16:39	백범광장(소월로3길)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5	2026-04-24	160000	2026-03-23 16:45	백범광장(소월로3길)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5	2026-04-25	160000	2026-03-24 16:44	백범광장(소월로3길)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가* 디*씨(주)	경기도	화성시	10주29**	2026-03-25	2026-04-25	160000	2026-03-24 18:1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인*내*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01보68**	2026-03-25	2026-04-24	160000	2026-03-23 14: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7	2026-04-27	160000	2026-03-26 19:17	백범광장(소월로3길)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27	2026-04-27	160000	2026-03-25 16:52	백범광장(소월로3길)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30	2026-04-30	160000	2026-03-29 16:04	백범광장(소월로3길)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80누79**	2026-03-30	2026-04-30	160000	2026-03-28 17:2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30	2026-04-30	160000	2026-03-28 16:42	백범광장(소월로3길)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장*훈	경상북도	상주시	09구32**	2026-03-30	2026-04-27	80000	2026-03-28 13:10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80서77**	2026-03-30	2026-04-27	160000	2026-03-28 08:33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3-30	2026-04-30	160000	2026-03-27 16:46	백범광장(소월로3길)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3-30	2026-04-26	160000	2026-03-27 13:32	경희궁(새문안로)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주소		차량번호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단속일자	단속장소
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4-01	2026-04-29	160000	2026-03-30 18:38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1	2026-04-30	160000	2026-03-30 19:12	백범광장(소월로3길)
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1	2026-04-30	160000	2026-03-31 15:53	백범광장(소월로3길)
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3	2026-05-02	160000	2026-04-01 16:37	백범광장(소월로3길)
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박*철	경기도	양주시	14오92**	2026-04-03	2026-05-02	160000	2026-04-02 06:22	흥인지문(종로, 진입)
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3	2026-05-02	160000	2026-04-02 19:10	백범광장(소월로3길)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85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9. (15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6. 05. 29.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51209-005	10-01-00022	고두수	고*종	2026-03-13 10:58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100,000
2	봉안	19951209-015	10-01-00034	이상우	이*우	2026-03-13 07:1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초원로16길	180,000
3	봉안	19951210-001	10-01-00036	박덕인	박*원	2026-03-16 14: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양주산성로	100,000
4	봉안	19951211-006	10-01-00050	최광우	최*미	2026-03-16 08:4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44가길	100,000
5	봉안	19951214-005	10-01-00091	양영목	양*욱	2026-03-13 10:4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남양주시 덕송1로	100,000
6	봉안	19951218-001	10-01-00124	김수만	김*택	2026-03-16 10: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80,000
7	봉안	19951224-011	10-02-00204	김세환	문*련	2026-03-13 12:45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섬밭로	100,000
8	봉안	19951225-009	10-02-00215	박길순	이*근	2026-03-13 10:29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이**님 - 자녀)	서울 강북구 삼양로32나길	100,000
9	봉안	19951227-003	10-02-00229	이종선	이*용	2026-03-16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군자로3길	25,000
10	봉안	19951228-007	10-02-00237	조기순	박*희	2026-03-16 10: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17나길	100,000
11	봉안	19951229-003	10-02-00252	김응택	김*수	2026-03-16 09: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1길	100,000
12	봉안	20001202-006	62-01-11212	김복덕	강*웅	2026-03-13 12:3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1길	100,000
13	봉안	20001202-008	62-01-11214	서간란	김*옥	2026-03-16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180,000
14	봉안	20001202-010	62-01-11216	김완식	김*철	2026-03-16 09: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57길	100,000
15	봉안	20001202-023	62-01-11228	김옥자	노*윤	2026-03-16 11: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장현로	100,000
16	봉안	20001202-029	66-01-29614	이상심	김*식	2026-03-16 13: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000
17	봉안	20001202-037	62-01-11238	이명희	이*작	2026-03-16 09: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산수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	봉안	20001203-004	62-01-11248	김용성	김*석	2026-03-13 08: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00,000
19	봉안	20001204-015	62-01-11295	김명자	유*호	2026-03-13 10:1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종로구	100,000
20	봉안	20001206-028	62-01-11378	김명원	김*원	2026-03-16 12: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180,000
21	봉안	20001207-025	62-01-11411	탁수일	탁*미	2026-03-16 12: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언주로103길	180,000
22	봉안	20001208-004	62-01-11420	임덕순	임*주	2026-03-16 12: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속초시 도평3길	180,000
23	봉안	20001208-013	62-01-11428	김명숙	신*균	2026-03-13 09:3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00,000
24	봉안	20001209-015	62-01-11464	김호선	김*선	2026-03-16 12: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효성1동	180,000
25	봉안	20001210-025	62-01-11510	조기석	조*진	2026-03-13 11: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25안길	100,000
26	봉안	20001211-033	62-01-11539	조악이	조*훈	2026-03-13 14:28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김**님 - 배우자)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45,000
27	봉안	20001211-035	62-01-11540	이평일	이*송	2026-03-13 15:37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이**님 - 친지)	경기 남양주시 먹갓로서길	100,000
28	봉안	20001212-006	62-01-11550	김월건	박*준	2026-03-16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해등로	180,000
29	봉안	20001212-016	62-01-11559	정명례	이*복	2026-03-17 15: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	100,000
30	봉안	20001212-032	62-01-11575	박정희	김*원	2026-03-17 14: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45,000
31	봉안	20001212-035	62-01-11578	정형준	정*숙	2026-03-13 09:44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정**님 - 본인)	경기 의왕시 한직골서길	100,000
32	봉안	20001213-014	62-01-11595	한소제	정*현	2026-03-13 12:1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100,000
33	봉안	20001213-017	66-01-29620	서왕씨	서*향	2026-03-17 13: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연남동	100,000
34	봉안	20001213-033	62-01-11608	김막동	김*연	2026-03-16 09: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월계로32길	180,000
35	봉안	20001214-002	62-01-11611	박광순	김*오	2026-03-16 12:4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남 무안군 삼일로	4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6	봉안	20001214-040	62-01-11648	양성관	양*주	2026-03-16 10: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넘마을길	45,000
37	봉안	20001215-015	62-01-11666	전옥순	함*열	2026-03-16 11: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백범로294번길	100,000
38	봉안	20001215-025	62-01-11674	전귀례	김*만	2026-03-16 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2길	100,000
39	봉안	20001215-036	62-01-11683	박화남	박*환	2026-03-13 09:1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부천시 고강로	180,000
40	봉안	20001215-039	62-01-11686	박예귀	유*렬	2026-03-16 11: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장제로933번길	45,000
41	봉안	20001216-008	62-01-11695	강성도	박*행	2026-03-13 10:56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전**취함님 - 전자수취함배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100,000
42	봉안	20001216-035	62-01-11720	이승혁	이*림	2026-03-16 10: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45,000
43	봉안	20001216-037	62-01-11722	윤석기	윤*정	2026-03-16 12: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100,000
44	봉안	20001216-043	62-01-11728	김복철	김*구	2026-03-16 09:01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최**님 - 친지)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길	100,000
45	봉안	20001217-011	62-01-11742	이순득	차*덕	2026-03-16 12:07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차**님 - 본인)	서울 성북구 한천로	100,000
46	봉안	20001217-031	62-01-11762	박경염	이*훈	2026-03-13 11:3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80,000
47	봉안	20001218-024	62-01-11791	정범진	정*일	2026-03-16 11: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14길	180,000
48	봉안	20001220-004	62-01-11852	유형재	유*식	2026-03-16 10: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78번길	100,000
49	봉안	20001221-002	62-01-11891	신현식	심*재	2026-03-13 09:0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2길	100,000
50	봉안	20001221-008	62-01-11897	김영순	임*택	2026-03-13 13:2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51	봉안	20001221-016	62-01-11905	이은숙	차*애	2026-03-16 10: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번길	100,000
52	봉안	20001222-018	62-01-11949	정점녀	서*관	2026-03-13 13:5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응암동	25,000
53	봉안	20001222-029	62-01-11957	한정억	한*성	2026-03-12 10:5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180,000
54	봉안	20001222-042	62-01-08431	강영신	송*재	2026-03-13 12: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교문동	180,000
55	봉안	20001223-020	62-01-11989	이경희	차*희	2026-03-16 13: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금신로297번길	180,000
56	봉안	20001223-041	62-01-12008	김남인	김*래	2026-03-16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180,000
57	봉안	20001223-044	62-01-12011	김기숙	이*열	2026-03-13 09:07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주**님 - 회사동료)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180,000
58	봉안	20001224-004	62-01-12017	김원석	김*수	2026-03-13 10:3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금천구 독산로41길	25,000
59	봉안	20001224-043	62-01-12052	정인철	정*섭	2026-03-13 11: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45,000
60	봉안	20001225-010	62-01-12062	채귀선	정*명	2026-03-16 13: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000
61	봉안	20001225-039	62-01-12089	안수자	박*선	2026-03-13 11: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100,000
62	봉안	20001226-006	62-01-12100	이시우	이*용	2026-03-13 08:42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이**님 - 본인)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100,000
63	봉안	20001226-011	62-01-12105	김세범	김*경	2026-03-16 12:55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이**님 - 친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250길	180,000
64	봉안	20001226-040	62-01-12132	유보자	홍*표	2026-03-16 09: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100,000
65	봉안	20001228-042	62-01-12226	문광빈	문*호	2026-03-16 14: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지봉로5길	25,000
66	봉안	20001229-035	62-01-12264	서상안	서*복	2026-03-16 12: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16번길	25,000
67	봉안	20001230-005	62-01-12282	박송하	박*영	2026-03-16 09: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68	봉안	20001231-022	62-01-12349	임기순	방*원	2026-03-16 12: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월정로33길	100,000
69	봉안	20001231-041	62-01-12368	김철호	김*환	2026-03-12 09:1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충남 아산시 둔포면로	180,000
70	봉안	20021009-025	71-07-05015	하수선	김*영	2026-03-16 12: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운정로	200,000
71	봉안	20051206-004	73-05-26017	조정순	유*일	2026-03-16 09:4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75,000
72	봉안	20051208-002	73-05-26022	최오웅	최*희	2026-03-16 13: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난계로21길	75,000
73	봉안	20051210-002	73-05-26029	이정희	정*태	2026-03-13 09: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고산로	75,000
74	봉안	20051210-005	73-05-26031	전해관	전*호	2026-03-16 09: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2가길	75,000
75	봉안	20051211-010	73-05-26039	이을옥	팽*우	2026-03-16 11:3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랑구 신내로	75,000
76	봉안	20051211-011	73-05-26040	나순남	김*림	2026-03-16 14: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75,000
77	봉안	20051213-003	73-05-26045	송영심	신*사	2026-03-13 12:27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75,000
78	봉안	20051215-004	73-05-26051	백지월	박*근	2026-03-16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5,000
79	봉안	20051216-002	73-05-26052	장호순	장*경	2026-03-16 11: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다길	75,000
80	봉안	20051221-001	73-05-26067	권분향	손*우	2026-03-16 12:3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용인시 수지구	75,000
81	봉안	20051224-009	73-05-26078	박춘자	정*윤	2026-03-16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	75,000
82	봉안	20051227-007	73-05-26090	류미숙	신*운	2026-03-16 10: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와우안길	75,000
83	봉안	20051229-006	73-05-26098	최사순	홍*형	2026-03-16 13: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8번길	75,000
84	봉안	20051230-001	73-05-26099	오창규	오*림	2026-03-16 12: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85	봉안	20101201-006	51-01-05346	이종열	윤*모	2026-03-16 09: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덕릉로112길	75,000
86	봉안	20101204-003	61-01-01429	김기수	김*희	2026-03-13 12:30	배달완료 (배달) (수령인:김**님 - 본인)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75,000
87	봉안	20101204-008	61-01-01466	김병영	김*훈	2026-03-16 10: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26나길	75,000
88	봉안	20101206-012	61-01-01973	이유광	임*섭	2026-03-16 11: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75,000
89	봉안	20101209-003	61-01-02298	김인숙	이*열	2026-03-16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75,000
90	봉안	20101211-005	61-01-02573	전옥선	허*영	2026-03-13 12:4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인헌16나길	75,000
91	봉안	20101213-008	61-01-02811	김선용	김*덕	2026-03-13 09:2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75,000
92	봉안	20101225-005	62-01-04511	김학인	김*환	2026-03-16 12:5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당곡6라길	75,000
93	봉안	20101229-001	62-01-05039	김동길	김*환	2026-03-13 10: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53번길	75,000
94	봉안	20101230-001	62-01-05307	권영란	정*순	2026-03-16 09: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75,000
95	봉안	20101230-004	62-01-05405	배정영	고*용	2026-03-16 10: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7길	75,000
96	봉안	20151201-001	41-01-06039	박순창	최*자	2026-03-16 11: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마치로	25,000
97	봉안	20151207-005	41-01-06342	최정애	손*용	2026-03-16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속초시 도리원1길	25,000
98	봉안	20151211-002	41-01-06716	박연섭	박*숙	2026-03-16 12: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평군 북한강로	25,000
99	봉안	20151215-003	41-01-07128	석명옥	박*수	2026-03-12 08:3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25,000
100	봉안	20151217-003	41-01-07264	이상수	이*희	2026-03-16 13: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삼양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01	봉안	20151218-003	41-01-07306	장순례	정*룡	2026-03-13 09:51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은평로12길	25,000
102	봉안	20151218-004	41-01-07307	임성채	백*국	2026-03-13 09: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000
103	봉안	20151219-002	41-01-07416	전상재	전*옥	2026-03-16 11: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9길	25,000
104	봉안	20151219-006	41-01-07437	김판열	김*규	2026-03-13 09: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신석로122번길	25,000
105	봉안	20151224-009	61-01-00295	고정식	고*현	2026-03-13 09: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장마루2길	25,000
106	봉안	20151224-012	41-01-07817	박덕송	박*호	2026-03-16 1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1길	25,000
107	봉안	20151229-004	51-01-00031	이운봉	이*준	2026-03-16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159가길	25,000
108	봉안	20151230-009	51-01-00209	김인의	김*실	2026-03-17 11: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25,000
109	봉안	20201202-009	10-02-00242	배상매	강*정	2026-03-16 09: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0길	25,000
110	봉안	20201205-009	10-06-00986	최낙순	홍*환	2026-03-16 14: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25,000
111	봉안	20201214-001	10-25-08434	이호규	조*주	2026-03-16 09: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32길	25,000
112	봉안	20201220-001	11-18-09997	홍광호	홍*훈	2026-03-16 10: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0길	25,000
113	봉안	20201229-005	12-10-05880	박주연	임*택	2026-03-13 10: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25,000
114	봉안	20201231-003	12-13-11953	김선기	김*준	2026-03-16 13: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동일로70길	25,000
115	분묘	19860206-005	402297	안처녀	이*권	2026-03-16 12: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방학로2길	280,370
116	분묘	19930911-003	4370447	이순자	조*정	2026-03-13 13:5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280,370
117	분묘	19970803-004	11041307	김세영	김*혁	2026-03-16 13: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41,6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0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사명)	예정된 처분내용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처분 근거
㈜빌드종합건설 (정춘식)	건축공사업 04-15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27, 408호(강일동,강일타워)(강일동)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현장명: 서종면 명달리 163-5 신축공사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준공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과태료	2026.5.29.(금)	법 제99조 제3호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1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리브건설 (이진희)	건축공사업 01-56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20 , 4층(대치동) (대치동)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현장명: 평화동 근생시설(수영장)신축공사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준공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과태료 750,000원	법 제9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3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1회차)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확정부과하고 독촉고지(1회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3차) 독촉고지(1회차)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윤○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 점유기간 : 2025.6.1. ~ 2026.1.31. - 점유면적 : 285.8㎡ - 독촉금액 : 163,441,820원 (변상금: 163,410,490원, 연체료: 31,330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로 214 8○○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6. 5. 14. ~ 2026. 5. 28. (15일 간)

○ 문의사항은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02-2133-27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7호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정비(소멸) 대상 사전 공고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기간 미사용되고 활용도가 낮은 시유특허권을 정비(소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 발명자의 양수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발명자께서는 기간 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정비(소멸) 대상 사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6. 4.
3. 공고대상 : 42개 특허 원 발명자(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4조 제1항
   나. 공고내용 : 직무발명 시유특허권의 정비(소멸)전 발명자 양수 희망 여부
   다. 처 분 일 : 2026. 6. 30. (화)
   라.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thk0703@seoul.go.kr, 02-2133-6725)

붙임 1.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정비 목록 및 원발명자
2. 양수 희망 양식

붙 임 2 정비대상 시유특허권 목록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당시 소속부서
특허	1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2010-01-06	이*천, 나* 호	상수도 (수도사업소)
특허	2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2011-02-24	이*수, 이*승, 최*호, 정*호, 최*선, 정*모, 박*옥	상수도 본부
특허	3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2011-09-26	이*호	상수도 (암사 아리수)
특허	4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2012-10-22	정*주, 정*영, 전*우, 양*창, 최*교, 이*호	상수도 (뚝도 아리수)
특허	5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2016-07-19	정*영, 윤*민	상수도 (뚝도 아리수)
특허	6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2015-08-05	김*원	상수도 (동부수도사업소)
특허	7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2017-09-22	권*식, 이*일, 정*선, 경*선	상수도 (구의 아리수)
특허	8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2012-11-21	우*근	상수도 (서부수도사업소)
특허	9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2013-03-11	조*대, 장*성	상수도 (구의 아리수)
특허	10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2011-06-13	정*영, 박*하, 오*록	상수도 (영등포 정수)
특허	11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2012-07-04	김*철, 최*교, 정*영	상수도 (뚝도 아리수)
특허	12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2010-07-07	이*호, 이*종	상수도 (암사 아리수)
특허	13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2010-12-24	김*원	상수도 (동부수도사업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당시 소속부서
특허	14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2012-08-24	김*환, 윤*식, 마*훈	상수도본부 (광암 아리수)
특허	15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2008-07-18	유*희	도시기반시설본부
특허	16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2017-12-27	권*회, 박*헌, 홍*지, 김*호, 강*금	난지물재생센터 물재생과
특허	17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2015-09-03	나*운, 최*준, 신*식, 최*환, 박*상	상수도 연구원
특허	18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의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2012-08-27	김*균, 박*상, 최*준, 문*출, 한*무, 최*규, 조*선, 서*정, 김*호, 백*인	상수도 연구원
특허	19	요동방지 호스 지지체	10-1234541	2013-02-13	김*득, 손*열, 김*철, 이*석	한강사업본부
특허	20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2011-11-02	김*기, 이*기	한강사업본부
특허	21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2010-11-10	김*연	도시기반시설본부
특허	22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2016-12-12	이*훈, 김*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
특허	23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2015-04-06	김*팔, 황*연, 김*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특허	24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제조 방법	10-1687114	2016-12-09	이*근, 최*우, 이*휘, 최*, 이*석, 구*서	도로관리과
특허	25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2011-10-12	김*식, 박*구, 강*수, 이*호	강서도로사업소
특허	26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2007-08-02	김*식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특허	27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2008-01-15	안*훈	도로관리담당관
특허	28	다기능세척장치	10-0952293	2010-04-02	고*건, 장*선	동부도로사업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당시 소속부서
특허	29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2013-12-19	백*현, 고*섭, 이*열	교통운영과
특허	30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2010-03-09	염*원	보건환경연구원
특허	31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2011-11-30	곽*선, 조*연, 조*기, 이*문, 이*상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특허	32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1)	10-1610289	2016-04-01	정*항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특허	33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2016-04-15	원*만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특허	34	방화 커튼 장치	10-1343047	2013-12-12	이*선	영등포소방서
특허	35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2015-09-03	김*대, 이*선	은평소방서 영등포소방서
특허	36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2016-11-02	김*대, 이*선	은평소방서 영등포소방서
특허	37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2016-12-28	황*규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특허	38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2017-03-30	황*규	강북소방서
특허	39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2010-09-09	이*선	마포소방서
특허	40	자가공기호흡장치	10-1083726	2011-11-09	이*선	영등포소방서
특허	41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2012-03-15	이*호	상수도본부 (암사 아리수)
특허	42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2014-05-22	김*주, 신*호, 김*래, 김*제, 김*래, 원*관	보건환경연구원

1 시유특허 정비 관련 원발명자 양수희망 의견서

연번		소속		발명자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발명자 양수 희망 의견	양수 희망 사유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바랍니다				

2026. 00. 00.

※ 서명 날인 필수,(스캔) ○ ○ ○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9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크라운방재(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

업 종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크라운방재 주식회사 (659-87-03042)	손정화 (1988.12.20.)	제 서울(성동) 2026-0001호 (2026.4.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62, 101호(하왕십리동)	02-2296-5119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2622-1692)으로 연락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06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안)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점용허가 신청 사항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오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강남구 대치동 2	78	AIoT 기반 악취 최적 관리 기술 실증	2026.03.05. ~ 2026.12.31.
㈜에이치에스씨엠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1길 53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05	54	탈수된 하수 슬러지 저온 건조기술 소규모 실증	2026.03.04. ~ 2026.06.30.
㈜알이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11-19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05	54	유기성 하폐수 고농도 농축수 확보 및 자원회수 실증	2026.04.09. ~ 2027.09.02.
㈜블루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57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05	54	전기삼투 기반 하수슬러지 감량 및 탄소저감 실증	2026.04.14. ~ 2027.09.02.

2.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3.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 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07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협약 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서울시 간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시정지시(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5일간)
2. 공고내용 : 시정지시
   (협약 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지위치	대상자	기본주소	처분내용	사유
사당동 10○4-1	송○	서울특별시 관○구 행○1○길3○, 30○호	협약 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폐문부재

4. 송달내용

○ 위 대상자가 시행하고 관리 중인 동작구 10○4-1 청년안심주택(사당○브)에 대하여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제9조 제3항 1호, 7호)하여 시정지시(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합니다.

○ 우리 시 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5.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예정이며,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제 9조 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99,529,131,0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우리 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97).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0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회*싱*래*티 등 341명
4.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6. 3.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5. 14. ~ 2026. 6. 3.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8서11**	주*회*싱*래*티	경기도 안산시	2026-04-01 16: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	16구55**	농*회*법*주*회*칠*삼*오*든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6-04-07 17:2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	경기50바12**	오*상*여*운*(*)	경기도 오산시	2026-04-08 0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	42고68**	주*회*지*디*이*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9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	342가73**	스*디*씨*엠*식*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0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	87마60**	주*회*진*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8 18: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	269우77**	(*)*릿*브*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8 19: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	183루67**	청*주*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9 19: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	174부34**	(*)*산*역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4 19: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	48버02**	주*회*에*스*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4-07 17:1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6 10:27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2	06더48**	주*회*먼*리*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1 08:09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3	240노45**	강*새*법*사*인*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7 10: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	195하29**	주*회*대*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8 13:3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5	866다39**	주*회*에*허*	경상남도 함양군	2026-04-06 18:1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	20버48**	신*실*콘*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06 19: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	충북82사10**	씨*이*한*운*주*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08 14:13	잠원동성당앞	50,000
18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6 15:4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9	88도17**	주*회*이*하*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9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	66부07**	(*)*이*제*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5 10:5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여의도동)	50,000
21	201구14**	재*한*세*유*재*법*(*세*돈*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4-07 17:3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2	175허86**	다*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9 11:5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3	92노57**	주*회*웃*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4-06 17: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	172호50**	(*)*이*티*터*	인천광역시 중구	2026-04-08 19: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5	93버38**	주*회*지*에*앤*	경기도 하남시	2026-04-10 16: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26보28**	제*바*트*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5 07:5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50,000
2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6 10:29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8	29가06**	주*회*이*컴*니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3-31 13:1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29	143다99**	(*)*보*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2 18: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0	259무64**	주*회*멀*마*시*템	경기도 하남시	2026-04-10 19:21	봉현초등학교~중앙시장	50,000
31	223허73**	주*회*플*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1 20: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	226하85**	주*회*피*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2 20: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	05하85**	주*회*슈*메*드*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3 20: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10 09:42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35	105보42**	에*수*주*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9 19:30	잠실역~석촌역	50,000
36	20로85**	(*)*타*지*항*	경기도 하남시	2026-04-07 07:35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37	18소73**	주*회*제*제*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10 11:3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8	172버78**	(*)*사*터*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7 18:3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8 (신사동)	50,000
39	82소11**	(*)*우*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9 19:18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40	394보84**	주*회*제*앤*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10 15:2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1	245더50**	장*주*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2 15: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2	199하81**	주*회*정*종*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2 09:24	개화교	50,000
43	82오01**	주*회*대*상*	경기도 광주시	2026-04-08 0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	63버42**	주*회*스*코*레*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6 13: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61	50,000
45	179하23**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4-07 19: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	209서68**	주*회*이*스*에*케*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10 10:10	난곡사거리~봉림교	50,000
47	15더73**	(*)*텍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4-07 10:17	말죽거리공원사거리~양재역교차로	50,000
48	61마90**	주*회*국*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4 20: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49	20오70**	주*회*투*톤*프*씨	경기도 양주시	2026-03-28 14: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50,000
50	242버69**	다*종*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06 11:4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1	서울90바39**	주*회*물*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10 20:1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2	179허10**	푸*솔*광*식*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4-11 06:3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3	경기99아23**	대*종*물*(*)	경기도 안성시	2026-04-09 12:35	양재동 양재IC 상행	60,000
54	349로48**	이*템*식*사	경기도 김포시	2026-04-08 09: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6 17:02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56	32도27**	후*즈*이*타*랫*주*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3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7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6 15: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8	981도70**	(*)*스*이*에*	경기도 수원시	2026-04-06 11: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59	175하92**	농*식*	서울시 마포구	2026-03-17 0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0	28두99**	주*회*블*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4-08 11: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1	71나28**	배*훈	경기도 고양시	2026-04-07 16:54	천호대교남단ic~광장사거리	60,000
62	132다50**	(*)*그*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09:05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63	181호70**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4-11 12: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64	308소40**	주*회*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9 07:27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65	63서11**	(*)*한*계*문*통	경기도 고양시	2026-04-09 1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6	97가79**	대*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7 17:0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67	264머23**	(*)*양*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7 07: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8	222허46**	주*회*이*블*씨	경기도 성남시	2026-04-02 08: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9	222호67**	주*회*케*엠*넷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2 17:3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70	223호98**	쿠*풀*먼*서*스*한*사	경기도 고양시	2026-03-30 0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1	223하63**	법*법*웅*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31 20:4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2	21루85**	주*회*피*에*금*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7 17:1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73	227하51**	주*회*엠*엔*퍼*이*	대구광역시 동구	2026-03-31 13: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4	32도27**	후*즈*이*타*랫*주*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7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5	349우28**	런*웨*프*자*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7 15: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76	384루25**	월*오*코*아*식*사	충청북도 청주시	2026-04-07 16:48	헌릉로(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77	175버77**	주*회*태*아*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0 13:56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	50,000
78	825구13**	우*에*엔*주*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6-04-07 18:0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9	11어27**	주*회*로*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30 08: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0	869버61**	웨*브*(*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6-03-31 07: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1	04러15**	주*회*시*애*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7 11:2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2	346다24**	주*회*은*하*스	경기도 안산시	2026-04-09 08:01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83	76무77**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7 17:28	종각역~종로3가역	60,000
84	191호37**	주*회*지*플*스	경기도 하남시	2026-03-30 0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5	214라57**	(*)*강*크	경기도 과천시	2026-04-01 09:1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86	222허46**	주*회*이*블*씨	경기도 성남시	2026-04-02 08: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7	경기78바78**	주*회*더*스	경기도 양평군	2026-04-08 18:04	석촌역교차로	60,000
88	72허29**	노*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7 08: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60,000
89	01러84**	(*)*양*스*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3 11:3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90	87로04**	주*회*오*지*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7 0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1	101호75**	김*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2 09: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92	서울중하24**	민*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4-06 09:36	종암사거리~사대부고앞교차로	40,000
93	22누87**	임*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06 12:45	강동역~길동사거리	50,000
94	서울31바81**	김*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7 08: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95	135로20**	권*일	경상북도 구미시	2026-04-07 18: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6	서울32바55**	장*재	경기도 파주시	2026-03-29 09:15	연희ic~사천교	50,000
97	815더25**	김*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3 09:02	월계1교교차로~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50,000
98	96마11**	홍*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4-01 09:04	월계1교교차로~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50,000
99	경기88바19**	이*식	경기도 구리시	2026-04-03 16:48	잠실역~잠실새내역	50,000
100	서울31아25**	이*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7 17: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1	50도86**	김*빈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9 14: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2	35더25**	김*윤	경기도 광주시	2026-04-07 08: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3	32러62**	K*A*R*L*A*V*K*O*K*A*R*L*O*G*I	충청북도 음성군	2026-04-09 11:2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4	37너83**	신*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3 20: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50,000
105	85노52**	Z*A*Q*F*N*	경기도 시흥시	2026-04-08 11: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6	40머55**	김*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6 07:27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50,000
107	143가65**	한*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4-09 17:0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08	서울31사26**	이*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11 15:50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109	서울31바90**	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4-09 11:40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110	09노06**	한*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8 10:5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1	30루42**	김*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09 19:5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12	84버40**	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7 09:4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13	333노66**	X*Z*E*G*U*	경기도 부천시	2026-04-09 1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14	03보12**	정*화	경기도 용인시	2026-04-07 16:50	헌릉로(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115	193하30**	박*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5 10: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6	64다64**	T*S*O*U*A*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6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7	100우69**	B*Y*R*U*E*B*L*R*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9 18: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8	01오63**	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7 18:4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9	355어30**	허*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6-04-08 10:32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20	31가59**	최*환	경기도 김포시	2026-04-07 17: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1	369머47**	P*K*O*G*U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4-09 11:5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2	14두30**	김*술	경기도 하남시	2026-04-08 16: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3	19조89**	박*석	경기도 수원시	2026-04-07 13: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4	서울31사36**	민*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7 07: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25	223가24**	김*은	경상남도 거창군	2026-04-10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6	32라68**	이*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4 08: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50,000
127	38저01**	김*숙	서울특별시 중구	2026-04-07 18:2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8	48거51**	L*S*U*X*A*	경기도 시흥시	2026-04-07 11: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29	서울31자32**	민*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6 10:27	성모병원앞교차로~한양아파트앞교차로	50,000
130	43머35**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9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1	60가40**	정*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1 07:55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132	183루11**	T*N*I*T*R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4-08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3	22러05**	박*영	경기도 가평군	2026-04-06 0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4	83부48**	장*선	경기도 용인시	2026-04-06 07:09	내곡교~어린이병원	50,000
135	29오52**	김*진	경기도 김포시	2026-04-06 09: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6	서울91자21**	전*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6 20:2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37	64나99**	양*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08 18:0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38	21너17**	강*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4-07 16: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9	38구82**	이*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4-07 13: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0	161호83**	L*N*H*N*Z*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2 15: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1	123부60**	홍*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11 10:59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50,000
142	75주29**	남*함께국민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2026-04-10 10:5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0,000
143	43버18**	김*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10 08: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44	87우61**	조*근	경기도 용인시	2026-04-10 06: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5	23주34**	구*연	경기도 양평군	2026-04-10 14:0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46	서울32아33**	황*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9 19:50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47	서울32사52**	전*호	경기도 하남시	2026-03-09 14:15	군자교교차로~군자역	50,000
148	56수77**	이*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10 19: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49	18가02**	장*석	인천광역시 서구	2026-04-07 09: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0	53고66**	Y*L*A*R*M*Z*N	광주광역시 서구	2026-04-09 14: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1	128오55**	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6 13: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52	서울31사36**	안*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10 08: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3	330주82**	홍*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6 18:29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54	38서32**	이*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08 09:4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5	252어22**	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7 19: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50,000
156	178가97**	R*N*H*C*U*	경기도 시흥시	2026-04-07 17: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7	817서39**	김*선	인천광역시 서구	2026-04-07 11:42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58	서울91자41**	박*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10 07:3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59	97조79**	이*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10 19:2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0	37거87**	윤*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4-09 19: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61	65저24**	김*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10 01: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62	66무11**	신*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10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63	116호64**	유*환	경기도 부천시	2026-03-20 17: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4	48더02**	박*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18: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5	서울31바66**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10 09: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66	191거74**	최*옥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09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7	37허83**	전*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1 18:18	국제금융로8길	50,000
168	11마09**	조*운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7 07: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69	25주61**	U*S*N*U*L*N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06 12:0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0	190하94**	이*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30 09: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71	13모97**	한*아	경기도 부천시	2026-04-09 17: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2	62서46**	이*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31 13: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50,000
173	351부18**	정*례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09 1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74	24무89**	박*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10 07:4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5	서울중아32**	박*훈	서울특별시 중구	2026-04-02 17:30	종로3가역~종로5가역	40,000
176	서울성북가64**	P*A*C*E*G*A*G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4-02 17:45	종로5역~흥인지문교차로	40,000
177	32누07**	박*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3 18:21	성내교	50,000
178	84서18**	김*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3 09:14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179	340루98**	성*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01 08:12	태릉~서울여대	50,000
180	169어56**	유*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9 09:1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81	서울31자65**	이*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9 1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2	03고47**	김*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6 10: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3	서울32자17**	소*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12:22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50,000
184	257루81**	안*훈	경기도 구리시	2026-04-07 17: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5	93루66**	김*지	경기도 화성시	2026-04-02 08:19	청량리역 3번 출구~청량리역 1번 출구	50,000
186	01조34**	김*자	경기도 양평군	2026-04-09 19:4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7	서울31사28**	박*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4-09 08:23	용화여고~ 노원역	50,000
188	서울31자37**	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10 10:09	난곡사거리~봉림교	50,000
189	서울31사82**	오*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9 09:34	잠실새내역~잠실3사거리	50,000
190	서울06거74**	문*성	경기도 하남시	2026-04-09 09: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60,000
191	92루04**	조*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4-10 11:0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92	05라94**	김*완	경기도 하남시	2026-04-09 10:44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93	14라05**	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31 09:1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94	서울32사90**	권*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8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5	199호32**	오*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2 18:2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6	26어70**	최*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08 1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7	89보30**	장*호	경기도 고양시	2026-04-09 16:1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98	224호9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5 19: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9	서울31바52**	김*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8 09: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00	112부82**	이*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6-04-06 07:22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201	123너69**	오*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9 08:04	의원회관앞교차로~국회의사당앞교차로	50,000
202	서울320아31**	우*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4-08 16:46	서울역 1호선 1번 출구~4호선 14번 출구	50,000
203	270주66**	박*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4 20: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204	130호40**	박*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1 09:01	성산교~마포구청역	50,000
205	서울강북나04**	윤*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31 17:49	서울 종로구 종로 74 (종로2가)	40,000
206	94루37**	라*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7 09:2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07	212고80**	원*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6 08: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8	89러29**	안*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4-07 08: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9	34조43**	진*혜	충청북도 진천군	2026-04-07 13:3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10	28우52**	민*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10 20: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1	242구22**	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6 1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2	232우20**	이*준	충청북도 청주시	2026-04-08 19: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13	57호45**	신*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1-30 16:05	이수교차로~경문고교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4	106다66**	김*환	경기도 파주시	2026-04-09 12:0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15	서울31자62**	권*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4 20:47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216	808부45**	이*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02 15:39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17	18누29**	유*주	경기도 하남시	2026-04-07 14:5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18	서울83사36**	W*J*N*O*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7 07:1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9	42루38**	김*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0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0	88저70**	박*진	경기도 수원시	2026-04-10 18:00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21	158러36**	정*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19 11:49	여의도버스환승센터	50,000
222	827너11**	J*N*H*N*N*N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7 17: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3	84노32**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10 07:13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224	376우61**	이*진	경기도 부천시	2026-04-06 10: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225	서울31사15**	이*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9 09:43	논현역~신사역	50,000
226	258다31**	한*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8 20: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7	256조50**	최*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8 17: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8	180노18**	오*선	경기도 오산시	2026-04-08 18: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29	279마49**	김*회	경기도 김포시	2026-04-08 17: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0	81보19**	김*일	경기도 구리시	2026-04-07 09:1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31	24도80**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10 07:23	아차산지하차도~아차산역사거리	50,000
232	59누47**	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8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33	서울32사78**	설*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8 09:4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34	85노52**	Z*A*Q*F*N*	경기도 시흥시	2026-04-06 17: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5	108고96**	Y*S*P*V*H*M*D*L*O*H*Y*U*L*U*L*	충청남도 아산시	2026-04-06 16: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6	29주65**	이*영	전라남도 구례군	2026-04-06 20: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7	130무79**	황*익	경기도 용인시	2026-03-23 08: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238	141거58**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9 19:5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39	76고86**	J*N*H*G*O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10 16:18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60,000
240	92누57**	김*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9 19:00	양남사거리~오목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1	144누43**	최*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6-04-11 05:47	장지교교차로~복정역교차로	50,000
242	서울31바37**	하*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4-09 17: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43	18더91**	J*A*G*H*Z*U	경기도 김포시	2026-04-08 08: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44	250루74**	권*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7 20:0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50,000
245	211수82**	허*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4 10:1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246	11부35**	김*순	경기도 시흥시	2026-04-12 13:4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47	62라13**	이*숭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9 09:5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48	156하32**	박*혜	경기도 화성시	2026-03-21 17: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49	195하13**	옥*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5 16:55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50	109호28**	김*탄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6:29	강남소방서앞	50,000
251	181오72**	서*명	경기도 성남시	2026-04-07 08: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2	248다67**	이*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4 16:48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동)	50,000
253	42구50**	이*주	경기도 김포시	2026-04-09 14: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4	394가16**	남*우	충청북도 음성군	2026-04-06 18: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5	167호89**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7 10: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6	62주25**	김*애	충청남도 논산시	2026-04-06 19:0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7	810너13**	임*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6 09: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8	195호36**	하*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6 08: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9	220호72**	김*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30 17: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0	198너20**	맹*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4-10 11:0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61	87고99**	류*현	경상남도 양산시	2026-04-07 13:0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62	164저78**	신*탁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4-08 1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3	133하33**	한*규	경기도 하남시	2026-03-10 11: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4	35소76**	김*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8 13: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65	75저51**	정*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7 11:42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66	198루10**	김*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6 18: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7	29오81**	김*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4-06 17: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8	서울31사66**	최*열	경기도 하남시	2026-04-07 20: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9	809부59**	M*N*H*A*T*R*L*I*K*I*H*G	경상남도 창원시	2026-04-10 09:3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시내방향)	50,000
270	서울31아62**	김*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7 09:0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1	133호56**	김*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2 18: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72	14두30**	김*술	경기도 하남시	2026-04-06 16: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3	24호46**	이*	경기도 화성시	2026-04-04 17: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4	26수95**	신*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17:3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75	서울89자51**	권*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1 07: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67	50,000
276	50루63**	이*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8 09:5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77	서울32사68**	이*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09 09:47	천호대교북단	50,000
278	56누45**	이*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4-10 09:0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79	36도83**	양*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4-08 17: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80	149서43**	김*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09 15:2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81	65모89**	조*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4 09: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50,000
282	23주50**	하*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8 20:1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3	370수34**	함*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7 19:0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4	서울32바29**	함*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2 10: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85	85우45**	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6 15: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6	서울31사57**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9 1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7	161호83**	L*N*H*N*Z*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2 15:02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88	인천30바56**	임*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4-07 09: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9	144도75**	J*N*H*	경기도 군포시	2026-04-08 0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0	014다94**	한*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3 11:5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60,000
291	193하30**	박*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5 10: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92	281보62**	우*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4-03 07: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3	07소80**	최*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9 10: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4	25너06**	김*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4-08 18:0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5	10소05**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8 0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6	14저83**	고*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10 17: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7	108조34**	L*Y*H*A	경기도 시흥시	2026-04-07 08:42	오목교~양남사거리	50,000
298	154구72**	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6 18:0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99	185수98**	서*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11 20:3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00	47거21**	허*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11 12: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01	30모85**	J*N*A*S*A*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4-09 19: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2	45오25**	이*월	경기도 고양시	2026-04-08 17: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3	272어63**	김*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4-07 11: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4	134누68**	장*진	경기도 하남시	2026-04-08 09: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5	14두30**	김*술	경기도 하남시	2026-04-07 16: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6	서울31아65**	김*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4-08 18: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7	50다03**	한*만	경기도 안산시	2026-04-10 16:0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308	58오37**	임*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7 09: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9	13부24**	박*경	경기도 고양시	2026-04-09 17: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10	232로36**	정*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4-04 16:48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동)	50,000
311	154러85**	이*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4-07 17: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2	223호32**	이*원	경기도 김포시	2026-04-03 08:4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3	62거33**	유*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10 19:0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14	23주34**	구*연	경기도 양평군	2026-04-10 19: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5	238다73**	K*M*I*S*R*O*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4-07 18: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6	서울31바46**	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07 19: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317	311가16**	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10 13:16	LG에클라르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18	서울38아55**	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4-06 1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9	212나71**	최*환	경기도 포천시	2026-04-10 10: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0	143호51**	이*리	전라남도 무안군	2026-03-30 14: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1	156하32**	박*혜	경기도 화성시	2026-03-21 17:0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2	서울31바92**	김*중	경기도 하남시	2026-04-10 20: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323	11도80**	이*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10 20: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24	216서75**	홍*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6-04-03 12:22	국민일보앞	50,000
325	53머25**	이*석	경기도 수원시	2026-04-10 16:0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326	271노34**	서*석	경기도 수원시	2026-04-06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27	서울31바81**	김*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07 08: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28	82라38**	김*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8 19: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9	84수03**	권*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03 17:5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330	16구06**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2 08:22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31	서울31자28**	정*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9 17:0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332	13거46**	서*경	경기도 안양시	2026-04-09 13:19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333	195호36**	하*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7 08:3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4	13수47**	배*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1 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335	06다67**	박*재	경기도 시흥시	2026-04-11 16:4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36	26모08**	이*식	경기도 성남시	2026-04-06 09:57	장지교교차로	50,000
337	서울31자78**	김*식	경기도 구리시	2026-04-11 15:53	YBM빌딩	50,000
338	143하10**	송*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31 09: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39	257주25**	한*국	경기도 성남시	2026-03-30 09:06	복정역~장지역	50,000
340	101하89**	황*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4 07:41	숙명여고앞	50,000
341	810너13**	임*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10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 모아타운 추진 지역(10개소)

- 지정기간 :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443,481.55㎡) 내 지목 '도로' 한정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43,481.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5-107	18,914.95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593	74,127.20	
		구의3동 224-54	22,240.0	
		자양동 663	38,525.4	
	강남구	삼성동 84	34,802	
	구로구	개봉2동 304	34,860	
		개봉2동 305	80,712	
	동작구	사당동 449	60,826	
	송파구	잠실동 329	36,766	
	양천구	신월동 480-1	41,708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추진 지역(18개소)
- 지정기간 :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 지정범위 : 사업구역(1,003,754.7㎡)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003,754.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40,592.0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지역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	41,731.0	
		수유동 486 일대	72,385.0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63,963.3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77,001.2	
		연희동 170-14 일대	35,623.6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	63,654.0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14,526.0	
		용산동2가 44-3 일대	73,070.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95,889.5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	27,306.8	
		온수동 62 일대	10,927.0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	38,296.4	
	도봉구	창동 608 일대	66,395.8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	25,194.8	
		노량진동 205-269 일대	59,308.3	
		사당동 1026-10 일대	113,858.5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공공재개발)	84,031.0	

2. 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 지정기간 : 2026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 지정범위 : 변동 없음

– 허가 대상 면적 : 변동 없음 (녹지지역 100㎡ 초과)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합계			26.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5.35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21.34

○ 강남(대치,청담,삼성동), 송파(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 지정기간 : 2026년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 지정범위 : 변동 없음

▸ 대치동 미도아파트 : 모든 부동산

▸ 이외 13개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434,5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88,760.6	
			개포우성2차		
			선경	78,636.2	
			쌍용1차	47,659.0	
			쌍용2차	24,484.4	
			우성1차	29,874.0	
			은마	243,552.6	
			미도	195,080.4	
		삼성동, 청담동	진흥	51,035.5	
		청담동	현대(1차)	7,004.1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58,077.0	
			우성1·2·3차	120,354.0	
			우성4차	31,631.0	
			아시아선수촌	158,424.8	

3. 허가구역 조정

○ 구역변경 6개소

– 지정기간 : 변경 없음

연번	대 상 지 역	면적(㎡)		지정기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1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104,783	132,190	’ 26.4.4. ~ ’ 27.4.3.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증 27,407			
2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133,007.4	139,544.9	’ 25.9.30. ~ ’ 26.8.30.	
		증 6,537.5			
3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8,180.4	78,371	’ 26.1.29. ~ ’ 27.1.28.	
		증 190.6			
4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62,086.2	64,876	’ 26.1.29. ~ ’ 27.1.28.	
		증 2,789.8			
5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25,351	26,712	’ 26.1.29. ~ ’ 27.1.28.	
		증 1,361			
6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31,295	32,740.5	’ 26.1.29. ~ ’ 27.1.28.	
		증 1,445.5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 5. 19.),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 5. 14.)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지정, 재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강남 · 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허가 대상 면적 : 녹지지역 100㎡ 초과 (법정 기준 면적 50%)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붙임 1 (지정)
- 붙임 2 (재지정)
- 붙임 3 (조정)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1.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성북구 장위동 65-107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범 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적선

N

S = None

0 50 100 200m

2.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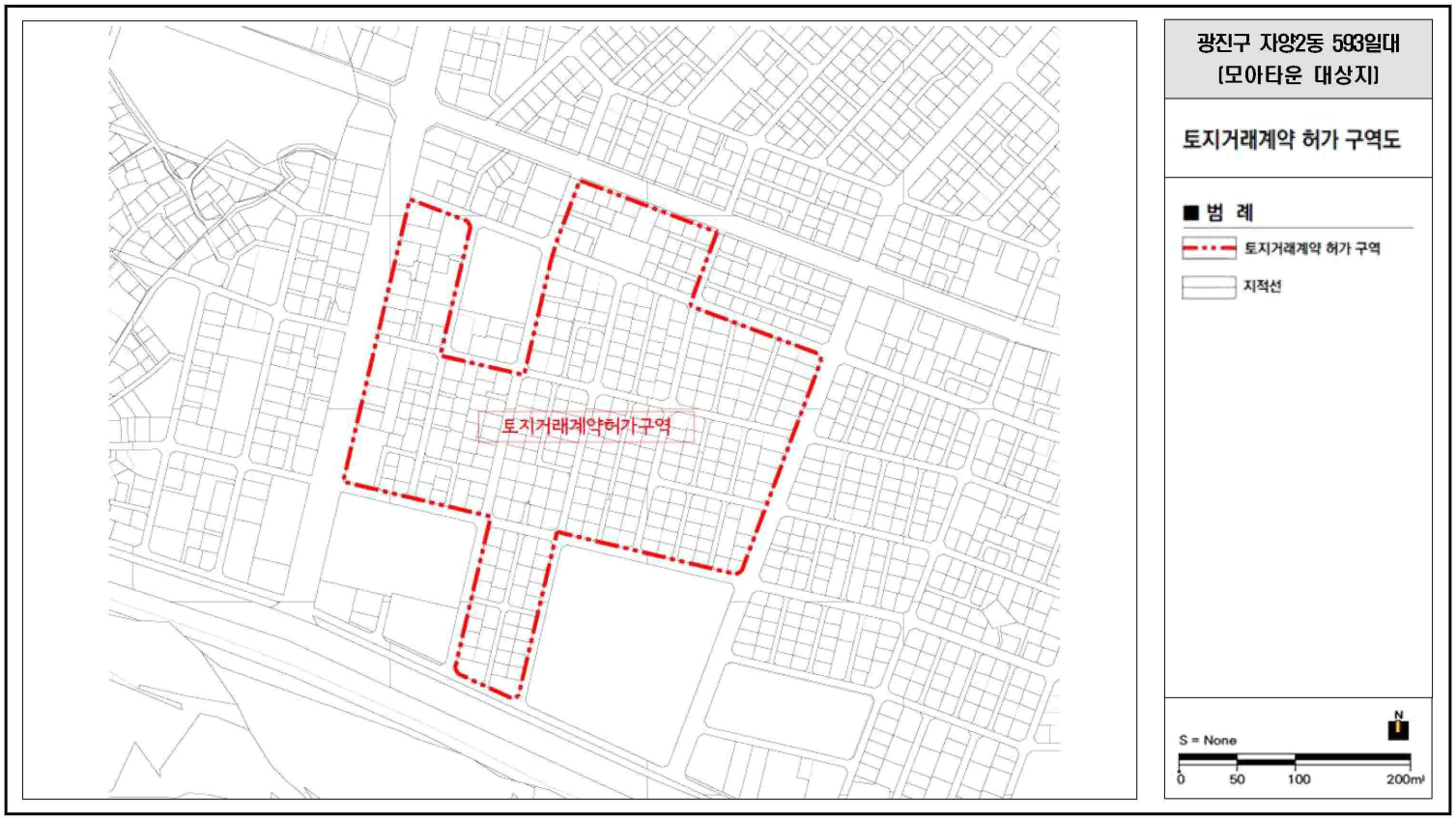

3. 광진구 구의3동 224-54 일대

4. 광진구 자양동 663 일대

5.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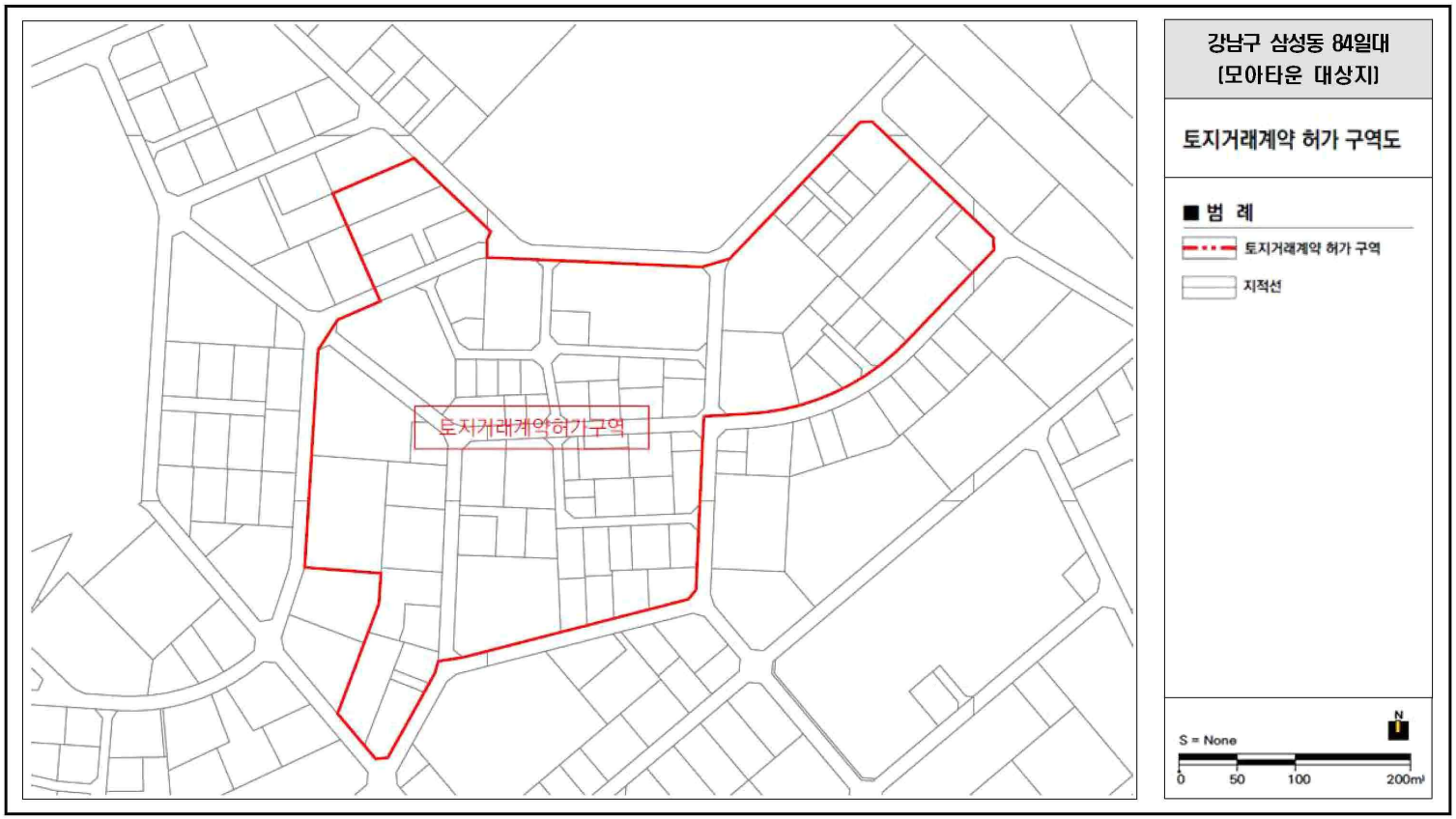

6. 구로구 개봉2동 304 일대

7. 구로구 개봉2동 30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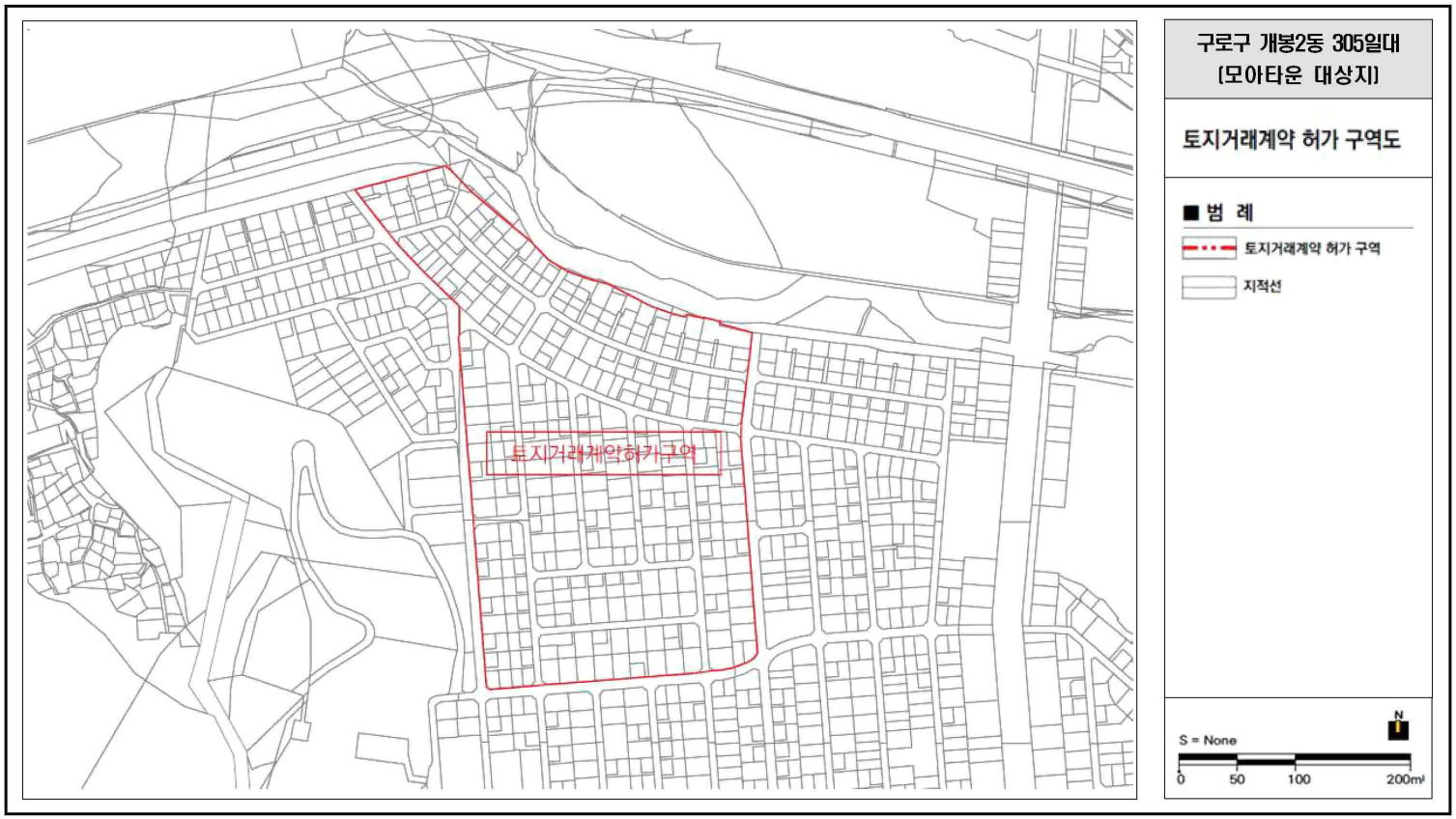

8.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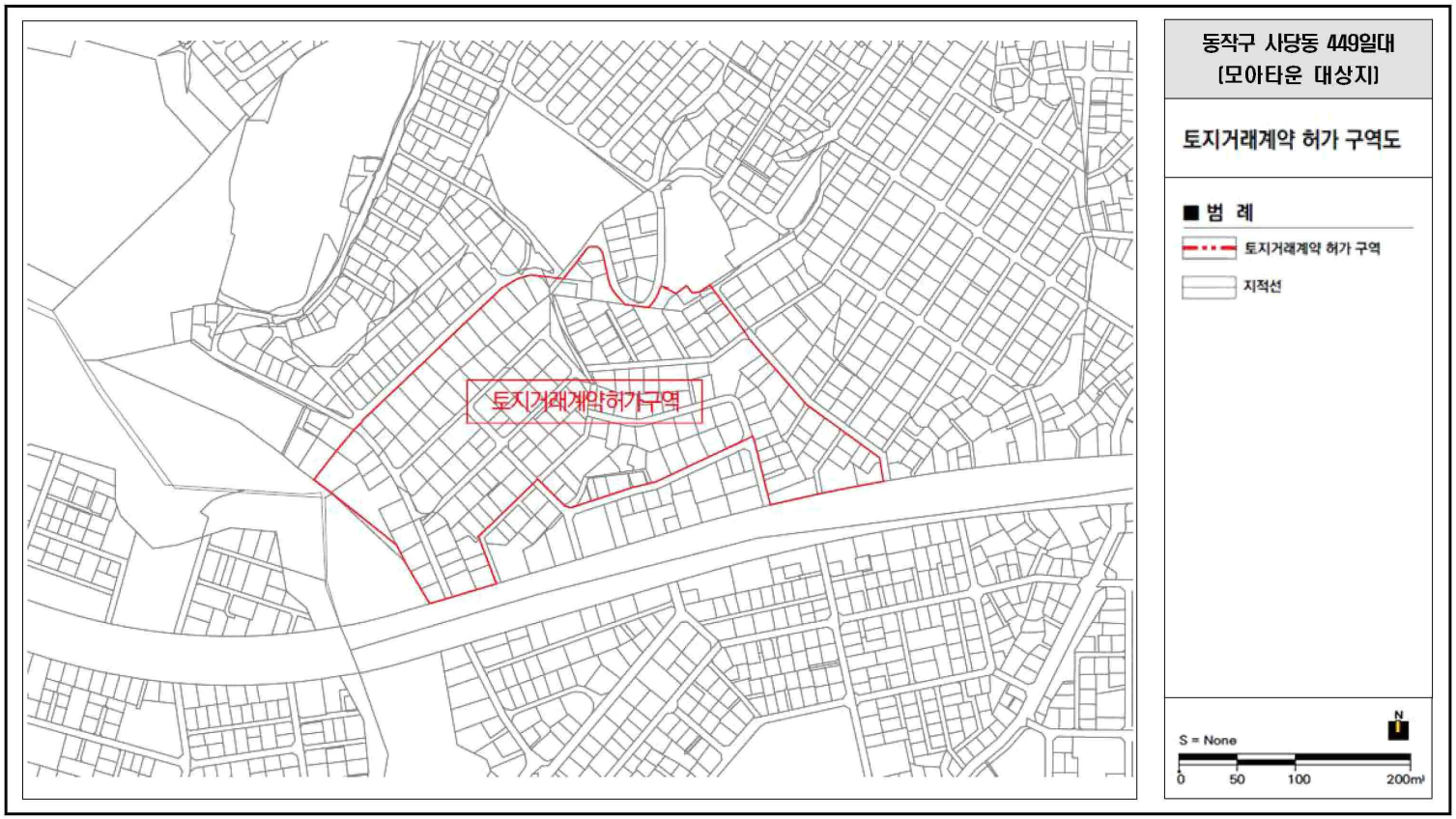

9.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10.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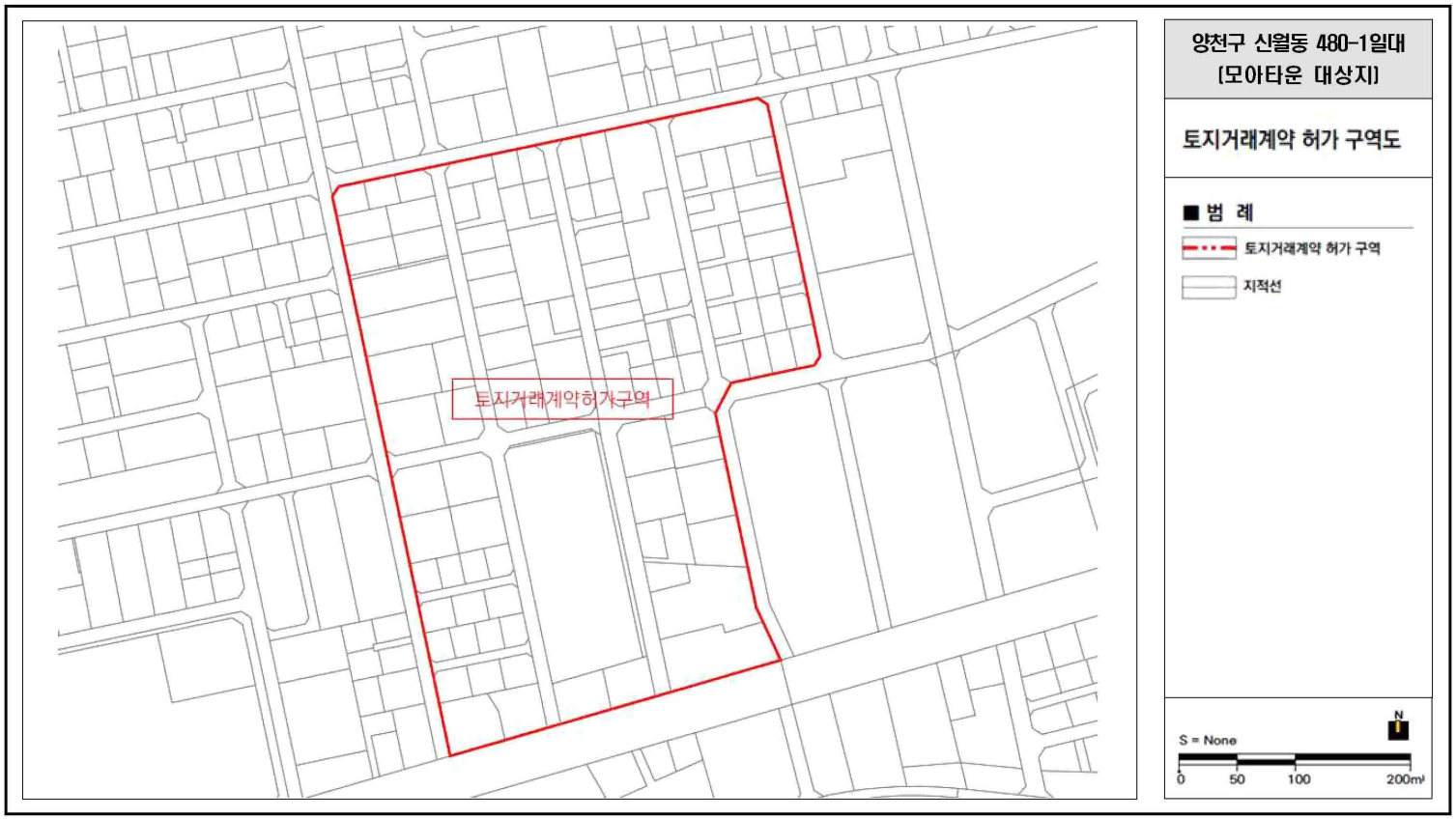

11.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12.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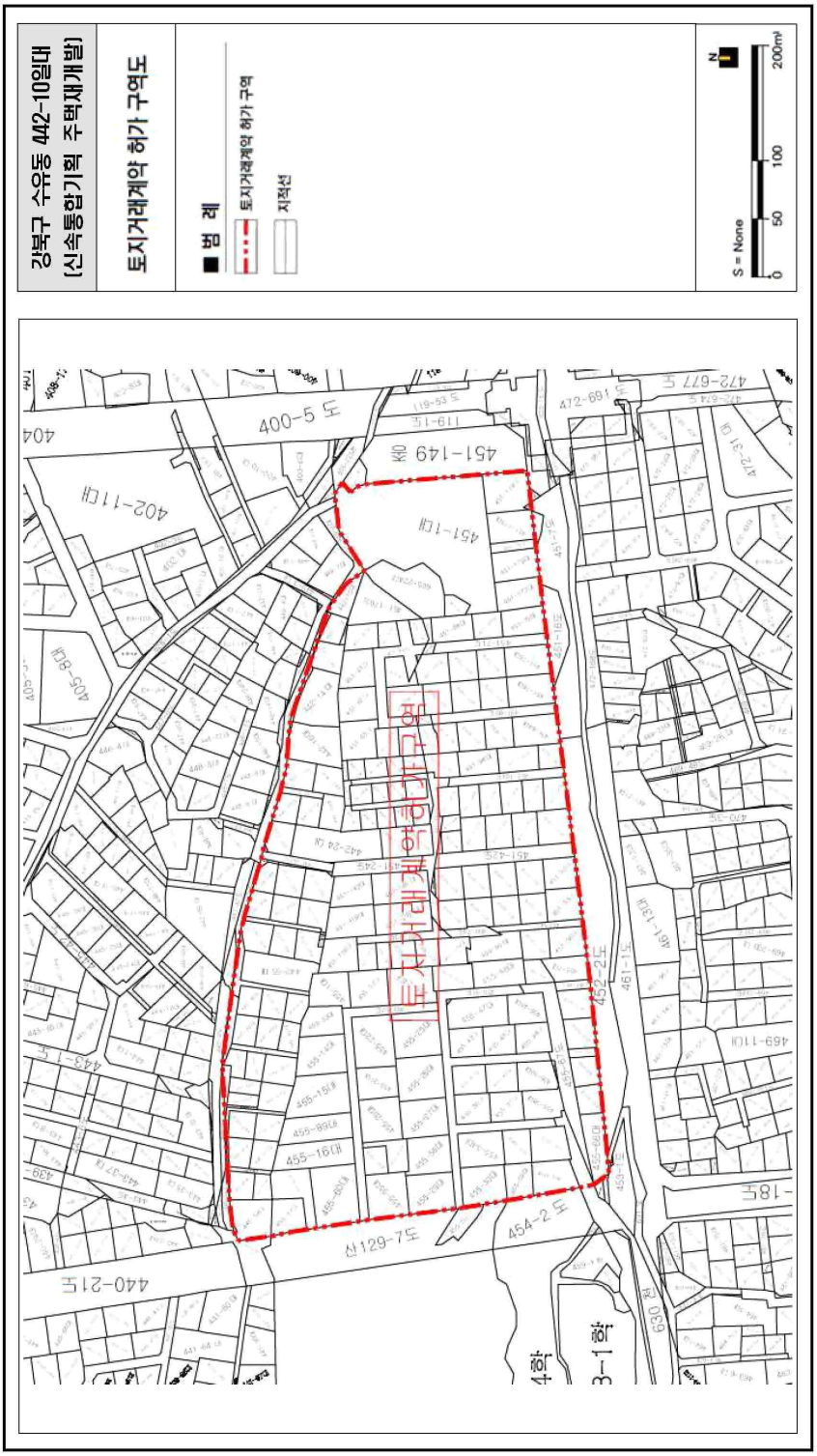

13. 강북구 수유동 48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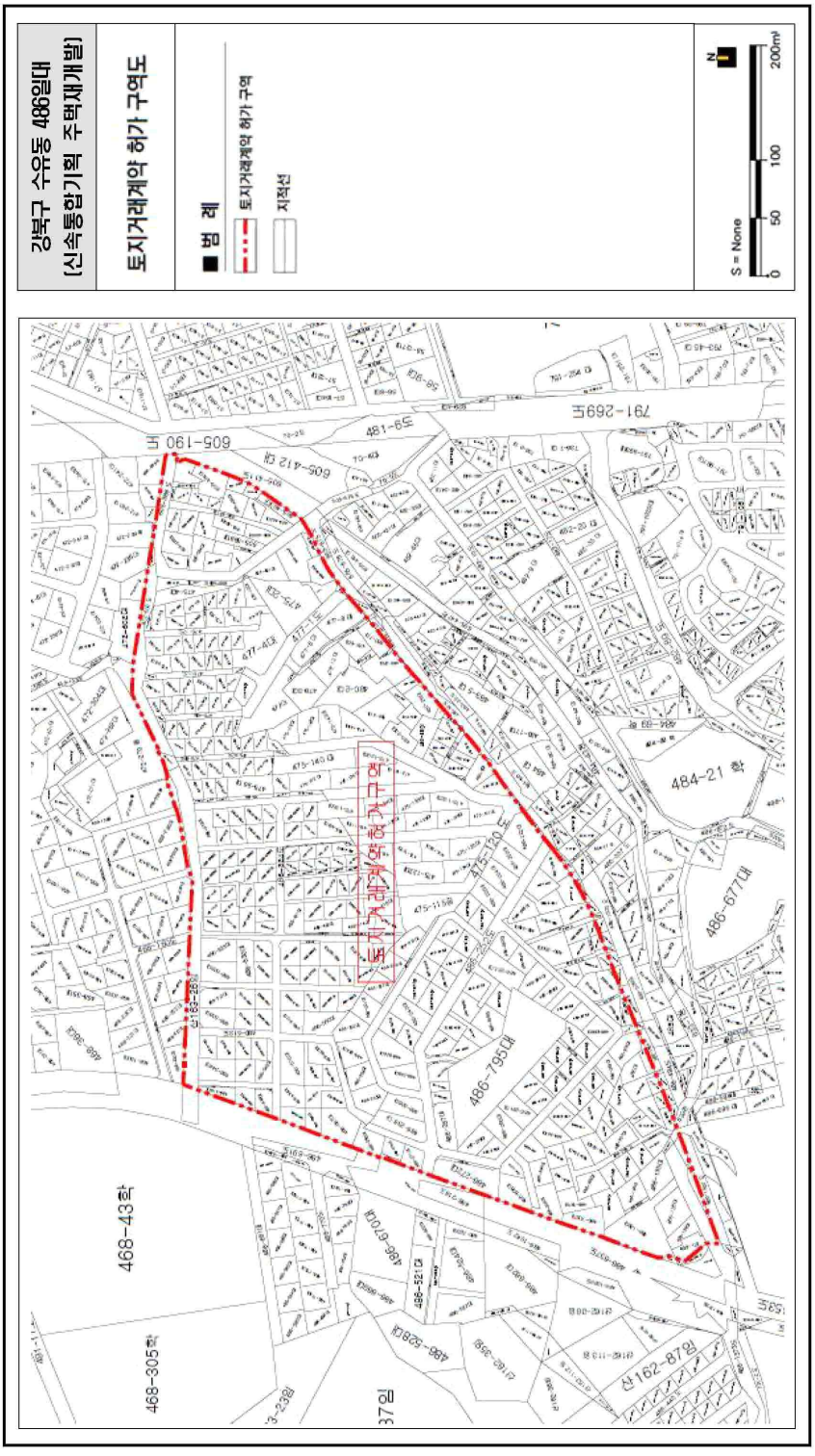

14.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15.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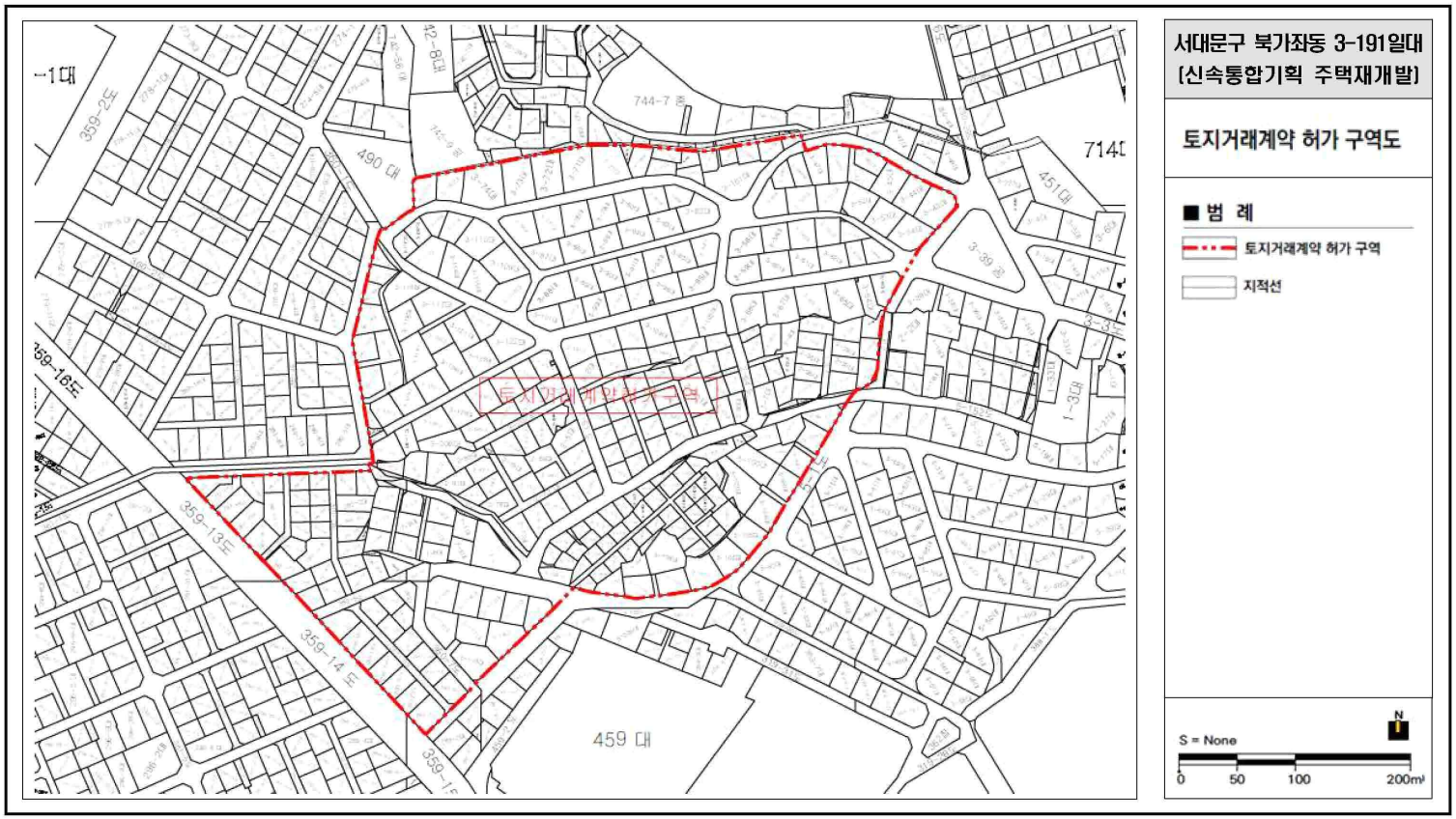

16. 서대문구 연희동 170-1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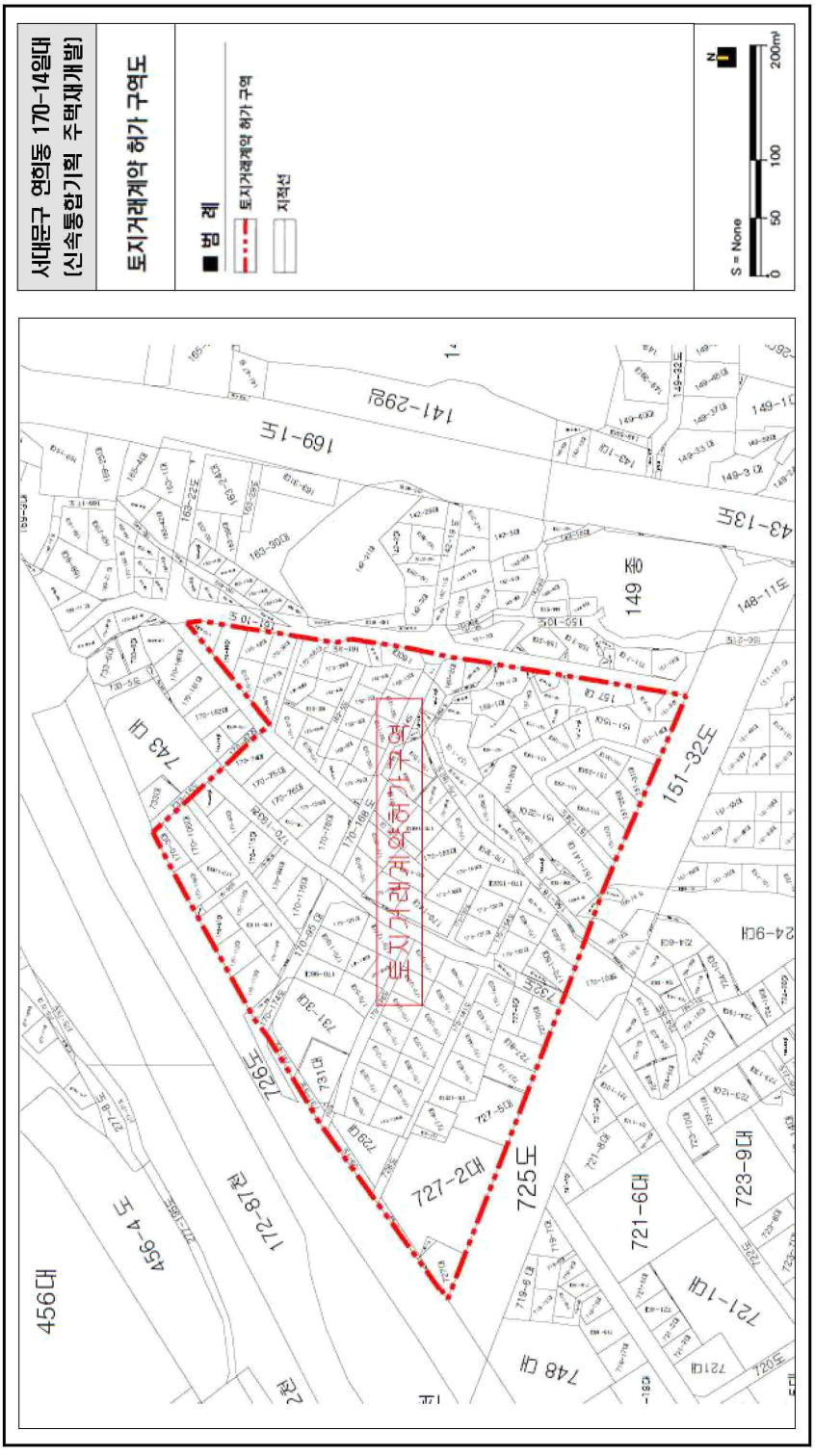

17.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

18.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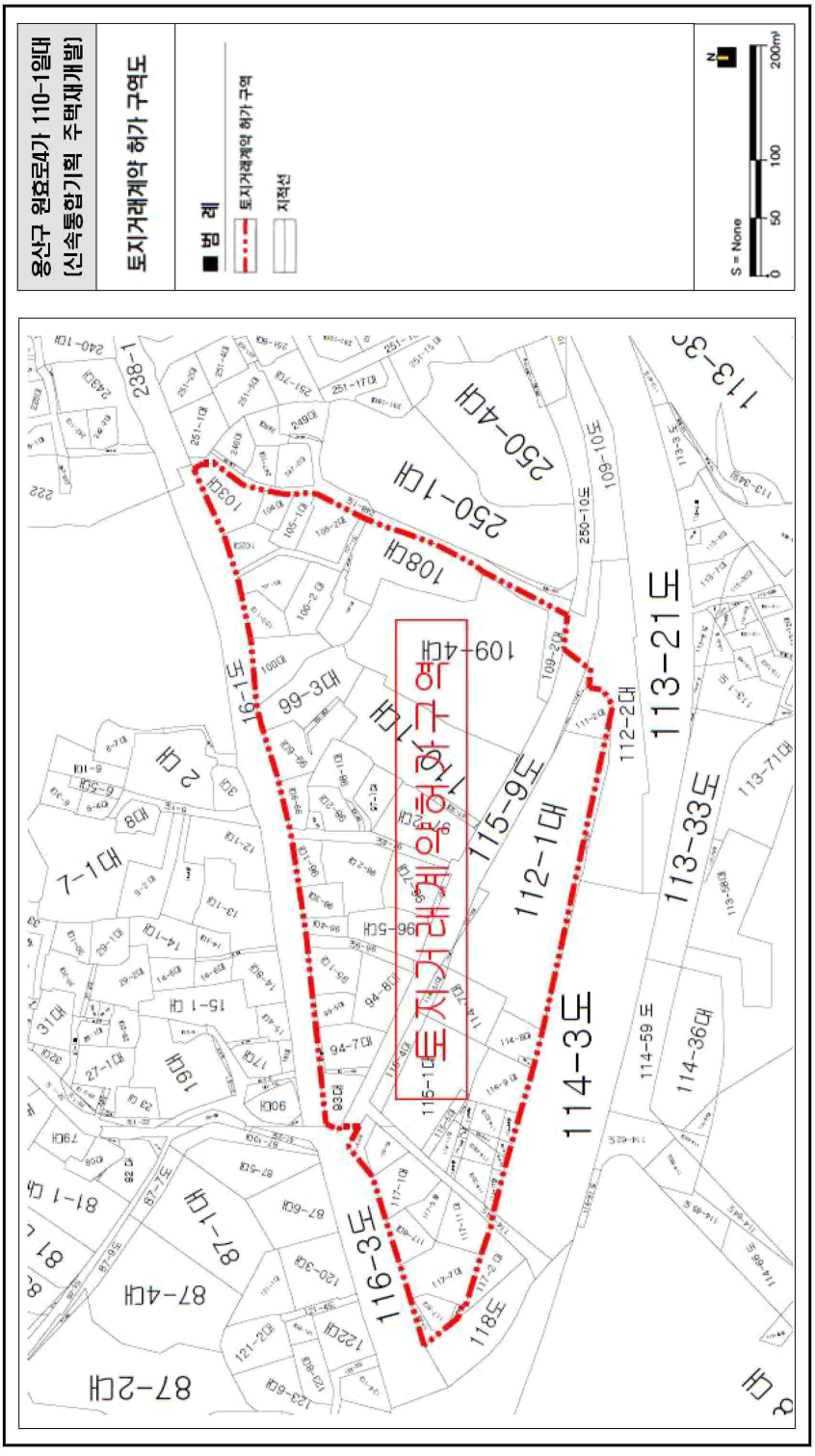

19. 용산구 용산동2가 44-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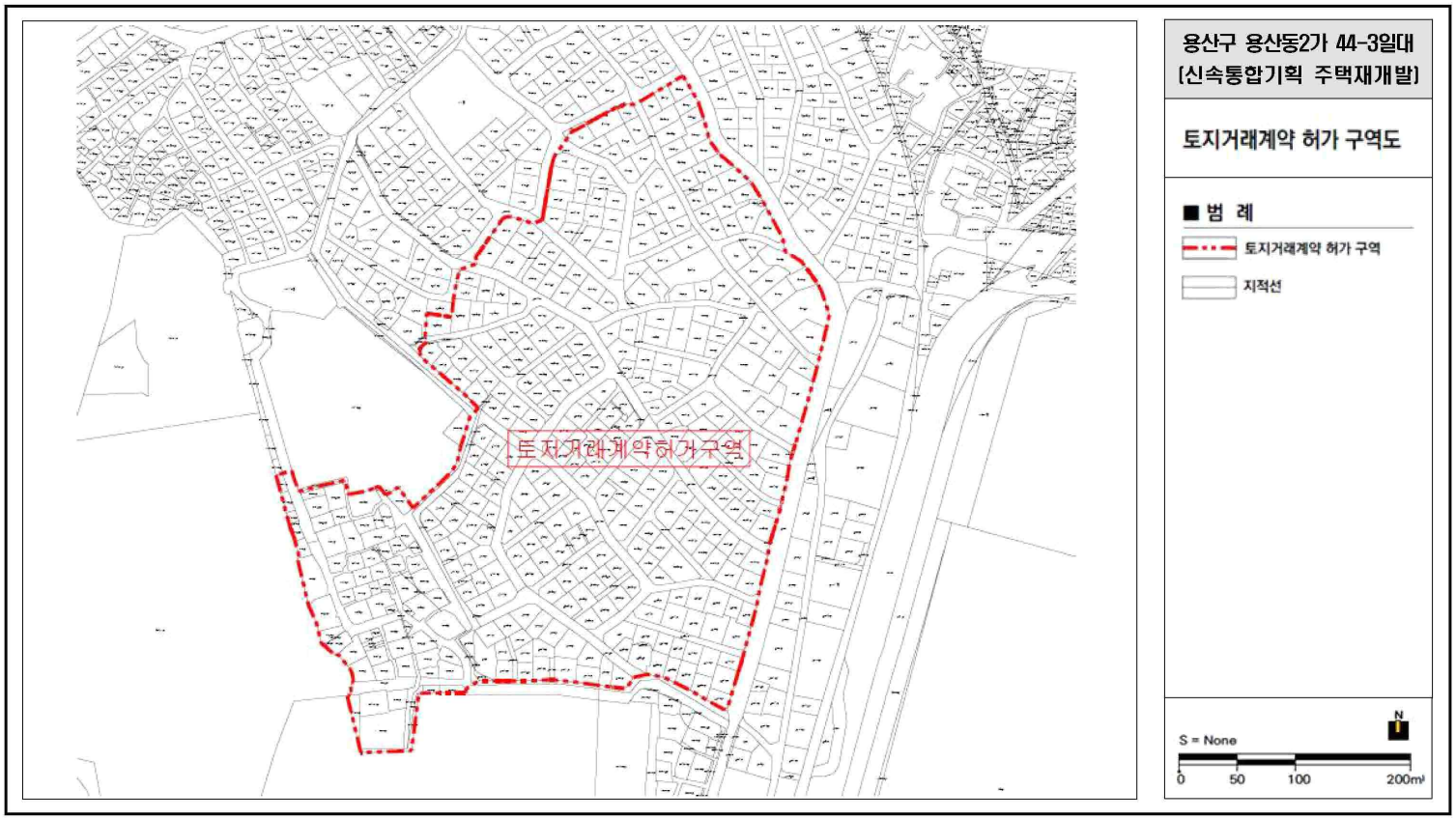

20.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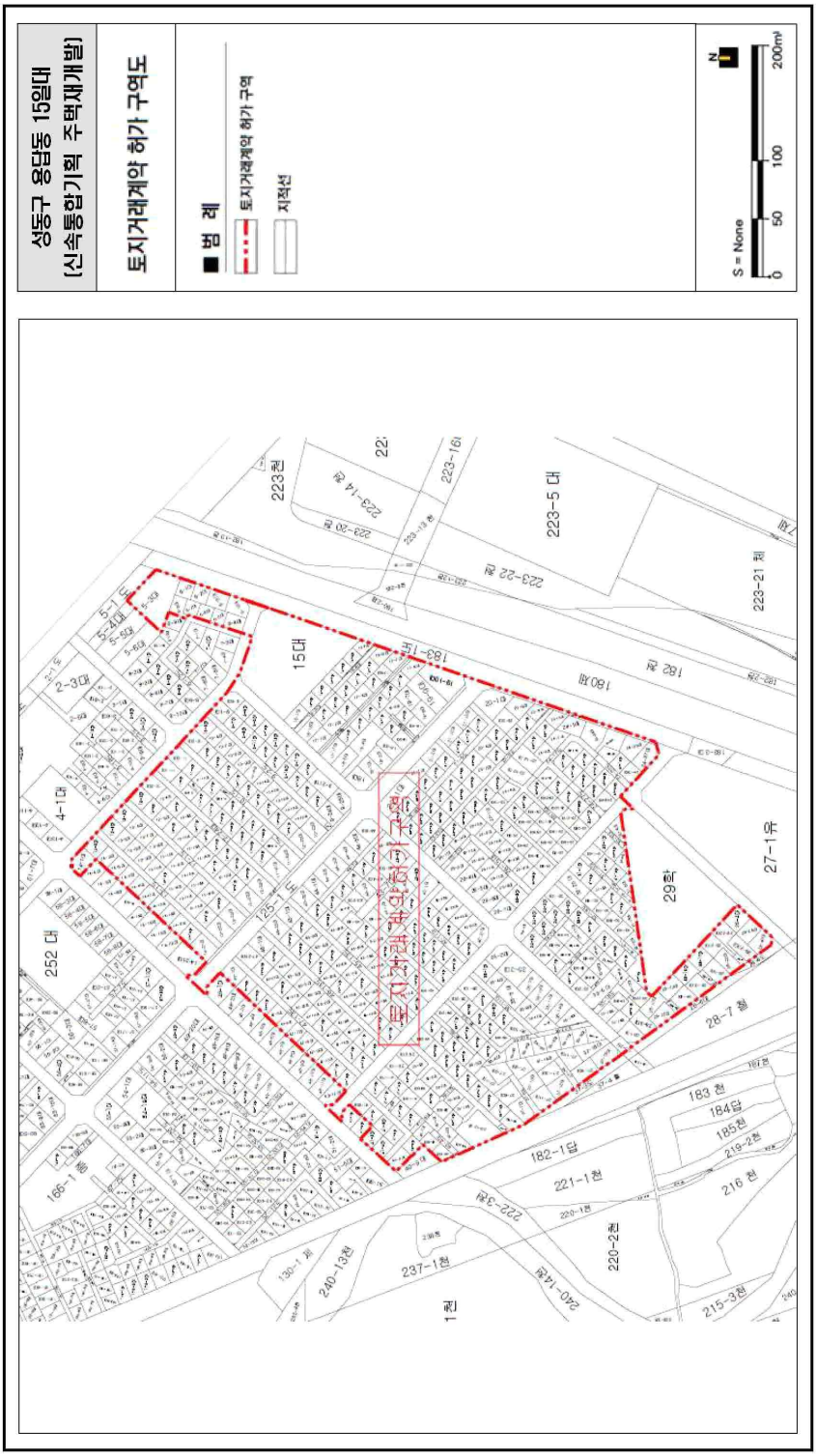

21.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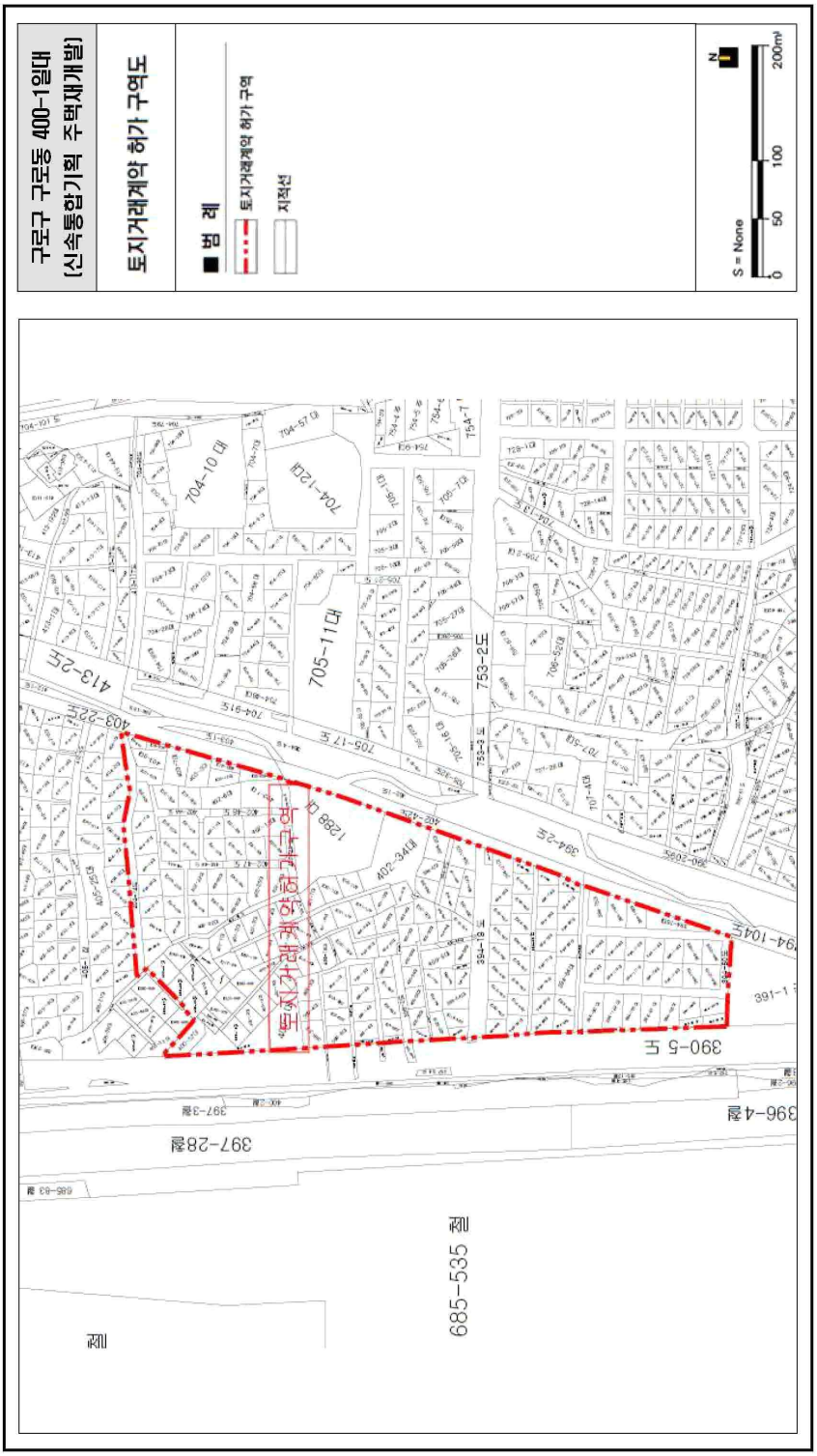

22. 구로구 온수동 6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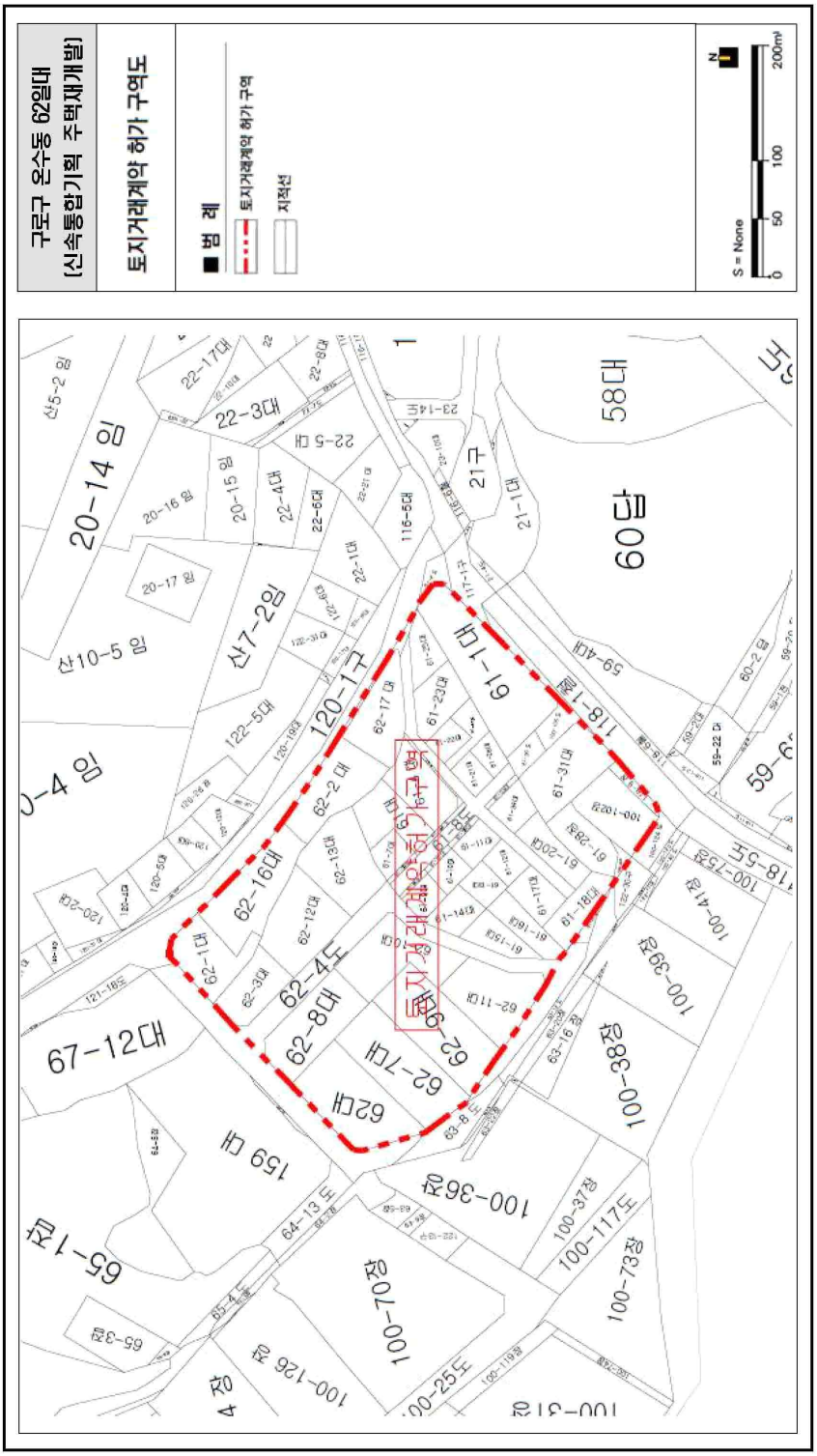

23.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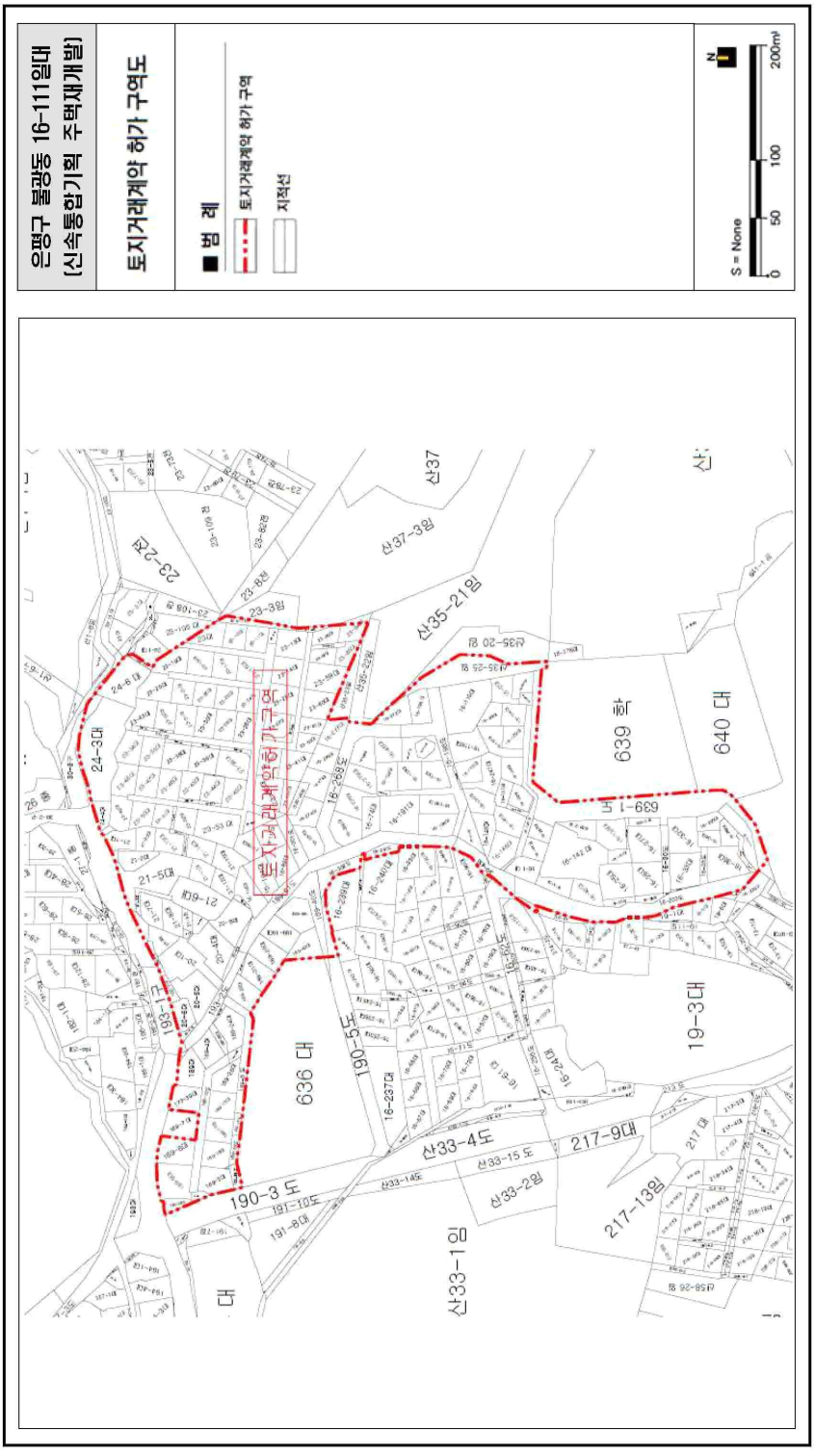

24. 도봉구 창동 608 일대

25.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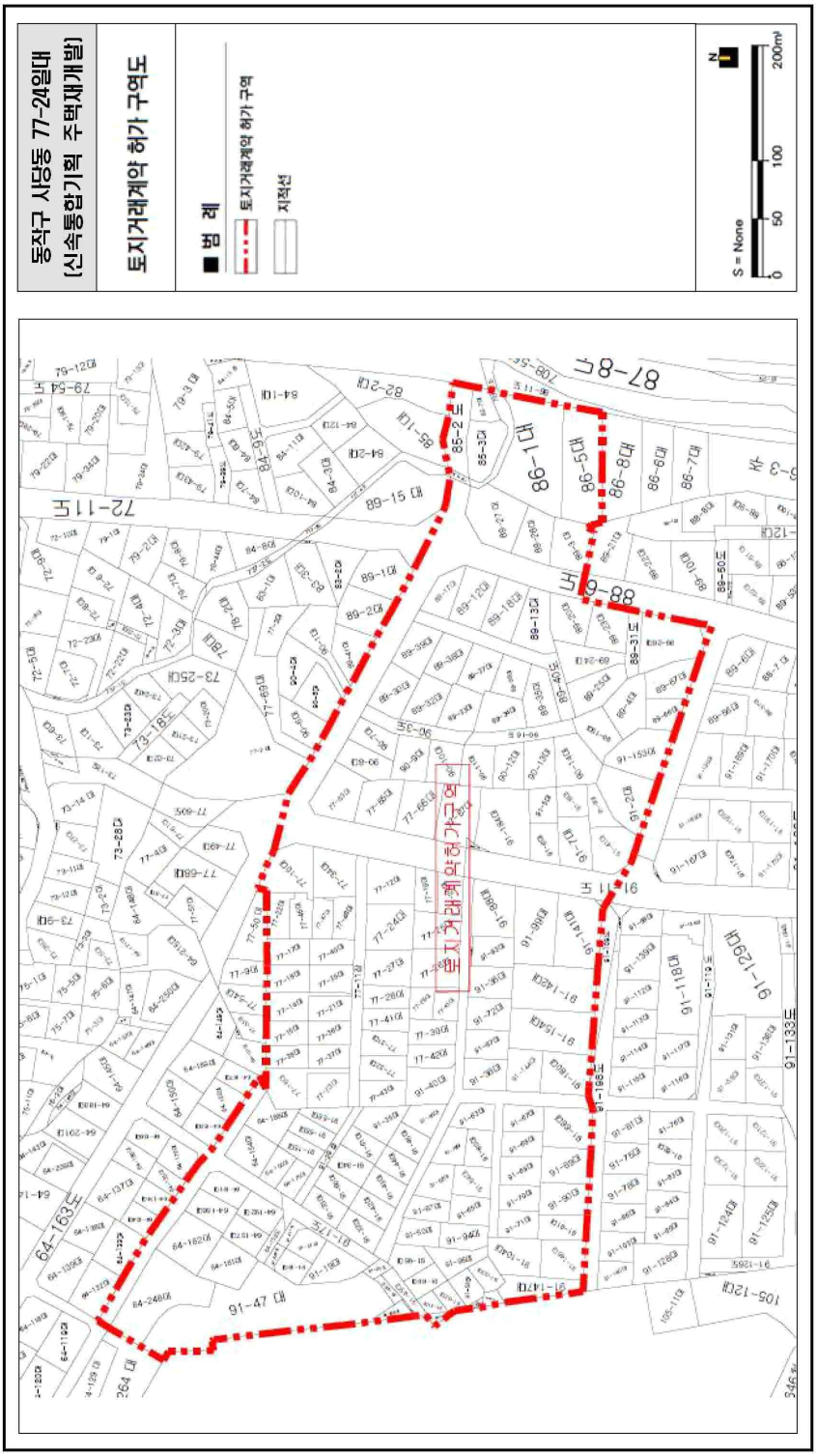

26. 동작구 노량진동 205-269 일대

27. 동작구 사당동 1026-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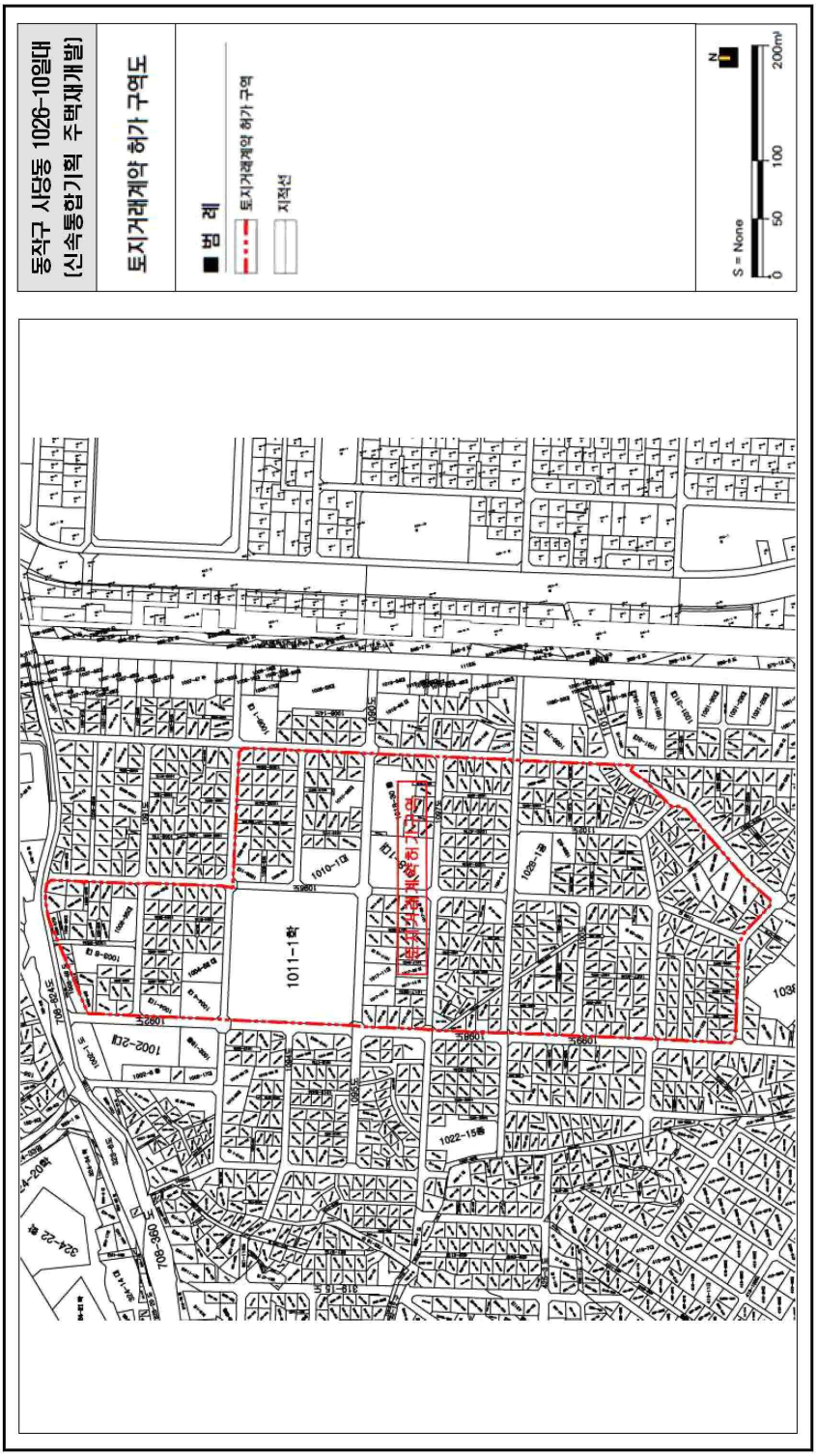

28.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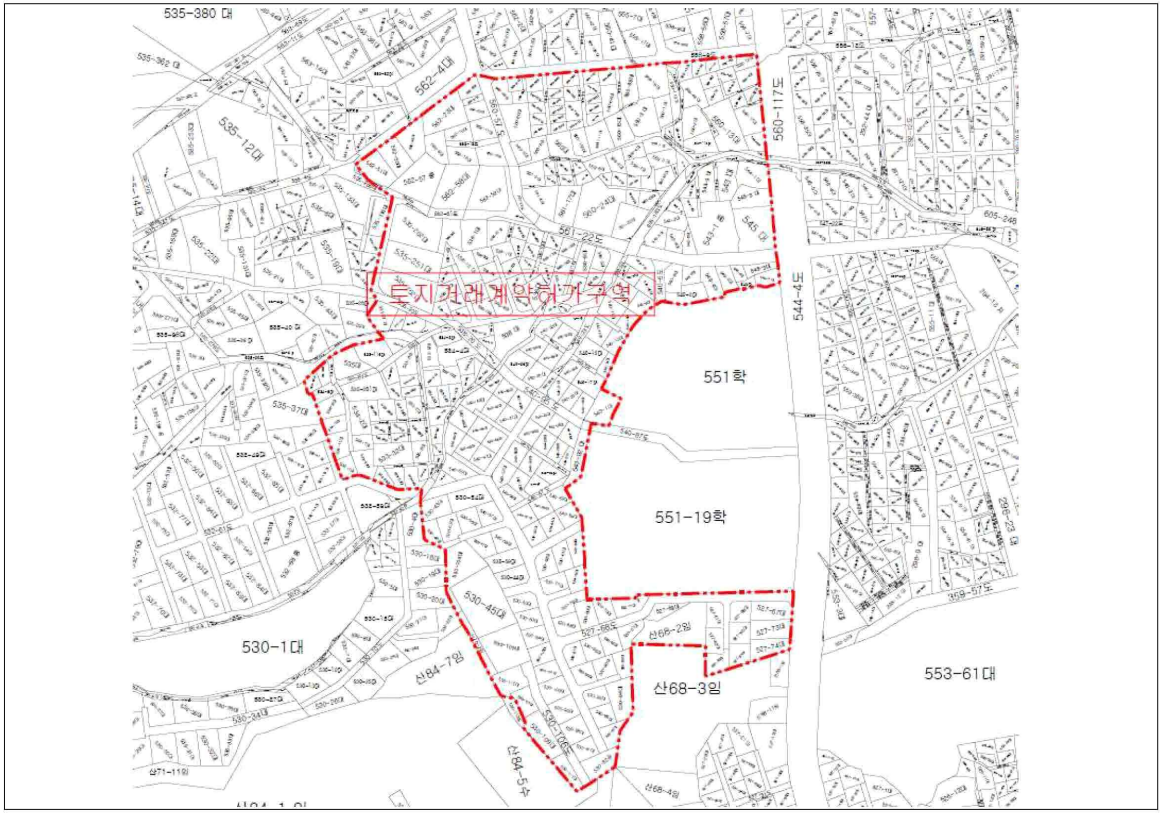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지정

ㅇ 서울 강남구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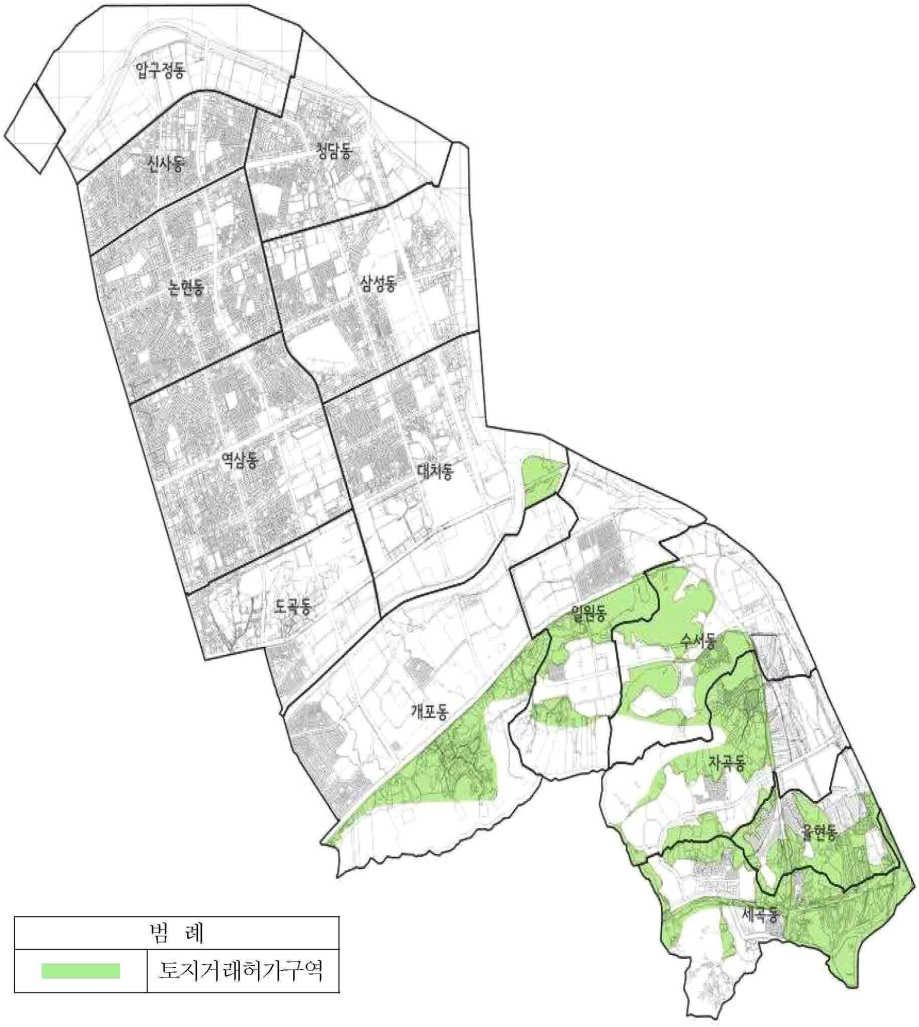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ㅇ 서울 서초구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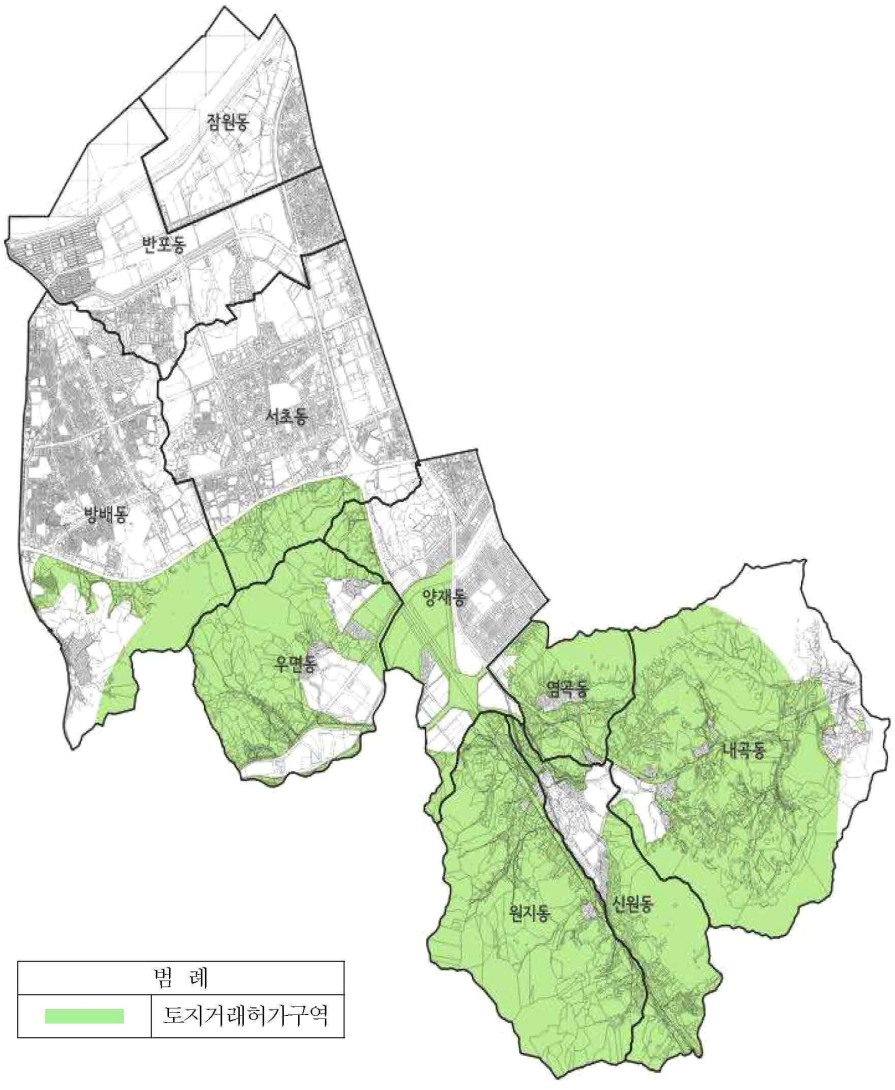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0㎢),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1.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개포우성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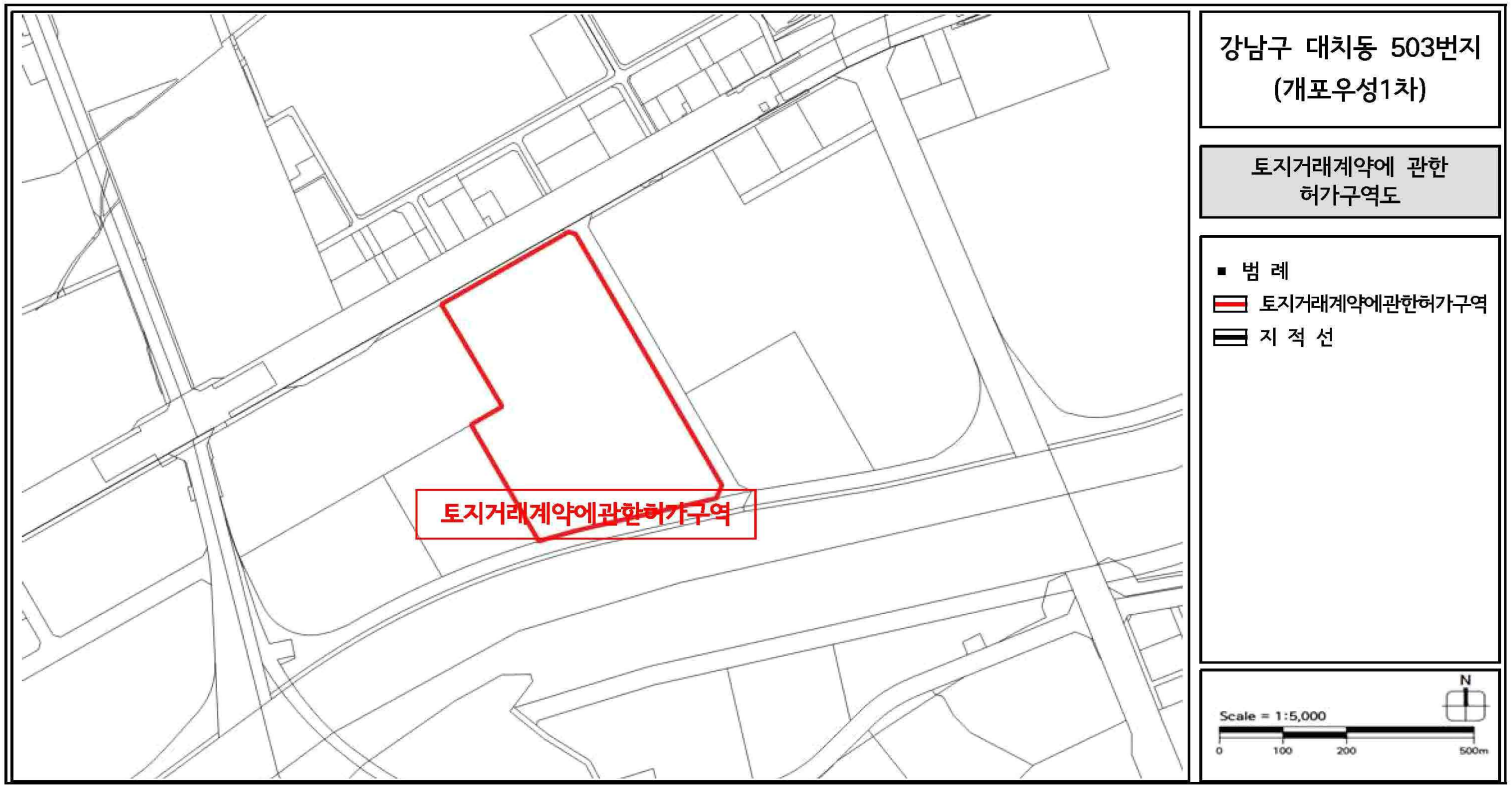

2.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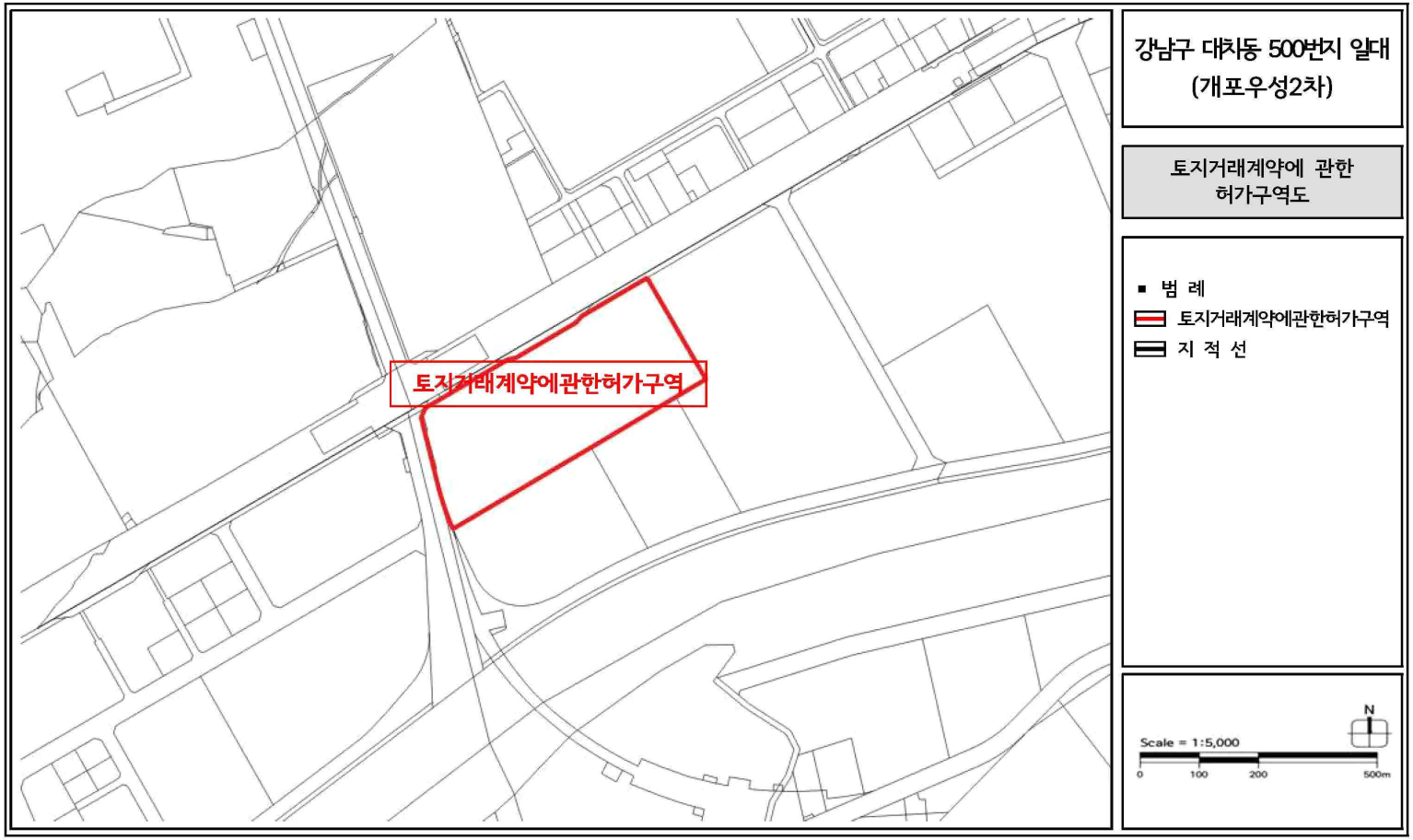

3.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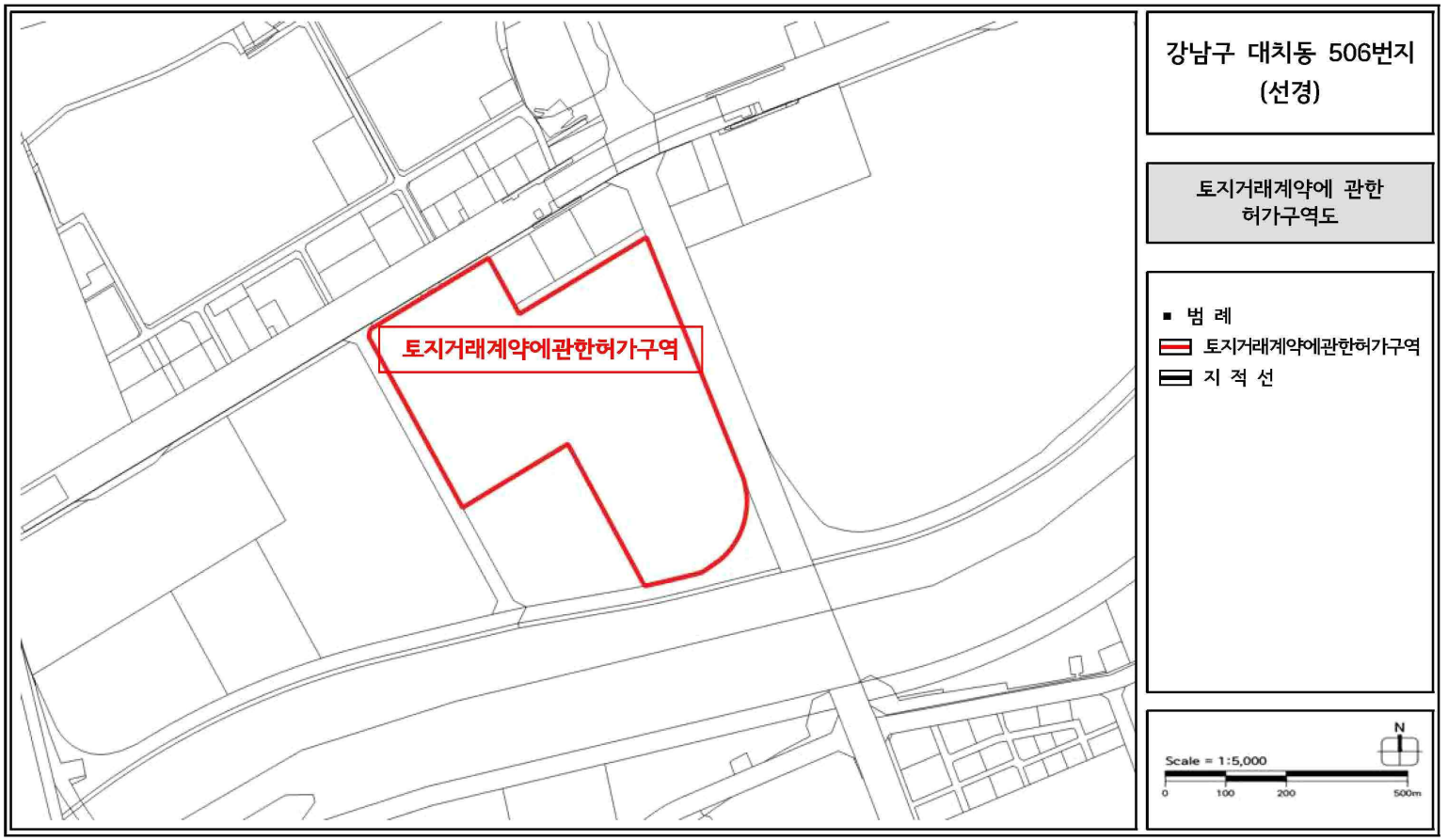

4.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쌍용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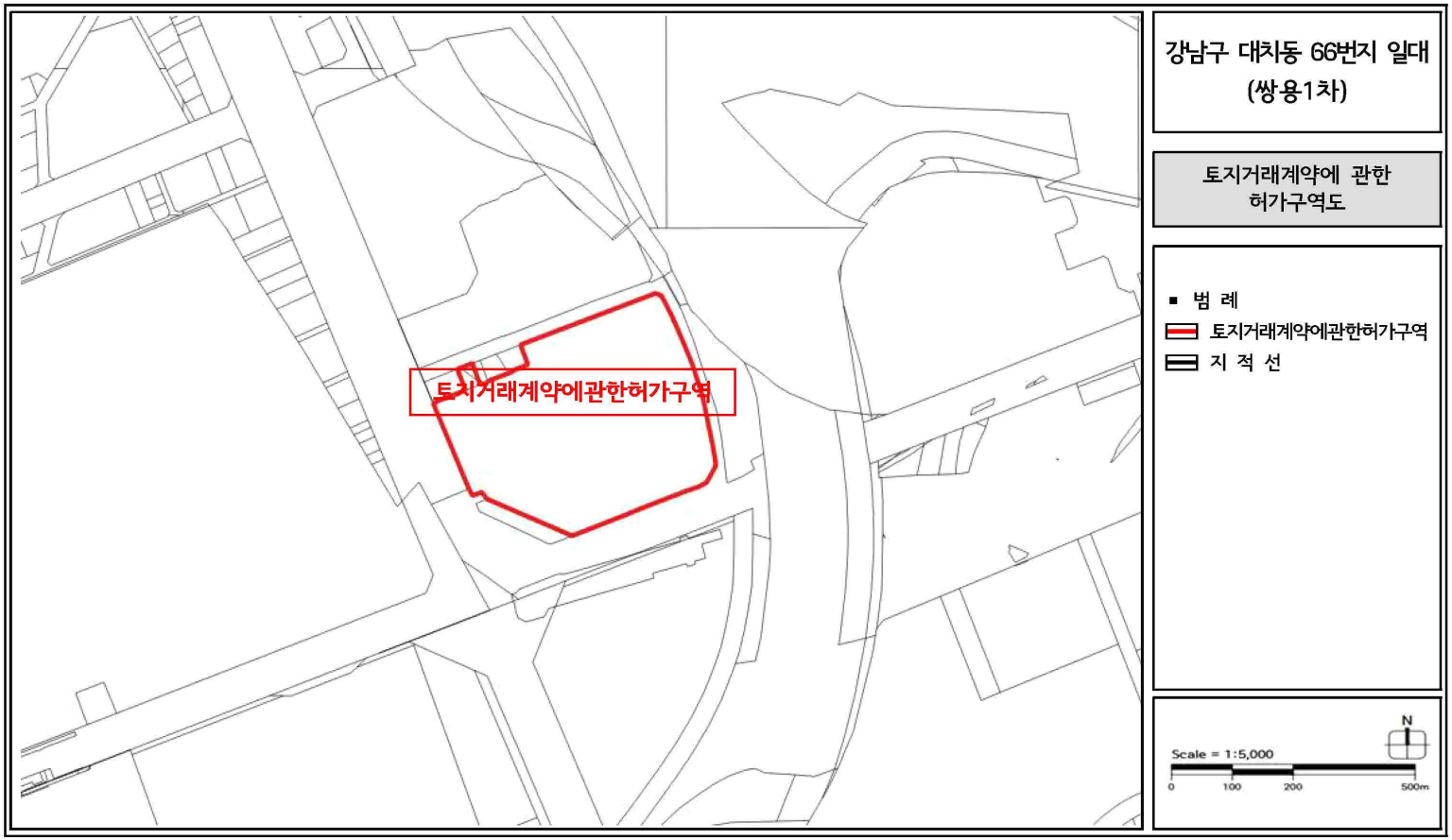

5.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쌍용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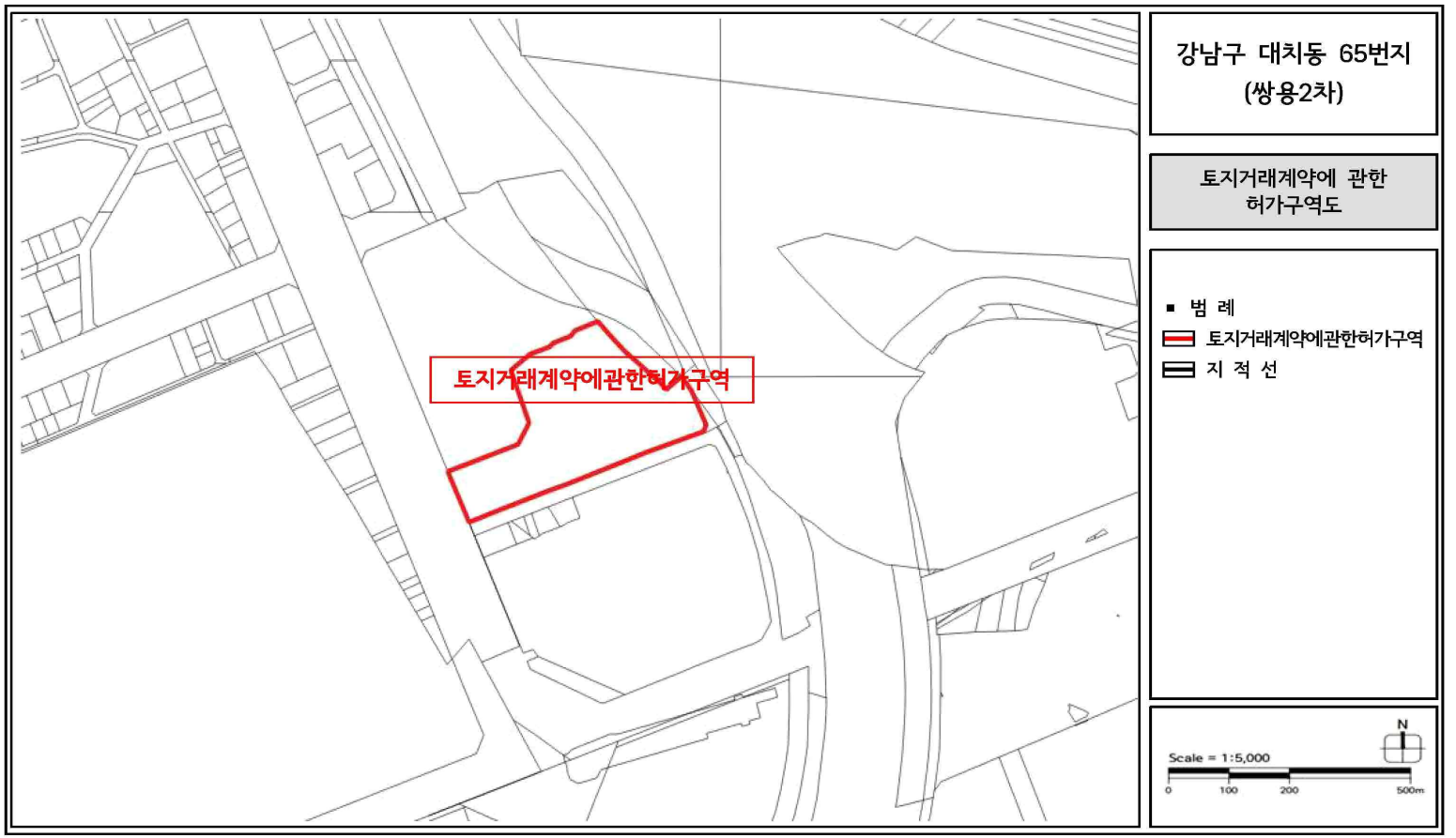

6.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우성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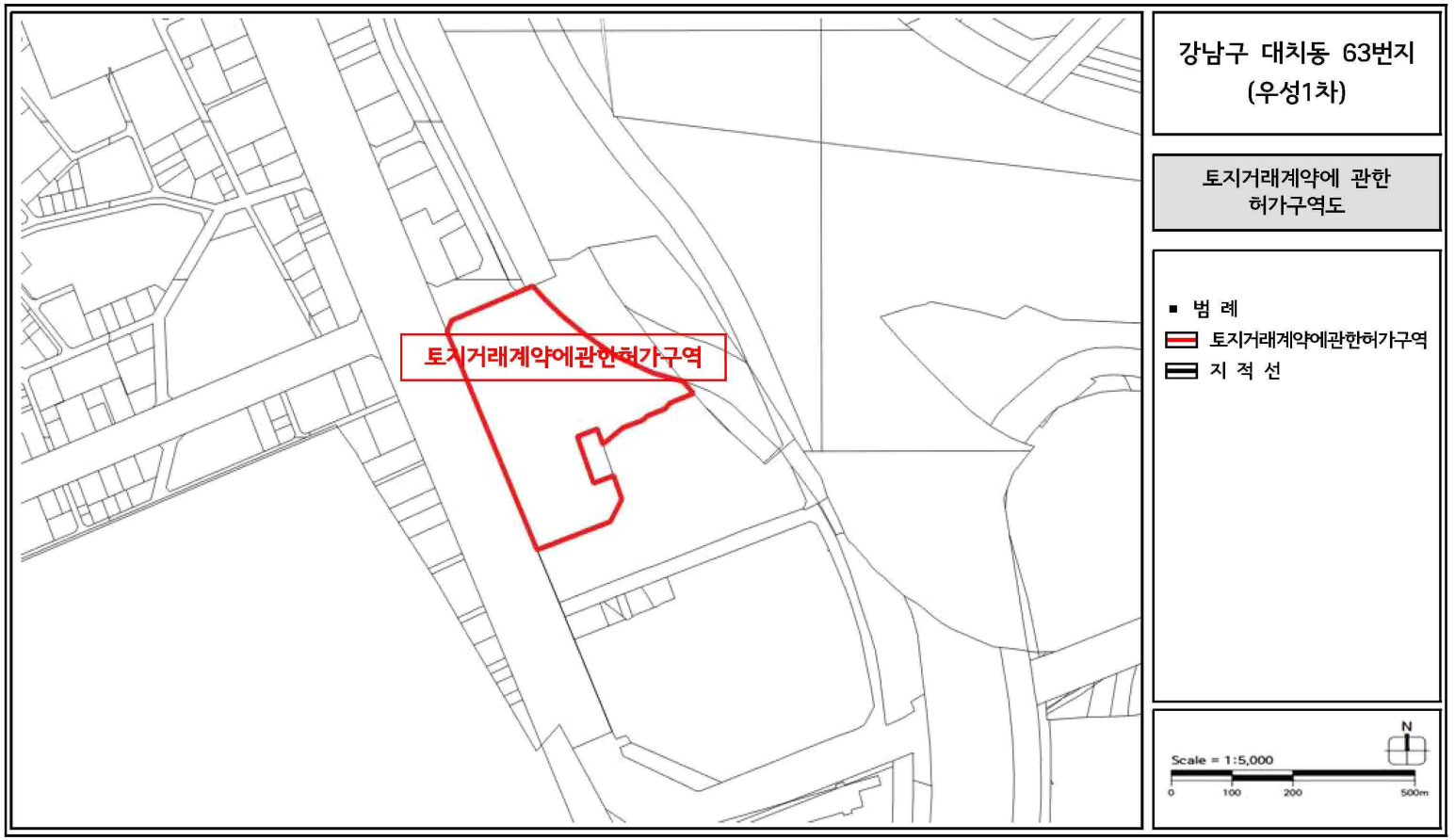

7.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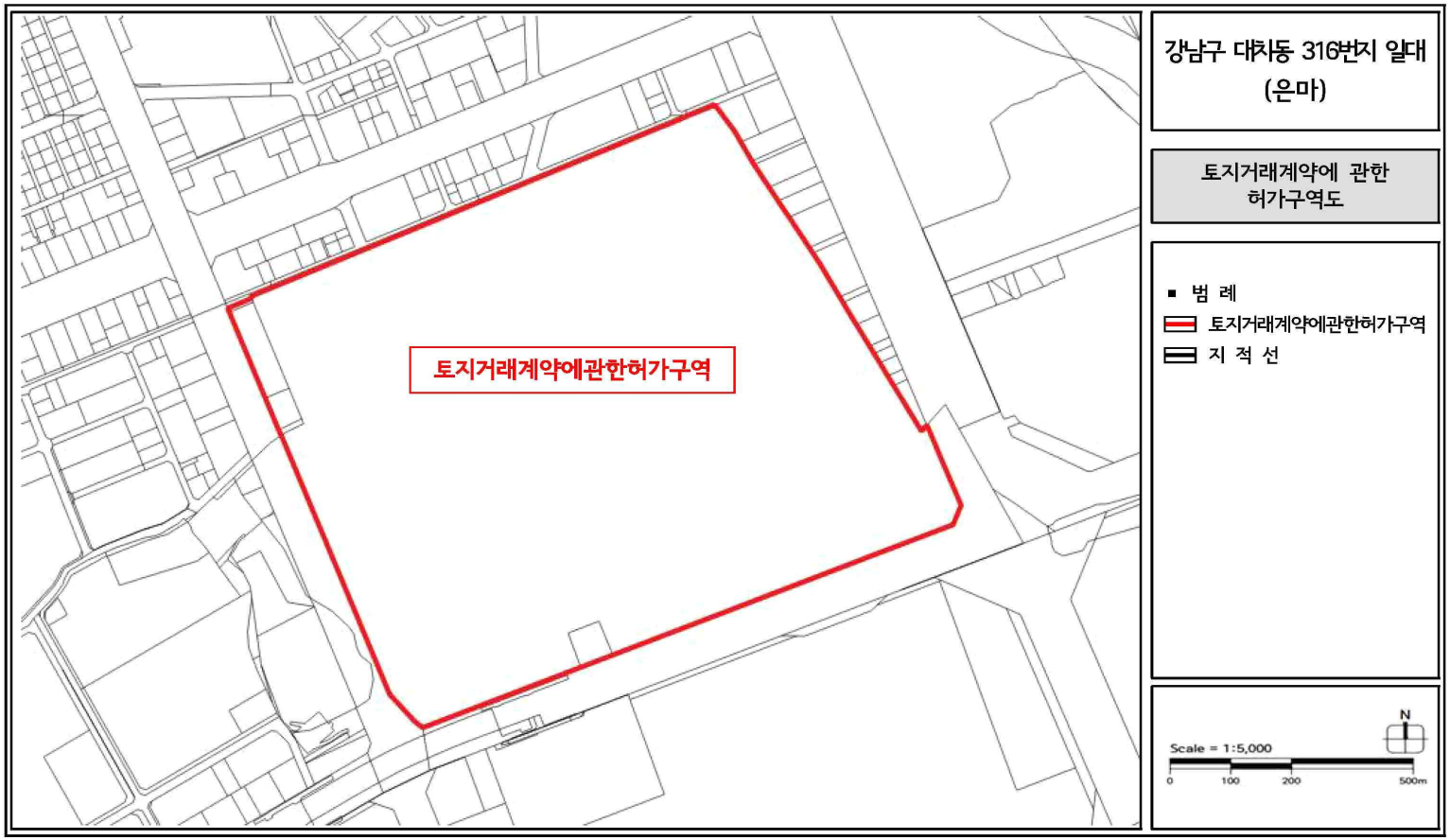

8.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 (미도)(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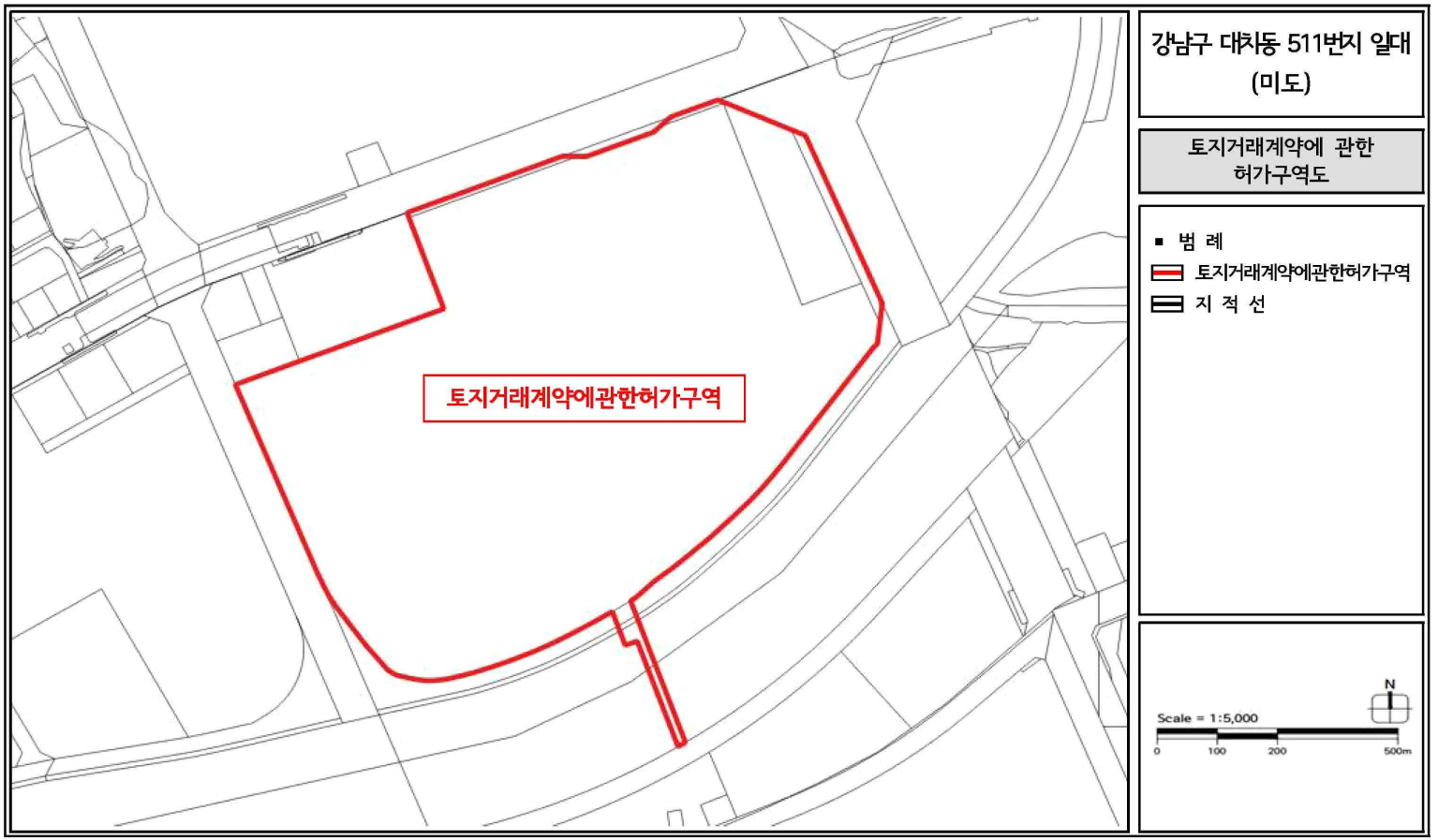

9. 강남구 삼성동 53-2번지 일대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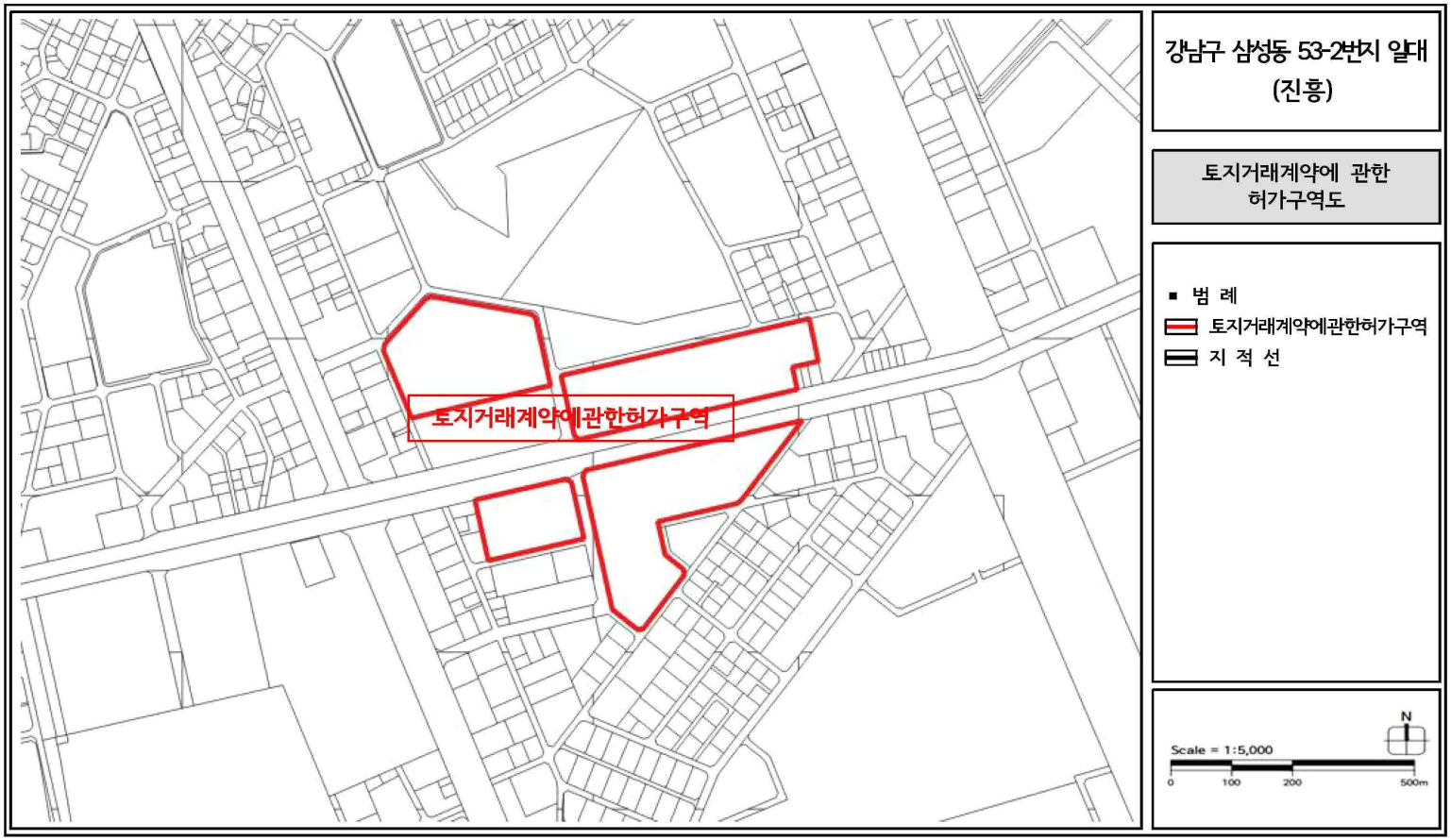

10. 강남구 청담동 75-1번지 (현대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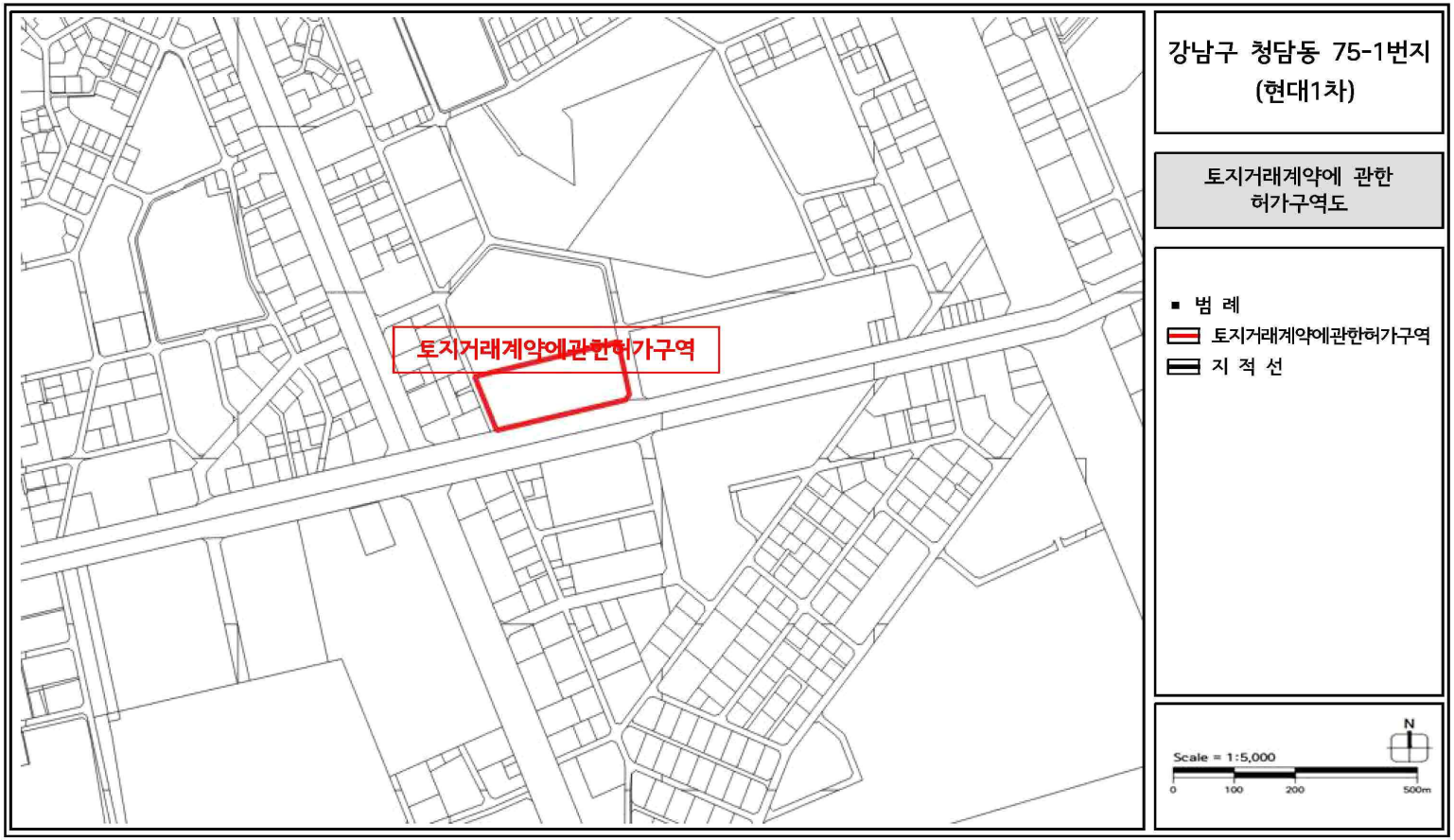

11.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주공5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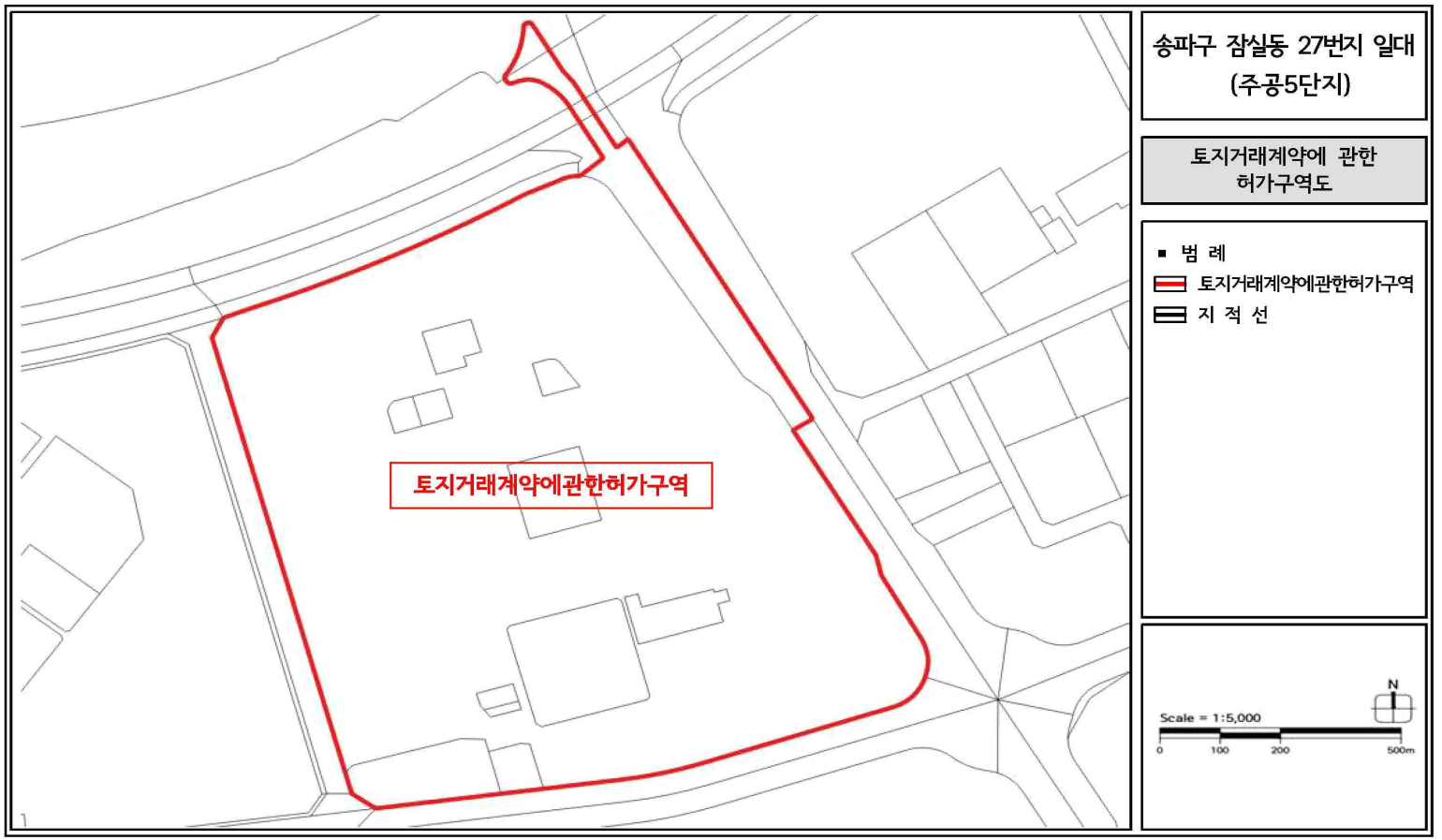

12.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우성 1, 2,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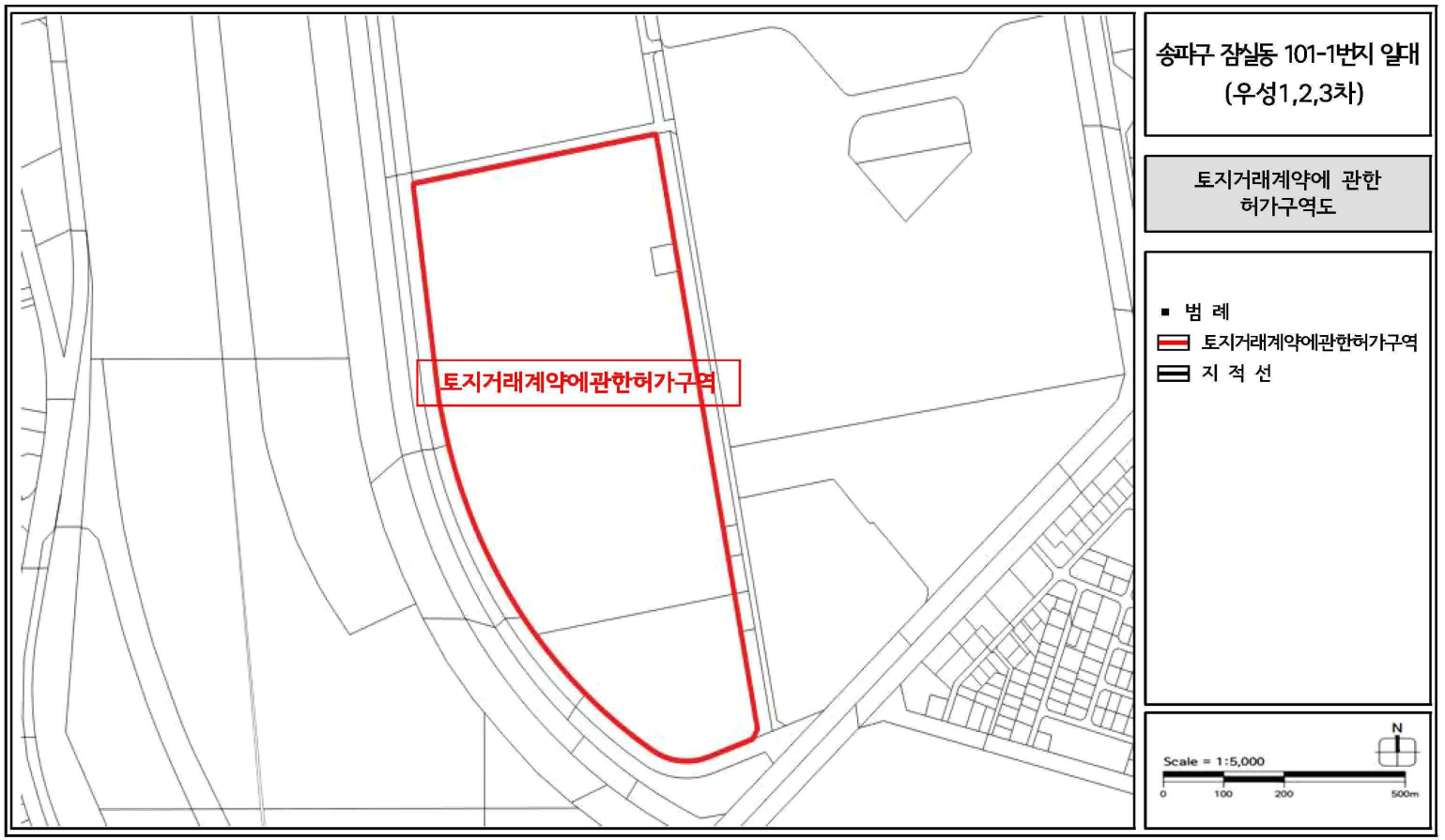

13.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우성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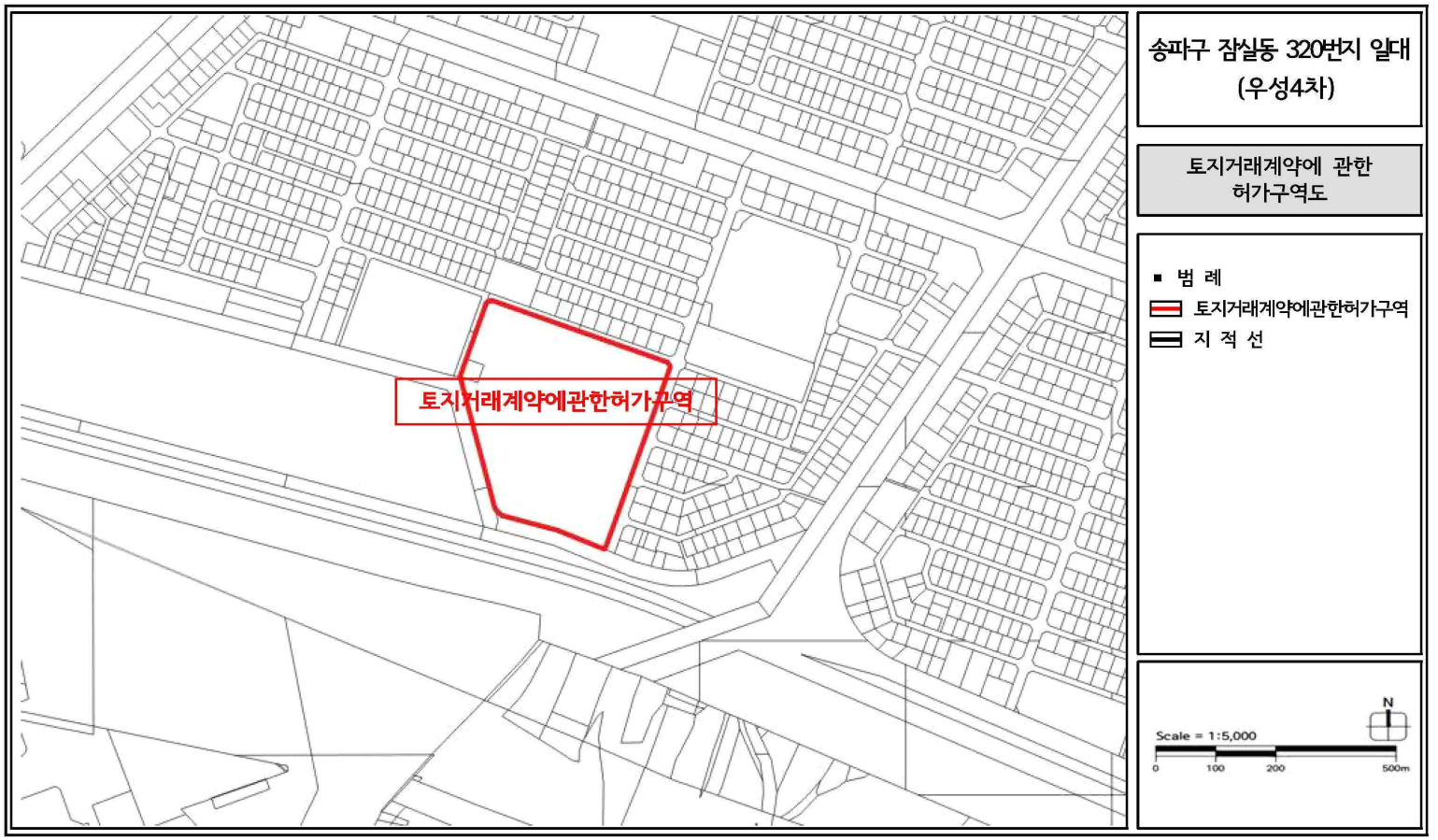

14. 송파구 잠실동 86번지 일대 (아시아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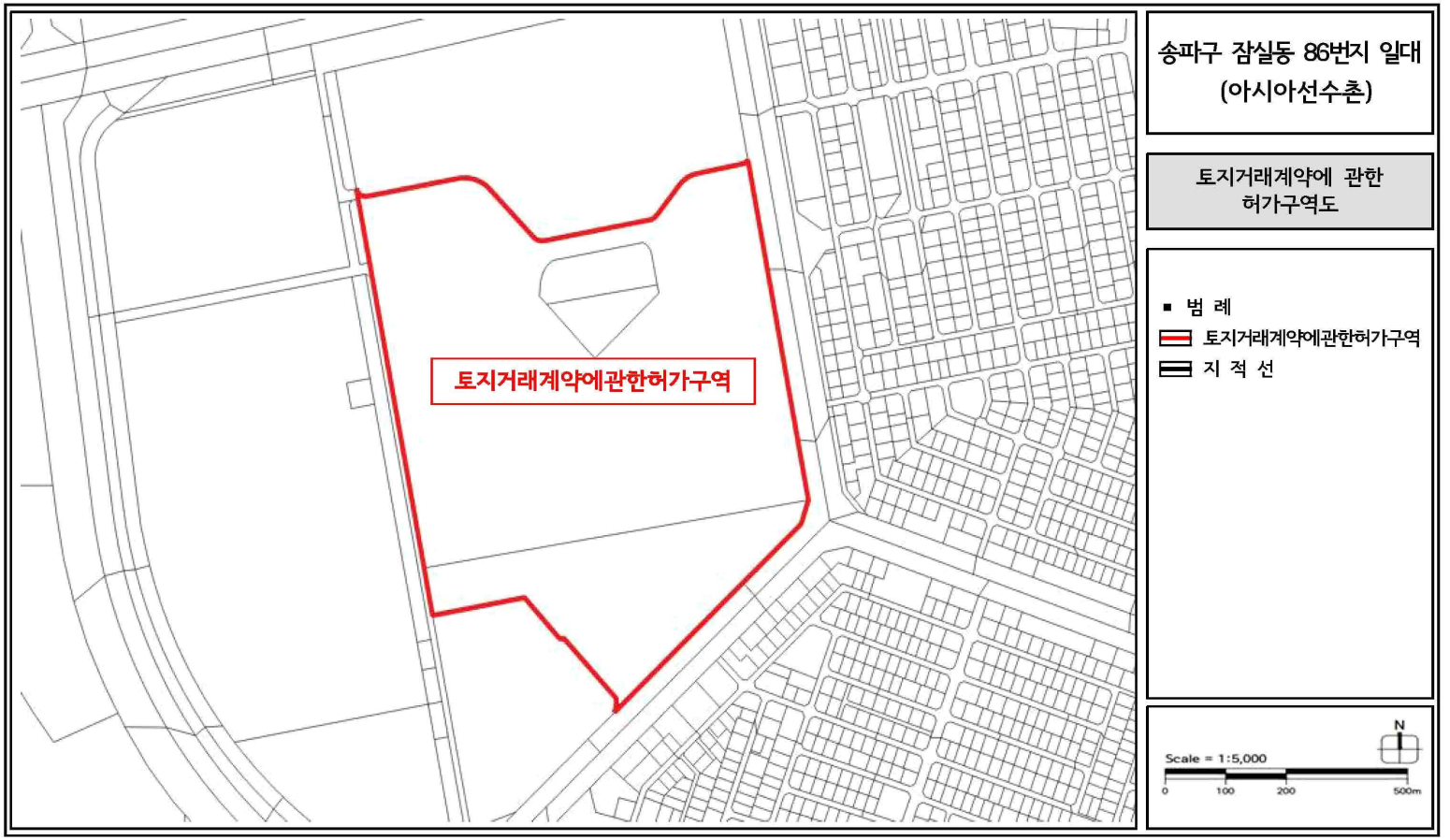

붙임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조정

1.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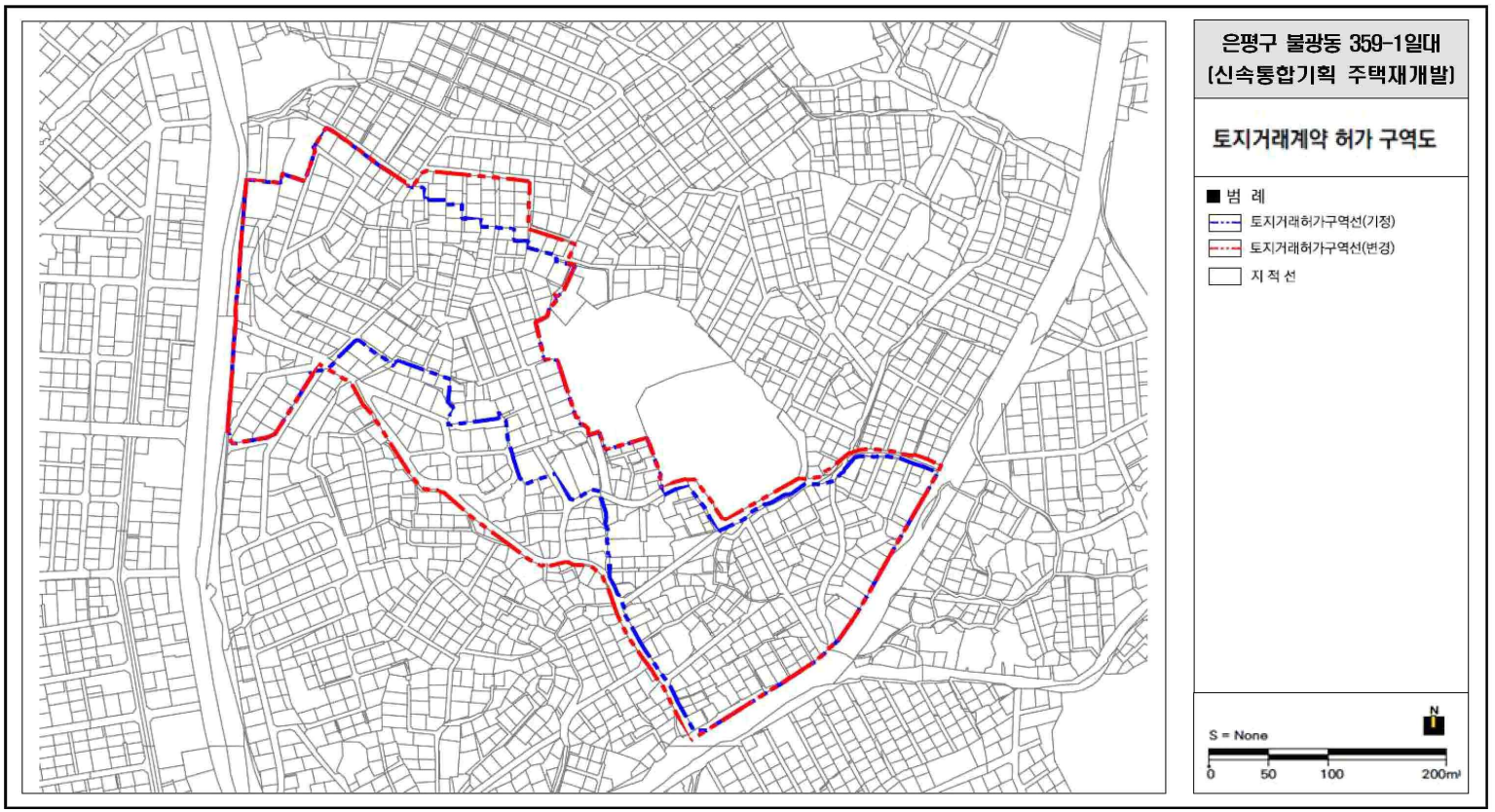

2.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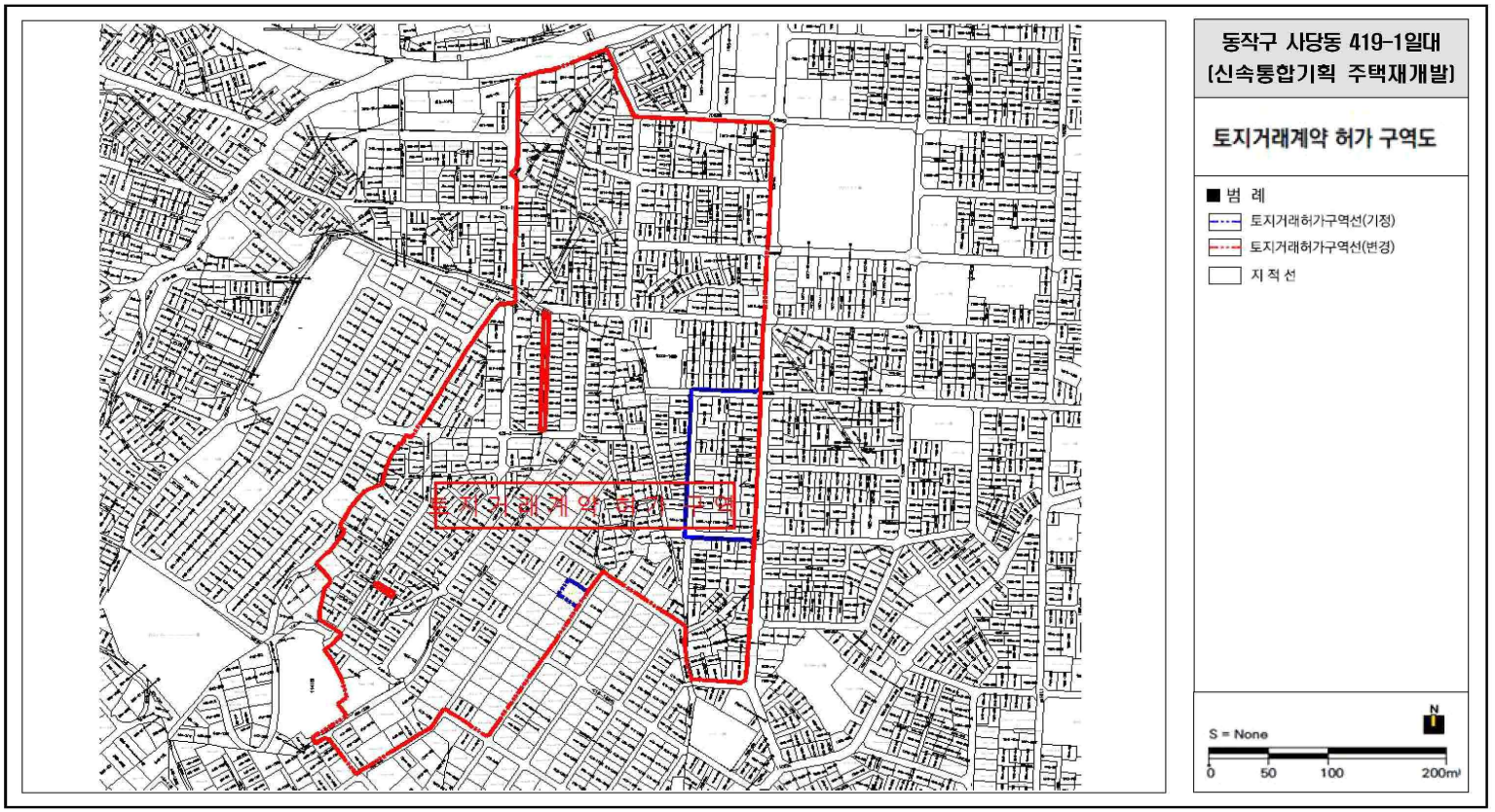

3.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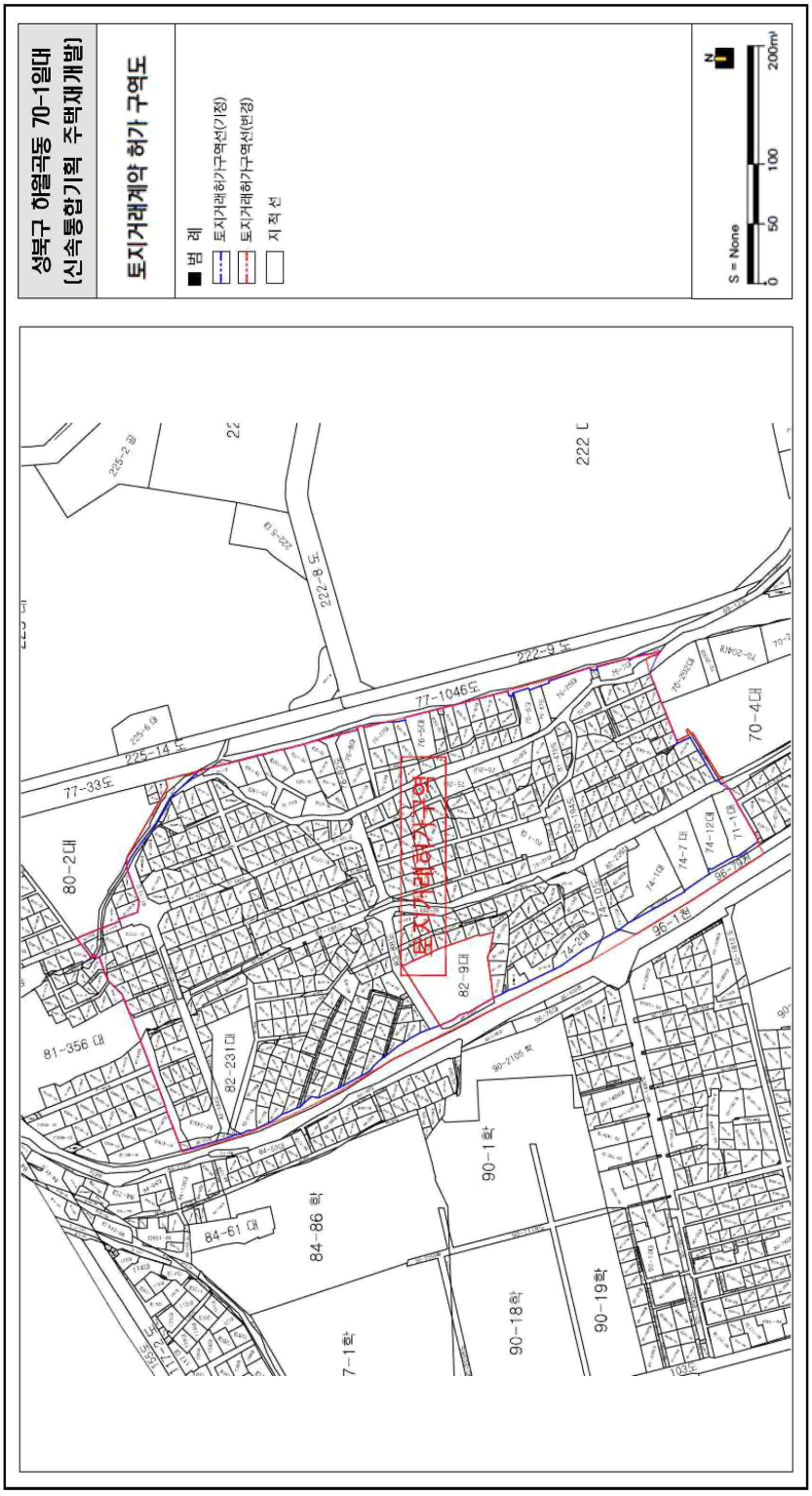

4.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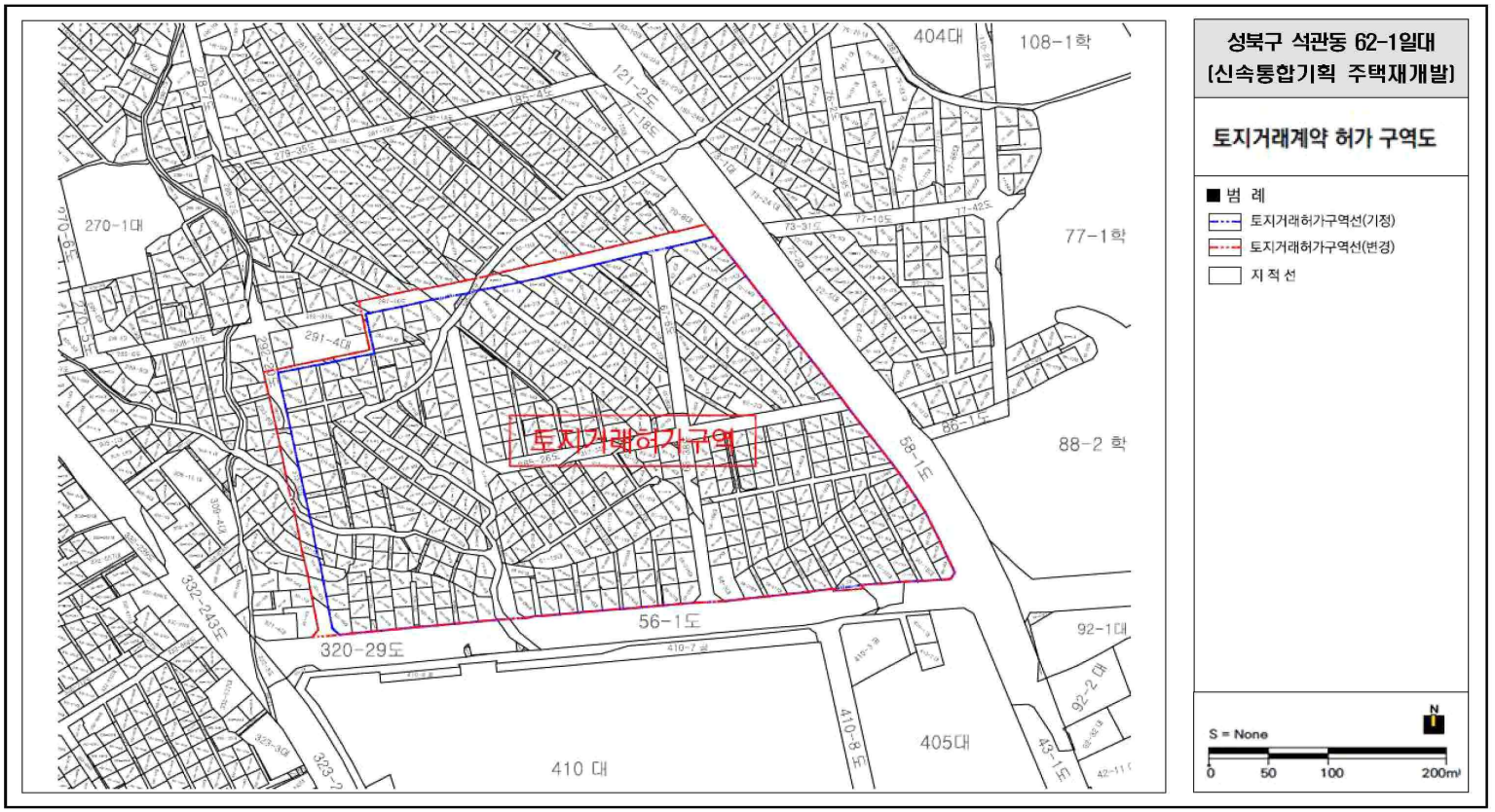

5.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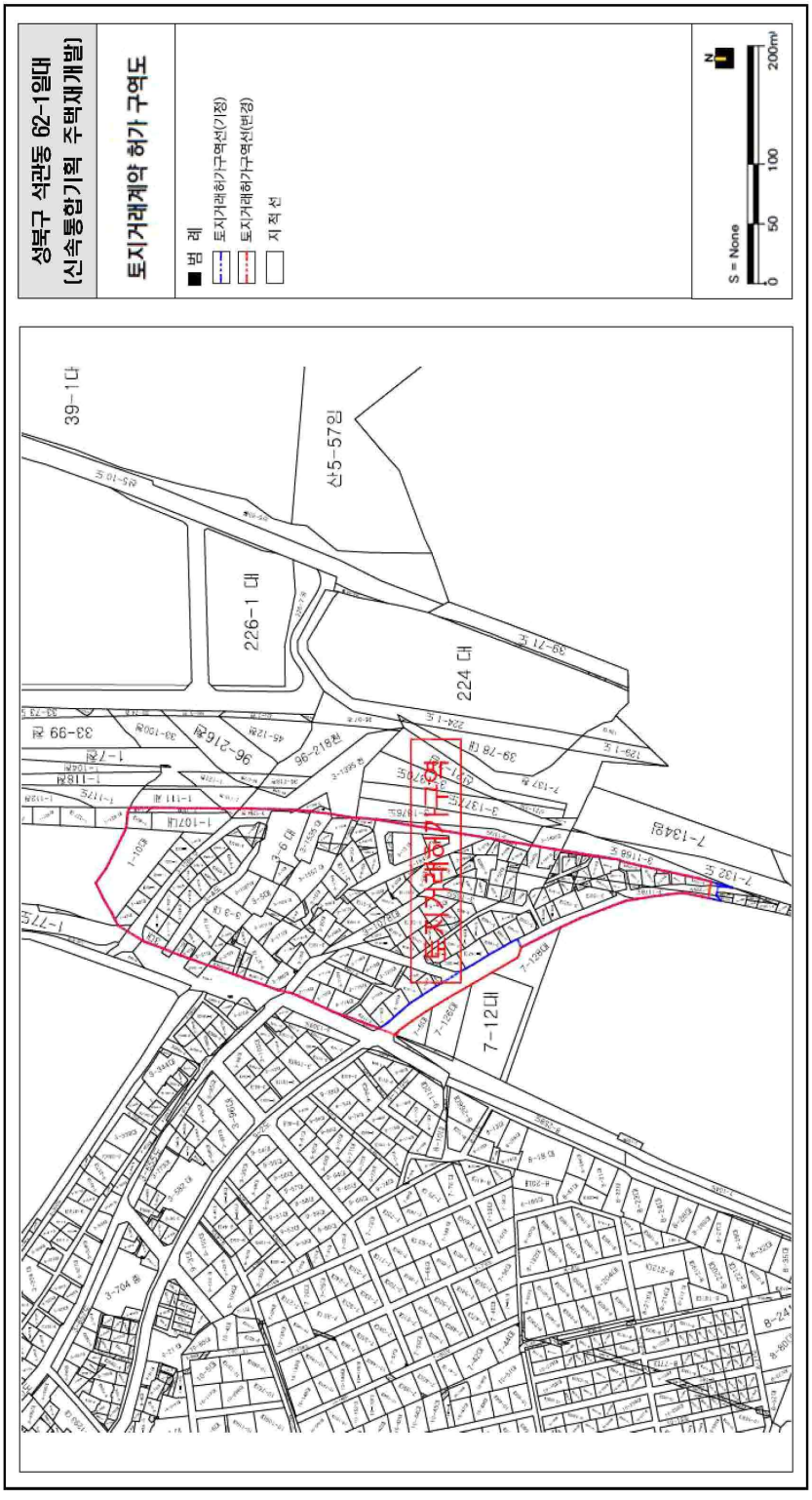

6.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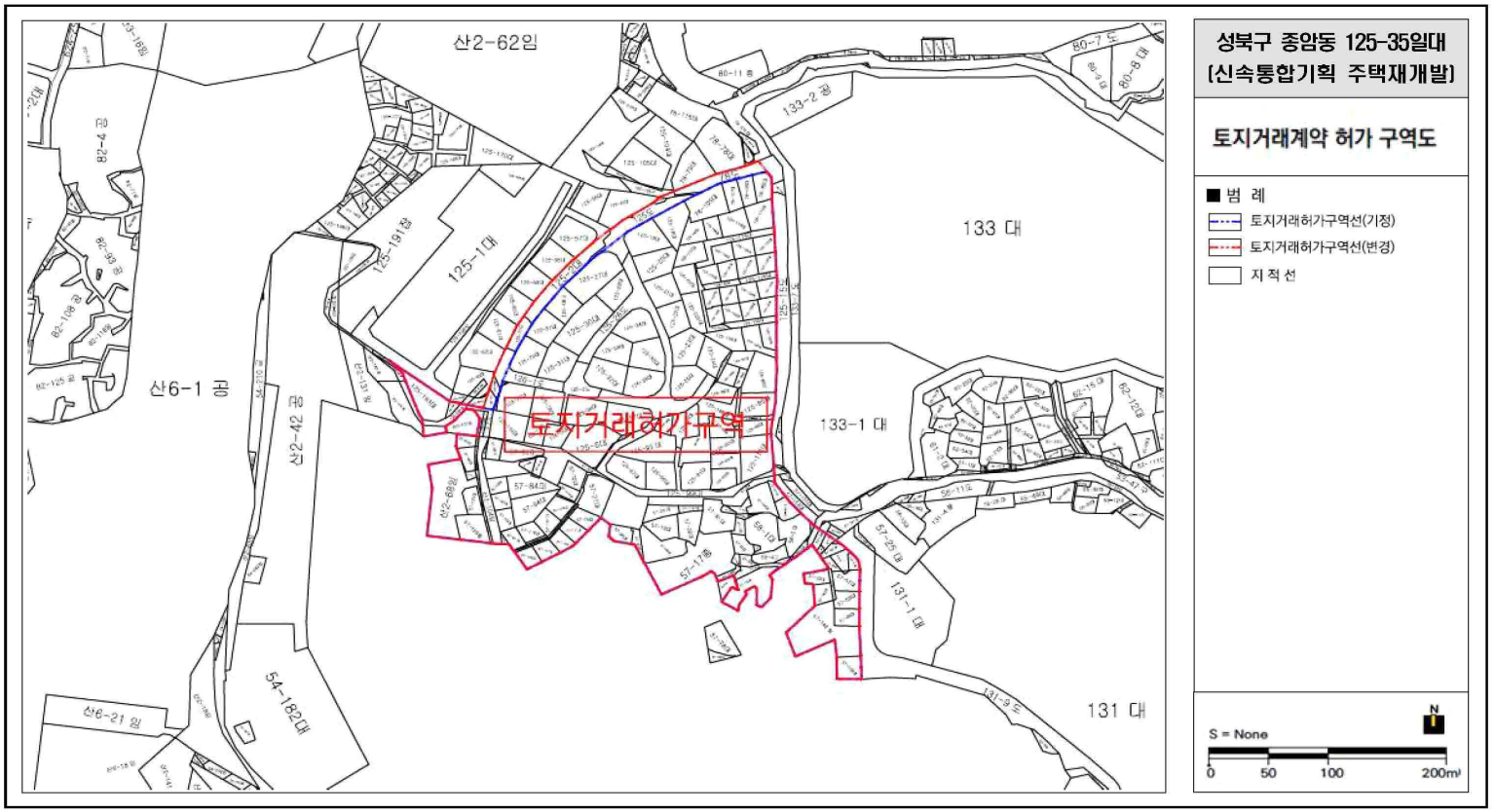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아모레 구파발 특약점	서울 후 제197호	양무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10층 10019호 (불광동)	폐업 ('26.04.30.)	-	-
2	아모레퍼시픽 신당2 특약점	서울 후 제1323호	이우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5, 6층 (신당동)	소재지 ('26.04.0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1, 3층 309호 (신당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5, 6층 (신당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2호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 기본설계(안) 열람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 사업
○ 위　　치 : 강북구 번동90-1~90-2일원(서울시 강북구 및 성북구)
○ 사업규모 : 덮개공원(L=50m), 녹지조성940㎡
○ 사업내용 :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을 통해 도로의 교통안전성을 개선하고 지역 단절해소 및 녹지보행로 확보를 통해 이용시민의 편익을 확보코자 지하차도 및 녹지보행로 조성

2. 공사의 필요성
○ 월계로 도로와 옹벽으로 단절된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지역 단절해소 및 녹지보행로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익확보

3. 공사의 효과
○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보행로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녹지축 회복
○ 단절 녹지 연결을 통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및 공원녹지 연결 거점확보
○ 도로 안전개선 및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쾌적성 향상

4. 공사기간
○ 설 계 : 2025년 12월 ~ 2026년 12월
○ 공 사 : 2027년 1월 ~ 2029년 6월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17,632	150	372	5,000	9,110	3,000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금액)은 사업계획, 공정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강북구 도로관리과, 성북구 공원녹지과에서 도서 열람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5일 이내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gyunhyu123@seoul.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02-2133-8084, 이균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3180402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1길 21, 지하층 (아현동708-6)	수도요금	2023. 2. 28.. 외 19 납기	20회	1,122,760원	등기번호 : 11050-0600-6921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부동산 (건물, 토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1길 21, 제1층 제101호(아현동 708-6)	김**	741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1길 21, 제1층 제101호(아현동 708-6)		1,122,760원	2026. 5. 30.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6. 5. 29.)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선아 주무관(☎ 02-3146-360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 고 시

◈ 마포구고시 제2026-7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호(1997.3.1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염리동 24-170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4-170(한서공영주차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가칭)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기존 950.01㎡ → 리모델링 후 937.76㎡(한서공영주차장 4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체육진흥과(☎3153-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가칭) 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염리동	24-170	주차장	1,480	1,480	주차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건 물 조 서

○ 사업명 : (가칭) 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연번	건물소재지		지목	건물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염리동	24-170	주차장	3840.75	3840.75	주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	-	

◈ 서초구고시 제2026-1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2-5호(2002.1.9.)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구반포역), 서초구 고시 제2026-23호(2026.1.1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구반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15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관련 구반포역(9호선)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 칭: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4층 406호(반포동, 반포프라자종합상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개월 內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지의 규모

연번	구 분	시 설	설치 규모		비 고
			기존(㎡)	변경(㎡)	
1	1번 출입구	상,하행E/S 및 계단	214.1	272.1	이설 및 에스컬레이터설치 증)58㎡
2	3번 출입구	상행E/S 및 계단	74.6	63.0	에스컬레이터 설치 감)11.6㎡
3	변전실 환기구 (환기구 번호 9141)	배기	5.2	42.4	이설 증)37.2㎡
4	정거장 환기구 (환기구 번호 9142)	배기	46.5	154.3	이설 증)107.8㎡
5	본선 환기구 (환기구 번호 9142)	배기	72.6	92.5	이설 증) 19.9㎡

2.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서초구 반포동	815	도	3,808	50.2	서울특별시	
2		817	대	3,347	84.5	반포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3		817-1	대	194	84.5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	
4		752	도	19,379	142.0	국(건설부)	
5		1139	대	228	30.3	대한주택공사	
6		1190	대	1,312	12.9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	
7		1138	도	17	6.5	국(건설부)	
8		1187	도	850	2.7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	
9		1137	대	241	36	대한주택공사	
10		1189	대	1,316	16.3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	
11		1314	도	621	63	서울특별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26-91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5. 8.)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Ⅰ. 결정(변경)취지

○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대치동 890-16, 890-20번지에 대한 높이계획을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서고시 제1994-189호 (1994. 6. 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변경 없음)

2) 용적률(변경 없음)

3) 높이계획(변경)

가)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상업지역	테헤란로 간선부	90m	120m	108m	144m	대치동 890-16, 890-20번지에 한함

□ 높이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치동 890-16, 890-20	• 높이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범위 20% 이내)	• 합리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따라 높이 완화

※ 상기사항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기타 사항 결정조서(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변경 없음)

Ⅲ.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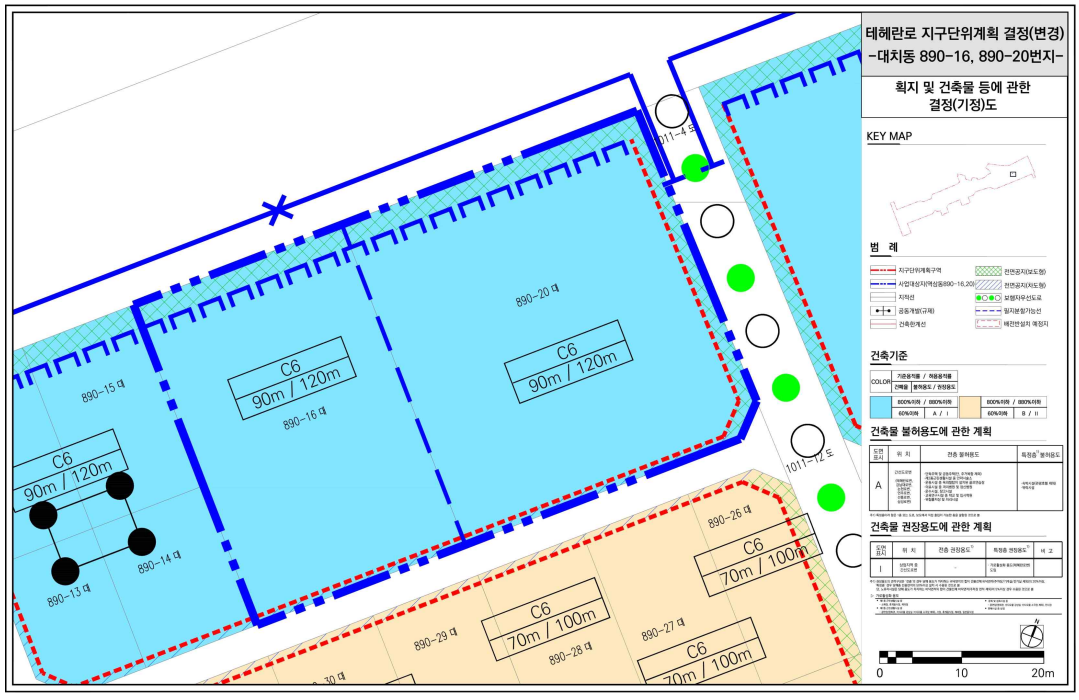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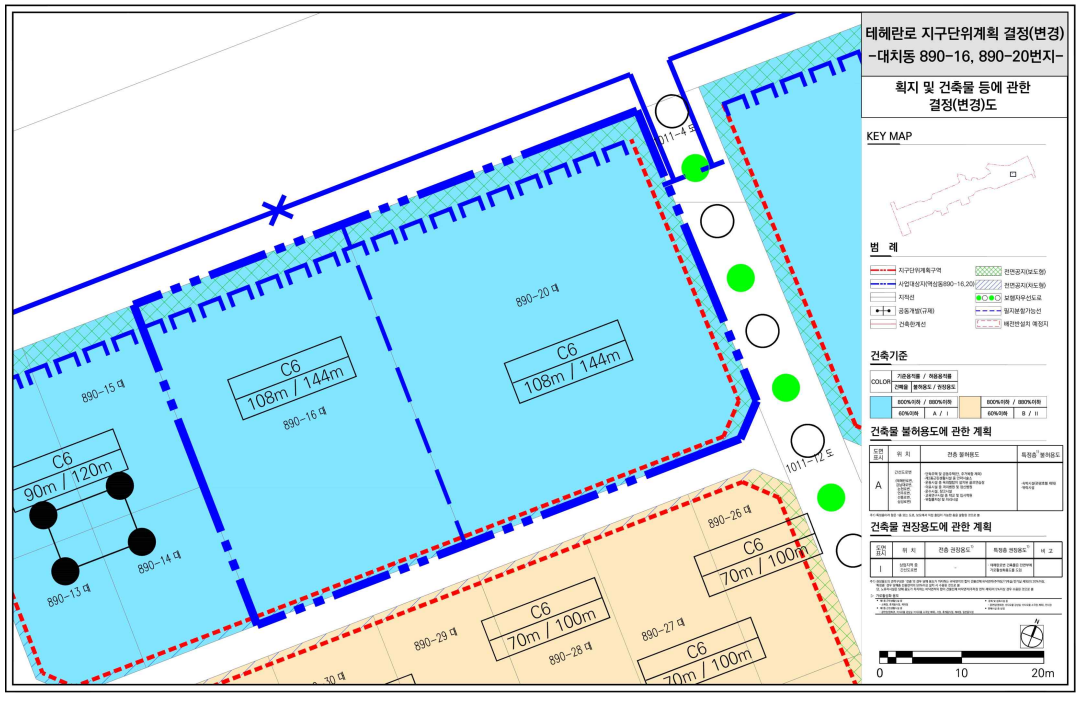

◈ 강남구고시 제2026-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10호(2025.10.28)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8호(2025.12.26.)로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로 변경 고시된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6-3번지 일원의 강남구 헌릉로 590길(중로2-1)신촌지구 연결교차로 공사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526-3 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2) 명 칭: 강남구 헌릉로 590길(중로2-1)신촌지구 연결교차로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A=521.1㎡)
   1) 도 로 : A=510.3㎡
   2) 녹 지 : A=10.8㎡(경관녹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층 경영지원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 준공예정일 : 2026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면적	편입		성명	주소	내용	
1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3	도	12,416.5	491.8	서울시 강남구				
2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6-3	잡	145.2	29.3	서울시 강남구				
3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6-4	잡	577.7	-	서울시 강남구				
계			-	521.1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나. 도시관리계획(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1) 정정사유 :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26.3.19)로 결정·고시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에 대한 시설명 및 범례 오기 정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1]

다. 관련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정정도면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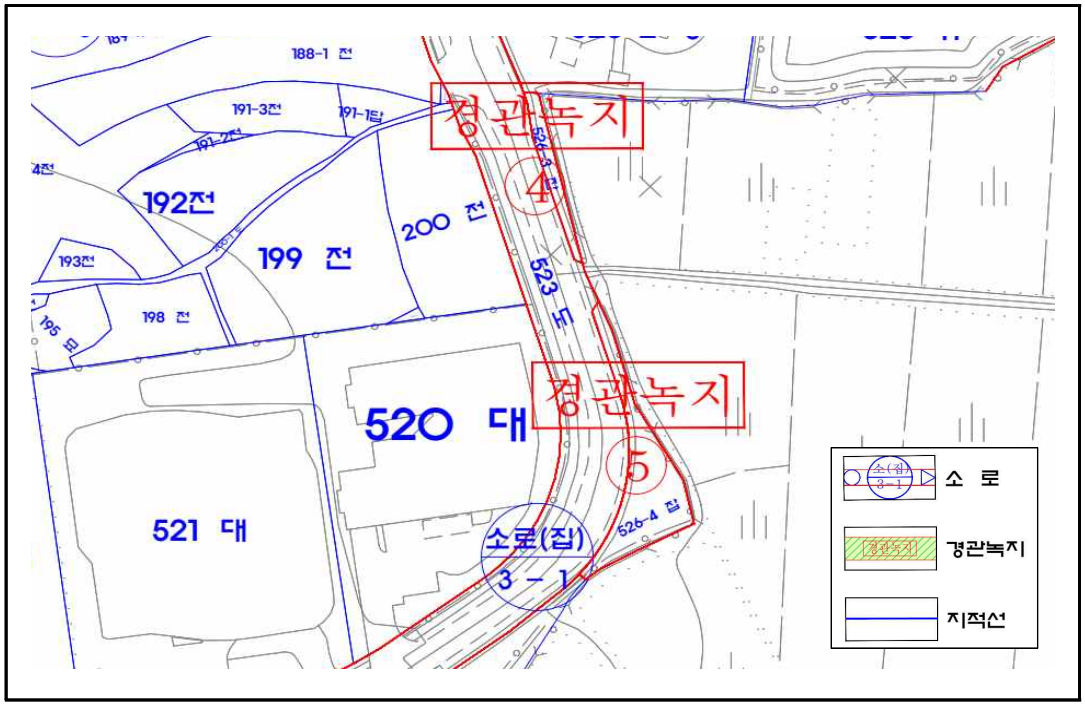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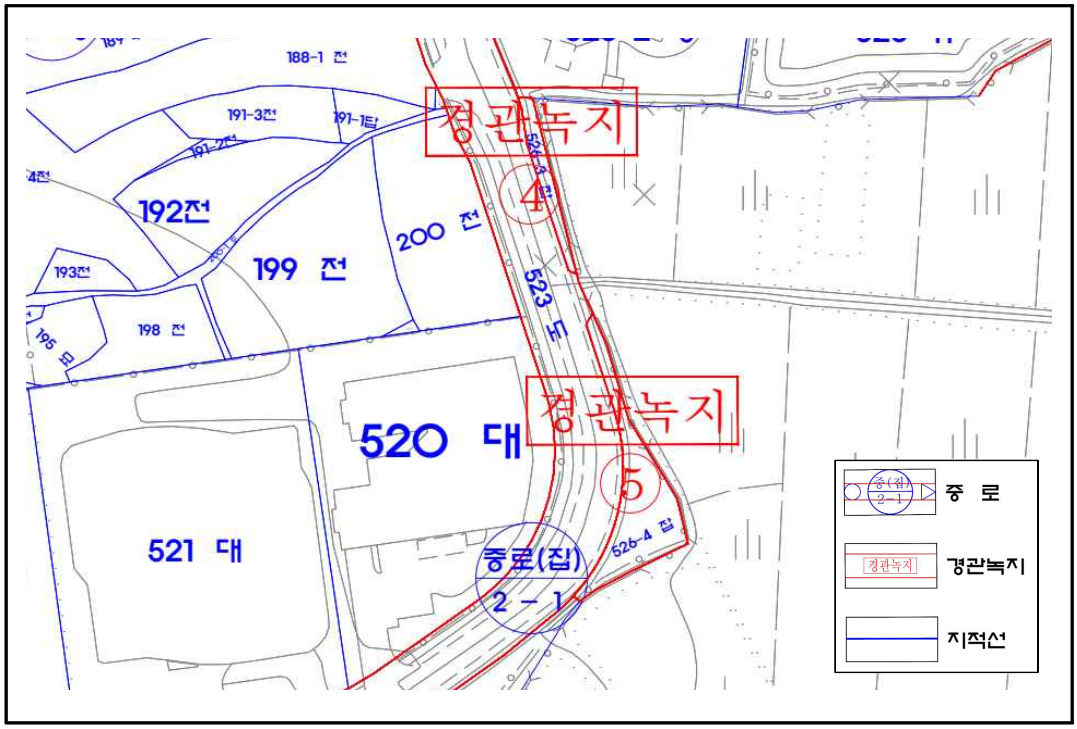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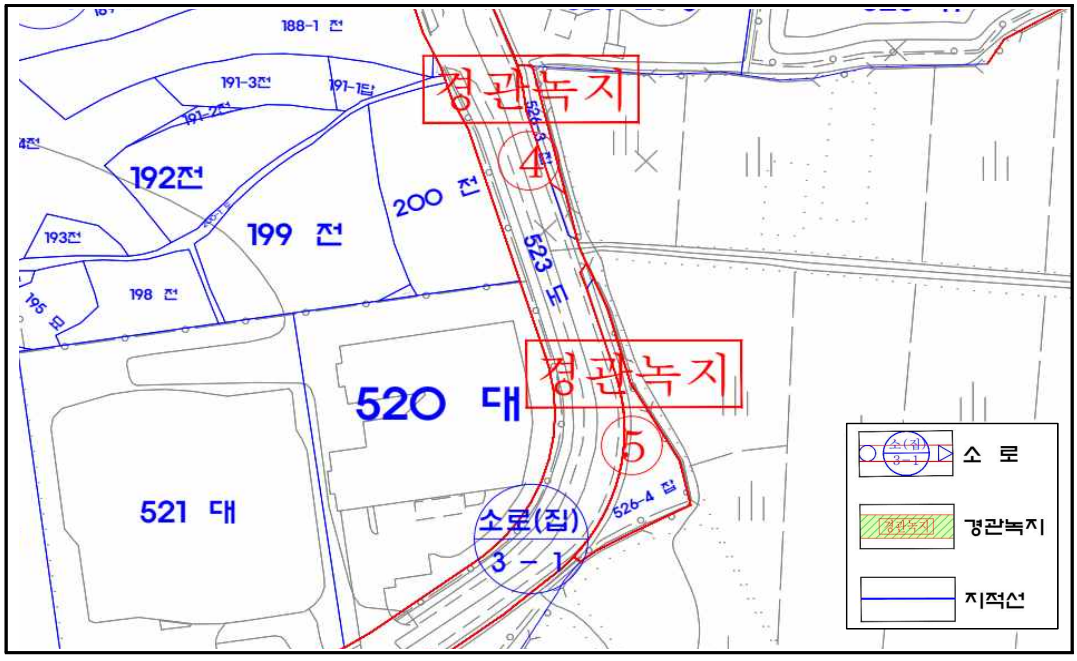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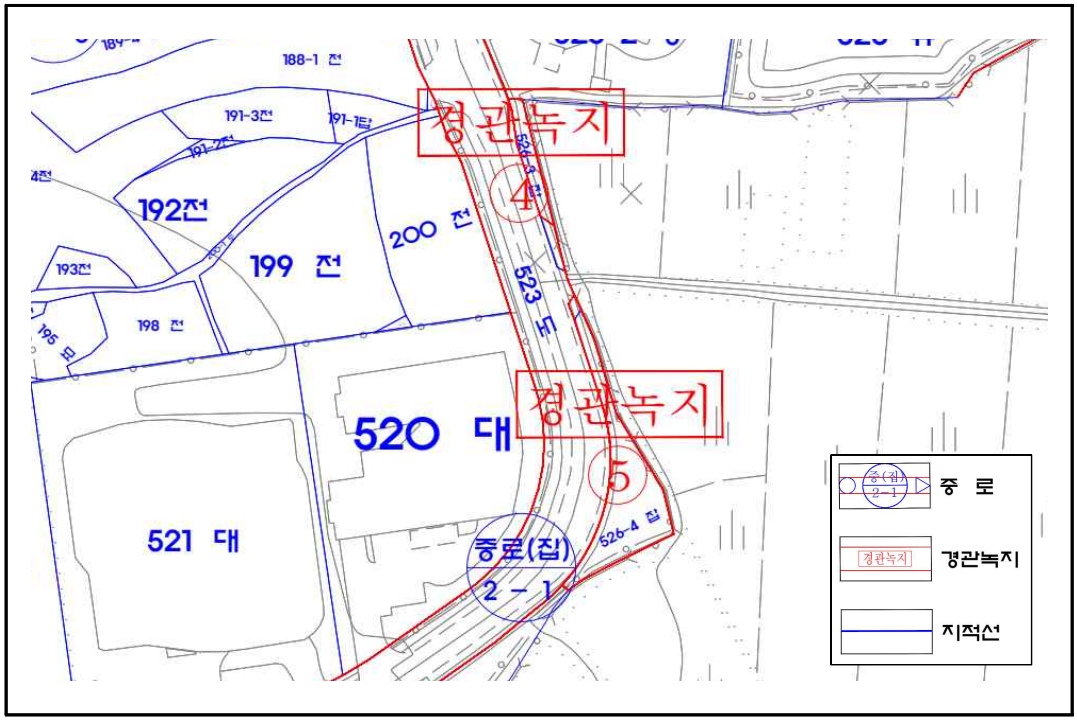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6-501호

DDP 1·2·3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1.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중구 을지로6가 1-1 일대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 또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2015.04.30.)로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코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함께 공고합니다.

3. 본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jun11203@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중 구 청 장

■ 공람기간 : 2026. 4. 30. ~ 5. 30. (31일간)
■ 공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6, ☏02-3396-5955),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 공람내용 : DDP 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Ⅰ. DDP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ⅰ. DDP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DDP1구역	을지로6가 1-1 일대	-	증) 177,003.2	177,003.2	-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설	DDP1구역	• 위치 : 을지로6 가1-1 일대 • 면적 : 177,003.2㎡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신설

나. 지구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 유형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신설	합 계				177,003.2	96,173.1	80,830.1	-
	소 계				101,088.0	96,173.1	4,914.9	-
	DDP 1구역	1지구	을지로6가 1-3	일반 정비지구	2,092.1	1,889.9	202.2	-
		2지구	을지로6가 17-9		3,193.6	2,994.6	199.0	-
		3지구	을지로6가 17-415		4,976.6	4,690.2	286.4	-
		4지구	을지로6가 17-2		11,527.6	11,300.2	227.4	-
		5지구	을지로6가 18-17		3,414.0	3,279.5	134.5	-
		6지구	을지로6가 18-79		28,034.6	26,166.0	1,868.6	-
		7지구	을지로6가 18-60		5,314.7	4,757.2	557.5	-
		8지구	을지로6가 18-35		6,596.4	5,291.9	1,304.5	-
		9지구	방산동 79-1	소단위 정비지구	1,572.5	1,463.5	109.0	-
		10지구	을지로5가 35-1		713.9	695.1	18.8	-
		11지구	을지로6가 18-219		668.5	661.8	6.7	-
		12지구	방산동 19-200	소단위 관리지구	4,554.8	4,554.8	-	-
		13지구	을지로6가 17-225		4,020.6	4,020.6	-	-
		14지구	을지로5가 39-1	존치지구	1,230.0	1,230.0	-	-
		15지구	을지로6가 18-14		5,060.2	5,060.2	-	-
		16지구	을지로6가 18-12		10,320.5	10,320.5	-	-
		17지구	을지로6가 18-21		7,797.1	7,797.1	-	-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사업 미시행)				75,915.2	-	75,915.2	-

※ 상기면적은 지구별 정비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단위관리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지구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1구역	1~8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9~11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2~13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14~17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DDP 1구역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소단위관리 : 행위허가(건축허가)	지구별 시행에 따름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소단위관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

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사업명칭 예시 : DDP1구역 중 00지구 사업추진시 사업명칭은 'DDP1구역 0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기
- 소단위관리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 대상 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개발사업 추진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존치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시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하며, 구역별부담률은 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지구 면적(㎡)	정비 유형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DDP 1구역	소 계	101,088.0	-	-	96,173.1	-
		1지구	2,092.1	일반	을지로6가 1-3	1,889.9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지구 면적(㎡)	정비 유형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2지구	3,193.6	정비지구	을지로6가 17-9	2,994.6	-
		3지구	4,976.6		을지로6가 17-415	4,690.2	-
		4지구	11,527.6		을지로6가 17-2	11,300.2	-
		5지구	3,414.0		을지로6가 18-17	3,279.5	-
		6지구	28,034.6		을지로6가 18-79	26,166.0	-
		7지구	5,314.7		을지로6가 18-60	4,757.2	-
		8지구	6,596.4		을지로6가 18-35	5,291.9	-
		9지구	1,572.5	소단위 정비지구	방산동 79-1	1,463.5	-
		10지구	713.9		을지로5가 35-1	695.1	-
		11지구	668.5		을지로6가 18-219	661.8	-
		12지구	4,554.8	소단위 관리지구	방산동 19-200	4,554.8	-
		13지구	4,020.6		을지로6가 17-225	4,020.6	-
		14지구	1,230.0	존치지구	을지로5가 39-1	1,230.0	삼성파크빌
		15지구	5,060.2		을지로6가 18-14	5,060.2	중구의회
		16지구	10,320.5		을지로6가 18-12	10,320.5	두산타워
		17지구	7,797.1		을지로6가 18-21	7,797.1	굿모닝시티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신설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1구역	1~8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9~11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2~13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14~17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2. 정비계획 결정(안)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7,003.2	-	177,003.2	100.0	-
일반상업지역	177,003.2	-	177,003.2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77,003.2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80,830.1	45.7	-
	도 로	21,269.7	12.0	-
	공 원	17,663.9	10.0	-
	종합의료시설	41,896.5	23.7	-
획 지	소 계	96,173.1	54.3	-
	일반정비지구	60,369.5	34.1	-
	소단위정비지구	2,820.4	1.6	-
	소단위관리지구	8,575.4	4.8	-
	존치지구	24,407.8	13.8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65	20-23	집산도로	200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변경	중로	1	465	20-23	집산도로	485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212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폐지	소로	1	183	11	집산도로	284	을지로6가 18-212	을지로6가 18-14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을지로6가 17-8	을지로6가 18-1	일반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32	을지로6가 18-11	을지로6가 17-465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
기정	소로	2	-	8-11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329	을지로6가 18-12	을지로6가 17-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a	8-12	국지 도로	261	을지로6가 18-97	을지로6가 18-13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b	9	국지 도로	80	을지로6가 18-52	을지로6가 18-13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c	8	특수 도로	77	을지로6가 18-222	을지로6가 18-20	보행자 전용 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6	을지로5가 38-7	을지로5가 38-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465	중로1-465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00m→485m	• 정비사업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소로1-183을 확폭하여 통폐합
소로1-183	-	• 도로 폐지	• 중로1-465와 통폐합
소로1-8	소로1-8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소로2-	중로3-a	• 도로 노선번호 부여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11m→12m	•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노선번호 부여 •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부영향 해소를 위하여 도로 확폭
-	중로3-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29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2-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8-12m - 연장 : 261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2-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9m - 연장 : 8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2-c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77m	• 정비사업을 통한 보행녹지축 조성을 위해 현황 국공유지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신설
-	소로3-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26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지하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443.3 (135)	중구 제2010-21호 (2010.4.15.)	-
기정	②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0일대	316.20 (16.5)	서고 제75호 (2007.3.29.)	-
기정	③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20번지 일대	171.49	-	-
기정	④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12번지 일원	25.7 (7.1)	중구 제2011-62호 (2011.10.13.)	밀리오레 지하층 연결로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3)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9,697.9 (160.1)	518,590.3 (3,93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2호 (2024.6.28.)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4)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주차장	을지로5가 40-3 일대	16,732	서고 제139호 (1994.4.28.)	일부 중복결정 (근린공원① :훈련원공원)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훈련원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6,711.0	감) 230.7	16,480.3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 중복결정 (주차장①)
신설	②	공원2	소공원	방산동 4-2	-	증) 1,183.6	1,183.6	-	일부 중복결정 (철도①)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훈련원공원	• 공원 선형 변경 • 주차장① 중복결정 - 면적 : 16,480.3㎡	• 기 조성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선형 개선 • 기 설치된 주차장① 일부 중복결정
②	공원2	• 소공원 신설 - 면적 : 1,183.6㎡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536.4㎡	• 도심내 시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 신설 • 기 설치된 철도① 일부 중복결정

다)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종합의료시설	방산동 70번지 일대	41,896.5	-	41,89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5호 (2025.05.22.)	-

■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종합의료시설	60%이하	300%이하	90m 이하	-

2)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65	20-23	집산 도로	200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변경	중로	1	465	20-23	집산 도로	485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212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폐지	소로	1	183	11	집산 도로	284	을지로6가 18-212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32	을지로6가 17-8	을지로6가 18-1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
변경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32	을지로6가 18-11	을지로6가 17-465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
기정	소로	2	-	8-11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329	을지로6가 18-12	을지로6가 17-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a	8-12	국지 도로	261	을지로6가 18-97	을지로6가 18-13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b	9	국지 도로	80	을지로6가 18-52	을지로6가 18-13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c	8	특수 도로	77	을지로6가 18-222	을지로6가 18-20	보행자 전용 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6	을지로5가 38-7	을지로5가 38-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465	중로1-465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00m→485m	• 정비사업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소로1-183을 확폭하여 통폐합
소로1-183	-	• 도로 폐지	• 중로1-465와 통폐합
소로1-8	소로1-8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소로2-	중로3-a	• 도로 노선번호 부여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11m→12m	•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노선번호 부여 •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부영향 해소를 위하여 도로 확폭
-	중로3-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29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2-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8-12m - 연장 : 261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2-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9m - 연장 : 8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2-c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77m	• 정비사업을 통한 보행녹지축 조성을 위해 현황 국공유지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신설
-	소로3-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26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공용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주차장	을지로5가 40-3 일대	16,732	서고 제139호 (1994.4.28.)	일부 중복결정 (근린공원① ·훈련원공원)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훈련원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6,711.0	감) 230.7	16,480.3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 중복결정 (주차장①)
신설	②	공원2	소공원	방산동 4-2	-	증) 1,183.6	1,183.6	-	일부 중복결정 (철도①)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훈련원공원	• 공원 선형 변경 • 주차장① 중복결정 - 면적 : 16,480.3㎡	• 기 조성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선형 개선 • 기 설치된 주차장① 일부 중복결정
②	공원2	• 소공원 신설 - 면적 : 1,183.6㎡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536.4㎡	• 도심내 시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 신설 • 기 설치된 철도① 일부 중복결정

3)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 일반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12.00% 이상
- 소단위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6.00% 이상
- 소단위관리지구는 구역부담률 의무 대상은 아니나, 필요 시 부담 가능

구분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계	도로 (지정)	공동분담 면적					
합 계		68,104.8	63,189.9	4,914.9	4,010.8	904.1	616.2	1,022.9	4,526.6	7,802.4	-
일반 정비 지구	1지구	2,092.1	1,889.9	202.2	182.9	19.3	-	-	49.0	251.2	12.01
	2지구	3,193.6	2,994.6	199.0	135.1	63.9	-	168.5	332.5	363.0	12.00
	3지구	4,976.6	4,690.2	286.4	238.6	47.8	-	24.4	332.3	594.3	12.00
	4지구	11,527.6	11,300.2	227.4	112.2	115.2	-	-	1,156.3	1,383.7	12.00
	5지구	3,414.1	3,279.5	134.6	101.2	33.4	-	-	275.2	409.8	12.00
	6지구	28,034.6	26,166.0	1,868.6	1,868.6	-	-	-	1,494.2	3,362.8	12.00
	7지구	5,314.9	4,757.2	557.7	25.1	532.6	-	509.1	528.2	576.8	12.00

구분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계	도로 (지정)	공동분담 면적					
	8지구	6,596.4	5,291.9	1,304.5	1,250.6	53.9	616.2	251.0	250.4	687.7	12.00
소단위 정비 지구	9지구	1,572.5	1,463.5	109.0	94.1	14.9	-	58.2	40.1	90.9	6.00
	10지구	713.9	695.1	18.8	2.4	16.4	-	11.7	35.0	42.1	6.00
	11지구	668.5	661.8	6.7	-	6.7	-	-	33.4	40.1	6.00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면적 이상을 정비기반시설로 확보
※ 사업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면적,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라.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DDP 1구역	96,148.9	소 계	96,173.1	-	71	5	-	64	-	-
			1지구	1,889.9	을지로6가 1-3	2	-	-	2	-	-
			2지구	2,994.6	을지로6가 17-9	2	-	-	2	-	-
			3지구	4,690.2	을지로6가 17-415	3	-	-	3	-	-
			4지구	11,300.2	을지로6가 17-2	1	-	-	1	-	-
			5지구	3,279.5	을지로6가 18-17	1	-	-	1	-	-
			6지구	26,166.0	을지로6가 18-79	13	-	-	13	-	-
			7지구	4,757.2	을지로6가 18-60	16	-	-	16	-	-
			8지구	5,291.9	을지로6가 18-35	16	-	-	16	-	-
			9지구	1,463.5	방산동 79-1	5	-	-	5	-	-
			10지구	695.1	을지로5가 35-1	4	-	-	4	-	-
			11지구	661.8	을지로6가 18-219	1	-	-	1	-	-
			12지구	4,554.8	방산동 19-200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3지구	4,020.6	을지로6가 17-225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4지구	1,230.0	을지로5가	1	1	-	-	-	-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39-1						
			15지구	5,060.2	을지로6가 18-14	2	2	-	-	-	-
			16지구	10,320.5	을지로6가 18-12	1	1	-	-	-	-
			17지구	7,797.1	을지로6가 18-21	1	1	-	-	-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 유형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일반 정비 지구	1지구	1,889.9	을지로6가 1-3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90m +α +추가 20m	-
		2지구	2,994.6	을지로6가 17-9					
		3지구	4,690.2	을지로6가 17-415					
		4지구	11,300.2	을지로6가 17-2		30이하	기준 400/ 허용 500/ 상한 α		학교 이적지
		5지구	3,279.5	을지로6가 18-17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
		6지구	26,166.0	을지로6가 18-79					
		7지구	4,757.2	을지로6가 18-60					
		8지구	5,291.9	을지로6가 18-35					
	소단위 정비 지구	9지구	1,463.5	방산동 79-1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90m 이하	-
		10지구	695.1	을지로5가 35-1					
		11지구	661.8	을지로6가 18-219					
	소단위 관리 지구	12지구	4,554.8	방산동 19-200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80이하	기준 600/ 허용 660/ 상한 α	90m 이하	-
		13지구	4,020.6	을지로6가 17-225					
	존치 지구	14지구	1,230.0	을지로5가 39-1	공동주택	55.82	598.01	51.6	삼성 파크빌
		15지구	5,060.2	을지로6가 18-14	업무(공공청사)	68.49	242.90	22.0	중구의회
		16지구	10,320.5	을지로6가 18-12	업무시설	33.00	599.29	156.2	두산타워 (학교 이적지)
		17지구	7,797.1	을지로6가 18-21	판매시설	59.95	634.54	76.8	굿모닝 시티

※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소단위정비지구 건폐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0%까지 완화할 수 있음
※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그에 따름
※ 일반정비지구 추가 20m는 일반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 설치 시 적용 가능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영화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4	최대 15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 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 150%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 도입 시	정률 부여	0.2 (최대적용량50%)	최대 200%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입주 시	정률 부여	0.4	
	공익 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 장충단로변 또는 낙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률 부여	0.2	최대 50%
		저층부 특화공간	• 저층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확보 시	정률 부여	0.3	최대 100%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 장충단로변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량 부여	20%	최대 20%
		관광편의시설	• 관광안내소, 러기지센터 등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정률 부여	0.4	최대 100%

※ 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르되, 계획유도 해당 항목은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 적용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의 세부 도입 기준은 향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시 그에 따르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불가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음악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을 말함

※ '저층부 특화공간' 항목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단, 저층부 개방공간과 중복 불가

※ '미디어파사드' 항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적용 가능

2)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장충단로, 을지로, 동호로 : 3m • 중로1-465 : 2m • 그 외 이면도로변 : 1m	결정도면 참조
대지내 공지	공공 보행통로	• 6지구 내 폭원 6m 확보 • 2지구, 3지구 내 폭원 4m 확보	결정도면 참조
	개방형 녹지	• 6지구 : 훈련원공원과 연계되는 동서녹지축 폭원 30m 이상, 남북녹지축 폭원 15m 이상 조성 • 8지구 : 6지구 동서녹지축이 장충단로와 연결되도록 지구 남측 보행자전용도로와 일체감있게 조성 • 17지구 : 6지구 동서녹지축이 장충단로와 연결되도록 지구 북측 보행자전용도로와 일체감있게 조성 (추후 일반정비지구 전환 시 본 계획 준수) • 그 외 일반정비지구 : 사업시행 시 공개공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도면 참조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개방형녹지 계획 권장	
	공개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조성	-

아. 기타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ii. DDP 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Ⅱ. DDP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ⅰ. DDP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DDP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지구 지정 조서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DDP 2구역	마장로 45 일대	-	증) 48,203.4	48,203.4	-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설	DDP 2구역	• 위치 : 마장로 45 일대 • 면적 : 48,203.4㎡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신설

2) 지구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 유형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신설	합 계				48,203.4	38,673.6	9,529.8	-
	소 계				39,853.9	38,673.6	1,180.3	-
	DDP 2구역	1지구	신당동 772	일반 정비지구	2,317.7	2,317.7	-	-
		2지구	신당동 217-6		1,423.5	1,416.1	7.4	-
		3지구	신당동 775		4,111.5	3,689.2	422.3	-
		4지구	신당동 777		2,938.7	2,637.8	300.9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 유형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5지구	신당동 776		1,603.4	1,543.3	60.1	-
		6지구	신당동 213-67		2,230.5	2,052.0	178.5	-
		7지구	신당동 213-8		2,972.3	2,767.6	204.7	-
		8지구	신당동 778	소단위 정비지구	585.9	579.5	6.4	-
		9지구	신당동 213-6		1,306.3	1,306.3	-	-
		10지구	신당동 217-1	소단위 관리지구	3,305.0	3,305.0	-	-
		11지구	신당동 217-92		4,175.0	4,175.0	-	-
		12지구	신당동 217-91		2,163.6	2,163.6	-	-
		13지구	신당동 213-2		1,043.8	1,043.8	-	-
		14지구	신당동 214-1		360.3	360.3	-	-
		15지구	신당동 773	존치지구	4,072.9	4,072.9	-	-
		16지구	신당동 193-2		5,243.5	5,243.5	-	-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사업 미시행)				8,349.5	-	8,349.5	-

※ 상기면적은 지구별 정비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단위관리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지구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2구역	1~7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8~9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0~14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15~16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DDP 2구역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소단위관리 : 행위허가(건축허가)	지구별 시행에 따름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소단위관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

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사업명칭 예시 : DDP2구역 중 00지구 사업추진시 사업명칭은 'DDP2구역 0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기

- 소단위관리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 대상 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개발사업 추진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존치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시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하며, 구역별부담률은 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지구 면적(㎡)	정비 유형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DDP 2구역	소 계	39,853.9	-	-	38,673.6	-
		1지구	2,317.7	일반 정비지구	신당동 772	2,317.7	-
		2지구	1,423.5		신당동 217-6	1,416.1	-
		3지구	4,111.5		신당동 775	3,689.2	-
		4지구	2,938.7		신당동 777	2,637.8	-
		5지구	1,603.4		신당동 776	1,543.3	-
		6지구	2,230.5		신당동 213-67	2,052.0	-
		7지구	2,972.3		신당동 213-8	2,767.6	-
		8지구	585.9	소단위 정비지구	신당동 778	579.5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지구 면적(㎡)	정비 유형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9지구	1,306.3		신당동 213-6	1,306.3	-
		10지구	3,305.0	소단위 관리지구	신당동 217-1	3,305.0	-
		11지구	4,175.0		신당동 217-92	4,175.0	-
		12지구	2,163.6		신당동 217-91	2,163.6	-
		13지구	1,043.8		신당동 213-2	1,043.8	-
		14지구	360.3		신당동 214-1	360.3	-
		15지구	4,072.9	존치지구	신당동 773	4,072.9	맥스타일
		16지구	5,243.5		신당동 193-2	5,243.5	디오트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신설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2구역	1~7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8~9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0~14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15~16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2 정비계획 결정(안)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203.4	-	48,203.4	100.0	-
일반상업지역	48,203.4	-	48,203.4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8,203.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9,529.8	19.8	-
	도 로	9,529.8	19.8	-
획 지	소 계	38,673.6	80.2	-
	일반정비지구	16,423.7	34.1	-
	소단위정비지구	1,885.8	3.9	-
	소단위관리지구	11,047.7	22.9	-
	존치지구	9,316.4	19.3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2,750 (120)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5.8.)	-
변경	중로	1	5	20	집산 도로	2,750 (120)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5.8.)	-
신설	중로	3	d	12	국지 도로	166	신당동 777	신당동 77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98	신당동 777	신당동 77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b	6-8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77	신당동 77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c	6	국지 도로	101	신당동 213-79	신당동 213-5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d	5	국지 도로	174	신당동 213-67	신당동 217-95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e	6	국지 도로	128	신당동 217-91	흥인동 159-1	일반 도로	-	-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5	중로1-5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	중로3-d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66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1-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98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8m - 연장 : 107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c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01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d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m - 연장 : 174m	• 현재 도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고,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여 도로 신설
	소로3-e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28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지하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443.3 (71.2)	중구 제2010-21호 (2010.4.15.)	-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3)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9,697.9 (188.6)	518,590.3 (4,28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2호 (2024.06.28.)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변전시설	성동구 신당동 217-6	1,603	-	1,603	서고 제116호 (1973.7.7.)	-

(2) 시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대규모 점포	신당동 774, 775 일대	3,396.3	-	3,396.3	서고 제432호 (1979.10.8.)	-
기정	②	시장	대규모 점포	신당동 772 일대	2,306.4	-	2,306.4	서고 제432호 (1979.10.8.)	-
기정	③	시장	대규모 점포	신당동 217-91 일대	2,138	-	2,138	서고 제28호 (1975.2.10.)	-
기정	④	오간수 시장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	신당동 776, 777 일대	4,558.4	-	4,558.4	서고 제432호 (1979.10.8.)	-

2)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2,750 (120)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5.8.)	-
변경	중로	1	5	20	집산 도로	2,750 (120)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5.8.)	-
신설	중로	3	d	12	국지 도로	166	신당동 777	신당동 77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98	신당동 777	신당동 77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b	6-8	국지 도로	107	을지로6가 18-177	신당동 77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c	6	국지 도로	101	신당동 213-79	신당동 213-5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d	5	국지 도로	174	신당동 213-67	신당동 217-95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e	6	국지 도로	128	신당동 217-91	흥인동 159-1	일반 도로	-	-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5	중로1-5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	중로3-d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66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1-a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98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b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8m - 연장 : 107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c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01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d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m - 연장 : 174m	• 현재 도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고,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여 도로 신설
	소로3-e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28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하여 개발 부영향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3)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 일반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12.00% 이상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지구는 구역부담률을 별도 적용하며, 용적률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음
- 소단위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6.00% 이상
- 소단위관리지구는 구역부담률 의무 대상은 아니나, 필요 시 부담 가능
-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는 구역부담률과 중복 가능하며,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 인센티브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 기반시설 수요가 없거나 개발규모 대비 과도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별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계	도로 (지정)	공동분담 면적					
합 계		19,489.8	18,309.5	1,180.3	1,180.3	-	-	370.6	834.7	1,644.4	-
일반 정비 지구	1지구	2,317.7	2,317.7	-	-	-	-	-	115.9	115.9	5.00
	2지구	1,423.5	1,416.1	7.4	7.4	-	-	-	163.4	170.8	12.00
	3지구	4,111.5	3,689.2	422.3	422.3	-	-	370.6	135.4	187.1	5.00
	4지구	2,938.7	2,637.8	300.9	300.9	-	-	-	51.7	352.6	12.00
	5지구	1,603.4	1,543.3	60.1	60.1	-	-	-	20.0	80.1	5.00
	6지구	2,230.5	2,052.0	178.5	178.5	-	-	-	89.2	267.7	12.00
	7지구	2,972.3	2,767.6	204.7	204.7	-	-	-	151.9	356.6	12.00
소단위 정비 지구	8지구	585.9	579.5	6.4	6.4	-	-	-	28.8	35.2	6.01
	9지구	1,306.3	1,306.3	-	-	-	-	-	78.4	78.4	6.00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면적 이상을 정비기반시설로 확보
※ 사업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면적,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라.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DDP 2구역	38,673.6	소 계	38,673.6	-	26	2	-	14	-	-
			1지구	2,317.7	신당동 772	1	-	-	1	-	-
			2지구	1,416.1	신당동 217-6	1	-	-	1	-	-
			3지구	3,689.2	신당동 775	3	-	-	3	-	-
			4지구	2,637.8	신당동 777	1	-	-	1	-	-
			5지구	1,543.3	신당동 776	1	-	-	1	-	-
			6지구	2,052.0	신당동 213-67	1	-	-	1	-	-
			7지구	2,767.6	신당동 213-8	2	-	-	2	-	-
			8지구	579.5	신당동 778	1	-	-	1	-	-
			9지구	1,306.3	신당동 213-6	3	-	-	3	-	-
			10지구	3,305.0	신당동 217-1	2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1지구	4,175.0	신당동 217-92	5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2지구	2,163.6	신당동 217-91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3지구	1,043.8	신당동 213-2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4지구	360.3	신당동 214-1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5지구	4,072.9	신당동 773	1	1	-	-	-	-
			16지구	5,243.5	신당동 193-2	1	1	-	-	-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 유형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일반 정비 지구	1지구	2,317.7	신당동 772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90m +α +추가	-
		2지구	1,416.1	신당동 217-6					
		3지구	3,689.2	신당동 775					

구분	정비 유형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4지구	2,637.8	신당동 777				20m	
		5지구	1,543.3	신당동 776					
		6지구	2,052.0	신당동 213-67					
		7지구	2,767.6	신당동 213-8					
	소단위 정비 지구	8지구	579.5	신당동 778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90m 이하	-
		9지구	1,306.3	신당동 213-6					
	소단위 관리 지구	10지구	3,305.0	신당동 217-1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80이하	기준 600/ 허용 660/ 상한 α	90m 이하	-
		11지구	4,175.0	신당동 217-92					
		12지구	2,163.6	신당동 217-91					
		13지구	1,043.8	신당동 213-2					
		14지구	360.3	신당동 214-1					
	존치 지구	15지구	4,072.9	신당동 773	판매시설	59.69	613.50	87.0	맥스타일
		16지구	5,243.5	신당동 193-2	판매시설	59.83	395.67	33.2	디오트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소단위정비지구 건폐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0%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 일반정비지구 추가 20m는 일반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 설치 시 적용 가능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영화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4	최대 15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 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 150%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 도입 시	정률 부여	0.2 (최대정량50%)	최대 200%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입주 시	정률 부여	0.4	
	공익 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 장충단로변 또는 낙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률 부여	0.2	최대 50%
		저층부 특화공간	• 저층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확보 시	정률 부여	0.3	최대 100%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 장충단로변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량 부여	20%	최대 20%
		관광편의시설	• 관광안내소, 러기지센터 등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정률 부여	0.4	최대 100%

※ 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르되, 계획유도 해당 항목은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 적용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의 세부 도입 기준은 향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시 그에 따르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불가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음악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을 말함
※ '저층부 특화공간' 항목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단, 저층부 개방공간과 중복 불가
※ '미디어파사드' 항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적용 가능

2)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장충단로 : 3m • 마장로, 마장로1길 : 2m • 그 외 이면도로변 : 1m	결정도면 참조
대지내 공지	개방형 녹지	• 사업시행 시 공개공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형녹지 계획 권장	-
	공개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조성	-

아. 기타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ii. DDP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Ⅲ DDP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ⅰ DDP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DDP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지구 지정 조서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DDP 3구역	을지로299 일대	-	증) 118,689.5	118,689.5	-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설	DDP 3구역	• 위치 : 을지로299 일대 • 면적 : 118,689.5㎡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신설

2) 지구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 유형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합 계				118,689.5	60,625.1	58,064.4	-
	소 계				63,893.3	60,625.1	3,268.2	-
	DDP 3구역	1지구	신당동 204-1	일반 정비지구	2,076.2	1,827.0	249.2	-
		2지구	신당동 198-3		2,104.8	1,851.2	253.6	-
		3지구	신당동 200-1		2,215.3	1,949.4	265.9	-
		4지구	신당동 251-8		4,179.5	3,678.1	501.4	-
		5지구	을지로7가 105		4,190.4	3,679.1	511.3	-
		6지구	을지로7가 23-4		8,777.4	7,509.7	1,267.7	-
		7지구	신당동 251-1	소단위 정비지구	896.6	842.8	53.8	-
		8지구	흥인동 126		855.4	804.1	51.3	-
		9지구	흥인동 106-1		921.2	865.9	55.3	-
		10지구	흥인동 114		977.6	918.9	58.7	-
		11지구	신당동 199-3	소단위 관리지구	1,248.7	1,248.7	-	-
		12지구	신당동 251-60		2,922.6	2,922.6	-	-
		13지구	흥인동 153-1		2,478.4	2,478.4	-	-
		14지구	신당동 197-1		3,266.3	3,266.3	-	-
		15지구	신당동 251-10		3,415.8	3,415.8	-	-
		16지구	신당동 251-100		3,002.2	3,002.2	-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 유형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17지구	흥인동 145		5,395.6	5,395.6	-	-
		18지구	흥인동 115		1,262.3	1,262.3	-	-
		19지구	흥인동 104		717.2	717.2	-	-
		20지구	신당동 250-20		1,695.3	1,695.3	-	-
		21지구	신당동 250-10		2,052.8	2,052.8	-	-
		22지구	흥인동 119		1,827.9	1,827.9	-	-
		23지구	광희동2가 37		1,913.7	1,913.7	-	-
		24지구	광희동2가 41		1,201.2	1,201.2	-	-
		25지구	광희동2가 50		451.8	451.8	-	-
		26지구	신당동 251-160	존치지구	2,384.3	2,384.3	-	-
		27지구	을지로7가 2-37		1,462.8	1,462.8	-	-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사업 미시행)				54,796.2	-	54,796.2	-

※ 상기면적은 추후 지구별 정비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단위관리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지구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3구역	1~6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7~10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1~25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26~27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DDP 3구역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소단위관리 : 행위허가(건축허가)	지구별 시행에 따름	• 일반정비/소단위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소단위관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

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사업명칭 예시 : DDP3구역 중 00지구 사업추진시 사업명칭은 'DDP3구역 0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기

- 소단위관리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 대상 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개발사업 추진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존치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시 일반정비지구 또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가능하며, 구역별부담률은 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지구 면적(㎡)	정비 유형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DDP 3구역	소 계	63,893.3	-	-	60,625.1	-
		1지구	2,076.2	일반 정비지구	신당동 204-1	1,827.0	-
		2지구	2,104.8		신당동 198-3	1,851.2	-
		3지구	2,215.3		신당동 200-1	1,949.4	-
		4지구	4,179.5		신당동 251-8	3,678.1	-
		5지구	4,190.4		을지로7가 105	3,679.1	-
		6지구	8,777.4		을지로7가 23-4	7,509.7	-
		7지구	896.6	소단위 정비지구	신당동 251-1	842.8	-
		8지구	855.4		흥인동 126	804.1	-
		9지구	921.2		흥인동 106-1	865.9	-
		10지구	977.6		흥인동 114	918.9	-
		11지구	1,248.7	소단위 관리지구	신당동 199-3	1,248.7	-
		12지구	2,922.6		신당동 251-60	2,922.6	-
		13지구	2,478.4		흥인동 153-1	2,478.4	-
		14지구	3,266.3		신당동 197-1	3,266.3	-
		15지구	3,415.8		신당동 251-10	3,415.8	-
		16지구	3,002.2		신당동 251-100	3,002.2	-
		17지구	5,395.6		흥인동 145	5,395.6	-
		18지구	1,262.3		흥인동 115	1,262.3	-
		19지구	717.2		흥인동 104	717.2	-
		20지구	1,695.3		신당동 250-20	1,695.3	-
		21지구	2,052.8		신당동 250-10	2,052.8	-
		22지구	1,827.9		흥인동 119	1,827.9	-
		23지구	1,913.7		광희동2가 37	1,913.7	-
		24지구	1,201.2		광희동2가 41	1,201.2	-
		25지구	451.8		광희동2가 50	451.8	-
		26지구	2,384.3	존치지구	신당동 251-160	2,384.3	동대문패션 비즈센터
		27지구	1,462.8		을지로7가 2-37	1,462.8	서울교통공사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일반정비지구 중 6지구는 획지분할가능 (세부사항은 공람도서 참고)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신설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DDP 3구역	1~6지구	• 지구 신설 • 일반정비지구	• DDP 일대 기반시설 개선 및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7~10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정비지구	• DDP 일대 중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지정
		11~25지구	• 지구 신설 • 소단위관리지구	• DDP 일대 소규모 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26~27지구	• 지구 신설 • 존치지구	• DDP 일대 기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지정

2 정비계획 결정(안)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8,689.5	-	118,689.5	100.0	-
일반상업지역	118,689.5	-	118,689.5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18,689.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58,064.4	48.9	-
	도 로	16,920.6	14.3	-
	공 원	2,587.0	2.2	-
	녹 지	3,347.9	2.8	-
	광 장	1,000.0	0.8	-
	학 교	24,342.3	20.5	-
	문화시설	9,866.6	8.3	-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획 지	소 계	60,625.1	51.1	-
	일반정비지구	20,494.5	17.3	-
	소단위정비지구	3,431.7	2.9	-
	소단위관리지구	32,851.8	27.7	-
	존치지구	3,847.1	3.2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	30-40	주간선도로	3,305 (70)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변경	대로	2	-	30-40	주간선도로	3,305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기정	대로	2	10	30	보조 간선	220	을지로6가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변경	대로	2	10	30	보조 간선	290	을지로6가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중로	3	288	12-15	집산 도로	190 (141)	흥인동 114	흥인동 157	일반 도로	서고 제851호 (1986.11.26)	광희학교길
기정	소로	1	187	10	국지 도로	55	광희동2가 17-1	을지로7가 133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변경	소로	3	f	6	국지 도로	73	광희동2가 17-1	광희동2가 50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변경	중로	3	8	12	국지 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2	180	8-10	국지 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변경	소로	2	180	8-10	국지 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기정	소로	3	60	7	국지 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 73길
변경	소로	3	60	7	국지 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 73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g	6	국지 도로	80	신당동 204-9	신당동 199-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h	5-6	국지 도로	32	신당동 251-57	신당동 251-4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i	6	국지 도로	132	신당동 204-55	흥인동 153-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j	5	국지 도로	163	신당동 251-63	신당동 251-15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k	6	국지 도로	50	신당동 251-131	신당동 251-8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l	5-6	국지 도로	110	신당동 251-68	신당동 251-10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	5-8	국지 도로	295 (234)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 도로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 (1940.3.14.)	-
변경	소로	3	m	5-8	국지 도로	295 (234)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 도로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 (1940.3.14.)	-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2-	대로2-	• 도로 선형 변경	• 현황 이용체계 반영하여 간선도로 선형 개선
대로2-10	대로2-10	• 교차로 가각부 변경	• 광장 신설 계획에 따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 가각부 선형 조정 • 한양공고앞 교차로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가각부 선형 조정
소로1-187	소로3-f	• 도로 시종점, 연장, 폭원 변경 - 폭원 : 10m→6m - 연장 : 55m→73m	• 경관녹지 변경 계획을 반영하고 현황도로의 소통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시종점 및 연장, 폭원 변경
소로2-8	중로3-8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12m	• 정비사업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2-180	소로2-180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소로3-60	소로3-60	• 도로 선형 변경	• 도로 가각부 편입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	소로3-g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h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6m - 연장 : 32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i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32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j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m - 연장 : 163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k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5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l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6m - 연장 : 11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소로3-	소로3-m	• 도로 노선번호 부여 • 도로 선형 변경	•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2)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4호선)	지하철역사	을지로7가 120 일대			206	2,707.53	서고 제287호 (1981.7.30.)
기정	②	도시철도 (2호선)	동대문운동장 정거장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일대			205	5,999.52	중구 제2004-72호 (2004.11.15.)
기정	③	철도	도시철도 (6호선) 신당정거장	중구 흥인동 86앞			-	6,069.86 (31.2)	서고 제1994-104호 (1994.03.30)
기정	④	철도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선)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00	- (27.9)	건고 제203호 (1978.12.20.)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신당동광장	교통광장	신당동	4,010 (2,124.5)	증) 2,454.4	6,464.4 (2,054.1)	건설부 제431호 (1963.07.01.)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신설	②	광장2	일반광장	을지로7가 135-2 일대	-	증) 1,000.0	1,000.0	-	철도①,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신당동 광장	• 교통광장 변경 - 면적 : 4,010㎡ → 6,464.4㎡ (증 2,454.4㎡)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35.8㎡	• 기정 고시면적 오기 정정 (증 2,524.8㎡) • 을지로 변경 및 문화공원 신설 계획을 반영하여 선형 일부 조정 (감 70.4㎡)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중복결정
②	광장2	• 일반광장 신설 - 면적 : 1,000.0㎡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576㎡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197.9㎡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출입구 연계 보행 네트워크 구축하고 DDP로 개방된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광장 신설 • 기 설치된 철도①(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역사 및 10번 출입구 중복결정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3	문화공원	을지로7가 11-4	-	증) 2,587.0	2,587.0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공원 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2,587.0㎡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1.4㎡	• 한양도성 성곽길의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현대건축물 (구)서산부인과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공원 신설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1	경관녹지	을지로7가 135-2	2,004.3	감) 428.3	1,586.0	-	철도① 중복결정
신설	②	녹지2	완충녹지	흥인동 161	-	증) 1,761.9	1,761.9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폐지) 내용	결정(폐지) 사유
①	녹지1	• 경관녹지 변경 - 면적 : 2,004.3㎡ → 1,586.0㎡ (감 428.3㎡)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1,581.2㎡	• 북측 광장2 신설 및 남측 소로3-e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녹지 일부 축소 • 기 설치된 철도①(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사 및 9번 출입구 중복결정
②	녹지2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61.9㎡	• 기 조성된 공공공지1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1	을지로7가 2-38번지	1,243.4	감) 1,243.4	-	서고 2008-271 (2008.08.07)	-
폐지	②	공공공지2	중구 흥인동 117-3,4번지	182.2	감) 182.2	-	중구고시 제97호 (2003.12.26)	충무아트홀 진입도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기 조성된 공공공지1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재 충무아트홀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구유지로, 문화시설(충무아트홀)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한양중, 공고	중 · 고등학교	중구 신당동 251일대	14,609.3	-	14,609.3	서고 제643호 (1978.3.14)	-
기정	②	성동 여실고	고등학교	신당동 250-3	9,733	-	9,733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호 (1987.2.17)	-

■ 학교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학교	35%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학교	40%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2)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문화시설	공연장 및 문화체육센터	중구 흥인동 131일대	9,463.5	증) 403.1	9,866.6	서고 제2003-34 (2003.03.10)	철도④ 중복결정

■ 문화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문화시설	60%이하	250%이하	7층(60m이하)	일반상업지역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면적 증가 : 9,463.5㎡ → 9,866.6㎡ • 철도④ 중복결정 - 면적 : 27.9㎡	• 충무아트센터 진출입로(구유지)를 포함하여 문화시설 결정 • 기 설치된 철도④(도시고속철도) 중복결정

2)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	30-40	주간선도로	3,305 (70)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변경	대로	2	-	30-40	주간선도로	3,305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기정	대로	2	10	30	보조 간선	220	을지로6가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변경	대로	2	10	30	보조 간선	290	을지로6가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중로	3	288	12-15	집산 도로	190 (141)	흥인동 114	흥인동 157	일반 도로	서고 제851호 (1986.11.26)	광희학교길
기정	소로	1	187	10	국지 도로	55	광희동2가 17-1	을지로7가 133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변경	소로	3	f	6	국지 도로	73	광희동2가 17-1	광희동2가 50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변경	중로	3	8	12	국지 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2	180	8-10	국지 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변경	소로	2	180	8-10	국지 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기정	소로	3	60	7	국지 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 73길
변경	소로	3	60	7	국지 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 73길
신설	소로	3	g	6	국지 도로	80	신당동 204-9	신당동 199-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h	5-6	국지 도로	32	신당동 251-57	신당동 251-4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i	6	국지 도로	132	신당동 204-55	흥인동 153-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j	5	국지 도로	163	신당동 251-63	신당동 251-15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k	6	국지 도로	50	신당동 251-131	신당동 251-8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l	5-6	국지 도로	110	신당동 251-68	신당동 251-10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	5-8	국지 도로	295 (234)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 도로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 (1940.3.14.)	-
변경	소로	3	m	5-8	국지 도로	295 (234)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 도로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 (1940.3.14.)	-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2-	대로2-	• 도로 선형 변경	• 현황 이용체계 반영하여 간선도로 선형 개선
대로2-10	대로2-10	• 교차로 가각부 변경	• 광장 신설 계획에 따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 가각부 선형 조정 • 한양공고앞 교차로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가각부 선형 조정
소로1-187	소로3-f	• 도로 시종점, 연장, 폭원 변경 - 폭원 : 10m→6m - 연장 : 55m→73m	• 경관녹지 변경 계획을 반영하고 현황도로의 소통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시종점 및 연장, 폭원 변경
소로2-8	중로3-8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12m	• 정비사업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2-180	소로2-180	• 도로 선형 변경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소로3-60	소로3-60	• 도로 선형 변경	• 도로 가각부 편입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	소로3-g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h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6m - 연장 : 32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i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32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j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m - 연장 : 163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k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5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	소로3-l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폭원 : 5-6m - 연장 : 110m	• 현황 국공유지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
소로3-	소로3-m	• 도로 노선번호 부여 • 도로 선형 변경	•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노선번호 부여 • 일부 구간 선형 정형화

나)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신당동광장	교통광장	신당동	4,010 (2,124.5)	증) 2,454.4	6,464.4 (2,054.1)	건설부 제431호 (1963.07.01.)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신설	②	광장2	일반광장	을지로7가 135-2 일대	-	증) 1,000.0	1,000.0	-	철도①,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 )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신당동 광장	• 교통광장 변경 - 면적 : 4,010㎡ → 6,464.4㎡ (증 2,454.4㎡)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35.8㎡	• 기정 고시면적 오기 정정 (증 2,524.8㎡) • 을지로 변경 및 문화공원 신설 계획을 반영하여 선형 일부 조정 (감 70.4㎡)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중복결정
②	광장2	• 일반광장 신설 - 면적 : 1,000.0㎡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576㎡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197.9㎡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출입구 연계 보행 네트워크 구축하고 DDP로 개방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광장 신설 • 기 설치된 철도①(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역사 및 10번 출입구 중복결정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3	문화공원	을지로7가 11-4	-	증) 2,587.0	2,587.0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공원 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2,587.0㎡ • 도시철도② 중복결정 - 면적 : 1.4㎡	• 한양도성 성곽길의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현대건축물 (구)서산부인과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공원 신설 • 기 설치된 도시철도②(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1	경관녹지	을지로7가 135-2	2,004.3	감) 428.3	1,586.0	-	철도① 중복결정
신설	②	녹지2	완충녹지	흥인동 161	-	증) 1,761.9	1,761.9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폐지) 내용	결정(폐지) 사유
①	녹지1	• 경관녹지 변경 - 면적 : 2,004.3㎡ → 1,586.0㎡ (감 428.3㎡) • 철도① 중복결정 - 면적 : 1,581.2㎡	• 북측 광장2 신설 및 남측 소로3-e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녹지 일부 축소 • 기 설치된 철도①(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사 및 9번 출입구 중복결정
②	녹지2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61.9㎡	• 기 조성된 공공공지1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마)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1	을지로7가 2-38번지	1,243.4	감) 1,243.4	-	서고 2008-271 (2008.08.07)	-
폐지	②	공공공지2	중구 흥인동 117-3,4번지	182.2	감) 182.2	-	중구고시 제97호 (2003.12.26)	충무아트홀 진입도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기 조성된 공공공지1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재 충무아트홀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구유지로, 문화시설(충무아트홀)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폐지

3)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 일반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12.00% 이상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지구는 구역부담률을 별도 적용하며, 용적률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음
- 소단위정비지구 구역부담률 : 6.00% 이상
- 소단위관리지구는 구역부담률 의무 대상은 아니나, 필요 시 부담 가능

구분		시행면적(㎡)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	순부담 면적(㎡)	순부담률(%)
				합계	도로, 공원(지정)	공동분담 면적					
합 계		27,194.4	23,926.2	3,268.2	1,567.2	1,701.0	-	1,123.3	-	2,373.3	-
일반정비지구	1지구	2,076.2	1,827.0	249.2	226.9	22.3	-	-	-	249.2	12.00
	2지구	2,104.8	1,851.2	253.6	85.6	168.0	-	1.1	-	252.5	12.00
	3지구	2,215.3	1,949.4	265.9	6.5	259.4	-	-	-	265.9	12.00
	4지구	4,179.5	3,678.1	501.4	126.1	375.3	-	-	-	501.4	12.00
	5지구	4,190.4	3,679.1	511.3	221.8	289.5	-	9.4	-	501.9	12.00
	6지구	8,777.4	7,509.7	1,267.7	875.8	391.9	-	1,112.8	228.4	383.3	5.00
소단위정비지구	7지구	896.6	842.8	53.8	24.5	29.3	-	-	-	53.8	6.00
	8지구	855.4	804.1	51.3	-	51.3	-	-	-	51.3	6.00
	9지구	921.2	865.9	55.3	-	55.3	-	-	-	55.3	6.00
	10지구	977.6	918.9	58.7	-	58.7	-	-	-	58.7	6.00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면적 이상을 정비기반시설로 확보
※ 사업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면적, 건축물, 현금 등 환산부지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라.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추후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수립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DDP 3구역	60,625.1	소 계	60,625.1	-	206	2	-	89	-	-
			1지구	1,827.0	신당동 204-1	3	-	-	3	-	-
			2지구	1,851.2	신당동 198-3	1	-	-	1	-	-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3지구	1,949.4	신당동 200-1	1	-	-	1	-	-
			4지구	3,678.1	신당동 251-8	1	-	-	1	-	-
			5지구	3,679.1	을지로7가 105	3	-	-	3	-	-
			6지구	7,509.7	을지로7가 23-4	66	-	-	66	-	-
			7지구	842.8	신당동 251-1	2	-	-	2	-	-
			8지구	804.1	흥인동 126	3	-	-	3	-	-
			9지구	865.9	흥인동 106-1	4	-	-	4	-	-
			10지구	918.9	흥인동 114	5	-	-	5	-	-
			11지구	1,248.7	신당동 199-3	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2지구	2,922.6	신당동 251-60	12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3지구	2,478.4	흥인동 153-1	10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4지구	3,266.3	신당동 197-1	21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6지구	3,002.2	신당동 251-100	9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7지구	5,395.6	흥인동 145	13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8지구	1,262.3	흥인동 115	3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19지구	717.2	흥인동 104	3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0지구	1,695.3	신당동 250-20	4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1지구	2,052.8	신당동 250-10	7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2지구	1,827.9	흥인동 119	9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3지구	1,913.7	광희동2가 37	5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4지구	1,201.2	광희동2가 41	3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5지구	451.8	광희동2가 50	4	별도지정 없음(신축, 개보수 등)				-
			26지구	2,384.3	신당동 251-160	1	1	-	-	-	-
			27지구	1,462.8	을지로7가 2-37	1	1	-	-	-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 유형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일반 정비	1지구	1,827.0	신당동 204-1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90m +α	-
		2지구	1,851.2	신당동 198-3					

구분	정비 유형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지구	3지구	1,949.4	신당동 200-1			상한 α	+추가 20m	
		4지구	3,678.1	신당동 251-8					
		5지구	3,679.1	을지로7가 105					
		6지구	7,509.7	을지로7가 23-4					
	소단위 정비 지구	7지구	842.8	신당동 251-1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60이하	기준 600/ 허용 880/ 상한 α	90m 이하	-
		8지구	804.1	흥인동 126					
		9지구	865.9	흥인동 106-1					
		10지구	918.9	흥인동 114					
	소단위 관리 지구	11지구	1,248.7	신당동 199-3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80이하	기준 600/ 허용 660/ 상한 α	90m 이하	-
		12지구	2,922.6	신당동 251-60					
		13지구	2,478.4	흥인동 153-1					
		14지구	3,266.3	신당동 197-1					
		15지구	3,415.8	신당동 251-10					
		16지구	3,002.2	신당동 251-100					
		17지구	5,395.6	흥인동 145					
		18지구	1,262.3	흥인동 115					
		19지구	717.2	흥인동 104					
		20지구	1,695.3	신당동 250-20					
		21지구	2,052.8	신당동 250-10					
		22지구	1,827.9	흥인동 119					
		23지구	1,913.7	광희동2가 37					
		24지구	1,201.2	광희동2가 41					
		25지구	451.8	광희동2가 50					
	존치 지구	26지구	2,384.3	신당동 251-160	공장 (지식산업센터)	59.75	486.49	44.2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
		27지구	1,462.8	을지로7가 2-37	업무시설	56.43	590.83	51.5	서울 교통공사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소단위정비지구 건폐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0%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 일반정비지구 추가 20m는 일반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 설치 시 적용 가능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유도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영화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부여	0.4	최대 15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 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 150%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 도입 시	정률부여	0.2 (최대정량50%)	최대 200%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입주 시	정률부여	0.4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 접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 장충단로변 또는 낙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률부여	0.2	최대 50%
		저층부 특화공간	• 저층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확보 시	정률부여	0.3	최대 100%
지역특화	관광인프라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 장충단로변 일반정비지구에 한해 적용	정량부여	20%	최대 20%
		관광편의시설	• 관광안내소, 러기지센터 등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 공공 부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정률부여	0.4	최대 100%

※ 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르되, 계획유도 해당 항목은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 적용
※ '뷰티·패션 관련 업종시설' 의 세부 도입 기준은 향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시 그에 따르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불가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음악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을 말함
※ '저층부 특화공간' 항목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단, 저층부 개방공간과 중복 불가
※ '미디어파사드' 항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적용 가능

2)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장충단로, 을지로, 퇴계로, 다산로 : 3m • 마장로, 을지로45길 : 2m • 그 외 이면도로변 : 1m	결정도면 참조
대지내 공지	개방형 녹지	• 사업시행 시 공개공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형녹지 계획 가능	-
	공개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조성	-

아. 기타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ii. DDP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Ⅲ. 관련도면

<정비계획 종합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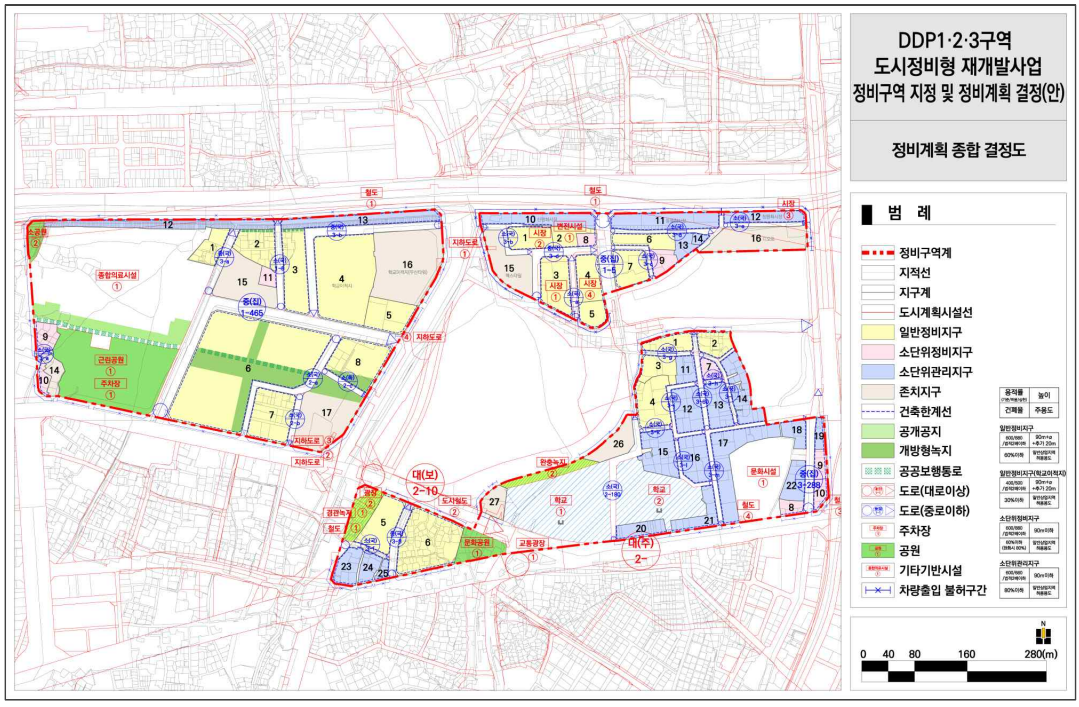

※ 관련도면 : 게재 생략(열람도서 비치)

Ⅳ.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을지로6가 18-79일대	584,516	감) 584,516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폐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위치 : 을지로6가 18-79일대 - 면적 : 584,516㎡	• DDP1 · 2 ·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금회 DDP1 · 2 ·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DDP1 · 2 ·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므로, 금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함

3. 결정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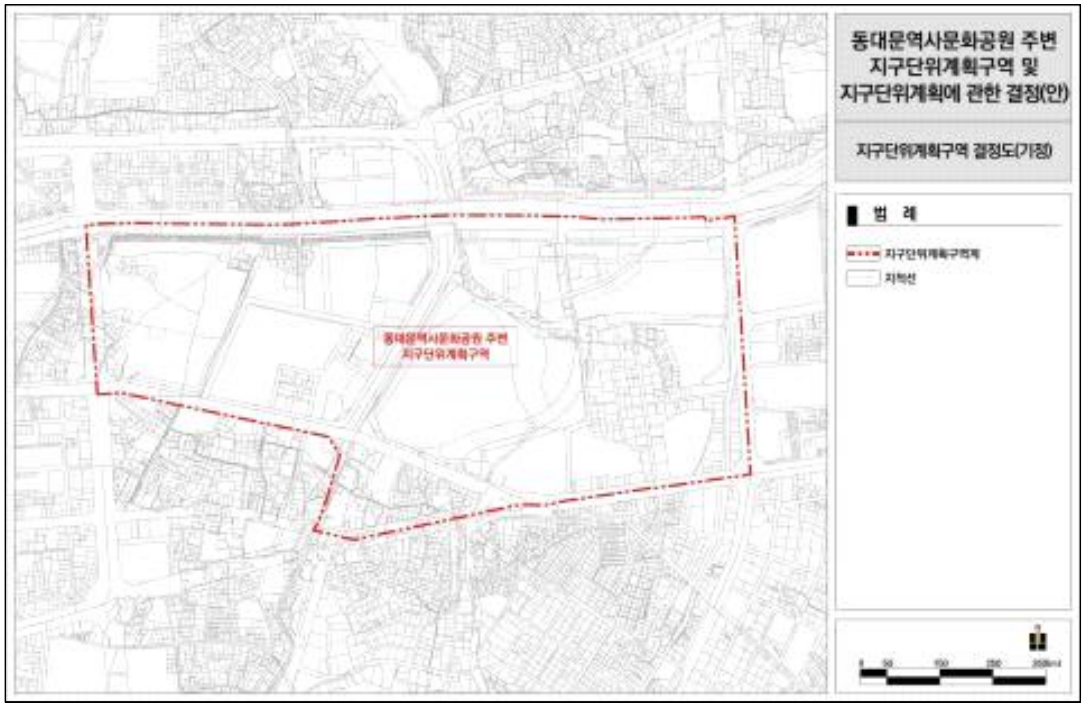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폐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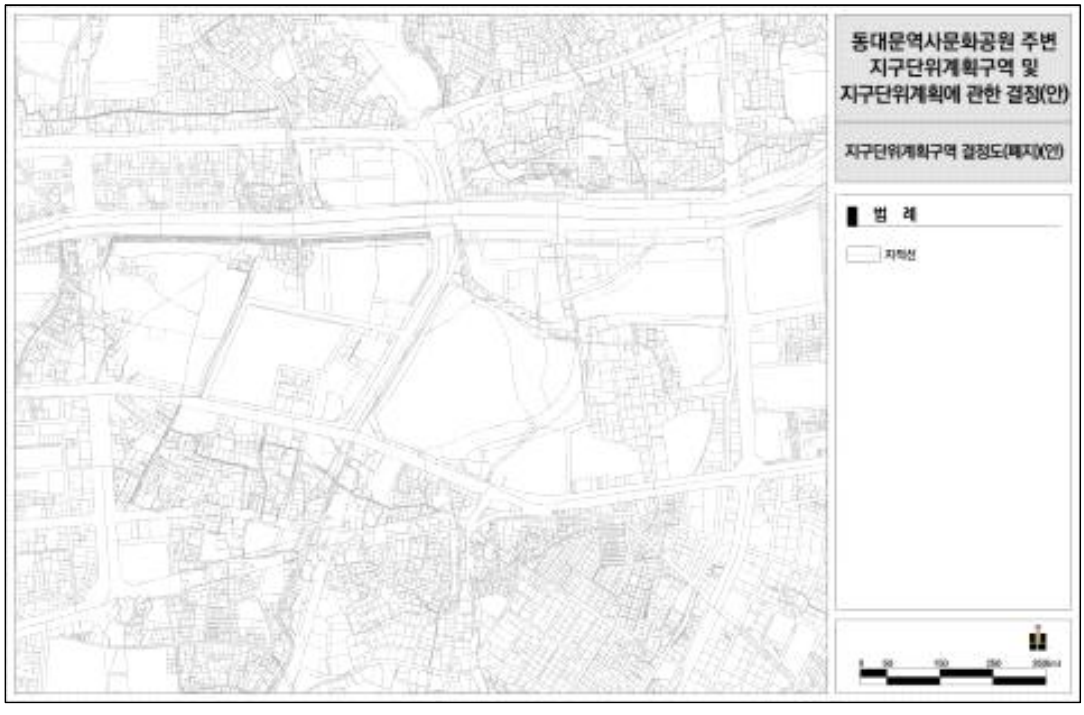

◈ 강북구공고 제2026-803호

도시공원(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연장)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오동근린공원 일부에 대하여 부지사용계약을 체결(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강 북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공 원 명	위 치(소재지)	면 적(㎡)	비 고
오동근린공원	강북구 번동 산27-122(임야), 번동 산27-92(공원)	3,398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6. 6. 28.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6. 6. 28. ~ 2029. 6. 2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901-6929)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6-85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1.)로 고속철도 부대시설(정차장) 결정, 건설부고시 제349호(1979.9.24.)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1호(1980.6.3.)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46호(1981.4.24.)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지적승인 관련,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을 202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6.04.01.)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6. 5. 14. ~ 2026. 5. 27.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7)

다. 입안취지 :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출입구 확장 개선안을 반영하고 분리되어 관리 중인 도시철도 시설의 일원화 및 기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조서 수정
ㅇ 철도(2호선 본선) 결정 조서: 도로 중복결정에 대한 사항 표기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2호선)	중구 서소문로 127	중구 서소문로 127	시청, 강남, 사당, 신도림, 신촌	연장: 60.35km 폭: 17~65m	건설부고시 제203호 (1975.12.20.)	본선 48.8km 성수지선 5.4km 신정지선 6.15km

※ 전체연장은 서울시고시 제181호(1980.5.), 제505호(1982.12.9.), 제326호(1983.6.30.), 교통부고시 제90-36호(1990.12.31.)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철도	고속철도 (변전소 및 환기실)	대흥동 2-77 외 10필지	1,567.0	감)1,567.0	-	서고191호 (1980.6.3.)	-
기정	철도	고속철도 (정거장)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	5,000.0	증)5,226.0	10,226.0	건고제232호 (1977.12.1.)	▪ 광로 2-58 중복결정 (A=7,589.5㎡) ▪ 대로 3-14 중복결정 (A=1,609.7㎡)
변경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철도 (변전소 및 환기실)	▪ 시설 폐지 : 감)1,567.0㎡	▪ 분리되어 관리중인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를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	철도 (도시철도)	▪ 면적 변경 : (기정)5,000.0㎡ (변경)10,226.0㎡ 증)5,226.0㎡	▪ 1980년대 건설된 2호선 이대역사 변전소의 출입구가 반입장비 등의 크기 증가로 일상적인 운용 및 비상 시 유지보수가 어려워짐 이에 지하철의 화재 등 기타 사고 방지 및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자 출입구를 확장 개선안을 반영하고 기결정 시 개별 결정 또는 누락된 변전소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시설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시설의 종류 변경 : (기정)고속철도 (변경)도시철도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시행 1992.12.16.) 개정 이후, 종전 '고속철도' 에서 '도시철도' 로 종류 명칭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58	40	주간선도로	6,800	북아현동(아현동346-21)	합정동(서교동392-4)	일반도로	-	건고214호 '78.8.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광로	2	58	40	주간선 도로	6,800	북아현동 (아현동3 46-21)	합정동 (서교동 392-4)	일반 도로	-	건고214호 '78.8.2	▪ 철도(이대역사) 중복결정 (A=7,589.5㎡)
기정	대로	3	14	25	보조 간선	1,600	대흥동 (대흥동 2-1)	용강동 (대흥동 2-6)	일반 도로	-	건고177호 '62.12.8	
변경	대로	3	14	25	보조 간선	1,600	대흥동 (대흥동 2-1)	용강동 (대흥동 2-6)	일반 도로	-	건고177호 '62.12.8	▪ 철도(이대역사) 중복결정 (A=1,609.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광로2-58)	·2호선 이대역사 도시계획시설 (철도)와 중복결정	·기결정 시 개별 결정 또는 누락된 변전소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도로 (대로3-14)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6-994호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영등포 뉴타운지구 지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에 대한 변경 결정 된 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3-3일대
나. 면　　적: 7,818.00㎡
다.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818.00	3,585.76	-	486.47	486.47	47	
기반	소 계	2,187.46	2,187.46	-	-	-	2	
	도 로	1,243.33	1,243.33	-	-	-	-	
	광 장	944.13	944.13	-	-	-	2	
조경시설		174.84	174.84	-	-	-	-	
휴양시설		684.39	684.39	-	-	-	42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52.60	52.60	-	-	-	3	
편익시설		486.47	486.47	-	486.47	486.47	-	
공원관리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4,232.24	-	-	-	-	-	
시설률 (제한없음)		(3,585.76/ 7,818.00) × 100 = 45.87%						
건폐율 (법정 20%)		(486.47 / 7,818.00) × 100 = 6.22%						

라.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02-2670-3758)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부.
2. 조성계획(안) 도면 1부. 끝.

도시계획시설(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조서

1. 영등포1-12구역 문화공원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818.00	3,585.76	-	486.47	486.47	47	
기반시설	소 계	2,187.46	2,187.46	-	-	-	2	
	도 로	1,243.33	1,243.33	-	-	-	-	
	광 장	944.13	944.13	-	-	-	2	앉음벽
조경시설		174.84	174.84	-	-	-	-	
휴양시설		684.39	684.39	-	-	-	42	파고라,쉘터,앉음벽 야외테이블,등의자,야외의자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52.60	52.60	-	-	-	3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486.47	486.47	-	486.47	486.47	-	
관리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4,232.24	4,232.24	-	-	-	-	
시설율 (제한없음)		(3,585.76 / 7,818.00) × 100 = 45.87%						
건폐율 (법정 20%)		(486.47 / 7,818.00) × 100 = 6.22%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	7,818.00	3,585.76	-	-	486.47	486.47	47	
기반시설	소 계	-	-	2,187.46	2,187.46	-	-	-	-	2	
	도로	소로	-	1,243.33	1,243.33	-	-	-	-	-	(신설)
	광장	가	영등포동5가 43-3일대	944.13	944.13	-	-	-	-	2	(신설)
	진입광장-1	가-1	영등포동5가 43-3일대	278.94	278.94	-	-	-	-	-	(신설)
	진입광장-2	가-2	영등포동5가 43-3일대	162.31	162.31	-	-	-	-	-	(신설)
	진입광장-3	가-3	영등포동5가 43-3일대	34.77	34.77	-	-	-	-	-	(신설)
	진입광장-4	가-4	영등포동5가 43-3일대	61.86	61.86	-	-	-	-	-	(신설)
	진입광장-5	가-5	영등포동5가 43-3일대	406.25	406.25	-	-	-	-	2	(신설) 앉음벽
조경시설	소 계	-	-	174.84	174.84	-	-	-	-	-	
	수경시설	나	영등포동5가 43-3일대	174.84	174.84	-	-	-	-	-	(신설)
휴양시설	소 계	-	-	684.39	684.39	-	-	-	-	42	
	휴게공간-1	다-1	영등포동5가 43-3일대	265.23	265.23	-	-	-	-	11	(신설) 파고라,앉음벽, 야외테이블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공간-2	다-2	영등포동5가 43-3일대	78.27	78.27	-	-	-	-	11	(신설) 앉음벽,쉘터,등의자
	휴게공간-3	다-3	영등포동5가 43-3일대	86.02	86.02	-	-	-	-	5	(신설) 앉음벽,쉘터,등의자
	휴게공간-4	다-4	영등포동5가 43-3일대	74.50	74.50	-	-	-	-	9	(신설) 쉘터,야외의자
	휴게공간-5	다-5	영등포동5가 43-3일대	90.92	90.92	-	-	-	-	4	(신설) 앉음벽,쉘터,야외의자
	휴게공간-6	다-6	영등포동5가 43-3일대	89.45	89.45	-	-	-	-	2	(신설) 파고라,앉음벽
운동시설	소 계	-	-	52.60	52.60	-	-	-	-	3	
	운동공간	라	영등포동5가 43-3일대	52.60	52.60	-	-	-	-	3	(신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소 계	-	-	486.47	486.47	-	-	486.47	486.47	-	
	계단실-1	마-1	영등포동5가 43-3일대	52.76	52.76	-	-	52.76	52.76	-	(신설)
	계단실-2	마-2	영등포동5가 43-3일대	45.41	45.41	-	-	45.41	45.41	-	(신설)
	계단실-3	마-3	영등포동5가 43-3일대	59.94	59.94	-	-	59.94	59.94	-	(신설)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단실-4	마-4	영등포동5가 43-3일대	23.65	23.65	-	-	23.65	23.65	-	(신설)
	DA	마-5	영등포동5가 43-3일대	56.88	56.88	-	-	56.88	56.88	-	(신설)
	주차램프	마-6	영등포동5가 43-3일대	247.83	247.83	-	-	247.83	247.83	-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	4,232.24	-	-	-	-	-	-	
	녹지 및 기타		영등포동5가 43-3일대	4,232.24	-	-	-	-	-	-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519.1	1,243.33				
신설	소로	3	1	3.64	43.1	156.91	진입로	가-1	소로3-3	
신설		3	2	2.96	51.2	151.46	진입로	소로3-3	중로	
신설		3	3	6.0	15.0	90.16	진입로	1-12구역	1-11구역	
신설		3	4	1.2	17.4	20.93	산책로	다-1	다-1	
신설		3	5	1.2	16.7	20.04	산책로	소로3-3	다-2	
신설		3	6	1.45	20.1	29.11	산책로	다-2	바	
신설		3	7	1.37	7.3	10.00	부진입로	1-12구역	소로3-2	
신설		3	8	1.0	18.5	18.16	산책로	소로3-7	다-2	
신설		3	9	1.1	0.9	0.95	부진입로	마-2	소로3-8	
신설		3	10	1.3	1.8	2.36	부진입로	마-2	소로3-8	
신설		3	11	1.1	1.9	2.09	부진입로	마-2	소로3-8	
신설		3	12	1.2	3.5	4.16	산책로	소로3-8	소로3-2	
신설		3	13	2.6	209.1	542.81	산책로	소로3-14	소로3-14	
신설		3	14	1.5	12.5	18.75	부진입로	도로	다-5	
신설		3	15	1.78	38.9	69.58	산책로	다-5	가-5	
신설		3	16	1.5	7.7	11.50	산책로	소로3-13	가-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3	17	1.5	4.8	7.25	부진입로	중로	소로3-13	
신설		3	18	1.5	30.3	45.36	산책로	소로3-13	다-5	
신설		3	19	1.8	15.8	28.06	산책로	소로3-13	가-5	
신설		3	20	1.5	2.6	3.90	산책로	소로3-13	가-5	

조성계획도(최초) S= 1/400

영등포 1-12공원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문화공원

■토지이용계획 범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반 시 설	2,187.46	27.98	
조 경 시 설	174.84	2.24	
휴 양 시 설	684.39	8.76	
운 동 시 설	52.60	0.67	
편 익 시 설	486.47	6.22	
녹지 및 기타	4,232.24	54.13	
계	7,818.00	100.00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7,818.00	시설율 45.87%	
기반시설	소 계		2,187.46	2개소	
	도로		1,243.33	-	
	가-1	진입광장-1	278.94	-	
	가-2	진입광장-2	162.31	-	
	가-3	진입광장-3	34.77	-	
	가-4	진입광장-4	61.86	-	
	가-5	진입광장-5	406.25	2개소	
주차시설	소 계		175.36	-	
	나	수경시설	174.84	-	
휴양시설	소 계		684.39	42개소	
	다-1	휴게공간-1	269.23	11개소	
	다-2	휴게공간-2	78.27	11개소	
	다-3	휴게공간-3	86.02	5개소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휴양시설	다-4	휴게공간-4	74.50	9개소	
	다-5	휴게공간-5	90.92	4개소	
	다-6	휴게공간-6	89.45	2개소	
운동시설	소 계		52.60	3개소	
	나	운동광장	52.60	3개소	
편익시설	소 계		486.47	-	
	마-1	계단실-1	52.76	-	
	마-2	계단실-2	45.41	-	
	마-3	계단실-3	59.94	-	
	마-4	계단실-4	23.65	-	
	마-5	D.A	56.86	-	
	마-6	주차램프	247.83	-	
녹지 및 기타	소 계		4,232.24	녹지율 54.13%	
	녹지		4,232.24		

◈ 송파구공고 제2026-895호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원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우리구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1호(2025.12.11.)로 결정(변경)된 공원의 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2. 공원면적 : 8,949.30㎡
3. 조성계획(안)
   가. 시설면적 : 3,302.18㎡
   나. 주요시설 :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등
4. 관련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5일간
6. 열람장소 :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02-2147-3391)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남동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8,949.30	3,302.18	1	103.33	99.21	77	
기반 시설	소 계	2,321.28	2,321.28					
	도 로	1,952.65	1,952.65					
	광 장	368.63	368.63					
휴 양 시 설		125.32	125.32				19	
운 동 시 설		752.25	752.25				4	
관 리 시 설		103.33	103.33	1	103.33	99.21	54	
녹지 및 기타		5,647.12						
시 설 율 (법정 40%)		(3,302.18 ㎡ / 8,949.30㎡) × 100 = 36.90%						
건 폐 율 (법정 20%)		(103.33㎡ / 8,949.30㎡) × 100 = 1.15%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8,949.30	3,302.18		1동	103.33	99.21	77	
기반시설	소 계			2,321.28	2,321.28						
	도 로			1,952.65	1,952.65						
	광 장	가		368.63	368.63						
		가-1	부지 내	272.92	272.92						
		가-2	부지 내	95.71	95.71						
휴양시설	소 계			125.32	125.32					19	
	휴게쉼터	나		95.96	95.96						
		나-1	부지 내	7.50	7.50						
		나-2	부지 내	7.50	7.50						
		나-3	부지 내	7.50	7.50						
		나-4	부지 내	43.29	43.29						
		나-5	부지 내	4.02	4.02						
		나-6	부지 내	4.02	4.02						
		나-7	부지 내	4.02	4.02						
		나-8	부지 내	4.02	4.02						
		나-9	부지 내	1.97	1.97						
		나-10	부지 내	4.04	4.04						
		나-11	부지 내	4.04	4.04						
		나-12	부지 내	4.04	4.04						
	앉음벽	다		29.36	29.36						
		다-1	휴게쉼터(나-1)	3.00	3.00						
		다-2	휴게쉼터(나-2)	3.00	3.00						
		다-3	휴게쉼터(나-3)	3.00	3.00						
		다-4	휴게쉼터(나-4)	14.94	14.94						
		다-5	운동공간(마-2)	5.42	5.42						
	파고라	①	부지 내							4	
	등의자	②	부지 내							15	
운동시설	소 계			752.25	752.25					4	
	운동공간	마		707.43	707.43						
		마-1	부지 내	637.90	637.90						
		마-2	부지 내	69.53	69.53						
	파고라형 운동시설	③	부지 내	44.82	44.82					1	
	체력단련시설	④	운동공간(마-2)							3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 계			103.33	103.33		1동	103.33	99.21	54	
	관리사무소	바	부지 내	103.33	103.33		1동	103.33	99.21		
	공원등	⑤	부지 내							16	
	볼라드등	⑥	부지 내							27	
	잔디등	⑦	부지 내							7	
	CCTV	⑧	부지 내							2	
	자전거보관대	⑩	부지 내							2	
녹지 및 기타	소 계			5,647.12							
	녹지 및 기타			5,647.1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설	합 계				719.8	1,952.65				
산설	소로	소 계			719.8	1,952.65				
산설	소로	3	1	4.0	101.0	405.17	진입로	북측경계부	진입로3-7	
산설	소로	3	2	2.0	3.6	7.31	진입로	북측경계부	연결로3-1	
산설	소로	3	3	2.0	6.1	12.12	진입로	북측경계부	연결로3-1	
산설	소로	3	4	2.0	6.5	13.01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결로3-12	
산설	소로	3	5	2.0	6.0	11.95	진입로	동측경계부	진입로3-6	
산설	소로	3	6	2.0	15.7	31.47	진입로	남측경계부	광장(가-2)	
산설	소로	3	7	4.0	87.3	349.36	진입로	서측경계부	광장(가-2)	
산설	소로	3	1	2.0	56.5	113.49	연결로	진입로3-1	광장(가-1)	
산설	소로	3	2	2.0	28.0	55.07	연결로	연결로3-1	연결로3-1	
산설	소로	3	3	4.0	0.2	0.83	연결로	파고라(1)	연결로3-5	
산설	소로	3	4	10.0	0.3	3.33	연결로	파고라형 운동시설(3)	연결로3-5	
산설	소로	3	5	2.0	50.4	100.95	연결로	연결로3-7	광장(가-1)	
산설	소로	3	6	4.0	63.5	254.87	연결로	광장(가-1)	진입로3-1	
산설	소로	3	7	2.0	27.0	54.45	연결로	진입로3-1	연결로3-6	
산설	소로	3	8	2.0	41.3	82.53	연결로	연결로3-6	연결로3-10	
산설	소로	3	9	2.0	19.0	38.05	연결로	연결로3-10	연결로3-12	
산설	소로	3	10	2.0	92.0	183.92	연결로	연결로3-12	연결로3-6	
산설	소로	3	11	2.0	15.5	30.94	연결로	연결로3-6	연결로3-7	
산설	소로	3	12	2.0	51.8	103.55	연결로	광장(가-1)	광장(가-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13	2.0	0.5	1.02	연결로	파고라(1)	연결로3-10	
신설	소로	3	14	2.0	17.5	35.39	연결로	연결로3-10	진입로3-7	
신설	소로	3	15	1.5	9.1	13.65	연결로	관리사무소(바)	진입로3-7	
신설	소로	3	16	3.0	9.7	29.03	연결로	연결로3-15	관리사무소(바)	
신설	소로	3	17	1.5	3.0	4.54	연결로	관리사무소(바)	연결로3-18	
신설	소로	3	18	2.0	8.3	16.65	연결로	연결로3-17	진입로3-6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강남수상레저 (대표 유재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30 (잠원한강공원)	동력선 4척 무동력선 5대	수상레저사업	2026.5.4.~ 2026.11.30.	2026. 5.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인근)	(선박2척) 330.69㎡	한강대교(구·신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허가일 ~ ’26. 12. 31.	’26. 5. 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영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써클원네스 서울 (대표 박소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3	대체건조로 인한 휴업	공사면적 240㎡	대체건조를 위한 관로매설 공사	2026.5.9. ~ 2026.6.30.	2026. 5.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대교~행주대교)	(선박3척) 227.04㎡	한강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 및 청소	허가일 ~ ' 27. 01. 31.	' 26. 5.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시계내 한강 (잠실철교)	(선박2척) 361.84㎡	잠실철교 (철도교,도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6. 05. 11. ~ 26. 06. 12.	' 26. 5.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97	547.5	관공선 선착장 재배치	2026.5.11. ~ 2029.5.10.	2026. 5.1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326 (자양동)	잠실대교~ 영동대교	동력선 3 무동력선 76	수상레저사업	2026.5.1.~ 2026.10.31.	2026. 4.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영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써클원네스 서울 (대표 박소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3	대체건조로 인한 휴업	공사면적 7,919㎡	계류시설 조성을 위한 임시공사	2026.6.1. ~ 2026.7.15.	2026. 5.12.
			938㎡ (승선대 200㎡ 포함)	계류시설 조성	2026.7.16. ~ 2026.12.31.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21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5. 14. ~ 2026. 05. 27.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5. 28. ~ 2026. 06. 10.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0880	1	981125-*******	조*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01 18:04	50,000	2026-04-07	2026-06-10	10788 35136 210	2026-04-16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397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제1주차장 앞 안전지대
2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0883	1	971224-*******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01 18:07	50,000	2026-04-07	2026-06-10	10788 35136 177	2026-04-17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339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3-10,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제1주차장 앞 안전지대
3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0885	1	571219-*******	오*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4-02 08:55	50,000	2026-04-07	2026-06-10	10788 35136 184	2026-04-16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6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4길 9,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앞 안전지대
4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0886	1	890806-*******	장*호	버려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차	2026-04-02 16:46	50,000	2026-04-07	2026-06-10	10788 35136 208	2026-04-17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95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7가길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선유도 육교 계단 옆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8 94	1	020828- *******	박*민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4 22:38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76	2026-04 -17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5310	서울특 별시 강동구 구천면 로 278	6114 357	운수 송 영업 과	잠실한강 공원내 잠실헬기 장 옆 비상로주 변(60서91 57)자동차
6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8 99	1	990701- *******	김*욱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2 13:23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70	2026-04 -17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42269	대구광 역시 수성구 천을로 180	6114 357	운수 송 영업 과	괄나루한 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앞전지대(146루186 2)자동차
7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02	1	920922- *******	김**** 나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2 13:25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71	2026-04 -20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31114	충청남 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 로 947	6114 357	운수 송 영업 과	괄나루한 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앞전지대(25더2213)자동차
8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03	1	680114- *******	이*휴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1 10:02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65	2026-04 -17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34917	대전광 역시 중구 보문로2 30번길 12	6114 357	운수 송 영업 과	괄나루한 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앞전지대(32무3524)자동차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 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9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06	1	871101- *******	김*진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1 10:05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69	2026-04 -20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5741	서울특 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6114 357	운영관리 과	광나루한 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66서2084)자동차
10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07	1	931210- *******	김*빈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1 10:02	50,000	2026- 04-08	2026- 06-10	10788 35140 066	2026-04 -21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1785	경기도 의정부 시 용민로 74	6114 357	운영관리 과	광나루한 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19너8799)자동차
11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15	1	860405- *******	최*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4 -02 18:18	5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348	2026-04 -21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047	서울특 별시 동작구 양녕로2 9길 17	6114 357	운영관리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안내센터 주변
12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19	1	850517- *******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 -04 14:25	5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260	2026-04 -21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340	서울특 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 융로 79	6114 357	운영관리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트럼프월 드 맞은편 샛강 산책로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3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규칙 위반과태료	2026-04	0009 20	1	741102-*******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07 13:17	5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35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77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 크루즈 주변
14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규칙 위반과태료	2026-04	0009 24	1	020110-*******	정*윤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28 19:14	5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34	2026-04-22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0	6114 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 공원 내 제3주차장 주변
15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규칙 위반과태료	2026-04	0009 43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3 16:25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39	2026-04-20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527	서울특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16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규칙 위반과태료	2026-04	0009 49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3 16:30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26	2026-04-21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35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17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규칙 위반과태료	2026-04	0009 61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3 16:39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42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 2길 24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김치전)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8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64	1	721214- *******	한*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03 16:07	7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350	2026-04 -21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8602	서울특 별시 금천구 범안로1 27길 11	6114 357	운영총괄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닭강정)
19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73	1	601222- *******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03 16:13	7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295	2026-04 -22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0831	경기도 파주시 곤탄면 방축안 길 40-35	6114 357	운영총괄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커피/핫도 그)
20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95	1	720309- *******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04 16:21	7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240	2026-04 -20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527	서울특 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총괄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삼겹 살)
21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09 98	1	820613- *******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04 16:23	70,000	2026- 04-09	2026- 06-10	10788 35145 343	2026-04 -21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362	서울특 별시 영등포 구 선길로4 2길 24	6114 357	운영총괄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김치 전)

순번	책목 코드	책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22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01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4 16:26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27	2026-04-21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35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23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15	1	721214-*******	한*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4 16:13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51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860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 2가길 11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닭강정)
24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16	1	850401-*******	방*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4 16:14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64	2026-04-20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7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 3다길 73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슬러쉬)
25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25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4 16:21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96	2026-04-22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08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안길 40-35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커피/핫도그)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 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잔디광장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0 30	1	680130-*******	이*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4 19:30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02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85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0길 28-11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몰빛광장 주변 (매트)
2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잔디광장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0 47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5:41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41	2026-04-20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527	서울특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 (삼겹살)
28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잔디광장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0 51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5:43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44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길 24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 (김치전)
29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잔디광장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0 53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5:44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28	2026-04-21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35	6114 357	운영관리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 (타코야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0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68	1	850401-*******	방*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6:12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65	2026-04-20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7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 3다길 73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슬러쉬)
31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71	1	721214-*******	한*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6:14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352	2026-04-21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860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 2가길 11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닭강정)
32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81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05 16:21	70,000	2026-04-09	2026-06-10	10788 35145 297	2026-04-22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08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안길 40-35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커피/핫도그)
33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83	1	900401-*******	최*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자동차	2026-04-09 09:03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8	2026-04-23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9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124m2052)자동차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84	1	881112-*******	김*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9 08:59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39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27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86	6114 357	운송물품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368저6883)자동차
3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85	1	900228-*******	박*우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9 09:03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1	2026-04-17	이사 불명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8016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71	6114 357	운송물품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02다2975)자동차
3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87	1	640611-*******	이*범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9 09:00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4	2026-04-22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25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92	6114 357	운송물품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39루0418)자동차
3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90	1	860625-*******	이*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7 09:12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5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1476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42길 30	6114 357	운송물품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49저4668)자동차

순번	색목 코드	색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 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8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91	1	961205-*******	임*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7 09:13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6	2026-04-24	폐문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53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6길 17	6114 357	운영관리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입구 안전지대(168두4817)자동차
39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0 96	1	760722-*******	이*석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05 15:36	50,000	2026-04-10	2026-06-10	10788 35151 943	2026-04-23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52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6114 357	운영관리과	광나루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옆 인도(226두7487)자동차
40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06	1	020913-*******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4-05 04:40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64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6114 357	운영관리과	뚝섬한강공원 2호매점앞 화장실옆 주변
41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10	1	821229-*******	황*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4-06 00:45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66	2026-04-27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2100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9,	6114 357	운영관리과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광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42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13	1	920904-*******	양*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08 17:47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54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2147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7길 13(면목동)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4주차장 주변
43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15	1	000223-*******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12 13:04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48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44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16	1	701022-*******	강*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4-12 16:22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43	2026-04-27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532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식물원로4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축구장 주변
45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17	1	710218-*******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4-12 16:23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47	2026-04-24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80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865-29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축구장 주변
46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23	1	870108-*******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12 17:00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55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6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보도 주변

순번	책목 코드	책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 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47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26	1	640115-*******	권*준	버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이륜차	2026-04-07 16:58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44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3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양화2호매점 인근 보행로
48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27	1	920630-*******	이*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4-11 09:02	50,000	2026-04-14	2026-06-10	10788 35160 156	2026-04-24	폐문 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4337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38 가길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내 선유교 계단 옆
49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29	1	920119-*******	신*철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12 14:03	50,000	2026-04-15	2026-06-10	10788 35162 570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00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7	6114 357	운영관리과	잠실한강공원내 환경적환장 주변(358조5994)자동차
50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31	1	041128-*******	정****건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6-04-12 17:58	50,000	2026-04-15	2026-06-10	10788 35162 574	2026-04-27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6114 357	운영관리과	잠실한강공원내 잠실나들목 인근(317너8455)자동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1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 잔디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39	1	781119-*******	김*훈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13 13:47	50,000	2026-04-15	2026-06-10	10788 35162 577	2026-04-24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9길 14-9	6114 357	운영총괄과	잠원한강공원내 축구장주변(서울강남거3945)이륜차
52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 잔디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46	1	850218-*******	차*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4-13 03:12	5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717	2026-04-28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580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10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메달존 주변
5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 잔디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74	1	801220-*******	박*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18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650	2026-04-28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461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69-1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 (메트/담요)
5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및 잔디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1 89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34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631	2026-04-27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527	서울특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순번	색목 코드	색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193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36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722	2026-04-28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 2길 24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김치전)
5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196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38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585	2026-04-28	폐문부재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35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5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218	1	780327-*******	김*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27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633	2026-04-29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14528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3 01번길 65-1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음료)
58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6-04	001225	1	850401-*******	방*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1 16:38	70,000	2026-04-16	2026-06-10	10788 35166 652	2026-04-27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77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 3다길 73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슬러쉬)

순번	색목 코드	색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9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 전및이용관 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28	1	801220- *******	박*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09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651	2026-04 -28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4612	서울특 별시 중구 다산로3 9길 69-1	6114 357	운영관 리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 (메트/담요)
60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35	1	640619- *******	박*숙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20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649	2026-04 -28	폐문 부재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29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9	6114 357	운영관 리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크레페)
61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44	1	720309- *******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24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632	2026-04 -27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527	서울특 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관 리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삼겹 살)
62	10-2 8870 6	[서일빈]서울특 별시한강공원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48	1	820613- *******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25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723	2026-04 -28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7362	서울특 별시 영등포 구 선길로4 2길 24	6114 357	운영관 리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김치 전)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51	1	750117- *******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27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586	2026-04 -28	폐문 부재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35	6114 357	운영관리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이벤트광 장 주변(타코 야끼)
6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66	1	010710- *******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16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672	2026-04 -29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6 9번길 11	6114 357	운영관리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회오리감 자)
6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74	1	780327- *******	김*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12 16:20	70,000	2026- 04-16	2026- 06-10	10788 35166 634	2026-04 -29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4528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3 01번길 65-12	6114 357	운영관리 과	여의도한 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음료)
6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87	1	930406- *******	이*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6-04 -01 20:23	50,000	2026- 04-17	2026- 06-10	10788 35172 493	2026-04 -29	기타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18237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 로 107,	6114 357	운영관리 과	반포한강 공원내 슬로프 주변
6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 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 반과태료	2026- 04	0012 92	1	700704- *******	MU*** ****A N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 -02 20:04	70,000	2026- 04-17	2026- 06-10	10788 35172 484	2026-04 -24	이사 불명	제2026 -218호	1	2026- 05-07	2026- 05-14	2026- 05-27	04406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로5 0길	6114 357	운영관리 과	반포한강 공원내 달빛광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8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296	1	020806-*******	곽*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04 19:00	50,000	2026-04-17	2026-06-10	10788 35172 486	2026-04-29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28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8길	6114 357	운영관리과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주변
69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301	1	700704-*******	MU*** ****AN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10 21:34	70,000	2026-04-17	2026-06-10	10788 35172 485	2026-04-24	이사 불명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440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0길 21,	6114 357	운영관리과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 주변
70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302	1	940621-*******	손*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4-11 13:45	50,000	2026-04-17	2026-06-10	10788 35172 491	2026-04-28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065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30-12,	6114 357	운영관리과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나들목 주변
71	10-2 8870 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4	001304	1	610206-*******	김*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4-11 19:29	50,000	2026-04-17	2026-06-10	10788 35172 488	2026-04-29	기타	제2026-218호	1	2026-05-07	2026-05-14	2026-05-27	3913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861	6114 357	운영관리과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 입구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33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문화체육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①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72-13
②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73-3, 672, 673-12, 672-13
③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4-8
- 면 적 : ①907.0㎡ ②880㎡ ③35.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①족구장, ②축구장, ③간이사무실

5. 점용기간 : (당초) 2024.10.14. ~ 2025.12.31.
(변경) 2026.1.1. ~ 2028.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34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금천구(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14-65번지 등 68필지
(가산동 614-65, 535-121, 614-42, 535-123, 538-11, 614-56, 614-44, 539-6,541-3, 614-45, 614-71, 614-72,557-3, 557-2,562-3, 340-5, 571-6, 340-2, 707-3, 707, 707-1)
(독산동 668-46, 668-25, 668-47, 668-42, 668-24, 668-43, 679-4, 689-3, 871-66, 702-2, 704-2, 705-2, 871-79, 719-14, 719-5, 719-12, 719-19, 770-7, 770-4, 770-6, 732-2, 732-3, 732-4, 754-14, 733-28, 733-31, 733-30, 756-208)
(시흥동 784-7, 784-8, 569-2, 565-2, 585-2, 766-26, 669-1, 671, 669, 672-13, 672-11, 673-11, 673-3, 673-10, 673-2, 674-4, 674-2, 675-4, 675-3)
- 면 적 : 9,64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구장3개소, 생활체육시설4개소, 화장실13개소, 기타(정자, 음수대, 물놀이장, 엘리베이터, 텃밭 등) 26개소, 가로등 181개소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24.10.23. ~ 2025.12.31.
(변경) 2026.1.1. ~ 2028.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41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민병진) ☎ 02-97-3504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32길 69, 2층(이태원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12, 보광동 446-1
 - 면 적: 개소당 7.5㎡, 총 15.0㎡(시추조사, 일시)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반조사(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우수박스 설치공사) 설계)
 - 내 역: 시추조사 2공(굴착깊이 25m, 굴착지름 76mm 이내)

5. 점용기간: 2026.05.06. ~ 20226.06.30. (기간 중 1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02-2150-0654)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9
 - 면 적: (면적 : 영구점용 874.84㎡, 일시점용 680.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신16차아파트(잠원로 157) 일원 사유지 매설관로 국공유지로 이설
 - 내 역: 도수관로(D=2,200㎜, L=425.7m) 이설

5. 점용기간: 영구

6. 공사기간: 착수일 ~ 2027.05.15.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권리산정기준일 오기 사항 정정

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용산구	서울역	서계동 234-5	11,991.60	
용산구	서울역	서계동 32-1	5,332.26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4. 9.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925)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6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관계도면

○ 용산구 서울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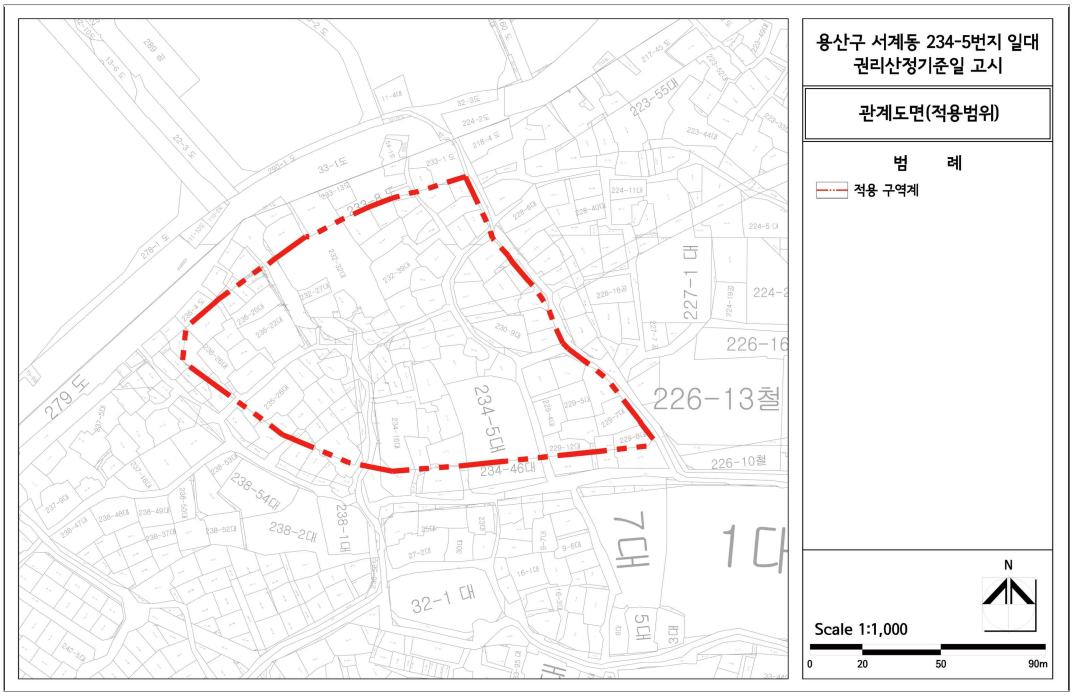

○ 용산구 서울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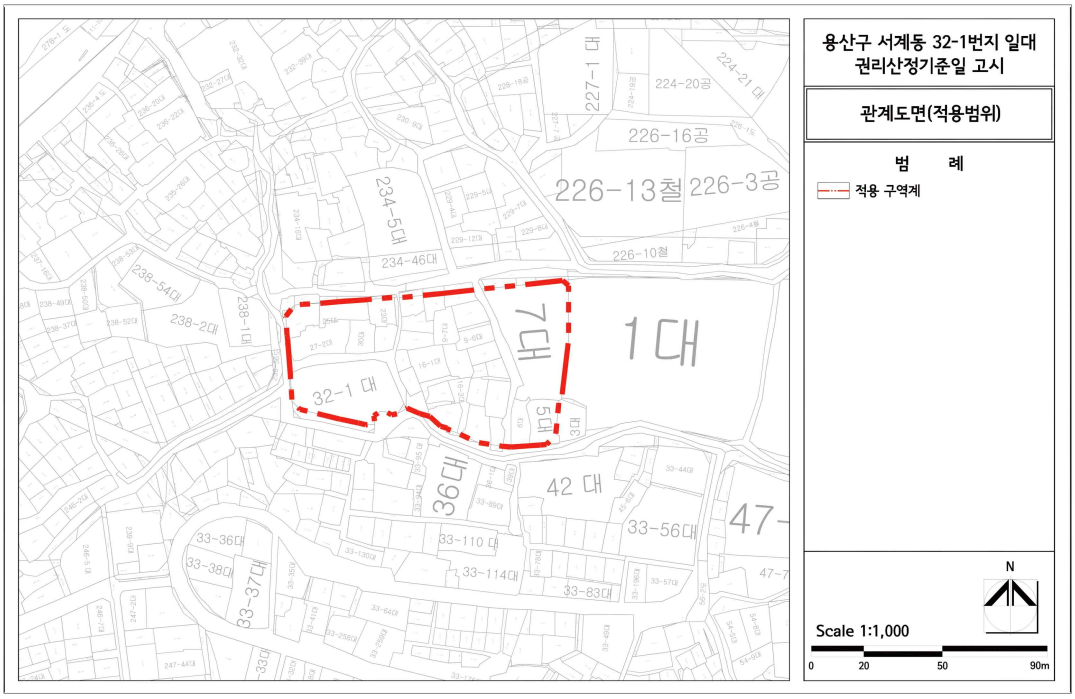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4호

광희동 및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4호(’ 26.2.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45호(2026.3.19.)호로 결정고시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및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 일부 누락 내용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 사유

- 관광숙박 특화목적을 위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87호(2026.2.19.)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적률계획 및 높이계획 등 내용 누락사항 반영

Ⅱ. 정정 내용(아래 사항 신설)

▢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관한 사항

○ 관광숙박 특화구역: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에 한함) 및 효제동1,2,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에 한함)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다음 사항과 같이 적용함

○ 적용기간: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적용대상: “소단위관리지구”에 한함

○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부문)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 용적률 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1) 적용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1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상한용적률 항목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과 중첩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등 관련규정 준수

2) 용적률 계획

구분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상업지역	일반상업	800%이하	800%이하	1,0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table>
<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
<tr><td>산정
방법</td><td>관광숙박시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X 용적률 완화 비율
• 법적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함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도지역 용적률을 법적용적률로 적용함
• 용적률 완화 비율은 최대 30퍼센트 범위 이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호텔업등급평가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객실, 부대시설 등 확보 (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호텔업등급결정 대상에 한하며,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 등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가능)
<table>
<tr><td rowspan="2">항목</td><td colspan="3">처리기준 및 계수*</td></tr>
<tr><td>0.8</td><td>0.9</td><td>1.0</td></tr>
<tr><td>객실비율</td><td>70% 미만</td><td>(직선보간 적용)</td><td>80% 이상</td></tr>
</table>
※ 계수* : 기존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최대 완화 범위 적용 가능
※ 객실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이웃한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에 따라 산정
※ 객실 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 모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중 여관, 모텔, 여인숙 등으로 운영 중인 경우를 말함.
※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 건립 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증축 시에는 증축되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함</td></tr>
<tr><td>비고</td><td>• 관광숙박시설 건립기준, 버스 주정차 유도기준, 교통처리방안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함</td></tr>
</table>

▢ 건폐율 · 높이 완화 사항

◯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건폐율, 높이 완화 적용 가능 (건폐율 완화와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 불가. 단, 기존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중복적용 가능)

적용구역	완화사항	완화범위
관광숙박 특화구역	건폐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높이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의 1.3배 이내

Ⅲ. 그 외 사항은 정정 내용 없음

Ⅳ.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35),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84)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